

言論仲裁

1999. 가을

▣ 1999년도 정기세미나/언론보도와 명예훼손소송

- 취재현장에서 본 명예훼손소송
 - 판결에 나타난 언론보도의 문제점
 - 보도와 명예훼손, 대안적 검토
-

▣ 國內論文

범죄보도와 면책사유의 적용

▣ 資料Ⅳ / 최근의 國內言論關係判決

1. 중재신청인의 불출석에 대해 불이익을 줌으로써 출석을 강제하도록 하는 정간법 제18조 제5항은 중재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중재절차를 실질화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보도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보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는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므로 피고소인들을 무혐의 불기소처분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3. 검사인 원고가 청탁을 받아 범죄혐의자의 구속영장 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한 것처럼 표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

言論仲裁委員會

言論仲裁

1999. 가을

▣ 1999년도 정기세미나/언론보도와 명예훼손소송

- 취재현장에서 본 명예훼손소송
- 판결에 나타난 언론보도의 문제점
- 보도와 명예훼손, 대안적 검토

▣ 國內論文

- 범죄보도와 면책사유의 적용
-

言論仲裁委員會

言論仲裁委員會는 「定期刊行物の 登録등에 관한 法律」, 「放送法」 및 「綜合有線放送法」, 「公職選舉 및 選舉不正防止法」에 의거 反論 및 訂正報道請求와 追後報道請求에 따른 紛爭을 仲裁하고, 言論侵害에 관한 사항을 審議합니다.

1999. 가을

季刊 1999년 가을호
제19권 제3호 통권72호
印刷: 1999년 9월 20일
發行: 1999년 9월 30일
登錄: 1981년 10월 14일
登錄番號: 바-692
發行人: 朴英植
編輯人: 李柄熏
印刷人: 金行述
發行: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 732-6031~5, 6011~3
725-0050
730-9498, 7317-571
FAX: 730-9420, 730-5487,
732-7585
Unitel: ARBIT
E-mail: s4arbit@unitel.co.kr
寫眞植字: 태성기획
印刷: 정화인쇄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평동 39
題字·金 膺 顯
本誌는 雜誌倫理實踐要綱을 준수한다.
※이 책에 게재된 원고의 내용은 당
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
다.
※이 책은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조성
한 공익자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
(비매품)

1999년도 정기세미나/언론보도와 명예훼손소송

〈제1주제〉

취재현장에서 본 명예훼손소송 최영훈 · 7

〈제2주제〉

판결에 나타난 언론보도의 문제점 한위수 · 17

〈제3주제〉

보도와 명예훼손, 대안적 검토 배금자 · 31

종합토론 사회 · 김학수 · 40

國內論文

범죄보도와 면책사유의 적용 이인호 · 48

言論關係判例評釋

언론의 자유와 형사책임의 한계 오경식 · 62

위원칼럼

감정 다스리기 김학수 · 72

해외동향 74

資料 I / 言論仲裁申請事例 88

資料 II / 外國의 言論關係判決

美國 · 日本 131

資料 III / 外國新聞評議會事例

美國 · 濠洲 · 英國 139

資料 IV / 최근의 國內言論關係判決

1. 중재신청인의 불출석에 대해 불이익을 줌으로써 출석을
강제하도록 하는 정간법 제18조 제5항은 중재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중재절차를 실질화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148
2. 이 사건보도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보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는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므로 피고소인들을
무혐의 불기소처분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154
3. 검사인 원고가 청탁을 받아 범죄혐의자의 구속영장 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한 것처럼 표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166



〈정기세미나 참석자 명단〉

- 발 표 자 (3)
 - 최 영 훈(동아일보 법조팀장)
 - 한 위 수(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 배 금 자(변호사)
- 사 회 자 (1)
 - 김 학 수(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언론사 및 언론단체 (21)
 - 권 순 태(동아일보 사회부 차장)
 - 김 재 열(광주일보 사회부 차장)
 - 김 주 인(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 박 동 수(기자협회 부회장)
 - 방 준 식(조선일보 사회부 차장)
 - 배 경 록(한겨레 사회부 차장)
 - 변 상 섭(대전일보 사회부 차장)
 - 안 병 길(부산일보 사회부 차장)
 - 윤 주 태(매일신문 사회부장 대우)
 - 윤 홍 식(국민일보 사회부 차장)
 - 이 상 언(중앙일보 사회부 차장)
 - 이 성 원(전북일보 사회부 차장)
 - 이 창 섭(기자통신 편집장)
 - 임 태 순(대한매일 사회부 차장)
 - 정 동 식(경향신문 사회부 차장)
 - 정 병 진(한국일보 사회부 차장)
- 차 준 영(세계일보 사회부장 대우)
- 최 병 수(강원일보 사회부장)
- 최 병 찬(KBS 사회부 차장)
- 최 영 범(SBS 사회부 차장)
- 최 한 수(MBC 해설위원)
- 중재위원 (18)
 - 박 영 식(위원장)
 - 송 정 제(부위원장)
 - 김 해 도(서울 중재위원)
 - 신 동 식(")
 - 최 광 일(")
 - 이 광 수(부산 중재위원)
 - 구 양 술(광주 중재위원)
 - 최 근 혁(대전 중재위원)
 - 조 균 상(")
 - 오 세 화(")
 - 이 천 우(경기 중재위원)
 - 유 성 균(강원 중재위원)
 - 공 병 진(")
 - 지 규 현(")
 - 장 공 자(충북 중재위원)
 - 김 한 봉(전북 중재위원)
 - 이 영 조(")
 - 김 현 태(경남 중재위원)
- 기 타 (1)
 - 강 성 만(국정홍보처
공보지원담당관)
- 사 무 처 (10)
 - 이 병 훈(사무총장)
 - 오 광 건(총무팀장)
 - 권 우 동(조사연구팀장)
 - 조 남 태(조사연구팀 차장)
 - 외 직원 6명

<제1 주제>

취재현장에서 본 명예훼손소송

최영훈

동아일보 법조팀장

I. 들어가는 말

II. 구체적인 현장의 사례

III. 맺는 말

I. 들어가는 말

1990년대 이후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언론중재 신청이나 명예훼손소송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당이나 검찰 등 권력기관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사례마저 빈발하고 있다.

물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87년 이후 언론자유가 확대됐지만 언론의 책임과 윤리의식은 그만큼 제고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 '신문전쟁', '시청률 경쟁'이라는 언론사간의 지나친 취재경쟁도 한 몫 했을 것이며 국민의 권리

의식이 향상된 이유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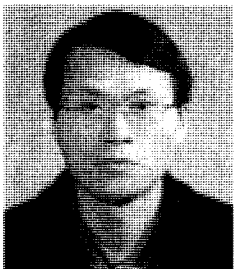
과거에는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어도 그냥 넘어갔던 권력기관이나 개인과 같은 수용자들이 이제는 중재신청을 하거나 소를 제기,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 대전법조비리 사건 이후 명예훼손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의 판사들은 무책임한 언론보도로 인해 법조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생각에서인지 언론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법원은 최근 들어 명예훼손소송에서 언론사에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으며 판결로 선고되는 손해배상금도 억대를 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취재현장의 일선기자들은 거물급 인사의 비리에 대한 보도를 할 때는 물론이고 단순한 사건보도를 할 때도 혹시 명예훼손 문제가 없는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폭로성 스트레이트 기사를 취급하는 사회부 일선기자 중에는 '명예훼손 노이로제'에 피가 마르는 느낌을 한두 번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드물 정도다.

그러나 언론이 부정확한 보도를 한다는 비판을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 동 법대 대학원 졸업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현 동아일보 사회부 법조팀장

명예훼손 보도는 언론사 내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특종에 대한 집착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 많아

듣게 되는 원인의 하나가 정부 등 주요 취재원의 기밀주의나 비협조, 또 권력자의 접근 거부 등에 기인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정당이나 검찰 등이 언론에 소송을 제기하는 새로운 현상은 자칫 언론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 등 관련기관들이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에 앞서 수용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론 스스로 잘못된 취재관행을 고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일선기자들이 취재현장에서 겪는 애로와 최근 급증하는 명예훼손소송에 대한 진단,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II. 구체적인 현장의 사례

1. 특종의 유혹

필자가 최근 체험한 사례다. 경기은행 퇴출로비 사건과 관련해 주혜란 씨가 인천지검 특수부에 국비리에 소환된 7월 14일, 점심식사를 하러 가기 전인 오전 11시 50분경 자신을 독자라고 소개한 사람이 “혹시 수원지검에서 주혜란 씨를 조사한다는데 어디서 조사하는지 모르느냐”는 묘한 말을 던졌다.

당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등이 국회에서 임창열 경기지사가 불법선거자금과 관련한 폭로를 한다는 말이 흘러 나오고 있던 시점이어서 깜짝 놀라 “무슨 말이나”고 되물었다. 무언가 권력형 비리에 대해 제보를 하고 싶거나 주혜란 씨 또는 임지사 측에서 검찰수사의 향방을 알아보기 위해서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나에게서 뚜렷한 말을 듣지 못하자 “혹시 무엇을 하는 분인지 말해줄 수 있느냐, 잠시 만날 수 없느냐”는 나의 말을 듣는 동안 그냥 전화를 끊어 버렸다.

마침 그날 법무부 공보관을 하다가 수원지검 특수부장으로 내려간 모검사와 점심식사 약속이 있었다. 검사에게 “혹시 수원지검에서 경천동지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은밀하게 물어보았으나 그는 최근 씨랜드 화재사건의 일환으로 소방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수사를 해 곧 발표할 것이라는 말만 했다.

그리고 오후에 세풍사건 수사와 관련한 후배기자의 기사를 고쳐 주는 작업을 한 뒤 취재를 하러 나가려는 데 믿음만한 검찰소식통이 “인천지검에서 난리가 났는데 모르고 있느냐”고 말했다. 필자가 “아, 주혜란이 말이죠”라고 반문하자 “경기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로비를 받고 수억원을 받았을 거요”라며 전화를 끊어 버렸다.

그때부터 데스크에 보고하고 일단 기사를 전화로 불렀다. 이날 5판(저녁 6시 반에 나오는 초판신문)에 1면톱으로 게재된 기사의 요지는 “주혜란 씨가 인천지검 특수부에 소환돼 조사받고 있으며 혐의는 경기은행 퇴출로비와 관련해 수억원을 받은 혐의다. 남편 임창열 지사가 로비에 관여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일단 기사를 내보낸 뒤 지방검찰청의 수사상황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는 대검 중수부장, 수사기획관 등을 상대로 보충취재를 했다. 그러나 이들은 NCND로 일관하다 주씨의 소환사실만을 나중해야 인정했다. 구체적인 혐의는 그때까지도 말할 수 없다고 버텼다.

주씨는 김대중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깊고 여론의 실세 등에게로 불똥이 튈 수 있는, 워낙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됐다. 이 사건의 취재 및 보도과정을 장황하게 언급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필자는 기사를 보낸 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우리만 아는 ‘특종’이라는 생각이 들어 당연히 해야 할 당사자의 반론을 받는 작업을 마감시간 이후로 미뤄달라고 데스크에 요청했다. 반론을 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언론사들도 낚새를 알아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7년 이상 법조출입기자를 한 경험과 신뢰할만한 제보자의 말로 미뤄볼 때 주씨의 소환은 구속으로 연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했지만 불안한 느낌도 들었다.

물론, 이 기사는 어차피 시내판 과정에서 주씨의 혐의나 수사과정이 구체화하고 당사자의 반론도 따라 붙기 마련이다. 하지만 후배기자들에게 이런 기사에는 반드시 반론을 받아야 한다고 지시해온 원칙을 스스로 깬 것이나 다름없어 미묘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최근 문화일보가 1면톱과 3면에 세풍자금이 대선자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핵심측근들에게 전내졌으며 10억여 원이 아직도 이들의 계좌에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문화일보는 관련인사 5, 6명을 실명으로 기사화하면서도 이들의 반론이나 해명을 전혀 게재하지 않았다. 정치부에서 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사회부와는 달리 정치부 기자들은 아직도 명예훼손에 대한 감각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보도가 나간 직후 한나라당측은 문화일보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물론 아직 한나라당측이나 관련인사들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말은 들리지 않고 있다.

이 경우도 특종보도를 의식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만일 한나라당측에 사실확인을 구할 경우 어떤 식으로든 다른 언론사에도 이 사실이 알려져 특종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으로 문화일보측은 생각했을 법하다.

사실확인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정보라도 상대방의 반론을 구하는 것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큰 줄기는 취재한 것과 같더라도 뉘앙스가 다르거나 때로는 다른 사실들이 튀어나와 당초 의도대로 기사화

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선기자들 중에는 ‘특종이나 오보냐’가 백지 한 장 차이일 경우가 많아 외출을 타는 곡예사의 심정으로 기사를 쓴 뒤 가슴을 쓸어내린 경험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외출을 타야 할 때 타지 않으면 결국 일선기자들이 물먹는다고 표현하는 ‘낙종’의 쓰라림을 맛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 달 이상 신문지상을 장식한 고급 옷 로비사건 과정에서 동아일보는 이형자 씨를 단독 인터뷰했으나 그 내용이 관련자들을 상대로 확인을 요하는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바로 보도하지 않은 일이 있다.

이씨는 두 달 가깝게 이 사건을 취재해온 후배기자의 만남을 거부하다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인 “이씨가 주도적으로 옷로비를 했다”는 한겨레신문의 일방적인 보도에 화가 나 후배기자와 만나 심경을 직설적으로 털어놓았던 것이다.

당시 이형자 씨를 인터뷰한 후배기자는 변호사들에게 명예훼손 문제로 자문을 구한 끝에 좀 더 보충취재를 한 뒤 보도하는 것이 정도라는 선배기자들의 판단을 따르다가 특종을 놓친 셈이었다.

명예훼손 보도는 기자들의, 아니 언론사 내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특종에 대한 집착, 또 낙종을 해서는 안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2. 취재원의 접근 거부

기자의 특종 욕심뿐만 아니라 취재 당사자가 접근을 차단하기 때문에 기자들이 반론을 받지 못하거나 사실 확인에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최근 중앙일보는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의 부인 이형자 씨의 그림 로비사건을 폭로했다가 명예훼손소송에 휘말렸다. 소송가액도 20억원이나 되는 근래 보기 드문 많은 액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더욱 눈길을 끄는 대목은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할 경우 으레 기자나 편집책임자와 함께 회사를 공동피고인으로 하던 관례를 깬다는 점이다.

중앙일보는 “신동아그룹측이 최순영 회장 구

반론을 구하고자 노력했으나 당사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는
언론으로서는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어

속 두 달 전 그림 60억원 어치를 매입해 로비를 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내용의 폭로 기사를 운보 김기창 화백의 아들의 인터뷰 기사 등을 곁들여 1, 2면과 사회면 등에 크게 보도했다.

그러나 신동아그룹측이나 이형자 씨 등의 반론은 전혀 게재하지 않았다. 이 보도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고급옷 로비의혹사건’을 처삼촌묘 별초하듯 대충 처리해 만신창이가 돼 있던 검찰은 또 한번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다.

청와대측이 신속하게 수사지시를 내리자 전날까지 머뭇거리던 검찰은 전격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결과는 운보 그림을 사들인 것은 미술관 건립을 위한 것이며 최소한 중앙일보가 의혹을 제공했던 운보 그림은 로비용으로 쓰여진 것이 단 한점도 없고 그대로 63빌딩 내 지하창고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찾잔속의 해프닝’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그리고 이형자 씨측은 이 기사를 보도한 중앙일보 법조팀장을 비롯한 기자 4명을 상대로 20억원의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중앙일보 기자들은 제보를 토대로 화상들을 상대로 추적하는 등 나름대로 취재에 공을 들였다. 마지막으로 운보의 아들 김완 씨와 만나 이 사실을 확인한 뒤 이형자 씨의 반론을 듣기 위해 햇불선교센터로 가는 등 노력했으나 접근 자체가 차단돼 결국 반론을 듣지 못한 채 의혹제기식의 보도를 했다.

문제는 취재현장에서 반론을 듣기 위해 노력했지만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는 언론으로서는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물론, 이 경우 최대한 노력했으나 반론을 구하지 못해 오보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최소한 손해배상액 산정시 정상은 참작될 것이다. 하

지만 지능적인 취재거부, 접근차단의 방어막을 쳐버릴 경우 사실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지는데 이런 경우 일선기자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또 중앙일보 사재에서 보듯이 기자들만을 상대로 2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소송을 제기해 취재자체를 원천봉쇄한 것도 큰 문제다. 이후 다른 언론사들도 최소한 ‘그림 로비사건’에 대해서는 후속취재 자체를 아예 포기해 버렸다.

중앙일보는 한 달쯤 뒤 이형자 씨측과 협상해 “이형자 씨가 고가의 그림으로 정·관계 인사 부인들에게 로비하거나 로비하려는 사실도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정정 기사를 7월 19일자 2면에 실었다.

물론 이형자 씨측도 중앙일보 기자들을 상대로 낸 20억원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아니 댄 굴뚝에 연기 나랴’는 속담이 있듯이 ‘그림 로비사건’도 아직 그 실체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취재원이 ‘살아있는 권력자’일 경우 접근 자체가 봉쇄당하는 경우도 많다. 한겨레가 3년 전 김현철 씨가 이익단체인 한약사협회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보도해 당시로는 최고액인 20억원의 명예훼손소송에 휘말린 일이 있다.

그때 법원은 1심 판결에서 김현철 씨측으로부터 충분한 반론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도한 한겨레의 책임을 인정해 4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취재기자는 청와대측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끊임없이 접촉을 시도했는데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고 말한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취재기자의 책임이 완전히 면책될 수는 없겠지만 권력형 비리를 취재하는 일선기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법원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취재기자들이 어렵사리 비리의 단서를 포착해

사실확인에 들어가더라도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유력자가 접근을 거부해 취재 자체가 벽에 부딪쳐 버릴 경우 권력에 대한 비판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은 설 자리가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 법원은 언론사가 사실확인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따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미국 등 영미계 국가에서 판례로 채택하는 ‘공인(public figure)이론’ 등을 폭넓게 인정, 언론사에 면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3. 국가기관의 명예훼손소송

앞의 그림로비 사건의 예는 사인이 20억원이라는 고액의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취재를 원천봉쇄한 경우지만 최근 들어 검찰 등 권력기관이 명예훼손소송을 ‘전가의 보도’처럼 들이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물론 이 경우 형식은 해당 검사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형태지만 실제로는 검찰간부가 해당 검사에게 소송을 하라고 권유 또는 강권하는 일도 있다.

최근 검찰에 구속된 세종증권 김형진 회장의 채권 불법거래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동아일보는 검찰로부터 근거 없는 사실을 보도했다며 명예훼손소송을 내겠다는 ‘압력아닌 압력’을 받았다.

검찰은 “김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층으로부터 빗발치는 문의전화를 받았다”는 부분 등 관련기사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해왔다.

이 사건보도는 1면톱 스트레이트 기사와 해설 기사, 그리고 부속기사로 ‘김회장 그는 누구인가’라는 박스기사까지 포함해 비중있게 다뤄졌다. 문제가 된 것은 이 가운데 중추 출신의 김회장이 IMF를 거치면서 불법적인 채권거래로 거액을 벌어들여 상장 증권회사의 회장으로 초고속 출세하는 내용의 부속 박스기사였다.

이 기사는 경제부 기자가 사회부 기자의 정보 보고(기사화하기에는 확인이 덜 된 상태) 내용을 전해듣고 문제가 된 부분을 검증절차 없이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기사화해 다소 문제는 있었다.

최근 거듭된 악재로 위상이 실추된 검찰로서는 이 같은 보도가 다시 한번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했다.

따라서 동아일보는 이 기사를 바로잡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는 검찰의 항의를 받고 바로 다음날 이 기사가 실린 것과 같은 지면인 3면에 정정기사를 실어 소송까지는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김회장의 구속과정 등에서 국민의회의 실세인 K의원 등이 대검차장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문의한 일은 분명히 있었다. 물론 당시 대검차장은 K의원이 고향사람이라면서 김회장의 수사관련 상황을 한차례 묻길래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말을 해준 것 외에 정치권 등에서 청탁은 물론이고 문의전화조차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사례 말고도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들이 대전법조비리 사건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1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것을 시작으로 검사들이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꼬리를 물고 있다.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가 KBS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내 최근 1심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일도 있다.

또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들도 조선일보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당시 조선일보는 기사와 사실 등을 통해 특별수사본부가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의 가족명의계좌를 추적한 것 등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물론 이 사례들의 대부분은 검찰수처부 등의 권유나 강권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검사들이 집단으로 혹은 개인 차원에서 무책임한 보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같은 현상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인해 국가기관의 신뢰가 떨어지고, 직무를 수행한 담당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언론이 급격히 늘어나는 명예훼손소송에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간파한 검찰 등 권력기관이 이를 남발해 언론의 취재를 위축시키려 할 경우 그 폐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권력기관이 명예훼손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직·간접적으로 침해하는 결과 초래

권력형 비리에 관해 검찰 등 수사기관이 도마뱀 꼬리만 자르는 식으로 적당히 수사하고 넘기는 경우가 이제는 없어졌다고 장담할 수만 있다면 문제는 다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검찰이 다른 선진국 검찰 처럼 최고 권력층이 관련된 사건에서도 투명하게 수사하고 소신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등 권력기관이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직·간접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은 사인에 비해 언론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소송을 남발하기보다는 정정보도 등을 요구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물론 그에 앞서 언론사들도 국가기관에 대한 보도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논리적인 설득력이 떨어지는 무책임한 기사를 보도하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넘기려던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영미계 국가와는 달리 우리 나라의 경우 대륙법계 국가들에서 인정하고 있는 반론보도, 정정보도 등의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법관들은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법원은 국가기관(혹은 해당 공직자)의 경우 개인에 비해 언론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점을 감안, 명예훼손소송에서 지나치게 고액의 배상금을 선고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4. 장기간 계속되는 사건보도

지난해 12월 8일부터 열흘 넘게 계속된 김훈

중위 의문사 사건보도는 명예훼손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을 남기고 있다.

무엇보다 장기간 보도를 하는 과정의 첫 보도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식의 보도로 인해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인 명예훼손사건과는 다른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생각이다.

당시 언론은 특별조사단의 발표와 유족들의 의혹제기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당사자의 반론 등을 충분히 보장해줬느냐는 문제는 남아 있지만 당시 김중사는 언론이 직접 접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군검찰이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그때 이를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군이라는 특수한 영역에서, 그것도 현역장교의 의문사 사건을 추적해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 언론이 말아야 할 중대한 과업이다.

동아일보는 김중사의 살해의혹이 눈덩이처럼 부풀어 가던 사건초기부터 군당국과 김중사의 입장을 반영하는 기사를 다른 언론에 비해 비교적 많이 보도했다.

예를 들면, 특별조사단이 김중위 유족의 주장과 군당국의 1차 수사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김중사에게 유리한 자료와 내용도 상세히 전달했다. 또 다른 언론에 앞서 군관계자들을 집중 취재해 “김중사의 살해혐의 없다. 증거없고 알리바이도 뒷받침된다”는 내용을 가장 먼저 보도했으며 법의학 토론회 기사 등에서도 같은 기초를 유지했다.

그러나 김중사 가족들은 동아일보와 SBS, 경향신문 등 3개 언론사를 상대로 4월 9일 5억원을 지급해 달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 계류 중이다.

김중사 가족들은 언론개혁시민연대에 의뢰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필자는 담당 변호사를 두 차례 만나 재판 전 합의 가능성과 왜 동아일보를 1차 소송대상으로 선정했는지를 알아보았다.

변호사의 말은 “언개련 실무자들과 나름대로 당시의 지면과 영향력 등을 비교해 선정한 것”이라며 “소송비용 때문에 3개사를 1차로 선정한 것이 앞으로 다른 언론사들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무튼 장기간 계속되는 사건보도는 또다른 차원에서 언론사 데스크와 일선기자들에게 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큰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다.

법원은 최근 들어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와 해당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성격으로 손해배상금을 고액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장기간 계속되는 사건보도의 실제적 진실을 발견해나가는 과정에서 언론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충과 이런 사건보도의 특수성을 법원은 충분히 고려해 줬으면 한다.

5. 실명보도와 익명보도

명예훼손소송이 빈발하면서 일선기자들은 어느 경우에 관계인의 실명을 밝혀도 문제가 없을 것인지를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종래 구속된 피의자는 물론이고 내사단계에 불과한 피의자라도 고위공직자 등의 경우 당사자의 실명을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관행이었다.

최근 검찰의 내사를 받았다는 설에 휘말린 김혁규 경남도지사의 실명을 밝힐 것인지를 놓고 우리 신문은 심각하게 고민했다. 중앙일보가 8월 9일자 신문 1면 사이드톱 기사로 한나라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비리혐의를 내사한다는 사실을 실명을 밝히지 않은 채 보도했다. 당시 중앙일보는 이 단체장이 김지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야당 광역단체장이라는 사실만을 알았고 검찰로부터도 확인을 구하지 못해 익명으로 보도했다. 그 후 한겨레가 11일자 신문에 사정당국의 고위관계자를 인용, 김지사 실명으로 검찰이 내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1면에 비중있게 보도했다.

당시 동아일보도 이 단체장이 김지사라는 사실을 검찰 관계자로부터 들었으나 구체적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해 확인작업을 계속하고 있던 중이었다.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관계자들에게 확인을 해본 결과 “광역단체장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혐의에 대해 광범위하게 스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내사라고 할만한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회부 데스크의 상의결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김지사를 내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여 일단 실명으로 기사화하기로 정리됐다. 물론 김지사의 반론을 구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으나 당시 김지사는 서울에 올라와 있는 상태여서 김지사 비서실장의 해명을 달아 기사를 작성했다.

그후 수사 중간책임자인 대검수사기획관과 통화가 돼 “김지사의 비리첩보가 입수됐으나 첩보의 신빙성이 떨어져 내사단계도 아니다”며 “앞으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이 기획관은 이런 상태에서 실명보도하는 것은 명예훼손의 위험이 크다는 점도 누누이 강조했다. 신뢰할만한 취재원인 기획관의 말을 데스크에 즉시 보고하고 결국 그 기사는 익명으로 기사화됐다.

그러나 다시 자정무렵 연합뉴스에 실명으로 김지사가 모건설업체로부터 2억원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기사가 떴다. 인터넷뉴스망에 중앙일보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것이 확인됐다. 마침 야근을 하던 필자는 잠을 자는 이 기획관을 다시 깨워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당신의 말을 믿고 우리만 낙종아닌 낙종을 할 수도 있다”며 재차 확인을 구했다. 그는 “앞으로 두고 보아라 결코 수사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기사 자체를 쓰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쓰더라도 실명으로 기사화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취재원의 말을 믿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다른 신문들이 이 기사를 어떻게 취급할지, 또 며칠 뒤면 검찰이 당초의 입장을 바꿔 수사에 착수하게 되지나 않을지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웠다.

법원의 엄격한 법 적용과 손해배상금의 고액화 경향으로 기자들은 명예훼손 노이로제에 시달려

이 경우는 물론 제대로 판단을 한 것으로 판명됐다. 검찰은 다음날에도 “수사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김지사도 실명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김지사와 같은 공인의 경우에는 그래도 실명보도를 할 것이냐, 익명보도를 할 것이냐를 판단하기가 쉬운 편이다. 혐의만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실명보도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날 사회면에 보도된 위장이민 수범으로 아들의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의 경우 기소하면 실명으로 보도하는 관례에 따라 기사를 작성했다.

그러나 이 의사의 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 “억울한 사정이 있다”며 “변호사에게 자문해보니 실명으로 보도하면 언론중재위에 반론 혹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 아버지의 실명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데스크와 상의해 “아버지가 위장이민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귀국한 것”이라는 이 여자의 말에도 일리가 있을 수 있어 결국 익명으로 기사를 재작성했다.

지난 96년 이혼소송 중인 주부가 위자료를 많이 받기 위해 청부폭력을 행사했다가 경찰에 구속된 사건을 실명으로 보도한 6개 언론사가 명예훼손소송을 당해 패소한 일이 있다. 이 주부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언론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당시 법원은 “범인과 범죄혐의자에 대한 공개적 신원노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그에 따라 범죄에 관한 언론의 보도는 관계인의 신원을 밝힐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판시했다.

그후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공인이 아닌 사인의

구속기사는 의미있는 범죄행위가 아니면 아예 쓰지 않거나 대체로 익명보도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이 대형사건을 기획 수사해 구속자가 많아 명단을 신게 되는 경우에도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최근의 사례로는 군검찰과 검찰이 합동수사한 병역비리사건에서 구속자와 불구속자의 명단을 신는 문제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어떤 범위까지 명단을 게재할지를 놓고 데스크와 논의를 거듭한 일이 있다. 특히 아들의 병역문제에 관해 남편은 몰랐다고 검찰에서 진술해 부인만 구속된 경우, 특히 남편이 기업체 임직원이나 의사 등 지도층 인사일 경우 이 남편의 이름과 함께 ‘누구의 부인’이라고 명단을 게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로 논란이 벌어졌다.

통념상 남편 몰래 부인이 수천만원을 들여 아들의 병역을 면제받는 일을 혼자서 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구속된 가정주부의 이름만 보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유력한 반론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남편이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변호사의 조언 등을 참고로 결국 구속기소자에 한해, 또 부인의 경우에는 남편의 이름을 빼고 직업만을 설명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평범한 사인인 피의자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언론에 기명보도돼 만천하에 망신당하는 것이 법에 의한 처벌보다 훨씬 가혹할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 정신에서 엄격히 따지자면 그것은 법에 의하지 아니한 私刑으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에 어떤 범죄가 발생했는지를 알려 이를 경계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필요성과 방안을 논의하고 범죄행위에 대한 응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알리는 것은 언론의 과업중의 하나다.

일선기자들은 정치인 등 공인의 비리나 중대한 범죄에 연루된 자에 대해서는 그의 인격권보다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격권간의 조화와 절충, 이익교량을 하는 것이 구체적인 사건 보도에서 쉽게 판단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명보도와 익명보도 사이에서 일선기자들은 고뇌하는 경우가 많다.

6. 기 타

최근 동아일보가 아파트관리비리사건 보도로 소송을 당한 사례는 좀 심한 경우에 속한다. 이 사건은 수사권 독립문제로 경찰과 갈등을 빚던 검찰이 경찰이 한차례 수사했던 것을 재수사한 특이한 성격의 것이다.

복잡한 상황은 각설하고 언론이 수사내용 자체보다 검·경간의 갈등에 포인트를 맞춰 보도하자 당시 검찰 수사관계자가 이를 해명하는데 급급하다 정작 사건자체를 잘못 설명했고 이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다 보니 부정확한 기사가 나갔다.

그 내용은 “S주택관리회사 양모 씨가 지난해 5월말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K아파트의 위탁관리 업무를 맡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에게 46회에 걸쳐 1억400만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K아파트의 경우 돈을 받은 것은 조합장이어서 동아일보를 찾아와 항의한 K아파트 관계자들에게 검찰의 잘못된 설명때문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틀 후 정정보도를 해줬다.

그러나 이들은 한 달쯤 뒤 동아일보와 MBC, 매경, 한경 등 4개사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다른 언론사가 빠진 것은 그날따라 사건이 폭주해 지면사정상 기사를 송고는 했으나 게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변호사 등에게 자문해 본 결과 “문제의 기사는 명예훼손의 의도나 고의가 없고 검찰의 설명과 공개자료에 의해 단순 착오로 발생한 것인데다

신속하게 정정보도가 이뤄져 당사자에게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소송결과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소송에 휘말리면 일선기자들은 내부에서도 책임문제가 따르는 등 엄청난 심적인 고통을 받게 된다. 또 고액의 손해배상금이 최종 확정될 경우 회사에서 일선기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소송에 연루된 당사자의 불안감은 실로 크다.

물론, 일선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등 보다 신중한 자세가 요구되는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수사기관 등에서 수사결과를 부정확하게 설명하거나 구속단계에서는 혐의를 부풀렸다가 정작 기소단계에서는 이를 줄일 경우 이를 일선기자가 체크하기란 불가능하다.

또 수사기관 등은 이것 저것 다 빼버리고 그 기관에서 알리고 싶은 내용만 축소해 발표하는 경우도 많아 평소 친분이 있는 ‘딥 스로트(deep throat)’를 통해 공식발표 외의 알짜정보를 취재해 보도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소송에 휘말릴 경우 취재원을 공개할 수도 없고 일선기자들은 말할 못할 심적 고통을 받게 된다. 물론 취재기자가 사실확인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을 경우 법원은 명예훼손 소송에서 위법성을 조각해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법원은 ‘상당한 노력’의 기준을 과거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손해배상금의 고액화 경향과 함께 일선기자들을 ‘명예훼손 노이로제’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Ⅲ. 맺는 말

명예훼손소송을 피하는 왕도는 없는 것 같다. 결국 일선기자들이 초년병 시절 배운 ‘팩트는 신성한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사실확인에도 더욱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법언에 “판관은 두 개의 귀를 갖고 있다”는 것이 있지만 일선기자들도 양쪽 당사자의 말을 들은 후에 기사를 써야 한다. 특히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보도의 경우에는 두말 할 필요가

었다.

흘러 다니는 첩보, 제보, 정보의 홍수속에서 특종의 유혹에 빠져 정확한 보도를 등한시 할 경우 언제든지 명예훼손소송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이었던 폴리처는 신속한 보도보다 정확한 보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갈파했다. “언론에서 보도의 정확성은 여자에게 있어 정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몇 번씩, 또 사건관계자들을 여러 명 만나 확인했는데도 본의 아니게 오보를 하는 희귀한 사례도 얼마든지 있다. 김영삼 정부 시절 시경에 출입하던 필자의 후배기자는 ‘손명순 여사 소매치기 사건’을 이같이 공을 들여 취재했으나 결과는 사실이 아닌 오보로 드러나 엄청난 곤욕을 치렀다.

따라서 일선기자들은 자신이 왜 사건을 취재하게 됐는지, 어떻게 확인해 갔는지 등을 기록한 취재메모를 평소 꼼꼼히 작성해 두어야 소송 등에 휘말릴 때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

필자가 최근 동아일보에서 연수를 받은 사법연수생들을 상대로 ‘언론과 법조계’를 주제로 한 강의의 마친 뒤 이들로부터 집중적으로 받은 질문은 대전법조비리사건 당시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에 관한 것이었다.

예비법조인인 이들이 언론에 적대적인 감정을

보이는 것에 당혹감을 느꼈으나 당시 대전법조비리 보도를 접한 나의 느낌도 이들보다는 덜할지 모르지만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당시 젊은 법관들은 몇 언론사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내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가 논의 결과 법관이 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포기한 것으로 들었다.

법원의 고위간부들은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지난 93년 이후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훨씬 커졌는 데도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이 언론을 견제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앞으로 법원이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나름대로 확인에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오보를 한 경우에도 해당 언론사와 취재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게 될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물론 언론 스스로도 잘못된 취재관행 등을 바꿔 나가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인 명예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법원도 언론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엄벌위주로만 가기보다는 취재환경이나 우리 사회의 수준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해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

위 원 회 소 식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은 지난 9월 2일과 16일 일부 언론중재위원의 임기만료와 법원인사이동 등에 따라 위원 9명을 새로 위촉했다.

◇ 서울제2중재부

金 在 玉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사무총장
宋 善 武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 서울제5중재부

徐 希 錫 서울지법 부장판사(유임)
金 在 德 전 국민일보 부사장
朴 仁 淳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유임)
康 錦 實 변호사

◇ 경기중재부

金 同 煥 수원지법 부장판사

◇ 대전중재부

宋 瑛 憲 대전지법 부장판사

◇ 전북중재부

柳 然 滿 전주지법 부장판사

<제 2 주제>

판결에 나타난 언론보도의 문제점

한 위 수

사법연수원교수, 부장판사

I. 서 론

II. 명예훼손의 주요 쟁점

III. 언론보도의 문제점 - 유형별 검토
VI. 결 어

I. 서 론

현대 민주주의는 언론에 의한 여론의 형성과 비판에 의지하는 바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일부 언론의 무분별한, 무책임한 보도로 인한 국민의 명예,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의 침해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와 함께 국민의 권리의식이 향상되어 언론보도에 대한 쟁송 또한 증가일로에 있고, 최근 10여 년간 인격권침해에 관한 수많은 중요한 판례가 나오고 있다.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침해유형은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초상권 침해로 대별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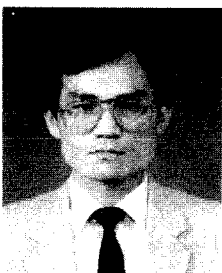
나 프라이버시나 초상권 침해는 대부분 명예훼손과 함께 주장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민사상 판례를 중심으로 먼저 명예훼손의 주된 쟁점에 대한 판결의 동향을 살핀 후, 판례에 나타난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유형화하여 분석해 보기로 한다.

II. 명예훼손의 주요 쟁점

1. 성립요건

형사상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한다(형법 제307조 제1항). 민사상으로는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회적 지위나 신용을 저하시킴으로써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750조 참조).

가. 의견, 논평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형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 미국 펜실베이니아 법대 석사(LLM)
- 서울고법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 현 사법연수원 교수
- 「사진의 무단촬영, 사용과 민사책임」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국내 판결의 동향」 외 다수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가 명예훼손소송에서 가장 큰 핵심쟁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민사상 명예훼손에도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만 하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 우리 나라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은 한 일간신문의 연극 ‘0.917’에 대한 기사가 문제된 사안에서, “민사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을 것”라고 판시하여 의견 또는 논평에 의해서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은,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여, 의견 그 자체만으로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이른바 상당성의 법리가 적용되어 명예훼손의 책임을 벗어날 수 있을

을 밝히고 있다.¹⁾

나. 독자투고 또는 광고와 언론기관의 책임

오늘날 신문 또는 잡지에는 독자투고와 광고가 많이 실리고 있는데 그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것인 경우 신문사 등에 책임이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것이 쟁점이 된 판례를 찾아볼 수 없으나, 미국에서는 독자투고 또는 광고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때에는 언론사에 책임을 지우고 있고, 일본에서도 허위광고에 대한 언론기관의 책임가능성을 인정한 판례²⁾가 있다.

따라서, 독자투고나 광고가 기사와는 신뢰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언론사로서도 그 내용을 일일이 조사 확인함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언론사에게 독자투고나 광고를 게재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과 함께 이를 게재함으로써 인한 타인의 명예의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언론사로서는 그 내용으로 보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이 명확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다. 표제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어떤 발언이나 기사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는 그 발언이나 기사 전체의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하고 특정 단어나 문장만을 따로 떼어 내어 평가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이다.

1)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 또는 일반공중의 관심사인 사항에 대하여는 논평의 자유를 가지며 그것을 정당화할 만한 진실된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한 그 결과로서 피논평자의 사회로부터 받는 평가가 저하된다고 하더라도 논평자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영미의 ‘공정논평의 법리(fair comment rule)’와 일맥상통한다.

2) 最高裁判所 1989. 9. 19. 판결 (판례집미등재).

그러나 신문 또는 잡지의 기사가 전체로서는 진실하여 반드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 그 표제(제목)가 본문의 내용과 다른 인상을 줄 경우에 표제만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이를 부정하는 취지의 하급심판결³⁾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1998. 10. 27. 선고 98다 24624 판결⁴⁾에서 “신문기사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제목만을 따로 떼어 개별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될 것이지만, 기사 본문의 내용과 다른 인상을 주는 특정한 제목의 기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게재되어 일반 독자가 그에 대하여 일정한 고정관념을 가지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목의 게재행위 자체가 본문과는 별도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는 전제에 선 원심법원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위법성의 조각과 면책

어떤 언론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형사상의 명예훼손죄 또는 불법행위로서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형법 제310조는 ‘위법성의 조각’이라는 표제아래 “제307조 제1항의 행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대법원은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에서 “형사상으로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

는 증거가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⁵⁾고 판시한 이래 그후 일관되게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함으로써 위법성이 조각되는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이른바 상당성의 법리).

그리하여, 오늘날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소송에서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가 가장 큰 핵심쟁점이 되고 있다.

가. 傳聞的 보도와 진실한 사실

언론에 의한 보도는 傳聞的 표현에 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이 ...라고 주장하였다” 또는 “○○○에 대하여 ...라는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형식의 보도가 많다. 이 경우 그것이 진실한 보도인지의 여부는 ○○○이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였는가 또는 그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진실한 보도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보도된 주장이나 혐의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는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주장의 존재 또는 혐의의 존재 자체가 아닌 위 주장이나 혐의 내용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므로 그 주장이나 혐의내용이 진실하여야 비로소 진실한 보도가 된다고 봄이 일반적이고,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⁶⁾은, 원고가 회사기밀을 누출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신문보도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위 기사 본문 내용과 같이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된 것 자체가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판단한 것은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3) 서울고등법원 1994. 1. 21. 선고 93나22234 판결(언론중재위원회, 『국내언론관계판례집』 제3집, p.151. (이하 “언집3, 151”형으로 줄인다)). 이는 ‘민자대표기사 날조 ○○○피고인 석방’이라는 제목 중 ‘날조’부분이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것이었다.

4) 판례공보 1998년 하권 2766면(이하 “공1998하, 2766”으로 줄인다). 이는 강원도의회의원들이 통일원으로부터 접촉승인을 받고 남·북 강원도 교류사업을 추진하면서 북측인사에게 전달한 편지에 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김일성에도 편지’ 등의 기사제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보도하여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 일행이 김일성의 사망을 애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편지를 보낸 것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준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5) 공1988, 1394.

6) 공1999상, 330.

보도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하고,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된다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

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구체적으로 무엇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인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할 것이나,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범, 그 표현의 광범,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도 비교·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다.⁷⁾

그러나,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⁸⁾은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이나 이를 통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등의 여하에 따라서는 그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⁹⁾,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977 판결¹⁰⁾은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유죄확정판결의 전과사실은 종전의 공직 수행과정에서의 범죄나 비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자료가 되어 그의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은 법원의 최종적 사법적 판단을 받은 것이므로 공

적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¹¹⁾은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나,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여 이른바 익명보도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다.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

어떠한 경우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것인지는 성질상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4624 판결¹²⁾은,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7)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공1996상, 1027).

8) 공1996상, 1627. 신학대학교의 교수가 출판물 등을 통하여 종교단체인 이른바 ‘구원파’를 이단으로 비판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그 실질적 지도자로 지목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행위를 특정인이 지도자로서의 자질이나 덕목이 부족함을 부각함으로써 구원파를 경계할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로 보아야 옳을 것이라고 판시한 사례이다.

9) 일본 최고재판소 1981. 4. 16. 판결(판례시보 1000호 25면)도, 종교단체인 創價學會를 비판하는 기사에서 그 회장의 여성관계를 언급한 데 대하여, 이는 私人的 生活活動의 行狀에 관한 것이지만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10) 공1996하, 2433.

11) 공1998하, 2108.

12) 공1998하, 2766.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고, 또한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¹³⁾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 것인가, 정보원이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의 확인이 용이한 사항인가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라. 통신기사의 전제와 상당한 이유

우리 나라의 언론사는 수많은 해외기사를 AP, UPI 등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그대로 보도하고 있고, 지방신문에서는 서울 또는 타지방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연합통신사로부터 기사를 제공받아 이를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에 대해서도 언론사가 스스로 취재한 기사와 마찬가지로 진실확인 작업을 하여야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한 우리 나라의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으나¹⁴⁾, 미국에서는 신문, 방송사가 통신사 등 뉴스수집기관으로부터 받은 소식을 그대로 보도한 경우에 있어서는, (1) 그것이 신뢰할 만한 뉴스수집기관으로부터 전신으로 받은 것이고, (2) 피고로서는 그 뉴스가 허위인지를 몰랐으며, (3) 그 뉴스자체의 문면상으로는 그것이 부정확한 것일지 모른다고 주의할 하게 할 만한 사항이 없고, (4) 피고가 수신한 내용을 아무런 실질적인 변경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한 경우에는 면책이 된다고 보고 있으며(이른바 wire service defence)¹⁵⁾, 일본의 하급심판례는, 통신기사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는 통신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전제한 신문사는 위 통신사로부터 받은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판례¹⁶⁾와 신뢰성이 높은 통신사로부터 기사를 받은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례¹⁷⁾가 대립하고 있다.

생각건대, 지리적으로 너무 떨어진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거나 특파원 등을 상주시키기에는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아니하여 권위 있는 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그로부터 받은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는 언론기관에게 그 통신사로부터 받은 모든 기사에 대하여 진실확인작업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너무 지나칠 뿐 아니라 사실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통신기사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통신사로부터 받은 기사를 실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신뢰할 만한 통신사로부터 받은 것이며, 받을 당시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크레딧(제공 통신사의 표시)를 붙여 실질적 변경이 없이 보도하였다면 피해자는 통신사로부터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으므로¹⁸⁾ 그 언론기관이 기사가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힐 대법원의 판례가 기대된다.

마. 현실적 악의 원칙의 적용 유무

미국에서는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공직자, 정치인, 사회활동가 등 공적 인물(public figure)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가 그것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허위인지의 여부를 무분별하게 무시하였음을 입

13) 공97하, 3279

14) 다만 서울고등법원 1996. 9. 18. 선고 95나41965 판결(언집4, 325)은 연합통신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크레딧을 붙이지 아니하고 직접 취재한 것처럼 보도하면서 기사의 진실여부에 대한 확인노력을 하지 아니한 지방신문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15) 염규호, 「통신기사개재와 명예훼손」, 『언론중재』, 1993년 겨울호, p.61. 참조.

16) 東京高等裁判所 1995. 3. 29. 판결(판례시보 1608호 107면); 東京高等裁判所 1995. 12. 25. 판결(판례타임즈 923호 219면); 東京地方裁判所 1996. 8. 28. 판결(판례시보 1611호 95면) 등.

17) 東京高等裁判所 1996. 11. 19. 판결(판례시보 1587호 65면); 東京高等裁判所 1996. 5. 20. 판결(판례타임즈 918호 178면); 東京高等裁判所 1996. 4. 26. 판결(판례시보 1608호 107면).

18) 통신사와의 전제계약시 통신사로부터 받은 기사를 크레딧을 붙여 거의 그대로 보도한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을 통신사가 지기로 약정함이 보통이다.

미국의 현실적 악의의 법리 적용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명시적으로 부인하고 있어

증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현실적 악의의 법리(actual malice rule)’가 확립되어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 24207 판결¹⁹⁾에서, “언론의 특성상 공적자의 윤리 및 비위 사실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는 특별히 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이를 무분별하게 무시한 경우에만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거나 상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는 등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 34563 판결²⁰⁾ 또한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이라 할지라도 언론기관에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현실적인 악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Ⅲ. 언론보도의 문제점 - 유형별 검토

여기서는 언론보도에 의한 침해 인격권의 유형을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침해, 초상권 침해로 대별하고, 각 그에 대하여 판례상 문제가 되는 주요 보도행위유형을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1. 명예훼손 관련

가. 허위보도

언론기관이 기사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보도하는 유형이다.

언론기관이 기사내용이 전부 허위임을 알면서도 보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목적 등으로 기사의 일부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보도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여성월간지의 경우 인터뷰를 하지 않고서도 인터뷰를 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여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이 경우 인터뷰에서 밝혔다고 보도된 내용이 진실하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성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심지어 미화하는 것이라든가) 인터뷰한 사실이 없는데도 인터뷰한 것으로 보도되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상을 왜곡하는 것이 되어 일반적인 인격권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하급심판례로서, 피고 신문사의 기자가 청와대정책수석비서관에 내정되었다가 취소된 전모씨의 전처인 원고를 만나 취재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고 3~5분간 상식적인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변을 하였을 뿐인데도 원고가 스스로 인터뷰를 통하여 위 전모씨의 과거나 이혼사유를 밝힌 것처럼 허위 보도한 사안에서 명예훼손과 함께 사생활침해를 인정한 사례²¹⁾, 여성 월간지가 자유기고가가 쓴 ‘내가 연하의 남자들과 사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원고들이 인터뷰를 통하여 연하남자와의 교제경험을 밝힌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원고들이 전혀 인터뷰를 한 바도 없는 사안에서 명예훼손책임을 인정한 사례²²⁾가 있다.

19) 공1997하, 3279.

20) 공1998상, 1575.

21)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2. 7. 선고 93가합25344 판결 (언집3, 219).

22)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998. 2. 27. 선고 97가합15881 판결 (언집6, 102).

나. 진실확인작업의 소홀

언론기관이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은 없었으나 그 진실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보도한 경우로서 언론기관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소송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유형이다.

언론기관이 타인으로부터 제보나 풍문 또는 우연히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독자적으로 취재하여 보도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진술을 확인하는 등 진실확인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만 비로소 보도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데²³⁾, 이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①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²⁴⁾은, 일간신문기자가 원고의 연극에 대하여 기사를 쓰면서 연출가와 인터뷰를 하고 극단이 배포한 보도자료, 연극초연 당시의 공연선전물, 연극연습사진 등을 참고하였을 뿐 회곡을 전부 읽어보거나 10년 전에 공연된 연극을 직접 관람한 적도 없으면서 위 연극을 남녀 어린이와 중년 남녀 여성 사이의 변태적 성행위를 묘사함으로써 벗기기 연극으로 관객을 끌려고 하는 천박한 상업주의적 작품으로 표현한 것은 전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고,

②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²⁵⁾은, 피고방송사가 논픽션 라디오드라마에서, 신문방송사의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원고가 소외 김형욱에게 취직을 부탁하여 경향신문 주미특파원에 임명되었다는 내용 및 기사자료를 얻기 위하여 미국으로 망명한 김형욱에게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것처럼 아부하며 친밀하게 지냈다는 내용 등을 방송한 데 대하여, 소외인이 쓴 '김형욱 회고록'과 '비록 박정희 시대' 등의 저서와 일본에서 발행된 '주간독매'에 실린 원고의 수기 및 소

외인이 제공한 김형욱 관련 자료에 의하여 집필한 방송대본에 따라 방송을 하였으나, 위 각 자료는 위 방송대본의 내용이 진실함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함에도, 위 집필자가 드라마의 방송에 앞서 원고나 위 저서의 저자들을 만나 의견을 묻거나 달리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드라마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더라도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③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²⁶⁾은 보강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수사기록 및 담당검사로부터 입수한 정보만을 근거로 한 일간신문이 중견 모델인 진모 양 등이 음식점 주인 등의 소개로 돈을 받고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소외 박○○을 호텔과 여관을 돌아다니며 접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데 대하여, 기사가 열람한 수사기록은 위 박○○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 수사담당 검사로부터 입수한 정보 역시 박○○의 진술만을 근거한 것으로 그다지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으며, 관련 연예인들이나 그 소개인들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을 통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위 박○○의 진술이 진실인지 검토할 수 있었고 또한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를 요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어 그러한 조사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기사 내용의 진위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사를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위 기사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④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²⁷⁾은 민간부직원인 원고가 그 소유의 감나무밭에 있는 창고를 공장으로 임대하고 사슴축사를 지어

23) 이러한 예로는,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공1998상, 865) (김구 선생의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 중 김○○이 사전에 위 안○○에게 백범 암살을 암시·선동하고 위 안○○가 수감된 후 그의 뒤를 돌보아 준 것으로 묘사한 부분);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 (공1996하, 2928) (모 일간신문이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인 이○○이 거문도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안기부직원이 이에 관련되었다는 취지의 기사 부분) 참조.

24) 공1999상, 458.

25) 공1998상, 1575.

26) 공1998상, 1572.

27) 공1997하, 3279.

수사당국의 공식발표에 따라 보도하는 경우에도
발표내용을 과장하거나 단정적인 제목을 붙이는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하면서 각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기사가 실렸으나 위 창고는 공장으로 사용된 바 없고 사슴축사부분은 건축법상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사안에서, 피고의 기자가 위 비위사실을 이장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면장으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위확인 없이 일방적인 제보만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은 그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²⁸⁾

다. 당국의 발표에 의한 혐의사실을 과장하거나 전해를 부가하는 경우

수사당국 또는 국가기관의 공식발표를 그대로 보도하거나 실질적인 변동 없이 보도한 경우에는 취재원의 신뢰도가 높고 보도의 신속성이 요구되며 언론기관의 사실탐지능력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특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따로 확인취재를 하지 않더라도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²⁹⁾ (다만 이 경우에도 범인이나 범죄혐의자가 공적 인물이 아니라 사인이라면 그 신원을 밝히거나 사생활에 관하여 보도하는 것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³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수사당국의 공식발표에 따라 보도하는 경우에도 발표내용을 과장하거나 단정적인 제목을 붙이는 등의 경우가 적지 아니한데, 이러한 경우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³¹⁾은 수사당국의 발표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수사 중이라는 것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직접 취재에 의하여 원고의 범행이 확인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28) 그밖에 이에 해당하는 판례로는, 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공1996하, 1973) (한 영문일간신문에 모여 배우의 유학사기관원기사를 게재한 사안에 대하여,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마치 직접 취재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면서, 그 기사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및 관련자와 접촉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그 방법이 부적절하였거나 그 노력을 다하지 못하여 실패하자, 더 이상의 사실확인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근거 없이 만연히 기사를 작성한 경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공1994, 1643) (일간신문이 미성년자인 원고의 딸이 가출하여 소외인과 동거중 임신하게 되자 원고의 딸을 집으로 데려오고 소외인을 고소하는 한편 일방적으로 혼인 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기사를 실은 데 대하여, 담당기자가 그 보호자인 원고를 만나보는 등의 필요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경우);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공1988, 1392) (한 여성월간잡지에서 변호사의 잘못으로 패소했다고 주장하는 시민이 쓴 허위내용의 수기를 게재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수기를 잡지에 게재함에 있어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는 전혀 검토하지 아니하고 원문의 뜻이 왜곡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장의 일부만을 수정한 채 게재한 경우) 등이 있다.

29)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공1999상, 330)은 신문기자가 담당검사로부터 취재한 피의사실을 그 진위여부에 관한 별도의 조사 및 확인 없이 보도했으나 위 기사의 취재원이 이 사건 수사를 직접 담당한 검사인데다 사적인 정보가 아니라 소정의 절차에 의한 발표 형식을 취하고 있어 그 신뢰도가 높고 위 발표 및 배포자료를 기초로 객관적으로 작성되었으니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였고, 하급심판례는, 국세청의 보도자료에 의하여 원고를 부동산투기자로 보도한 경우(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4. 29. 선고 91가합43911판결 (하급심판결집 1992년 제1권 172면. 이하 “하집 1992-1, 172”형으로 줄인다)), 경찰의 보도자료에 의하여 원고를 전과7범이라고 보도한 경우(서울민사지방법원 1988. 4. 29. 선고, 87가합3739 판결(언론중재 1988. 가을호, 187면))는 모두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30)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공1998하, 2108).

31) 공1999상, 330.

기사를 게재하였으므로, 일간신문에 있어서의 보도의 신속성이란 공익적인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사를 게재한 것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고, 한 하급심판례³²⁾는, 이혼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하여 남편을 청부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경찰의 보도자료를 보고 기사 첫머리에 ‘출바람주부’라는 제목을 부가하고 원고가 출바람이 나서 이러한 범행을 하였다는 기사 자신의 견해를 덧붙인 경우에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라. 실명보도와 익명보도원칙

피의자로 보도가 되면 범인시되어 사실상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구속되더라도 실명을 밝히지 아니하고 익명으로 하는 것은 나중에 무죄로 밝혀지는 경우는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보더라도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다만, 피의자가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 공인이고 피의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공공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예외적으로 실명보도할 수 있을 것이다.³³⁾

이러한 익명보도원칙은 미국, 스웨덴 등지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으며, 앞서 본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은 “범죄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나아가 앞서 본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도 “[언론의] 보도 내용이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도의 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공적 인물이 아닌 私人的 경우 가급적 익명을 사용하는 등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익명보도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

익명보도원칙은 이름만 밝히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다. 단순히 김모 씨, L정씨 인처럼 표시하더라도 그 기사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고 언론기관이 명예훼손 등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³⁴⁾이므로, 이름은 물론 당사자의 연령, 주소, 직업이나 직장 등의 표시에 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의사 배모 씨(40세)’ 또는 ‘텔런트 ○양’으로 표시하는 등과 같이 익명처리를 잘못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까지 본인으로 오해받아 그들의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으므로, 실명을 밝히든지, 실명을 밝힐 상황이 아니면 가명임을 표시하고 사용하거나 단순히 ‘모 의사’, ‘모 텔런트’ 등으로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익명표시를 잘못하여 그 범주에 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책임(이른바 집단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된 사례로서, 한 월간 여성지에 ‘호스티스출신 서울대 여대생의 충격교백’이란 표제 아래 서울대 사회대 ○○학번의 여학생이 운동권 선배와 연애 끝에 배신당한 후 호스티스생활과 재벌회장과의 동거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남자들

32) 서울지방법원 1995. 5. 19. 선고 93가합54908 판결(언론중재 1995. 가을, 156).

33) 종전언론인이 음주운전단속을 피하려는 모습이 TV로 방영된 사안에서 원고는 공인이므로 얼굴을 노출시켰다 하더라도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로 서울지방법원 1997. 9. 3. 선고 96가합82966 판결(하집1997-2, 94) 참조.

34) 예컨대,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공1998상, 1572)(“연예인 ‘술집접대’ 또 물의”라는 표제의 기사 중 ‘26세의 중견 모델 진모 양’이란 기재);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10대 가출소녀에 대한 기사 중 “조 ○○의 장인” 또는 “조모 양의 친정아버지”라고 기재한 경우);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174 판결(대간첩작전 참가 중 찍은 사진이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작전 사진으로 게재된 경우).

사생활에 대한 공표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아닌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는 취지의 수기형식의 기사가 실리자 서울대 사회대 ○○학번 여학생 49인 중 15인이 원고가 되어 위 기사는 허위인데 원고들이 그 모델인 것처럼 억측을 받는 등 위 기사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비록 위 기사가 원고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바가 없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이 서울대 사회대 ○○학번 여학생이고 서울대 사회대 ○○학번 여학생들이 49명의 소수인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시한 하급심판례³⁵⁾가 있다.

마.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방식의 보도

보도된 개개의 사실은 진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으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방식으로 보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하급심판례로서, 유명여류작가가 여성월간지의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자신의 이혼경력 등 사생활을 작품의 소개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기사화하도록 당부하였는데, 그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표지의 제목이나 구성상 원고의 소설에 대한 기사라기보다 원고의 이혼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원고의 사생활에 대한 기사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하고 소설중의 한 주인공에 대한 내용이 원고 자신에 대한 내용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한 경우³⁶⁾, 피고 방송국이 원고의 결혼식 보도시 촬영한 영상을 수백만원짜리 웨딩드레스를 고발하는 보도의 배경 장면으로

방영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마치 원고가 수백만원짜리 웨딩드레스를 입고 호화결혼식을 한 것처럼 오해를 하게 한 경우³⁷⁾, 유명여배우였던 원고의 동생에 대한 여성월간지의 기사에서 원고와의 나이 차이가 20년이고 봉쇄 수녀원의 수녀로서 생활하면서 취재진을 피한다는 등으로 묘사함으로써 원고와 위 동생이 자매간이 아니라 모녀 사이일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³⁸⁾, 일간신문에서 이른바 몰래카메라에 의한 비밀촬영·녹화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기사에서 그 사례로서 “대통령아들의 불미스런 모습이 믿었던 사람을 통해 사방팔방으로 퍼지기도 했으며”라고 표현함으로써 원고가 대통령아들의 묵시적 승낙을 얻어 촬영한 것임에도 몰래 촬영한 것인 양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 사안³⁹⁾에서 모두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되었다.

2.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우리 나라에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하여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⁴⁰⁾은,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 제4항, 형법 제316조, 제317조 등 여러 규정을 종합하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판시하여 보도에 의한 사생활의 공개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35) 서울지방법원 1996. 5. 4. 선고 94가합91515 판결 (언론중재 1996. 가을호 166면).

36)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1994. 1. 12. 선고 93가합3572 판결 (언집3, 227).

37) 서울고등법원 1996. 6. 18. 선고 96나282 판결 (언집5, 157).

38) 서울지방법원 1997. 2. 26. 선고 96가합31227 판결 (언집5, 198).

39) 서울지방법원 1998. 12. 16. 선고 97가합76326 판결 (언집6, 328).

40) 공1998하, 2377.

가. 사생활의 무단공표

사생활에 대한 공표는 내용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함부로 공표 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연예인 등에 대한 여성 월간지의 기사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것이 함부로 공표 당하지 아니할 사생활에 해당하는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사회 통념상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우리 판례상 인정된 것으로는, 남녀간의 性的 交渉에 관한 사안⁴¹⁾, 유방확대수술 후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⁴²⁾, 가족에게 보낸 편지⁴³⁾, 사실혼관계의 파탄⁴⁴⁾, 결혼생활 및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⁴⁵⁾, 개인주택내부에서의 생활⁴⁶⁾, 개인의 재산관계⁴⁷⁾, 租稅關聯事項⁴⁸⁾, 대학신입생들의 나이트클럽 화장실에서의 대화장면⁴⁹⁾ 등이 있다.⁵⁰⁾

참고로 일본의 판례에 의하면, 에이즈(AIDS)에 감염되어 사망한 여성의 매춘행위, 이성관계, 원인불명의 고열로 입원 중인 사실, 여교사가 천민출신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 전과, 특정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및 주소(가입자가 전화번호부에 등재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시한 사건임), 유명연예인의 실거주지와 전화번호 등도 사적인 사항으로 보고 있다.⁵¹⁾

한편,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

결⁵²⁾이 판시하는 바와 같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그것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면책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건전한 기준(decent standards)을 가진 공중의 합리적인 구성원이 통상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일”로서, 그 해당 여부는 그 사회의 일반적인 규범이나 관습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건전한 기준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일부 사람의 흥미위주의 관심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본인이 승낙한 것과 다른 방법에 의한 사생활 보도

사생활에 대한 보도도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나⁵³⁾, 본인이 예상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데, 이는 본인의 승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예컨대, 유방성형수술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TV보도프로그램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⁵⁴⁾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무도 원고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 달라는 조건하에 취재 및 방영을 승낙 받은 이

41) 부산고등법원 1992. 6. 17. 선고 92노215 판결 (하집1992-2, 504).

42)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공1998하, 2377), 서울고등법원 1996. 2. 2. 선고 95나25819 (언집4, 242) (이는 동일사안에 대한 상고심, 항소심 판결이다).

43) 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하집1995-1, 323).

44)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4904 판결 (공1992, 1047).

45) 서울지방법원 1998. 8. 19. 선고 97가합 96337 판결 (언론중재 1999년 봄호, 165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4. 1. 12. 선고 93가합3572 판결 (언집3, 227);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2. 7. 선고 93가합25344 판결 (언집3, 219);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12. 27. 선고 91가합 52649 판결 (언집2, 147).

46)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공1999상, 351);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4 판결 (공1980, 12340).

47)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2439 판결 (공1997하, 1888).

48) 서울고등법원 1995. 8. 24. 선고 94구39262 판결 (하집1995-2, 464).

49)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 (하집1997-2, 80).

50) 반면, 음주운전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공의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것이고 음주운전과 상관없는 일반인도 타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될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의 이익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개인의 사생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하급심판례(서울지방법원 1997. 9. 3. 선고 96가합82966 판결 (하집1997-2, 94))가 있다.

51) 줄고,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국내 판결의 동향」, 『언론중재』, 1999년 여름호, pp. 52~53. 참조.

52) 공1998하, 2377.

53) 서울지방법원 1995. 6. 29. 선고 94카합9230 판결(하집1995-1, 323)은, 이회소의 모친이 이회소에 대한 글을 쓰겠다는 피고에게 위 편지를 넘겨준 사안에서 위 이회소나 그 모친이 위 편지를 공표 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어서 프라이버시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54) 공1998하, 2377.

기사내용과 무관한 사진 게재나 촬영과 공표에 동의하였더라도 예상과 다른 방식의 공표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

상 영상을 모자이크 무늬로 가리고 음성을 변조하는 등 원고 주변 사람들을 포함한 일반인들이 피촬영자가 원고임을 알아 볼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다음 이를 방영하여야 하고, 그러한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신분노출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방법으로 이러한 방법을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육성을 그대로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송함으로써 원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피촬영자가 원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한 이상 이는 원고의 승낙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부당하게 원고의 사생활을 공개한 것”에 해당한다 하여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한편, 대학교 신입생환영회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TV보도프로그램이 문제된 사안에서, 취재기자가 신세대 대학생들의 발랄한 신입생 환영회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방송하겠다는 조건을 붙여 원고들로부터 자신들의 신입생환영회에서 한 여흥 장면 및 식사 장면이 방송되는 것을 승낙 받고도 원고들을 취재한 장면을 방송함에 있어 신입생 환영회와 관련하여 숨졌다는 타대학생의 사망 사실과 험란한 나이트클럽의 무대 장면, 술에 취한 학생들이 길바닥에 쓰러지거나 여관으로 업혀 가는 장면 등을 위 취재 장면과 편집하여 ‘공포의 통과의례’라는 제목으로 방송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원고들과 같은 과 학생들이 마치 퇴폐적인 유흥에 물든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한 것은 원고들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하급심판례⁵⁵⁾가 있다.

3. 초상권 침해 판권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개인은 자기의 초상을 함부로 촬영, 작성되지 아니하고, 촬영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 사용되지 아니할 권리가 인정된다.⁵⁶⁾

오늘날 언론보도 특히 텔레비전 뉴스에서 초상이 방영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고 신문에 있어서도 보도의 효과를 높이고 신빙성과 설득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진의 게재가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 명예훼손적 기사에 대한 사진의 무단제재

보도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사진의 공표가 그 보도에 필요하고도 상당한 것인 때에는 본인의 승낙 없이도 초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명예 또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임에도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보도내용이 명예훼손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됨과 아울러 사진을 공표한 부분이 따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하급심판례에 의하면, 한 여성월간지가 과거의 유명 여배우와 그 20년 연하 여동생이 자매 사이가 아니라 모녀 사이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기사 중간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서있는 사진을 허락 없이 게재한 것은 위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에 덧붙여 그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로 쓴 것이므로 그 공표방법에 비추어 위 두 사

55) 서울지방법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하집1997-2, 80, 언집5, 250).

56) 예컨대, 서울고등법원 1996. 6. 18. 선고 96나282 판결(언집5, 151); 서울지법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하집1997-2, 80) 참조. 다만, 초상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대법원판례는 찾아볼 수 없으나,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공1997하, 3356)은 피고인의 나체사진이 피고인의 동의 아래 촬영된 이상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람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한 사례⁵⁷⁾ 및 여성월간지가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들이 연하의 남자들과 교제하고 있으며 그 경험을 인터뷰로 밝힌 것처럼 보도하면서 허락 없이 원고들의 사진을 게재한 사안에 대하여 초상권의 침해가 인정된 사례⁵⁸⁾가 있다.

나. 기사내용과 무관한 사진의 게재

보도에 사진을 함께 게재하는 것이 보도 목적상 필요하고도 상당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기사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데도 기사내용과 무관한 자의 사진이나 기사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의 사진이라도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이 게재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기사와 무관하면서 사진이 게재된 자는 기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해되어 명예훼손 등이 성립함과 동시에 사진 게재부분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게 되고, 기사와 관련이 있는 자의 사진이라도 기사와는 무관한 사진의 게재 부분은 초상권 침해가 된다.

하급심판례에 의하면, 여성 월간지에서 ‘압구정동 문화의 실체를 벗긴다’라는 제목으로 일부 젊은이들의 무분별한 과소비와 향락적 생활을 비판적으로 다루는 기사에 친구 사이인 여대생 3명이 우연히 압구정동의 커피숍에서 만나 대화를 나눈 후 귀가하는 사진을 허락 없이 촬영하여 게재함으로써 원고들이 속칭 오랜지족으로 오인되게 한 사안⁵⁹⁾, 뉴스위크지가 ‘너무 빨리 부자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인의 과소비실태와 일부 여성의 배금주의 풍조를 비판하는 기사에 학교정문을 나서는 이화여대생의 사진을 허락 없이 촬영하여 “돈의 노예들: 이화여자대학교학생들”이란 설명을 붙여 게재한 사안⁶⁰⁾에서 모두 초상권의 침해를 인정하였다.

한편, 일본의 하급심판례는, 남편살해용의로 체포된 원고(나중에 무혐의로 석방)에 관한 기사에서 30년전 잡지사의 미인콘테스트에 제출한 수영복차림 사진을 게재한 것은 게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초상권의 침해를 인정⁶¹⁾한 바 있다.

다. 승낙 당시의 예상과 다른 방식에 의한 초상의 공표

한편, 보도기관의 사진촬영에 응하고 그 공표에 동의하였더라도 그 사진이 예상과 다른 방법으로 공표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도 승낙의 범위를 넘어선 초상의 공표로서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하급심판례에 의하면, 취재기자가 신세대 대학생들의 발랄한 신입생 환영회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방송하겠다는 조건을 붙여 원고들로부터 촬영을 승낙 받고도 ‘공포의 통과리’라는 제목으로 원고들이 마치 퇴폐적인 유흥에 몰든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내용으로 방송한 사안⁶²⁾, 원고가 자신의 결혼식장면을 촬영하여 보도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하여도 방송사가 이를 수백만원짜리 웨딩드레스를 고발하는 보도에서 배경화면으로 사용한 사안⁶³⁾에서 모두 초상권의 침해를 인정하였다.

VI. 결 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언론보도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례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보호의 조화와 균형을 꾀하려는 입장에 있다. 보도된 사실이 허위라 하여도 그것이 공익에 관한 것이고 언론기관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57) 서울고등법원 1997. 9. 30. 선고 97나14240 판결 및 그 1심인 서울지방법원 1997. 2. 26. 선고 96가합31227 판결 (언집 5, 198).

58) 서울고등법원 1998. 11. 3. 선고 98나18577 판결 및 그 제1심인 서울지법동부지원 1998. 2. 27. 선고 97가합15881 판결 (언집6, 102).

59)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10. 20. 선고 94가합36754 판결 (언집3, 239).

60)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7. 8. 선고 92가단57989 판결 및 그 항소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3. 30. 선고 93나31886 판결 (언집3, 177).

61) 일본 東京지방법판소 1994. 1. 31. 판결 (판례타임즈 875호 186면).

62)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1998. 1. 13. 선고 97나43156 판결 (언집5, 250).

63) 서울고등법원 1996. 6. 18. 선고 96나282 판결 (언집5, 157).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 면책된다는 이른바 상당성의 법리를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판례원칙으로 확립하고, 한편 언론보도의 경우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언론기관에 원칙적으로 진실확인작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은 이러한 입장에 기초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공직후보자 등 공적 인물에 대하여는 전과 등 사적인 사항이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함으로써 보도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반면, 일반 사인에 대하여는 범죄사실보도의 경우에도 익명보도원칙을 준수하도록 천명하는 등 인격권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최근 10여 년간 언론관계 소송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주요 쟁점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점차 정리되어 가고 있고, 초기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액수가 지나치게 소액이라는 비판이 적지 아니하였으나 근래에 들어 위자료 인정 액수의 상승 현상도 눈에 띄고 있다.

생각전대,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에 대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결코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지만,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흥미위주의 무책임한 보도를 함으로써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무거운 책임을 물음으로써만 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언론기관으로서도 국민의 인격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

言論仲裁 특집논문 소개

1999년 여름호	• 언론자유와 프라이버시 -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법익과 법적 성격 - 공적기록의 보도와 사생활보호 -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면책사유 -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국내 판결의 동향	1998년 봄호 〈절판〉	• 지역언론의 역할과 책임 - 지자체선거와 지역언론의 과제 :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 지역언론의 취재보도와 언론윤리
1999년 봄호	• 언론피해구제와 옴부즈맨제도 - 옴부즈맨제도의 기능과 역할 - 한국 언론의 옴부즈맨제도 운용실태와 전망	1997년 겨울호	• 전자통신상의 표현의 자유와 책임 -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 사이버음란물의 규제와 청소년보호
1998년 겨울호	• 취재보도의 현실과 언론피해구제 - 언론환경변화와 취재보도의 문제점 - 언론피해구제 관련 법률의 입법론적 개선방향과 전망	1997년 가을호	• 언론중재제도의 운용방향 - 언론피해구제와 중재위원회의 역할 - 언론중재제도의 운용과 과제
1998년 가을호	• 언론법 교육의 실태 - 언론법 교육의 현실과 문제점 - 미국 대학의 언론법 교육현황	1997년 여름호	• 취재·보도관행과 인권 - 언론의 경쟁적 취재·보도와 권익 침해 - 위장취재와 몰래카메라 취재보도의 윤리적 문제
1998년 여름호 〈절판〉	•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몇가지 쟁점 - 명예훼손에 대한 사전제한의 법리와 실제 - 반론보도청구권의 당사자자격에 관한 고찰 - 언론보도와 초상권 침해 - 타매체 기사 인용의 문제점과 법적 책임 - 집단명예훼손소송에 관한 연구	1997년 봄호 〈절판〉	• 뉴미디어시대의 언론법제 전망 - 언론환경변화에 따른 언론개념의 재정립 - 뉴미디어시대 표현의 자유와 한계 - 뉴미디어 시대의 반론권과 액세스권
문의 : 언론중재위원회 조사연구팀 (02) 732-6011~3			

<제 3 주제>

보도와 명예훼손, 대안적 검토

—한 · 미간 비교를 중심으로—

배 금 자

변 호 사

.....目	次
I. 서 론	III. 우리 나라 명예훼손의 법리와
II. 미국의 명예훼손소송의	미국 법리의 적용가능성
특징과 법적 쟁점	IV. 결 론

I. 서 론

명예훼손소송은 개인의 인격권과 언론 자유의 충돌이기도 하고, 피해자 개인의 인격권과 일반인들의 알 권리의 충돌이기도 하다. 이들 권리보호가 모두 헌법상 보장하는 중요 이념들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다. 명예훼손소송에 대하여 언론은 언론자유를 위해 면책범위를 넓히려 하고, 개인은 인격권 보호를 위해 언

론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한다.

미국은 1964년 뉴욕타임즈 판결을 계기로 인격권 보호보다도 언론 자유를 우위에 올려놓았고,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언론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소송에서 많은 배상액 때문에 언론사들은 이에 불만이 많고 개혁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편, 우리 나라는 사전구제나 정정보도청구 등 다양한 구제방법이 있고, 판례의 태도가 인격권을 언론 자유보다 더 보호하기 때문에 미국보다 피해자에게 유리하나, 배상액이 너무 적어 실효가 낮다.



- 부산대 사학과 졸
-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17기) 수료
- 부산지법 및 동부지원 판사
- 하버드 로스쿨 졸,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 합격
- 현 변호사

II. 미국의 명예훼손소송의 특징과 법적 쟁점

1. 개 요

미국 명예훼손소송에서는 첫째, 피해자의 신

미국의 명예훼손소송은 민사소송이 주를 이루며,
징벌적 배상을 인정하는 경우 그 액수가 엄청난 것이 특징

분이 공직자, 공인, 사인인가에 따라 책임요건을 달리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분 구분이 큰 쟁점이 되었고 둘째, 의견과 사실을 어떻게 달리 취급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어왔다. 셋째, 사전금지나 정정보도가 거의 인정되지 않고 명예훼손은 주로 금전배상으로 해결하고, 명예훼손 소송은 민사소송이 주를 이루며, 징벌적 배상을 인정하는 경우 그 액수가 엄청난 것이 큰 특징이다.

2. 공직자, 공인, 사인의 구분과 쟁점

가. 공직자, 공인, 사인의 구분

1964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¹⁾에서 “공직자들의 공적행동”에 대한 토론에 대하여 Common Law 원칙에 의하지 않고, 헌법상 언론 자유의 보호대상으로 하여, 공직자인 원고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를 입증하지 못하면 언론은 명예훼손의 민사 책임을 지지 않게 했다.

‘현실적 악의’ 요건의 입증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과 증명책임을 원고에게 부과한 것은 언론측에서는 헌법적 특권을 보장받은 것과 같았다. 이로써 공직자의 공적행동 보도에 대해서는 인격권보다도 언론 자유가 더 보호되게 되었다. 연방대법원은 Garrison v. Louisiana 사건²⁾에서 공직자의 공적 적합성을 판단하는 토론과 형사적 명예훼손에까지 이런 헌법적 특권을 확장하였다.

연방대법원은 그후 Curtis Publishing Co. v. Butts 사건³⁾과 Associated Press v. Walker 사건⁴⁾에서, 뉴욕타임즈의 ‘현실적 악의’ 기준을 공적 인물의 경우에도 확장하였다. 연방대법원은 Gertz v. Robert Welch, Inc. 사건⁵⁾에서 공인을 일반적 공인과 제한적 공인으로 나누어 달리 취급했다. 일반적 공인은 공인과 관련된 ‘모든 사항’의 보도에 관해 ‘현실적 악의’를, 제한적 공인은 그가 관여한 ‘특정 문제’에 관한 보도에만 ‘현실적 악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

연방대법원은 Resonbloom v. Metromedia, Inc. 사건⁶⁾에서 ‘현실적 악의’의 이론을 사인 중 공적 이해관계에 관여된 사람에게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후에 Gertz 사건에서 이런 기준을 폐지하고, 뉴욕타임즈 사건과 같이 원고의 신분에 따른 구분방식으로 회귀하여, 사인에 대하여는 일반 과실책임 원칙에 따라 명예훼손을 판단하도록 했다.

연방대법원이 공직자, 공인에 관해 명예훼손 요건을 어렵게 한 것은 공적 이슈에 관해 공적 토론을 활발히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⁷⁾ Gertz사건에서 그 공직자 등과 사인을 구분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무원 신분을 추구한 사람들은 공공의 밀접한 감시의 대상이 되는 위험을 처음부터 감수했기 때문에 공적 업무에 관련한 결과를 받아들이야 한다. 그러나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 일반인들은 공직도,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1) 376 U.S. 254 (1964)

2) 379 U.S. 64 (1964)

3) 388 U.S. 130 (1967)

4) 388 U.S. 130 (1967)

5) 418 U.S. 323 (1974)

6) 403 U.S. 29 (1971)

7) supra note 1, 2, 3 판결

역할도 맡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명예를 포기한 적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반인들은 허위 보도로 인해 손상당한 명예훼손의 피해 보호를 법원에 요청할 이유를 가진다. 그리고 일반인은 공무원과 공인보다도 훨씬 피해에 취약한 입장에 있으므로 누구보다도 피해 회복의 자격이 있다.”

나. ‘현실적 악의’의 의미

‘현실적 악의’는 문제된 표현이 거짓임을 알거나 거짓인지 여부를 무모하게 무시한 것을 말한다.⁸⁾ 허위임을 안 경우는 판단이 쉬우나 실제 많지 않고, ‘현실적 악의’의 판단은 대부분 후자의 유형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진다. ‘무모하게 무시한’ 의미는 “아마 허위일 것이라고 고도로 인식한 경우”⁹⁾로, 주로 표현 당시 가졌던 피고의 심리상태에 초점을 두고 주관적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무모하게 무시한 것’의 판단은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하여 추론한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본 요소는 제보자의 신빙성, 명예훼손내용의 신빙성, 진실 확인 노력 여부, 보도관행 준수 여부, 기사내용의 긴급성, 표현 동기, 언론사의 경향 등이다.

‘현실적 악의’ 요건을 원고가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일반인의 경우 ‘과실’만 입증하면 되는 반면, 공직자나 공인은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도록 되어 있는 미국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공직자와 공인의 소송이 어렵다는 것은 LDRC¹⁰⁾의 1999년 보고서가 보여준다. 1998년 개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언론승소율이 44.4%인 반면, 공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언론승소율은 75%에 달한다.

다. 공직자, 공인이 제기한 소송에서의 쟁점

따라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현실적 악의’를 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공직자 또는 공인으로 인정받지 않으려고, 피고는 원고를 공직자 또는 공인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인에 대한 이러한 불리한 취급이 유명인에 대한 기사로 돈을 버는 ‘celebrity journalism’을 부

추기고, 언론은 유명인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즉 “명예훼손할 특권”을 언론에 주었다고 비판하는 학자들도 많다.

Gertz 판결에서 공인들을 두 종류로 구분하였지만, 구체적으로 그들의 어떤 행동이나 사항이 ‘현실적 악의’ 판단을 받는지 분명히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공적 인물이라고 해도 그 삶의 어떤 면은 완전히 헌법적 특권 밖에 있는 것이 있다”¹¹⁾고 한 것이나, The Restatement of Torts¹²⁾는 “어떤 명예훼손적 표현은 공적자나 공인에게도 단지 순수하게 사적 영역이 있다”고 하여, 공적자나 공인의 ‘어떤 부분’은 ‘현실적 악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역을 인정한다. 이것이 공인들에 관한 명예훼손에서 쟁점이다.

연방대법원은 공직자도 ① 비교적 고위 공직자나 공직후보자인가 ② 낮은 계급에 있는가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는 좀처럼 ‘현실적 악의’의 입증책임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고, 후자는 완화하고 있다. 고위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거 전력이나 전과, 비행, 인격 등 사적 생활은 바로 ‘공직 적합성’에 연결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순수한 사적 영역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반면, 직무수행에 있어 권한, 재량이 거의 없는 낮은 계급의 원고들은 직무수행에 밀접히 연결된 부분만 ‘현실적 악의’요건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명예훼손소송에서 일반적 공인도 고위공직자와 비슷한 입장에 놓인다. 연방대법원은 Gertz 사건에서 “원고가 공동체에서 일반적인 명성 혹은 악명을 가지거나 사회의 일에 널리 관여할 때 그의 인생의 모든 면에서 공직자로 된다”고 했다. 랠프 네이더, 조니카슨 등이 일반적 공인으로 인정되었는데, 실제 케이스에서 이러한 유명인들 관련 보도가 ‘현실적 악의’의 적용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 일반적 공인은 국가적으로 유명할 필요는 없고, 지역사회에서 유명한 것도 포함한다. 공인에 대한 소송에서 ‘현실적 악의’를 피할 수 있는 영역은, 제한적 공인의 경우이나 가능하

8) 위 뉴욕타임즈 판결

9) Garrison v. Louisiana, 379 U.S. 64 (1964).

10) The Libel Defense Resource Center

11) Rosenbloom v. Metromedia, Inc., 403 U.S. 29 (1971)

12) Restatement(Second) of Torts § 580A cml. c(1977)

미국은 명예훼손에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금지나 반론권은 허용하지 않아

다. 그들은 참가한 토론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만 ‘현실적 악의’가 적용되므로,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이를 벗어날 여지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¹³⁾

3. 사실과 의견의 구분

Common Law상 공평한 논평의 면책 특권에 의해 의견은 사실보다 강한 보호를 받았지만, 연방대법원이 Gertz사건에서 의견에 대해 거의 절대적 보호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이후, 하급심에서 오랫동안 의견에 대해 절대적 면책을 인정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 연방대법원은 Milkovich v. Lorain Journal Co. 사건¹⁴⁾에서 “Gertz에서의 판단은 의견이라는 표제가 붙은 것을 일괄 면책하려 한 것은 아닌데 하급심이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하면서,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분명히 하였다. “어떤 표현이 사실인가, 의견인가 하는 것보다 객관적 증거의 기초위에서 허위 또는 진실로 증명될 수 있는가라는 구분이 보다 적절하며, 공적 관심사에 관한 증명될 수 있는 허위 사실을 암시하지 않은 의견은 완전한 보호를 받는다.”

이로써 의견에 대한 면책 범위가 훨씬 좁게 되었고, 종래 Common Law의 원칙에서처럼 공평한 면책 특권이 다시 중요한 방어수단이 되었다. “나의 의견으로는” 이라든가 “나는...라고 생각한다”는 문구가 있다 해도 이것만으로 면책할 수 없고 실질적 판단을 거친 다음에 사실이 허위임이 판명되면 명예훼손의 성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4. 구제수단(사전금지, 반론권 불허용, 금전배상 원칙)

미국은 명예훼손에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금지나 반론권은 허용하지 않는다. 미국의 많은 주는 명예훼손에 사용된 것과 동일 시간대 또는 동일 지면에 피해자의 반론을 표시할 수 있는 반론권을 규정한 법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1974년 Miami Herald Publishing Co. v. Tornillo 사건¹⁵⁾에서, 정치적 후보를 공격한 기사에 대한 반론권을 신문사에 명한 플로리다주 법은 ‘신문의 언론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신문의 편집권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하였다.

이후 미국은 반론권이 허용되지 않고, 명예훼손적 기사를 언론사 스스로 취소해 주도록 피해자가 요청하는 취소권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참고로 방송에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반론권이 인정되는데 이는 출판언론에 비해 방송언론을 엄격히 규제하는 미국법원의 태도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취소권도 법원에 의한 강제실현을 허용하지 않고, 다만 취소가 있을 경우 징벌적 배상배제나 배상액 감경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ommon Law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금지처분도 허용치 않았다. 대법원이 1930년, Near v. Minnesota 사건¹⁶⁾에서, 신문에 대한 사전금지명령을 허용한 주법은 언론에 대한 사전 검열 허용이므로 위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떤 사전제한도 무효로 강

13) 예를들면 Time, Inc. v. Firestone 사건 (424 U.S. 448, 1976), 부유한 사업가인 남편과의 이목을 끄는 이혼소송의 “원고가 특별히 저명한 인사도 아니었고, 이혼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를 취한 만큼 자발적으로 논쟁에 참여한 것은 아니며, 이혼소송이 유명한 사건으로 되었다고 하여 공적인물로 볼 수 없다”

14) 497 U.S. 1, 110 S.Ct. 2695 (1990).

15) 418 U.S. 241 (1974).

16) 283 U.S. 697 (1930).

하게 추정하게 되었다.

예외적으로 군사기밀에 대한 위협적 표현, 음란표현, 폭력과 정부 전복을 선동하는 표현 등을 사전제한이 허용되는 경우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는 아주 좁고 법원이 실제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금지명령을 내린 경우가 거의 없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이미 법원에 의하여 그 내용이 허위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굳이 유폐하려는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될 것이라 한다.¹⁷⁾ 1971년 Pentagon Paper 사건도 연방대법원이 언론의 사전제한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5. 배상액

미국 손해배상의 종류는 추정적 손해배상(presumed damages),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 있다. 우리 나라에는 보상적 손해배상만 있다.

Common Law에서 실질적 손해에 대한 증명이 없이도 손해를 입은 것을 추정하여 추정적 손해배상을 쉽게 인정했으나, 연방대법원은 Gertz에서 ‘현실적 악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추정적 손해배상이 금지된다고 제한했다. 그런데 Dun & Bradstreet 사건에서, 사인에 관한 표현 내용이 공적 관심사가 아닌 경우에는 ‘현실적 악의’의 입증이 없어도 추정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제한을 다시 완화했다.

보상적 손해배상은 구체적 손해(special damages)와 실질적 손해(actual damages)를 포함한다. 구체적 손해는 수입 감소, 의료비 등 재산상 손해를, 실질적 손해는 명예손상 등 정신적 손해를 말한다. 후자가 명예훼손의 핵심이다. 연방대법원은 Gertz에서, 실질적 손해는 금액으로 환산될 필요는 없으나 실질적으로 감정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했다. 우리 나라는 정신적 고통은 증명을 요하지 않

고 추정해서 인정해준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손해 보상보다 가해자 응징과 유사 해악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통상 보상적 손해배상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된다. Common Law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어 왔고, 뉴욕타임즈 판결 이래로 공무원 등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헌법상 ‘현실적 악의’와 Common Law상 악의 요건을 모두 입증한 경우에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Gertz사건에서 최소한 ‘현실적 악의’의 입증이 없는 경우 징벌적 배상이 금지됨을 선언하였다가, Dun & Bradstreet사건에서, 사인의 공적 관심사가 아닌 명예훼손소송에 있어서는 ‘현실적 악의’의 입증이 없어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허용되는 것으로 입장을 완화하였다.

90년대 들어와서 징벌적 배상은 전체 배상액의 4분의 3 이상을 점하고 금액도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명예훼손법의 개혁론에서 중심 과제로 되어 있다.¹⁸⁾

6. 명예훼손의 개혁론과 언론사의 대응

가. 개혁론의 배경

미국의 명예훼손소송은 언론사와 피해자 양측에서 모두 불만을 갖게 되었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잦은 명예훼손 소송으로 인해 시달리는 것 자체가 언론에 대한 위축효과가 있고, 소송에서 징벌적 배상이 선고되었을 때는 그 금액이 엄청나서 소규모 언론사는 파산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한편 피해자 입장에서는 특히 공직자 등의 경우 그들에게 적용된 ‘현실적 악의’이론은 너무 가혹하며, 그들은 돈보다는 허위사실을 바로잡는 것 자체로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데도 이에 대한 구제수단이 별로 없고, 미국의 명예훼손은 언론에 지나친 헌법적 특권을 부여하여 언론의 무책임과 불공평을 야기시켰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10년 전부터 여러 학자들과 연방 및 주의회 의원들, 단일주법위원전국회의 등

17) Restatement(Second) of Torts sec. 623 special note(3) (1977).

18) LDRC 보고서에 의하면 80년~95년까지 평균배상액은 2,226,417 달러였는데, 98년 한해의 평균배상액은 1,559,062 달러였다(평균 징벌적 배상액은 716,500 달러, 평균 보상적 배상액은 845,562달러였고, 전체 사건에서 징벌적 배상 선고 비율은 62.5%였다). 참고로 97년에 선고된 MMAR v. Dow Jones & Co사건에서 보상적 손해액은 2,270만 달러, 징벌적 배상액은 2억달러가 선고되었는데, 단일사건으로 역대 최고액수이다.

과도한 배상으로부터 언론을 벗어나게 하고 선언결정이나
정정, 취소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명예회복의 길을 터주기 위한
미국 명예훼손법 개혁론에 대한 논의 진행 중

이 명예훼손 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나. 개혁안

개혁의 핵심은 소송시간과 비용 감축, 손해배상액 경감, 선언결정(declaratory judgment)이나 정정, 취소제도를 명예훼손의 주된 구제수단으로 하는데 있다. 손해배상이 원칙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현행 명예훼손소송의 구조는 언론과 피해자 양측에 모두 손해라는 입장에서, 이의 개혁방안은 언론측엔 복잡한 소송에 휘말리는 것과 과도한 배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피해자측엔 쉽게 선언결정이나 정정과 같은 방법으로 명예 회복의 길을 터주는데 초점이 있다. 특히 공무원 등에게는 '현실적 악의'의 입증책임을 넘지 못해 배상이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 문제의 기사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명예회복의 길을 열어주는데 있다.

개혁안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 안은 연방의회 하원의원 Charles E. Schumer가 제기한 법안, 주의회별로 진행 중인 명예훼손법 개정안, 그리고 단일주법위원회전국회의의 정정 및 해명에 관한 단일 명예훼손법안이다.

개혁안의 핵심은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선언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손해배상을 금지시키는 것, 금전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게 하고 기사가 허위라는 법원의 결정을 언론에게 재하게 하는 것, 정정과 해명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해결하고 손해배상을 오직 증명이 가능한 경제적 손실에 국한하고 있으며, 정정과 해명절

차를 먼저 거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것이다.¹⁹⁾ 그러나 이러한 개혁안은 금전배상이 축소되기 때문에 명예훼손변호사나 시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고, 언론사도 정정제도에 반대하여 현재까지 논의만 무성한 채 답보 상태에 있다.

다. 명예훼손방지의 다른 대안들

(1) 공적 참여금지전략소송 대응책

SLAPP(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소송은 정치인이나 기업인이 자신들의 정책에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한 주민들이나 단체를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하여, 반대의견을 봉쇄하려는 전략을 말한다. 이런 소송의 90%는 원고 패소로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SLAPP 원고들은 반대의견 탄압 수단으로 명예훼손소송이라는 사법시스템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런 소송을 제재하려 하고 있다. 제재방안은 소송 원고측에 대한 '현실적 악의'의 입증책임 부담, 제소 제한, 벌금 부과 등의 방법이 있다.

(2) 언론사의 대응소송

미국 명예훼손 소송의 최근의 큰 특징은 언론사의 대응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언론은 단순히 언론을 괴롭힐 목적으로 사소한 트집을 잡아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하는 건수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²⁰⁾

따라서 미국 언론은 이제 오직 괴롭힐 목적으로 제기하는 '쓸데없는' 명예훼손에 대하여 반격

19) 염규호, 「미국 명예훼손법: 문제점과 개선책」, 『언론중재』, 1996년 겨울호.

20) 칼럼니스트 Drew Pearson의 칼럼은 40년간 100건의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그 중 1건만 언론이 패소했다. 1991년 Immuno A. Gl. v. Moor-Jankowski 사건 567 N. E 2d 1270 (N.Y. 1991)은 다국적 기업을 비난한 독자편지를 게재한 건으로 그 신문사는 8건의 소송을 당했는데, 의견이라는 이유로 결국 언론사가 모두 승소했지만, 이 사건은 명예훼손소송이 남용되는 전형적 기록으로 평가되었다.

을 가하고 있다. 그 방법은 Rule 11 of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를 이용하거나 42. U.S.C. § 1983 조항을 이용하는 것이다. 전자는 민사절차를 불합리하게 복잡하게 하거나 지연시킨 경우에 상대방 변호사 보수 전액을 변상하게 하는 제도이고, 후자는 공무원이 쓸모 없는 소송으로 언론을 괴롭혔을 때 언론의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여 그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소송남용을 방지하는데 언론의 이러한 반격이 심리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언론사들은 “aggressive-offensive is the best defense”라고 말하고 있다.

Ⅲ. 우리 나라 명예훼손의 법리와 미국 법리의 적용가능성

1. 면책사유와 관련하여

미국의 명예훼손소송에서 언론이 면책될 수 있는 경우는 첫째, 그 사실이 진실인 경우, 둘째, 공직자와 공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측이 ‘현실적 악의’를 증명하지 못할 때, 셋째, 공평한 논평의 면책특권에 의하는 경우다.

우리 나라는 진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에 해당될 때”만 언론이 면책될 수 있다.²¹⁾ 이러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미국보다 명예훼손을 형사문제화하는 것이 쉽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도 미국처럼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 ‘현실적 악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아 공직자 등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이 쉬운 편이다. 또한 언론이 면책받기 위하여 ‘진실한 사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라는 입증을 스스로 하여야만 되기 때문에 언론사에 부담이 된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도 면책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사안의 공익성’과 더불어 ‘진실이라고 믿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

부가 판단의 쟁점이 된다. 후자의 판단자료로서 대법원은, 자료의 확실성, 기사 성격(일간지, 월간지 여부, 신속, 기획기사여부), 정보원의 신뢰성, 진실확인의 용이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있다. 공익성에 관해서도 대법원은 국가 또는 사회전체의 이익일 필요가 없고, 노동조합 등 소수 집단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공익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기준은 미국의 ‘현실적 악의’를 판단하는 요건과 흡사하다. 따라서 우리도 대법원이 면책사유의 요건인 ‘공익성’과 ‘진실성의 상당한 이유’를 폭넓게 인정한다면, 입증책임이 형식적으로 피고에게 주어진다 해도 사실상 미국의 ‘현실적 악의’요건을 원고에게 요구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공직자, 공인, 사적인 인물의 구분에 관하여

우리는 미국처럼 명시적으로 공직자, 공인, 사인을 구분하여 명예훼손 요건을 달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미국처럼 소송에서 신분구분이 쟁점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이 신분차이를 ‘공공의 이익’과의 관련성에서 고려하여, 공직자나 유명인 관련 내용은 비록 사생활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많다.

대법원은 1996. 6. 28. 선고 96도977판결에서 “공직에 임후보한 후보자의 유죄확정판결의 전과사실은 종전의 공직 수행과정에서의 범죄나 비리와 직접 관련되지 않아도, 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자료가 되어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적합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며, 공적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고 하여 피고를 면책했다.

또 공인의 사생활 공표에 관하여,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은 “개인의 사적 신상에 관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이나 이를 통하여 사회에 미치

21) 형법310조는 “형법 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에서 이 조항은 민사상 면책사유로도 인정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 명예훼손 위자료를 현실화하고 악의적 언론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

는 영향력의 정도 등의 여하에 따라서는 그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라도 공익에 관한 것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반인의 사생활보도는 좀처럼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앞으로 대법원이 공직자, 공인과 관련된 사항(공직 활동과 공직 적합성 관련 사생활)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국민의 알 권리의 적용대상으로 ‘공익성’을 인정한다면, 미국과 같은 신분의 구분에 따른 명예훼손 요건의 차이가 한국에도 인정되는 결과가 된다.

3. 사실과 의견의 구분에 관하여

우리 나라도 사실에 비해 의견을 강하게 보호하고, 의견이라도 전제사실이 중요부분에 있어 진실하지 않거나 진실임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면책하지 않으며, 공평한 논평의 경우 면책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에서 의견에 대한 취급과 거의 비슷하다.

4. 손해배상

미국과 우리의 명예훼손에서 가장 큰 차이는 명예훼손의 종류와 액수이다. 미국은 추정적 손해, 보상적 손해, 징벌적 손해를 인정하나, 우리는 보상적 손해만 인정한다. 보상적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가 있는데, 재산상 손해는 손해액수의 산정과 상당한 인과관계의 입증에 곤란한 경우가 많아 대부분 위자료만을 청구한다. 따라서 우리 나라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위자

료가 손해배상의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나라 법원이 선고한 위자료 액수는 1,000만원이 대부분이어서 무책임한 언론에 대한 실질적 제재수단으로 너무 미흡하다. 윤정희 대 클라셰사건에서 1억원, 파스퇴르유업 대 한국소비자보호원 사건에서 7천만원을 선고한 사건들이 고액 위자료 선고사건들인데, 미국의 평균위자료 150만~200만달러와 비교하면 매우 적다. 위자료가 많아 문제인 미국과 달리 우리는 위자료가 너무 적어 형평과 정의에 맞지 않은 것이 문제여서, 위자료액을 높여야 한다.

우리도 현행법상 위자료를 산정할 때 징벌적 의미를 충분히 가미하여 고액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제는 법원이 기존 ‘관례’라는 틀을 벗어나 위자료 산정에서 구체적 형평과 가해자의 응징, 피해자의 피해회복이라는 법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와 융통성에 있다.

5. 구제수단의 다양성

우리 나라는 명예훼손 구제수단이 미국보다 다양하고, 금전배상을 제외한 나머지 구제수단은 피해자에게 유리하다. 사죄광고는 위헌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원상회복처분으로서 ①가해자의 비용으로 그가 패소한 민사손해배상판결의 신문, 잡지에의 게재, ②형사명예훼손죄의 유죄판결의 신문, 잡지에의 게재, ③명예훼손기사의 취소광고 게재가 가능하다. 반론보도청구도 피해자에게 쉽게 열려있는 방안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합헌으로 선고하였다²²⁾.

미국은 사전금지를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인정하고 사후구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22)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

우리 나라는 가처분의 방식에 의한 사전금지가 종종 허용되었는데, 점점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또 우리는 미국만큼 언론을 괴롭힐 목적의 소송이나, 정치적 반대의견을 탄압할 수단으로 명예훼손소송을 남용하는 소송은 많지 않다. 소송 기간도 미국에 비해 짧은 편이고, 비용도 미국과 달리 법원이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판결을 하기 때문에(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시키지만) 언론이 이런 소송비용을 상환 받기 위해 대응소송까지 나갈 필요가 있을 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

우리 나라는 피해자에게 다양한 언론피해 구제 수단이 열려있는 대신, 배상액은 너무 적기 때문에 언론사는 패소시 미국 언론사들만큼 큰 타격을 입지 않는다.

IV. 결 론

미국 명예훼손 법리가 우리 나라에 적용가능한지 여부는, 먼저 전제조건이 다르지만 현행 법리는 이미 상당히 접근되어 가고 있는 경향이 있고, 운영에 따라서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법리상은 문제가 없이 가능하다. 문제는 미국과 우리 나라의 서로 다른 언론 현실이다.

가장 큰 문제를 보면, 우리는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 반론권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언론 입장에서는 이 점이 편집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미국은 언론사가 피고가

된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 등의 사건에서 언론사에 불리한 판결이 나더라도 이를 철저하게 보도한다. 그래서 미국민의 입장에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더라도 이를 알릴 수 있는 회로가 열려 있고, 또 큰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하지만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 언론사에 불리한 판결에 대해서 덮어둘 때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반론권 조차 보장이 되지 않을 때 피해자는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회로가 막히고, 이는 국민입장에서도 알아야 할 정당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피해자가 승소했다 하더라도 우리 법원의 손해배상액은 너무 적어 언론에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없고, 피해자도 만족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자연히 명예훼손을 형사문제화 하게 되고, 반론보도와 사전금지 절차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 언론의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는 전제하에, 미국과 같은 언론의 자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시급한 것은 우리 법원이 명예훼손 위자료를 현실화하고, 악의적 언론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을 인정하여 응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직자, 공인 등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관심사항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요건을 어렵게 하고, 언론을 괴롭힐 목적으로 명예훼손을 남발하는 원고를 응징하는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

言論仲裁

『언론중재』에 게재된 특집주제 논문을 비롯한 기타 학술논문과 해외동향기사, 외국 신문평의회 사례, 외국언론관계 판결 등은 PC통신 Unitel : ARBIT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종 합 토 론

사회·김 학 수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공익성 있는 사실보도라 판단되는 데도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 있어

사회자 : 명예훼손소송에 대한 취재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주제발표와 최근 판례에 비쳐진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진단한 주제발표에 이어 미국 법리의 국내현실 적용 가능성과 그 차이점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제발표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발언해 주십시오.

구양술 (광주 중재위원) : 명예훼손에 대비하여 언론사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 첫 번째 발표를 하신 최기자에게 질문 드리며,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배변호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한편 객관적으로 보기에 공익성 있는 사실보도라고 판단되는 데도 이를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한 한판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병진 (강원 중재위원) : 명예훼손소송이 늘어나면서 일선 기자들이 노이로제에 빠질 만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기자는 현재 손해배상액수가 과다하다고 했으나 배변호사는 미국과 비교해볼 때 우리 나라의 손해배상액수를 좀더 늘려야 한다는 상반된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일선 기자들이 확인보도, 책임보도를 다해야겠지만 언론의 신속성 때문에 본의 아니게 오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손해배상판결액이 현재가 적정한지, 아니면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고액배상이 타당한지 두 분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사소한 오보는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헌재결정은
기자에게 고무적

최병수 (강원일보 사회부장) : 여러분이 익히 아시겠지만 최근 강원일보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소송에서 주목할 만한 두 가지 판결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 강원도의회원이 제기한 민사소송인데, 기사의 부제가 반복해서 게재되었다는 이유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배상을 명한 법원의 결정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신문기사가 반복해서 나오게 된 이유는 속보성 기사를 쓰다보니 타이틀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 언급한 동일한 기사를 문제삼아 기자, 사회부장, 편집국장, 사장을 춘천지검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여 법원에서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헌법재판소 결정은 기자들에게 고무적인 것이라 판단하여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결정문에는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제도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해 보도를 주저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전제하고 “신속한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신문의 속성상,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는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표현상의 오류도 자유토론과 진실확인에 필요한 것이므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허위라는 것을 알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위를 알아보지 않고 허위보도를 한 경우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현재 결정으로 사소한 표현상의 잘못은 명예훼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을 두고 형사상 명예훼손은 기각되었지만 민사상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과실이 있다고 판결하여 법원의 판단이 상반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형사상 명예훼손은 면책됐으나 민사상 책임이 주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명예훼손적 기사를 예방하자는 의미에서 보면 현재의 위자료 액수는 너무 적어

배금자 (발표자) : 언론중재제도는 타국의 경우와 비취볼 때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와 같이 법적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은 중재절차가 없기 때문인 것 같으며, 소송으로 직결되는 사례도 소송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약 80% 정도가 사전에 합의된다고 합니다. 소송은 언론사에게도 고액의 손해배상액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피해 당사자의 명예훼손도 단지 손해배상액수로만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언론중재제도와 비슷한 사전정제제도라든지 취소제도 등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수에 대한 제 견해는 명예훼손적 기사를 예방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명예훼손액수도 기자 개인에게는 적지 않은 액수이지만 명예훼손소송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명예훼손적 기사를 예방하자는 의미에서 보자면 분명히 위자료 액수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인격권이 손상될 경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그 당시의 평가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인격권에 대한 피해에 대해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수를 정할 때 경제적 손실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위자료만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통신 노조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의 경우 수년간의 시간과 소송비용을 들여 2천5백만원의 위자료 판결을 받았는데, 언론재벌

에게 이 정도의 액수가 얼마나 큰 타격을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언론사가 명예훼손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기사화하는 경우는 상업적 이익 추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위자료 액수가 지금과 같이 적을 경우 언론사가 소송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기자 개인과 회사차원의 위자료는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한위수 (발표자) : 사실보도를 한 경우에도 언론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는 항변은 법원을 탓하기보다는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 즉, 취재수첩이나 팩스자료, 전화통화기록 등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원일보를 상대로 전 강원도의회원이 제기한 민·형사소송 판결에서 법원의 입장이 상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이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의 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입증은 합리적인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반면, 민사의 경우 증거의 우위에 따라 결정을 하기 때문에 형사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민사에서는 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명예훼손소송에 있어서는 형사보다는 민사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에 대한 보도가 문제된 경우 과도한 위자료 지급 판결은 지양되어야

최영훈 (발표자) : 명예훼손소송의 빈발과 위자료 액수가 증가하고 있는 등 최근의 명예훼손소송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치는 대부분의 언론사가 아직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사가 3년전 도입한 변호사사전기사열람제와 같이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기사를 사전에 스크린하는 장치들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사회를 감시하는 언론의 취재보도활동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언론의 취재활동이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소송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배상액수가 과다하다는 제 견해는 적어도 공인에 대한 보도가 문제된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판결액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자 : 최팀장과 배변호사의 견해가 상반된 것 같지만 아직까지 만연되어 있는 우리사회 권력자들의 치외법권적 지위에 대해 언론이 과감하게 취재, 보도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소송에 대비해서 우리 나라 언론 중 중앙일보가 가장 먼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중앙일보 이차장께서 참석하였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정치집단, 종교집단 등이 기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중압감에 시달려

이상언 (중앙일보 사회부 차장) : 명예훼손소송에 대비하여 본사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알고 있지만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하여 유감입니다.

기자가 가장 곤혹스런 경우는 대기업, 종교집단, 정치권력 등 기자가 감당할 수 없는 집단이 법인이 아닌 기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관련된 소송이라도 사측이 기자에게 일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으며, 모 일간지 기자는 회사의 구상권 행사에 반발하여 회사를 그만 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관련되지 않고 기자 개인이 소송에 연루된 경우 과거와 달리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언론사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기자는 엄청난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국가보안법사건과 같이 당사자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사건은 기사화를 꺼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 모 검사가 제기한 소송사건에서 기자의 고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데도 1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진 것은 그 이전과 비교할 때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이 언론의 공익성에 대한 책임을 지운 것인지, 아니면 언론과 법원, 검찰의 최근의 껄끄러운 관계를 반영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오세화 (대전 중재위원) : 과학기술인의 저변 확대와 과학기술 기여를 목적으로 한 대한여성

과학기술인회를 설립하면서 결코 남성과학자를 이기겠다는 것이 아님을 정관에서도 밝혔으나 단체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여 여성을 폄하하는 보도가 종종 있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이 연구성과 없이 정부지원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거나 60세가 넘으면 별안간 연구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이나 과학기술자, 장애인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비하하는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위수 (발표자) : 기자 개인만을 상대로 한 소송은 기자의 취재활동을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언론활동이 위축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배상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기자단체 등이 적극 유도하고, 사측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기자의 취재활동으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책임을 회사에서 지도록 하는 협약을 맺는 것이 대처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상언 중앙일보 차장이 지적하신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좀더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만 이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김현철 씨 사건 등 고액배상판결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법조비리사건과 연관짓는 것은 다소 지나친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법원이 피해자의 입장을 추상적으로 이해하다가 대전법조비리사건 보도를 접하면서 명예훼손 피해자의 감정을 구체적이고 뼈저리게 느낀 것이 조금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공직자가 제기하는 명예훼손소송이 증가하는 경향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실적 악의’ 원칙을 도입해야

배금자 (발표자) : 최근 제기되고 있는 공직자의 명예훼손 소송 경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공직자의 명예훼손 소송은 별도의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 들어 검사나 공당이 제기하는 소송이 늘고 있는데, 비리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보도에 대해 일일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언론이 상당히 위축되지 않을

까 우려됩니다. 공직자에 대해 마땅히 비판해야 될 경우 언론이 활발히 보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도록 ‘현실적 악의’ 원칙을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0양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순전히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측면이 강한 데도, 언론이 선정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 보도한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김주언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 우리나라 민사소송과정의 문제점은 소송비용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의 경우 소송 자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취재현장의 언론인 여러분은 신문보도가 한 개인의 일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특정집단을 매도하는 보도는 시민단체가 모니터링 등 언론보도를 감시하는 역할을 통해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권력화된 언론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는 경향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근 무슨 무슨 설등으로 표현되는 추측성 보도가 신문 1면에 게재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추측성 기사가 1면을 장식해드리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일반인이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권력기관화한 언론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이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언론보도로 피해입은 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시민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민옴부즈맨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사례를 접수·상담하고, 언론보도를 감시하는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자협회에서는 쟁송구제기금조성이나 고문변호사제를 통해 명예훼손소송에 대응하도록 할 예정

박동수 (기자협회 부회장) : 명예훼손소송 문제를기자협회의 핵심적인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기자통신’ 등 내부 매체를 통해 이 문제를 특집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명예훼손소송에

대한 접근은 먼저 언론의 영향력이 커진 데 비해 언론인의 책임과 윤리의식이 상대적으로 진전되지 못한 점을 인정하는 언론 내부의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취재과정과 보도 전에 좀더 주의를 기울이고 겸허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사와 기자 개인의 권력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자 개인의 신분은 기본적으로 불안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제가 아는 한 기자가 5년의 긴 소송 끝에 5천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위자료를 지급하였으나 오랫동안 출입했던 영역을 버리고 지방으로 전출되는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소송 때문에 힘들어 하는 동료의 모습을 보면서 기자들은 점차 사회부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명예훼손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우리 나라 대부분의 언론사는 기자 개인에게 맡기고, 인사조치 등 고용불안을 야기시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기자 개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소송에 대비, 기자회견에서는 쟁송구제기금조성이나 고문변호사를 두어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법원은 인격권 보호에 있어 언론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정동식 (경향신문 사회부 차장) : 언론의 잘못된 취재관행에 대한 많은 분들의 지적을 솔직히 인정하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재보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편 사회적 상황은 언론에 대해서 비판이나 폭로, 사회정의로서의 역할보다는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고려 등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언론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습니다. 또한 언론도 인격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기에 배변호사의 인격권 보호에 대한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언론인 개개인의 잘못으로 인해 언론계 전체가 매도당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언론이 처한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언론에 대한 비판과 지탄이 지나치다보면 국민의 알 권리나 언론의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법원이 인격권 보호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지만 언론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감안하여 판단해 주었으면 합니다.

최한수 (MBC 해설위원) : 미국에서는 명예권에 대해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반론권은 보장하지 않는 데 반해 우리 나라는 반론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반론권은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 피해를 받은 자가 언론사를 대상으로 반론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 반론이 너무 자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채 시간적 촉박성 때문에 반론을 받아들이는 경우, 수용자는 언론이 무엇인가 잘못이 있어 반론을 게재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김해도 (서울 중재위원) : 배변호사가 발표한 내용 중 미국 연방대법원이 반론권을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는데 이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며, 반론권의 필요성에 대한 배변호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한편 최한수 해설위원은 반론권이 남용되고 있다고 비판하였지만 반론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러한 시각이 언론의 자유를 위해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배 기자들에게는 기사내용에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고, 여의치 않을 때는 익명보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통신기사를 전제한 경우의 반론권에 대해 한위수 판사께 질문합니다.

중재위를 거쳐 정정·반론보도가 이루어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

권순택 (동아일보 사회부 차장) : 언론이 사회의 공적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 상당

히 당혹스럽습니다. 이는 기자협회 부회장의 언급처럼, 기자 개인과 언론기관의 차이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의 대부분이 사회부와 관련된 것인데 사회문제를 고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사회부의 특성상 소송의 위험에 많이 노출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사회부 지망생이 점차 줄어들어 사내 비인가부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주요한 고유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 언론인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며, 이는 명예훼손소송의 역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인과 관련된 보도는 면책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배변호사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전치주의로서 중재위를 거쳐 정정, 반론이 게재되어 명예가 회복되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배상금이 적다는 의견이 많습지만 오보문제는 기자의 직업정신과 관련된 것으로서 액수의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기자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다는 측면을 이해해 주었으면 합니다.

김한봉 (전북 중재위원) : 최근 광고면수가 부쩍 증가하여 신문기사보다 많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으며, 광고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고로 인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명예훼손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기사의 경우 철저히 반론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취재현장의 추세

최영훈 (발표자) : 언론도 이제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기사의 경우, 철저히 반론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현장의 추세이나 당사자가 취재를 거부하는 경우는 당사자를 소환하거나 수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반론을 구하고자 했다는 흔적, 예를 들어 언제 통화를 시도했는데 통화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기사에 가시화시키기도 합니다. 미국 신

문의 경우에도 이 같이 사실확인 노력을 기사화한다고 하는데, 반론을 구하는데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 악의’법리의 적용은 명예에 관한 사회적 통념이나 언론현실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위수 (발표자) : 언론자유와 인격권과의 관계에 대해 법원은 동등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론보도가 너무 쉽게 인정된다는 의견은 기사자체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데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통신기사 전제와 관련한 명예훼손문제는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를 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론보도의 문제는 상당한 이유와 관련이 없으므로 통신기사를 전제했다 하더라도 반론을 받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현실적 악의 원칙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현실적 악의가 가지는 준기능은 인정하나 각국마다 명예에 관한 사회적 통념이나 문화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 악의에 대한 접근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나 독자투고가 문제된 우리 나라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지만 미국의 유명한 뉴욕타임즈 판결은 의견광고가 문제된 것으로, 앞으로 광고나 독자투고도 언론사의 책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는 집단명예훼손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 나라의 경우 1960년대 특정 도민을 비하한 소설이 문제된 판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이 지칭된 경우 개개인은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금자 (발표자) : 미국은 출판언론과 방송언론을 구분하여 출판언론에 대해서는 반론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방송의 경우 반론권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언론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반론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언론은 독과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동종업계 파주기가 성행하여 언론에 불리한 보도는 축소하거나 아예 보도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국민의 액세스권의 하나로 반론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손해배상액수도 미국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점도 고려되어야겠습니다. 물론 반론이 사실의 진실여부와 관계없이 단지 당사자의 주장을 반영, 보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잘못된 것으로 일반 국민에게 인식되고 있지만 이는 점차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정정보도나 취소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상당히 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소송에서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감합니다. 다만 정정 내지 반론보도를 언론이 자발적으로 행한 경우와 중재위나 법원의 판단에 의해 한 경우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수가 참작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론권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와 마찬가지이므로 언론매체가 이를 충분히 받아들여야

사회자 : 반론권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언론매체가 정정보도와 달리 반론보도는 충분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기사 자체에 상반된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며, 독자투고나 옴부즈맨 제도를 활용하여 우리 나라 언론보다 반론권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반론권 보장이 제도적 측면이 아니라 언론사 자체적인 기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정제 (부산 중재위원) : 지금까지는 신문과 방송매체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문제를 주요하게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는 정보화사회를 지향하고 있고 인터넷이나 전자신문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면서 제3의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부산의 모 언론사가 민영방송 아나운서의 신상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인터넷에 띄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미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편 익명보도와 관련하여 모씨라고 표현해도 지역단

위에 따라 인지가 가능한 경우 어떠한 법률적 판단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동식 (서울 중재위원) : 최근 통신상의 유명 방송인 백모 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언론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물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보도하지 않은 것이라 하지만 이 보도와 관련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법원에서 어떠한 판단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사건은 유명 방송인과 기자가 서로 5억원의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만, 여성이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때 이를 자신의 능력이 아닌 어떤 다른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는 남성 중심주의 사고가 작용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 취재와 보도에 있어서 가져야 할 윤리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관련 정부도 상당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

강성만 (국정홍보처 공보지원 담당관) : 공인과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소송의 경우 언론사의 면책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으나 한위수 판사의 견해처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소송과 관련, 정부에서도 상당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로 인해 정부정책이 왜곡, 전달되는 경우 정부는 소송제기는커녕 중재위에 신청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언론사에 반론을 요청하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보도의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오보대응시스템으로서 전문변호사를 위촉하고, 가판신문을 보고 명예훼손적인 보도가 있다면 사전예방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최근혁 (대전 중재위원) :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이유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알 권리의 내용과 성격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준영 (세계일보 사회부장 대우) : 정부에서 국가정책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와 미국에서의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를 미국에서는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 국가 권력이 앞으로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취지로 말씀하셨겠지만 한편으로는 언론에 대한 또 다른 간섭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광일 (서울 중재위원) : 중재신청이 들어왔을 때 각 언론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재신청사안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한 대책회의를 하는 지, 중재신청과 관련한 전담 사내기구 또는 편집국의 별도 부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중재위에서는 각 언론사를 대표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으로서 부장급이 출석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를 대표하고 사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부장급 이상이 출석하는 것이 오히려 각사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태 (경남 중재위원) : 언론기관의 입장에서는 반론보도청구가 거추장스러울지 모르겠으나 적극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가 반론보도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반론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별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아울러 반론보도를 언론사가 거부했을 때는 아무런 실효가 없어 중재위가 손해배상을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공인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사생활은 국민의 알 권리가 인정된다

배금자 (발표자) :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해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은 엄청난 전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대중매체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이 하루빨리 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출판자와 배포자의 개념을 구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출판자가 아니라 배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유명 방송인 백모 씨 사건을 미국 법이론에 적용한다면, 먼저 백모 씨는 일반적 공인에 해당하고 일반적 공인의 사생활 보호 영역

은 매우 협소하여 공인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인격에 관련한 사생활은 국민의 알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측이 현실적 악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공인과 사인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인의 사생활 영역과 국민의 알 권리의 한계에 대해 판단하는 획기적인 사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위수 (발표자) : 명예훼손소송에 있어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것은 그 기사로 인해 피해를 받았는가 여부입니다. 따라서 행정단위에 따라 익명보도의 면책여부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권력기관이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물으셨는데 권력기관의 범주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국가가 아닌 기관단위, 즉 검찰청이나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물론 개개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겠으나 이에 대한 통계는 기자단체 등에서 앞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반론보도를 게재해야 하는 지 의문

최영훈 (발표자) : 언론중재신청에 대응하기 위한 언론사의 대책부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압니다. 반론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보도하는 것이 옳은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중재결정을 거치든지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반론 내지 정정보도를 이행했을 때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위자료액을 감경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사회자 : 언론의 자유가 정보생산자나 정보공급자의 독점적 자유로 전락하여, 언론의 자유가 언론사의 자유인 양 취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 권리는 정보소비자의 관점이 강조된 것으로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 장시간 동안 토론에 적극 참여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훌륭한 주제발표문을 발표해주신 발표자 여러분과 열띤 토론으로 이끌어 주신 사회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예정된 토론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소송”이라는 대주제를 놓고 진지한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라는 상충된 권리를 한자리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세미나는 실무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고, 제기했다는 점에서 유익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언론계, 언론학자, 법조계, 정부 등 여러 분야에서 모두 합심하여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최근의 명예훼손소송에서 제기되는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이를 공유한 것만으로도 한 걸음 진전된 것이라 생각하며 그런 점에서 앞으로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라는 상충된 권리의 해결점을 찾는 데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훌륭한 주제발표문을 준비해 주신 발표자 여러분과 장시간 동안 토론에 적극 동참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범죄보도와 면책사유의 적용

이 인 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I.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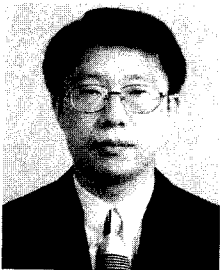
헌법상 언론자유 보장은 개인의 인격권보장과 언제나 충돌한다. 특히 수사나 재판절차에 관한 범죄보도는 법 집행을 감시·비판하는 등 다양한 정보의 이익을 충족시키지만 보도대상이 된 혐의자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상충하는 이 두 가지 헌법적 가치의 조정은 범죄보도의 이익과 침해되는 명예의 이익을 비례적으로 형량한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명예훼손법(법규정과 법원의 해석)은 전반적으로 언론자유 가치보다는 외

적 명예의 보호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어 헌법적 관점에서 보아 비례적 형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그 배경에는 그 동안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하여 구축되어 있는 중앙집권적이고 폐쇄적인 커뮤니케이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언론사들이 정치권력과 정부통제라고 하는 본래의 기능은 수행하지 못하면서 시민과의 관계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여 온 사정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도 언론환경과 정치환경이 점차 변화를 겪고 있는 사정을 감안할 때, 외적 명예의 보호에 치우친 현행의 명예훼손법은 헌법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명예훼손의 영역에 보태지는 모든 것은 자유로운 토론의 영역에서 빼앗아 온 것이다”¹⁾라는 미국 Edgerton 판사의 언명은 명예훼손법을 고찰함에 있어 언제나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언론의 피의사실을 포함한 범죄보도에 대해 대법원을 위시한 법원이 명예훼손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묻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먼저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법리를 면책사유 내지 위법성조각사유를 중심으로 분석·비판하고(II), 이어서 범죄보도와 관련한 대법원의



□ 중앙대 법대 및 대학원 수료, 법학박사
□ 「정보환경의 변화와 법의 패러다임」(박사학위논문), 「뉴미디어의 발전과 언론자유법의 새로운 전개」, 「표현의 자유와 검열금지의 원칙」 등
□ 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중앙대 법대 강사

1) “Whatever is added to the field of libel is taken from the field of free debate.” 이 문구는 1942년에 콜롬비아특별구 항소법원이 선고한 Sweeney v. Patterson 판결(76 U.S. App. D. C. 23, 24, 128 F. 2d 457, 458)에서 Edgerton 판사가 쓴 법정견지에서 제시된 표현이다. 영문 인용은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272(1964)에서. 우리말 번역은 한위수, 「미국에 있어서의 중립보도면책특권」, 『외국사법연구논문집』 재판자료 제65집, 법원행정처, 1994, p. 53에서 인용.

판례를 분석(Ⅲ)하기로 한다. 프라이버시책임과 명예훼손책임은 원칙적으로 전혀 별개의 것으로서 프라이버시책임은 이 글의 주제가 아니다.

Ⅱ. 일반적인 명예훼손법의 분석과 비판

1. 이익형량의 접근방법

명예보호와 언론자유라는 두 가지 헌법적 가치가 상호 충돌할 때 양 가치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헌법적 가치의 서열에 있어서 양자는 동등한 위치를 가지는가, 아니면 어느 한 쪽이 우위에 있는가?

먼저 두 번째 질문에 관해 살펴보면, 명예를 포함한 인격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존엄의 핵심내용이고 반면 언론자유도 자유민주사회의 생명선으로서 중요한 가치²⁾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어느 한 쪽이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도 ‘강원일보 김정일편지보도 사건’에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인 명예는 모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두 권리의 우열은 쉽사리 단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³⁾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⁴⁾에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된

다.⁵⁾

이처럼 대등한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두 가치가 모두 조화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사안의 특성과 개별 사건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어느 쪽의 이익이 양보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같은 이익형량의 결과 언론 자유의 이익이 보다 우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제의 표현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적법한 행위가 되고 반대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그 침해를 수인하여야 한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이익형량 판단에 있어서 표현행위로 인한 정보의 이익이 침해되는 명예이익보다 어느 정도 중하여야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가? 이 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후보자비방죄의 위법성조각여부가 문제된 사건⁶⁾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 소정의 위법성조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표현행위로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이 침해되는 인격권보다 “현저히 중한 경우”라야 한다는 원심판시를 깨면서, “이익교량은 일반적으로 우월한 가치가 다른 쪽보다 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현저히 중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표현의 자유권 또한 피해자의 명예에 못지 아니할 정도로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

2) 헌법재판소는 ‘음란물출판사등록취소사건’에서 언론·출판의 자유가 지니는 가치와 기능을 다음의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견해의 다양성과 공개토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체제에 있어서 자기통치(self-government)의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것, 둘째, 개인이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동사회의 일원으로 기능하게 한다는 것, 셋째, 개인이 자신의 인격을 발전하는데 있어 가장 유효하고 직접적인 수단이라는 것, 넷째, 진리의 확보를 통해 문화 및 사회의 진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헌재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338.

3) 헌재 1999. 6. 24. 97헌마265, 공보 36, 573, 575-576.

4) 대법원 1988. 10. 11. 85다카29, 공1988, 1392; 1998. 7. 14. 96다17257, 공1998하, 2108 등 참조.

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다큐멘터리 드라마 형식에 의한 범죄보도와 수형자의 인격권(초상권·성명권)이 충돌한 사건(이른바 Lebach 사건)에서, 방송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가지 헌법가치는 “모두 기본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고, 따라서 어느 쪽의 헌법가치도 원칙적으로 우월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BVerfGE 35, 202). 한편, 이와는 달리 일본의 언론법학자인 石村善治교수는 원칙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우위에 놓고 그 예외로서 인격권보호라는 접근방법을 취해야 하고 따라서 양자의 법적 조정은 단순한 동일 가치의 조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石村善治, 『言論法研究』Ⅲ, 信山社, 1993, p.244.

6) 대법원 1996. 6. 28. 96도977, 공1996하, 2432. 이 사건은 합동연설회장에서 상대방 후보의 전과사실을 공개한 행위로 인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로 기소된 사건인데, 쟁점은 위 공개행위가 제251조 단서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의 여부였다. 원심은 위 단서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위 공개행위가 위 단서 소정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에 후자가 전자보다 중하기만 하면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성이 충족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의 판시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이익형량의 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표현행위의 위법성조각을 판단하기 위한 이익형량에는 “상황에 따른 이익형량”(ad hoc balancing; situationsbezogene Interessenabwägung)과 “유형적 이익형량”(definitional balancing)의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상황에 따른 이익형량은 구체적인 사건의 상황에 비추어 충돌하는 양법익간에 우열을 가리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침해되는 법익의 크기와 정도, 표현행위의 동기와 목적, 표현기법, 정보의 이익 등 개별적 사건에 관계되는 총체적인 형량이 요구될 것이다. 이에 대해 유형적 이익형량은 미연방대법원이 접근하는 방식과 같이 명예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public figure)인지 아니면 사적 인물인지 또는 명예훼손적 사실이 공적 관심사항에 관한 것인지 사적 사항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한 변칙기준 내지 위법성조각기준을 설정한다거나 또는 독일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인격영역론”에서와 같이 침해되는 인격적 이익의 여러 국면을 내밀영역, 비밀영역, 사사적 영역, 사회적 영역, 공개적 영역 등으로 단계화하여 그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적 효과를 차별화하는 시도 등을 가리킨다.⁷⁾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상황에 따른 이익형량”의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⁸⁾ 그러나 이러한 이익형량의 방법은 구체적 타당성

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는 유리하지만, 어떤 경우에 표현행위가 적법 또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것인지에 관하여 예견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이것은 법적 안정성의 확보라고 하는 법치국가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염려도 있다.⁹⁾ 그런데 이 점과 관련해서 최근 헌법재판소는 ‘강원일보 김정일편지보도사건’에서 “유형적 이익형량”의 접근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즉 헌법재판소는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법성조각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반되는 두 권리를 유형적으로 형량한 비례관계를 따져 언론의 자유에 대한 한계설정을 할 필요가 있[고], 공적 인물과 사인, 공적인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실시하면서,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관한 명예훼손적 표현이 문제된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규정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¹⁰⁾ 대법원도 상황에 따른 이익형량의 접근방식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 명예훼손의 일반적 면책사유에 대한 분석과 비판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적 표현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해 대법원은 그 동안 언론자유와 보장과 명예

7) 우리 나라에서 이익형량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들 외국의 이론에 기초해서 유형적 이익형량의 접근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유익한 글로서는, 박용상, 「표현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일반적 고찰」,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8권, 민사실무연구회, 1994, pp.242-335 참조.

8) 대법원 1988. 10. 11. 85다카29, 공1988, 1392(명예보호와 언론자유보장의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 26. 97다10215, 10222, 공1999상, 330(“이익을 비교형량함에 있어서는 보도 목적의 공공성과 보도 내용의 공공성, 보도 매체의 성격과 보도 내용이 신속한 보도를 요하는 것인가의 여부, 보도의 근거가 된 정보원의 신빙성, 보도 내용의 진실성과 공정성 및 그 표현 방법, 보도로 인하여 피해자 등이 입게 될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9) 박용상, 앞의 글(각주 7), p.249.

10) 헌재 1999. 6. 24. 97헌마265, 공보 36, 573, 576.

이익의 보호 사이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공1988, 1392)에서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②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③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번호는 필자 붙임)고 판시한 이래 지금까지 일관되게 위 3가지 요건을 위법성조각요건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는 민사명예훼손과 형사명예훼손에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¹¹⁾ 나아가 대법원은 위 위법성조각사유의 입증책임을 표현행위자에게 지우고 있다.¹²⁾

그런데 이 같은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규정과 대법원의 해석은 헌법상의 범익형량의 관점에서 볼 때 외적 명예의 보호에 지나치게 치우쳐 표현의 자유가 지닌 정보의 이익을 경시한 것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명예훼손적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여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은 진실을 말할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인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의 외적 명예’를 의미한다고 봄이 통설¹³⁾과 판례¹⁴⁾의 입장이다. 그런데 사회적 평가란 실제와는 다르게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될 수 있는 것인데, 통설·판례와 같이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을 ‘사회적 평가로서의 외적 명예’라고 이해할 때, 형법은 표현행위의 시점에 주어졌었던 사회적 평가가 설령 과대평가되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를 보호하고 고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그 만큼 진실을 말할 자유는 제약을 받게 된다.

오히려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법적 보호는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만큼의 사회적 평가에 대해서만 주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진실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평가가 재조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 만약 진실을 말한 것에

- 11) 대법원이 형법 제310조의 요건을 이처럼 ① 사실의 공공성 ② 목적의 공익성 ③ 진실성 또는 진실믿음의 상당성의 셋으로 나눈 것은 일본 형법규정과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 형법 제230조의2는 명예훼손적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련되고, 동시에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실의 진부를 판단하여 진실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정진대, 우리 형법 제310조는 위 일본 형법규정을 기묘하게 결합시켜 놓았는데, 우리 대법원이 이를 본래대로 풀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본 최고재판소는 1966년의 이른바 夕刊和歌山詩 사건(最高裁 昭和 41. 6. 23. 判例時報, 453호, p.29)에서, 명예훼손적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익을 꾀할 목적으로 나온 경우에는 적시되는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된 때에는 그 행위는 위법성이 없고... 위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 결국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진실믿음의 상당성의 존재를 위법성조각사유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론상으로는 위법성조각사유로 봄이 타당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위수, 「명예의 훼손과 민사상의 제문제」, 『사법논집』 제24집, 법원행정처, 1993, p.425. 각주 106 참조. 그런데 최근 우리 대법원은 ‘유명 연예인 접대 보도 사건’(대법원 1998. 5. 8. 96다36395, 공1998상, 1572)에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12)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 등 참조),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0. 25. 95도1473, 공1996하, 3491.
- 13) 민사명예훼손에 있어서도 명예의 개념을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다. 박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5, p.713;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1989, p.734.
- 14) 대법원 1988. 9. 27. 88도1008, 공1988, 1361; 대법원 1988. 6. 14. 87다카145(“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성, 신용을 가리키는 것과 다른 것은 아니며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이다”).

대해서도 명예훼손죄나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한다면, 진실을 말할 자유는 극도로 위축되는 반면 왜곡된 사회적 평가만 보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진실을 말할 자유 내지 진실한 보도의 자유의 이익과 사회적 평가의 재조정이라는 불이익을 헌법적으로 비교형량할 때 전자에 무게를 두지 않을 수 없다. 진실을 공표한 것만으로 그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공익은 사회적 평가의 저하 내지 정당한 재조정이라는 불이익을 상쇄시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진실한 사실 적시에 대하여 국가형벌권을 발동하여 처벌하거나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는 것은 외적 명예의 보호에만 지나치게 치우친 것으로서 상충하는 기본권적 이익을 정당하게 조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¹⁵⁾

둘째, 사실의 공공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학설과 대법원의 경향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공적 사항이든 사적 사항이든 불문하고 사실적시행위가 표현자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 되어야 하고,¹⁶⁾ 나아가 그러한 공익이 피해자 개인의 명예이익보다 우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¹⁷⁾ 그러나 공적 사항에 관한 진실한 사실의 적시행위 그 자체가 공익을 구성하는 것이고 그러한 공익만으로도 위법성조각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것임에도 또 다시 “구체적 공익성”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법원의 해석도 구체적 공익성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한 입장을 볼 수 있다. 예컨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¹⁸⁾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의 공공성”판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 자체가 공적인 관심사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 사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핵심문제이고 따라서 문제의 명예훼손적 사실적시가 공적인 관심사항에 해당한다면 그것으로 합헌적인 법익형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비판의 자유를 그 본질로서 내포하고 있고 여론의 형성을 통하여 자기통치(self-government)를 촉진시킨다. 그렇다면 여론형성의 기초가 되는 공적인 관심사항에 대한 진실된 사실의 적시는 그 자체 헌법 제21조가 보호하는 핵심영역에 속하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학설이나 대법원과 같이 구체적 공익성을 이증으로 요구하고 그 판단을 위하여 제반사정을 참작한다면, 결코 합헌적인 이익형량이라고 보기 어렵다.¹⁹⁾ 법원은 어떤 사실이 공적 관심사항이고 순수한 사적 사항인지를 판단

15) 일본에서도 진실한 사실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는 허명에 불과하여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阪本昌成, 「名譽・プライバシーの侵害と表現の自由」, 『ジュリスト』 第959號, 1990. 7, p.37. 그리고 미국의 경우 보통법상 명예훼손소송에서 진실 항변은 절대적 항변을 구성한다. 또한 명예훼손의 국제적 연구를 행한 Nick에 의하면, 대다수의 국가는 진실증명만으로 명예훼손의 성립이 부인된다고 한다(Nick Braithwaite ed, The International Libel Handbook, Butterworth, 1995, p.4).

물론 진실을 말할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예컨대, 개인의 고유한 사적 영역에 관한 사실이나 공표하고 싶지 않은 은밀한 비밀과 같이 그 속성상 타인의 평가 자체로부터 절연되어야 할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인간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의 존중요구권(이를 ‘프라이버시’라고 칭할 수 있고, 이러한 존중요구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 및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파생될 수 있을 것임)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허용될 수는 없다고 하겠다. 이 경우에는 프라이버시의 이익이 진실을 말할 자유의 이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6) 이회창, 『주석 형법각칙(Ⅱ)』, 한국사법행정학회, 1993, p.587.

17)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1997, p.155.

18) 대법원 1995. 11. 10. 94도1942, 공1995, 3961; 1996. 4. 12. 94도3309, 공1996상, 1627; 1996. 10. 11. 95다36329, 공1996하, 3297; 1996. 10. 25. 95도1473, 공1996하, 3491.

19) 일본도 과거에는 사실의 공공성판단에 있어서, ‘그 적시의 방법을 포함하여 행위를 둘러싼 전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학설과 하급심법원의 입장이었다(東京高判 昭28. 2. 21 高集 6卷 4, p.367-最判 昭

하기 위한 기준을 확립하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판례와 학설은 형법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요건에 주관적인 목적의 공익성이 포함된다고 당연히 해석하고 있다. 즉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사실적시의 동기가 사익을 위하는 데에 있지 않고 오로지 공익을 위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²⁰⁾ 다만, 대법원과 학설은 이 목적의 공익성에 대하여 완화된 해석을 하고 있다. 즉 법문에는 “오로지”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족하고 다소 사익 내지는 비방의 목적이 함께 숨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해석하고 있다.²¹⁾ 그렇지만 비방목적이 강한 경우에는 공익목적이 조금 있더라도 목적의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²²⁾

그러나 진실된 사실의 적시가 공적 사항에 관한 것이고 여론형성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까지 비방목적의 존재 여부를 별도로 따져서 위법성조각을 결정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표현의 자유의 핵심영역까지도 보호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여론형성의 기초가 되는 공적인 관심사항에 대한 진실된 사실의 적시를 통해 올바른 여론형성을 촉진시킨다는 공익은 개인의 특정 시점의 외적 명예보다 우월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하겠다.

실령 사익 또는 악의(ill-will)에 의한 목적과 동기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공적 관심사항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올바른 여론형성을 촉진시키는 것이라면 그 자체의 공익성을 헌법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인간의 행위가 하나의 동기만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란 드물고 또 인간 내심의 동기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만큼 법 적용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크고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비판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높다. 그리고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점, 또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법적 보호는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만큼의 사회적 평가에 대해서만 주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진실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평가가 재조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목적의 공익성”까지 위법성조각사유로 요구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가치를 도외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²³⁾

넷째, 대법원은 형사 및 민사명예훼손소송에서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표현행위자에게 지우고 있다. 더구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입증책임이 표현행위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²⁴⁾

그러나 형사영역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이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리 및 in dubio pro

30. 12. 9. 集 9卷 13, p.2633의 원심판결. 그밖에 福岡高判 昭50. 1. 27. 刑裁月報 7卷 1 p.14; 東京高判 昭54. 12. 12. 判例時報 978, p.130-月刊ペン事件항소심판결; 東京地判 昭56. 1. 29. 判例時報 1029 p.134 등).

그러나 1981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소위 月刊ペン事件에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을 적시할 때의 표현방법이나 사실조사의 정도 등은 동조에서 말하는 공익목적의 유무의 인정등과 관련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판단을 좌우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最判 昭56. 4. 16. 集35卷 3, p.84). 이후의 학설도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예컨대, 藤重光, 刑法各論, 昭60, 502頁; 大塚仁, 刑法概説「各論」, 昭62, p.136 등). 이상 大塚仁 외 2인(편), 『大コンメンタール刑法』第9卷, 青林書院, 1988, p.43에서 인용.

20) 대법원 1984. 9. 11. 84도1547, 공1984, 1684(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는 비방목적의 구성요건으로 하는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 1988. 10. 11. 85다카29, 공1988, 1392; 이회창, 앞의 책(각주 16), p.587.

21) 대법원 1989. 2. 14. 88도899, 공1989, 445; 이회창, 앞의 책(각주 16), p.587.

22) 대법원 1995. 11. 10. 94도1942, 공1995, 3961.

23) 한위수, 앞의 글(각주 11), p.423. 도 같은 취지.

24) 대법원 1998. 5. 8. 97다34563, 공1998상, 1575.

reo의 원칙(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²⁵⁾ 설령 명문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적어도 공공의 관심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여론형성의 촉진에 기여하는 사실의 적시, 특히 공무원이나 공직 후보자 등의 공직 인물에 관한 사실의 적시는 헌법 제21조의 핵심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검사 또는 피해자측이 위법성조각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실과 다른 틀린 표현은 자유토론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므로 따라서 언론자유가 살아 숨쉴 수 있는 공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실과 다른 틀린 표현도 헌법상 보호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대법원의 해석과 같이 진실입증의 책임을 표현행위자가 진다는 것은 명예훼손적 표현은 언제나 허위로 추정된다는 것인바, 이처럼 공적 문제에 관한 토론을 촉진시키는 표현이 언제나 허위의 추정을 받게 된다면 민주사회에서 자유토론은 질식되고 말 것이다. 인간의 세계에서 절대적 확실이란 흔치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²⁶⁾ 최소한 명예훼손적 표현의 대상이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과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없음을 검사 또는 피해자측이 입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요컨대,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에 관한 현행의 법규정과 대법원의 해석론은 외적 명예의 보호에 치우친 것으로서 언론자유와 명예보호의 상충하는 헌법적 가치를 실천적으로 조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서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²⁷⁾

Ⅲ. 범죄보도의 자유와 명예보호

1. 이익형량의 기본관점

범죄에 대한 수사나 재판을 보도하는 것은 그 자체 보도대상이 된 혐의자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범죄는 반사회적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로써 보도대상이 된 자는 그 동안 사회적으로 승인 받아 온 인격적 가치가 저하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받는다.

한편, 대중매체에 의한 범죄보도는 일반 국민의 정보의 이익을 충족시킨다. 즉 다양한 유형의 범죄 행태를 조명함으로써 사회 내 규범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지를 알리고 이를 통하여 국민은 규범을 인식하고 자신의 행위를 거기에 맞추어

25) 학설상으로 이전의 통설은 형법 제310조가 진실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지운 입증책임의 전환규정이라고 이해하였으나(서일교, 『형법각론』, 박영사, 1982, p.106; 유기천, 『형법학』, 일조각, 1982, p.140; 정영석, 『형법각론』, 법문사, 1983, p.289; 황산덕, 『형법각론』, 방문사, 1983, p.229), 현재의 통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1999, p.223;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996, p.179; 김일수, 「명예훼손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안암법학』 창간호, 안암법학회, 1993, p.307; 이회창, 앞의 책(각주 16), p.590;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1994, p.230; 이형국, 『형법각론연구』, 법문사, 1997, 311면;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1997, p.199).

26) 한위수, 앞의 글(각주 11), p.424에서는, “피고에게 진실의 입증책임을 부과함은 언론자유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지나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다만, 피고가 진실성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한다면 그 부당성은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고 평하고 있다.

27) 이와 관련해서 최근 헌법재판소가 ‘강원일보 김정일편지보도사건’에서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규정을 헌법적인 관점에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판시는, 비록 그 실질내용이 대법원의 해석론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긴 하지만, 앞으로 명예훼손의 범위 전개에 있어 큰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엄격해석의 논거로서 언론자유 가치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진실성의 증명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위법성의 조각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형사제재의 범위는 넓어지고 언론의 자유는 위축된다. 가치있는 공적인 사안이나 국민이 알아야 할 사안에 대하여 자유로운 비판이나 토론을 하지 못하게 형사벌로 규율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질식하고, 비교형량의 비중은 명예 보호쪽에 너무 치우치게 된다. ...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알권리)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사안의 게재(掲載)를 주저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현재 1999. 6. 24. 97헌마265, 공보 36, 573, 576-577.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범죄희생자에 대한 동정과 범죄행위 재발의 공포 등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²⁸⁾ 그 뿐만 아니라 범죄수사나 재판을 보도하는 것은 법집행기관의 행위를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협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법집행기관이 주어진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서 행동하는지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권력형비리사건의 경우 언론매체에 의한 폭로기사는 수사의 단서가 되어 수사를 촉진시키기도 하며, 수사개시 후에도 언론에 의한 보도는 수사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²⁹⁾ 이처럼 범죄보도는 사회통제기능, 여론형성기능, 형사사법감시기능의 수행이라는 다양한 정보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익은 특히 범죄가 중대하고 범죄보도의 대상이 된 자가 일반 대중의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인 경우에는 더욱 강화된다.

범죄보도가 지니는 이와 같은 정보의 이익과 침해되는 범죄보도대상자의 명예의 이익을 형량해 본다면, 일반적으로는 범죄보도의 정보의 이익이 우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적인 평화

를 깨뜨리고 그로 인하여 이웃사람이나 공동체의 법익을 침해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대상에 올랐거나 재판을 받는 자의 명예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는 공동체에서 일반 대중의 정보의 이익이 통상의 방법에 의하여 충족되는 것을 수인하지 않으면 안된다.³⁰⁾ 더구나 그로 인해 보장되는 형사소추 및 형사재판절차의 통제에 그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³¹⁾

물론 이 같은 정보이익의 우월이 언제나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예컨대, 피의사실이나 재판진행상황을 보도하면서 마치 유죄인 것으로 단정적으로 보도하거나, 한 건주의식 특종경쟁이나 무책임한 선정주의에 기초하여 수사기관의 발표내용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실들을 추측 기사화하여 과장되게 보도하는 것은 보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고, 이 경우에는 정보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명예의 이익보다 우월할 수 없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발표내용이나 수사상황 또는 재판진행상황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한 것이라면, 그 때는 정보의 이익이 우월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³²⁾ 만약 범죄보도가 정확하

28) 대법원 1998. 7. 14. 96다17257, 공998하, 2108.

29) 平川宗信, 「범죄보도와 인권」, 『언론중재』 제23호, 언론중재위원회, 1987 여름, p.59; 안상운, 「형사사건 보도와 인권」, 『언론중재』 제62호, 언론중재위원회, 1997 봄, p.44.

30) BVerfGE 35, 202.

31) 때문에 미국에서는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통제를 중대한 공익으로 간주하여 인신구속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권이 널리 인정되어 있고,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 당일에는 3회, 이튿날 이후에는 무제한적으로 언론기관을 포함한 외부와 전화연락이 가능하며(Minnesota주의 Henepin군 구치소의 경우), 기자는 취재를 이유로 언제든지 피의자를 만날 수 있고 편지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梓澤和幸, 「アメリカの警察取材・犯罪報道事情」, 『犯罪報道の現在』, 法學セミナー増刊 総合特集シリーズ 45, 1990, pp.300-302.

32) 미국에서는 공정보도의 특권(fair report privilege 또는 public eye doctrine)이라고 하여, 공적인 절차나 공적 직무상의 행위 기타 공적 관심사를 다루는 공개된 회의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 명예훼손적 사실의 보도는 그 보도 자체가 공정하고(fair) 정확한(accurate) 경우에는 면책된다.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라면 그 내용이 허위이고 이를 인식한 경우라 할지라도 면책되며 또 보도대상이 공적 인물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272(1964) 판결에서 확립된 “현실적 악의의 법리”(actual malice rule)보다 넓은 범위에서 언론매체의 보도의 자유를 인정하게 된다. 여기서 정확성(accuracy)이란 명예훼손적 내용 자체가 진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절차에서 행해진 진실내용과 보도된 내용이 그 중요부분에 있어서 부합해야 함을 의미한다. 단순히 주장된 사실을 기정 사실로 표현하여 보도했다면 이 특권은 배제된다. 그리고 공정성(fairness)이란 사실관계가 왜곡됨이 없이 중립성과 균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말한다. 따라서 행해진 절차나 공적인 기록에 관하여 요약보도하는 경우 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료를 언급하거나 일방적으로 편집하거나 불공정하게 取捨한 경우에는 공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이에 관해서는, 박용상, 『언론과 개인법익』, 조선일보사, 1997, pp. 423-430 참조.

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보도내용의 진실성까지 보도기관이 담보할 것을 요구하고 그것이 담보되지 않은 경우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는다면, 보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국민의 정보의 이익은 크게 상실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언론기관이 범죄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틀린 내용이 보도될 수 있다. 오보에 대해 명예훼손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다면, 보도기관은 추적보도나 조사보도를 회피할 것이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발표기사만을 보도하는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여 권력의 감시·비판이라는 보도의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상의 기본관점에 입각해서 아래에서는 범죄 보도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분석한다.

2. 면책사유로서의 공공성과 익명보도의 원칙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언론기관의 범죄보도는 다양한 정보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것으로서 그 자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와 비슷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 형법 제230조의2는 제2항에서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소제기 전의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로 본다.”는 간주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³³⁾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피의사실이 가지는 공공성 내지 공적 이해관련성의 정도는 반드시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권력범죄와 같은 공공의 관심이 높은 것에서부터 단순한 폭행죄와 같은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넓은 것임에도 불구

하고, 재판실무에서 범죄보도는 모두 공공적 사항으로 간주되고 그 강약은 문제되지 않으며, 또 피의사실 중에는 피의자의 성명, 연령, 직업도 포함된다고 이해되고 있다.³⁴⁾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범죄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임을 단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대법원은 “사실의 공공성”의 요건을 “구체적 공익성”의 판단으로 전환시켜 표현행위에 관련된 제반 사정과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그리하여 ‘유명연예인불법유학알선보도사건’³⁵⁾에서는 신문사가 여배우의 불법유학알선혐의를 보도한 기사 자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반면, 93다36622 사건³⁶⁾에서는 장인이 사위를 고소한 사건에 관한 신문보도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는 일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서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대법원은 중대한 범죄나 공적 인물의 범죄 혐의를 보도하는 것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성이 없다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소 또는 인지에 의하여 수사의 공적 절차가 진행된 사건의 보도는 그 사건내용의 경중 여하를 떠나 그 자체 공공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범죄보도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국민에게 알린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가치성의 판단은 언론기관의 몫이다. 공적 절차의 대상이 된 사건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언론윤리로서 거론되는 소위 ‘익명보도의 원칙’을 판례법에서 정식으로

33) 한편 일본 형법 제230조의2 제3항은 명예훼손적 표현행위가 “공무원 또는 선거공무원의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진실증명이 있는 것만으로 면책하고 있다. 즉 공무원 또는 선거공무원의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자체 사실의 공공성과 목적의 공익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34) 따라서 일본에서는 범죄보도의 명예훼손소송의 경우 언론기관의 면책여부의 판단은 전적으로 보도내용의 진실성 또는 진실민음의 상당성 여부에 집중되어 있다. 本多清二, 「犯罪報道の定型性と名譽毀損訴訟の問題點」, 『人權と報道を考える』, 法學セミナー増刊 総合特集シリーズ 39, 1988, p.212.

35) 대법원 1996. 5. 28. 94다33828, 공1996하, 1973.

36) 대법원 1994. 5. 10. 93다36622, 공1994, 1643.

수용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어 주목된다. 대법원(제1부)은 ‘이혼소송주부 청부폭력오보사건’³⁷⁾에서 대중매체의 범죄보도는 원칙적으로 공공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고 판시하면서, 공적 인물이 아닌 사인의 범죄혐의에 대해 보도하면서 실명과 초상을 사용한 것은 그 자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더 나아가 언론사의 보도내용의 진실성 내지 진실민음의 상당성의 존재여부를 살필 필요도 없다고 하면서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판결에서 기묘한 것은, 실명보도한 언론사의 경우와는 달리 피의사실을 공표한 수사기관(대한민국)의 명예훼손 책임을 판단하는 부분에서는 공표사실의 공공성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뒤에서 살피는 이른바 진실민음의 상당성이 없다고 하면서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아무튼 대법원의 위 판시에 따르면, 언론사가 사적 인물에 대한 범죄보도를 하면서 실명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 곧 명예훼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단히 놀라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보도내용 자체의 공공성 여부를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종래의 접근방법을 뛰어넘어, 실명보도의 경우 공적 인물인지 사적 인물인지의 여하에 따라 범죄보도의 공공성을 결정짓

는 접근방법은 소위 유형적 이익형량의 방법을 채택한 것으로서 일응 진일보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실제 내용은 범죄보도가 지니는 정보의 이익을 완전히 도외시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중대성이나 시사적 성격에 따라 실명보도의 공익이 현저한 경우가 있음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특히 익명보도의 법적 강요는 언론사가 확보한 진실을 보도할 자유를 박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보도내용의 신뢰성을 현저히 떨어뜨려 사회의 公器인 언론사를 무책임한 방종상태로 내몰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익명보도에 의해 아무런 법적 책임의 부담이 없는 언론사는 정보조작의 자유를 획득한 셈이 될 것이고, 조작된 익명보도는 국민에게 아무런 정보의 이익을 주지 못할 것이다.³⁸⁾

최근 익명보도의 원칙이 일본과 독일,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여러 논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왔다. 어느 법률가의 글에서는 익명보도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동 원칙이 “미국, 스웨덴 등지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으며, 일본에서도 1980년대부터 본격논의가 되어 이미 상당한 정도 진척되어 있다.”³⁹⁾고 외국의 사정을 전하고 있다.⁴⁰⁾ 그러나 언론사의 보도윤리기준과 법적 기준은 구별되어야 한다. 과묵한 탓인지 모르지만, 미국·스웨덴·일본에서의 익명보도의 원칙은 명예훼손소송의 법적 기준이 아니라 언론사의 보도윤리기준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⁴¹⁾ 다만, 독일에서는 1973. 6. 5. 연방헌법재판소가 선고한

37) 대법원 1998. 7. 14. 96다17257, 공998하, 2108.

38) 익명보도와 실명보도의 장단점과 그 비판에 대한 상세는, 손창렬, 『범죄보도와 인권침해에 관한 형사적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pp. 112-123; 안상운, 앞의 글(각주 29), pp. 53-54; 유승삼, 「실명보도와 인권」, 『언론중재』 제43호, 언론중재위원회, 1992 여름, pp. 28-37; 홍기태, 「형사재판에 대한 보도와 그 한계」, 『헌법문제와 재판(하)』 재판자료 제77집, 법원도서관, 1997, pp. 376-379 참조.

39) 한위수, 「법관이 본 사법관련보도의 문제점과 제언」, 『언론중재』 통권 제52호, 1994 가을호.

40) 다른 법률가들도 이러한 외국의 사정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예컨대, 장진원, 「언론의 범죄사건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청구」, 『법조』 제507호, 1998. 12, p.175; 홍기태, 앞의 글(각주 38), p.378.

41) 일본에서 익명보도의 원칙은 1980년대 淺野健一 교수(『犯罪報道の犯罪』, 學陽書房, 1986)와 平川宗信 교수 등에 의해 제창되었으나, 그들 자신 스스로도 이 원칙을 법적 기준으로 채택하는 데에는 주저하고 있다. 예컨대, 平川宗信 교수는 이 원칙을 주장하면서도 “이것을 법규제 특히 형사법적 규제(예컨대, 형법 230조의2 제2항의 삭제)에 의해 실현하려고 하는 것은 보도의 권력감시기능을 억압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보도와 인권의 조화는 어디까지나 시민과 매스미디어와의 대화에 기초한 미디어의 자주규제에 의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고 논술하고 있다. 平川宗信,

Lebach 판결⁴²⁾에서 가석방을 앞둔 수형자의 익명의 이익과 사회복귀의 권리를 인정한 이후 범죄보도에 있어서 익명보도의 중요성과 그 기준에 관해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위 Lebach 사건은 가석방을 앞둔 수형자의 범죄행위, 동성애를 포함한 범인들 상호간의 관계, 수사의 경위, 범행의 배경 등을 초상과 실명을 사용하여 다큐멘터리 드라마 형식으로 조명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수형자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근거로 방영금지가처분을 인정한 것으로서, 결코 명예훼손소송에서 익명보도의 원칙을 채택한 것이 아니며 또 이 판결에서 인정한 익명의 이익은 범죄의 발생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복귀를 앞둔 범죄자의 ‘홀로 있을 권리’가 범죄보도의 이익보다 더 중요해지게 된다는 판단과 관련되어 있을 뿐이다.

아무튼 위 대법원의 판시에 의하면, 이제 사적 인물의 실명보도는 설령 그것이 진실이고 공정하게 보도된 것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책임을 져야 한다. 결국 공적 인물인지 사적 인물인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이 된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있어 법의 예측가능성은 상실되어 버린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태가 언론사의 범죄보도를 크게 위축시킬 것임은 명백하다.

그런데 위 판결 이후 선고된 ‘회사기밀누설보도사건’⁴³⁾에서, 대법원(제3부)은 회사기밀누설 혐의로 구속된 사기업체 차장이 공적 인물인지의

여부를 전혀 판단하지 않은 채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는 전제하에 진실민음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이 판결에서는 익명보도의 원칙이 진실민음의 상당성 판단에 있어서의 한 요소로 들어가 있을 뿐이다.⁴⁴⁾ 범죄보도의 경우는 아니지만, 이전의 대법원(제2부) 판례도 행정상의 실명공표가 문제된 사건에서 실명공표는 진실민음의 상당성 판단의 한 요소로서 진실확인 의무를 가중시키는 요소였다.⁴⁵⁾

그렇다면 현재 익명보도의 원칙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상호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1998. 11. 4. 선고된 서울지방법원 97가합37581 판결은 ‘이혼소송주부 청부폭력 오보사건’의 판례임장에 따라 “공적인 인물이 아닌 만큼 ... 범죄혐의자의 신원까지 명시한 것은 공공성을 지닌 보도라고 할 수 없고 원고를 ‘용의자’ 등으로 표현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입장에 따른다면 사인에 관한 실명보도의 경우에는 진실성 여부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겠으나, 이 입장에서라도 공인의 경우에는 여전히 진실성이 면책사유로서 문제되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나아가 이를 검토한다.

3. 면책사유로서의 진실성과 진실민음의 상당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의 일반적 면책사유로서 사실의 공공성과

「報道の自由と人格權の保護・とくに犯罪報道をめぐって」, 『自由と正義』 39卷 9號(88. 09), p.46. 한편 스웨덴의 익명보도도 법원칙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淺野健一, 「スウェーデン匿名報道から謙虛に學ぼう」, 『ジュリスト』 1049號(94. 07), pp.98-99; 裴원순, 『한국언론법제론』, 법문사, 1994, pp.296-297 참조.

그리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심지어 청소년범죄자의 이름과 사진을 공표한 언론을 형사처벌하거나 그 공표를 금지시키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하는가 하면(Smith v. Daily Mail Publishing Co., 443 U.S. 97(1979); Oklahoma Publishing Co. v. District Court, 430 U.S. 308(1977)), 강간피해자의 성명을 보도한 언론사의 프라이버시침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있다(Cox Broadcasting Corp. v. Cohn, 420 U.S. 469(1975)). 이들 판례의 기본취지는 일단 진실한 정보가 “공개적으로 드러났거나”(publicly revealed) 또는 “공공의 영역에 들어간”(in the public domain) 경우에는 이를 보도한 언론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미연방대법원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다(박용상, 『언론과 개인법익』, 조선일보사, 1997, p.82).

42) BVerfGE 35, 202.

43) 대법원 1999. 1. 26. 97다10215, 10222, 공999상, 330.

44) “공적 인물이 아닌 사인의 경우 가급적 익명을 사용하는 등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공999상, 330).

45) 대법원 1993. 11. 26. 93다18389 공994, 194; 1998. 5. 22. 97다57689, 공998하, 1712.

목적의 공익성 외에 진실성이 요구되고, 다만 진실성의 증명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처럼 진실성 요건을 “진실 믿음의 상당성” 판단으로 대체한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대법원은 명예훼손적 표현이 세부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전체로 보아 진실과 합치되면 족하다는 것이고,⁴⁶⁾ 학설도 적시된 사실의 중요부분이 진실과 합치되면 충분하다는 입장⁴⁷⁾이다.

결국 범죄보도의 명예훼손소송에 있어서 위법성조각의 인정여부는 대체로 “진실 믿음의 상당성” 판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언론사는 범죄보도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진실책임을 져야 하는가? 과연 언론사는 보도한 범죄혐의나 재판 중의 범죄사실 자체에 대해 진실을 추구할 책임이 있는가? 언론사의 진실책임을 누가 범죄혐의를 받고 있고 누가 체포되었으며 어떤 내용의 재판을 받고 있는지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는 것만으로 면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수사나 재판기관도 아닌 언론사에게 보도하는 범죄사실 자체의 진실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실로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수사상황이나 재판상황을 전달하는 형식의 범죄보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보도내용이 ‘공정하고’, ‘정확한’ 것인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요소이고, 이 요건이 충족되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의 책임에서 면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로이 범죄사실 자체에 대한 진실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⁴⁸⁾과 다수의 학설⁴⁹⁾은 보도된 피의사실 자체의 진실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수사기록 및 담당 검사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하여 범죄보도를 한 경우에도 언론사가 진실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진실 믿음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즉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기사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밀줄 필자 붙임)는 것이다.⁵⁰⁾ 그러나 수사상황을 전달하는 언론사에 대해 피의사실에 대한 진실확인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보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진실확인 의무가 요구될 수 있다면 또 다른 형식의 범죄보도, 즉 언론사 자체의 추적보도나 조사보도를 통해 범죄혐의를 보도하는 경우일 것이다.

아무튼 대법원은 일률적으로 보도된 범죄사실 자체의 진실증명을 요구하고 있고, 진실증명이 없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되, 이 판단의 기준은 ‘언론사가 얼마나 진실확인 의무 내지 조사의무를 이행했는지의 여부’이다. 결국 현행의 명예훼손법에 있어서 범죄보도의 위법성조각은 많은 경우 ‘진실확인 의무의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의 진실확인 의무가 요구되는지에 관해 대법원 판례는 아무런 기

46) 대법원 1958. 9. 26. 선고 4291형상323 판결, 총람 20-1권, 613면; 대법원 1996. 8. 23. 94도3191, 공1996하, 2928(중앙대 총학생회장 의사사보도사건: 보도내용의 진실성 여부는 보도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47) 이태상, 『형법각론』, 박영사, 1996, p.177.

48) 대법원 1999. 1. 26. 97다10215, 10222, 공1999상, 330, 336(“신문보도가 ‘...혐의를 받고 있다’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또 피의자가 그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회사기밀을 누설한 것이 사실이라는 증명이 없는 이상 그 신문 보도가 진실이라는 입증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9) 예컨대, “... 하다는 소문이 있다”와 같이 傳聞의 표현에 의한 사실적시의 경우 진실성의 판단대상은 소문 그 자체의 존재여부가 아니라 그 내용되는 사실이라고 한다. 한위수, 앞의 글(각주 11), p.420; 김중환 외, 『주식 채권각칙(Ⅳ)』, 한국사법행정학회, 1987, p.137; 서울민사지법 1989. 1. 18. 88가합20604(『언론중재』 제30호, 1989 봄, p.168).

50) 대법원 1998. 5. 8. 96다36395, 공1998상, 1572(유명 연예인 접대 보도 사건).

준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예측가능성을 주지 못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정보원의 신빙성, 피해의 정도, 사실확인의 용이성, 기사성격상 보도의 신속성요청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실확인의무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다만, 정보원의 신빙성 내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기초한 것인지를 제1요소로 삼고, 그 신빙성이 강한 만큼 진실확인의무는 약화되고 신빙성이 약한 만큼 진실확인의무는 강화게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⁵¹⁾ 그리고 보도의 신속성이 덜 요구되는 잡지나 논픽션 드라마 방송의 경우에는 신문보다 높은 진실확인의무가 요구되며,⁵²⁾ 실명공표인 경우에는 진실확인의무가 더 높게 요구된다.⁵³⁾

그러나 이런 정도의 기준만으로는 예측가능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의 이러한 접근방식은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범죄보도를 한 언론사가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책임을 지는지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범죄보도를 위축시킬 위험성이 높다고 하겠다. 특히 대법원은 진실확인의무를 요구함에 있어 보도내

용이 공적 인물에 관한 것이어서 공공의 관심사가 높은 것인지의 여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대체적으로 하급심판결보다 더 높은 진실확인의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⁴⁾

판단컨대, 진실확인의무의 요구 및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의 여부에 따라 현저히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범죄보도가 수사기관의 공식적 발표나 공적 기록에 기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진실확인의무를 요구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경우의 중요한 판단요소는 보도가 얼마나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점이다. 수사기관의 공식적 발표라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정보원의 신뢰도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⁵⁵⁾ 물론 이 경우 범죄혐의가 아닌 유죄로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보도의 자유를 남용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공적 인물인 경우 주요 사실이 정확하게 보도되었다면 사소한 허위를 이유로 명예훼손책임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공공의 정보의 이익을 도외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⁵⁶⁾

51) 대법원 1996. 5. 28. 94다33828, 공1996하, 1973(유명연예인 불법유학알선보도사건); 대법원 1998. 5. 8. 96다36395, 공1998상, 1572(유명연예인 접대보도사건) 등 참조.

52) 대법원 1988. 10. 11. 85다카29, 공1988, 1392; 1998. 5. 8. 97다34563, 공1998상, 1575(논픽션 라디오드라마방송). 그러나 같은 논픽션 드라마라도 시일이 오래 경과된 역사적 사건인 경우 진실규명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확인의무가 약화된다고(대법원 1998. 2. 27. 97다19038, 공1998상, 865).

53) 대법원 1999. 1. 26. 97다10215, 10222, 공1999상, 330; 1998. 5. 22. 97다57689, 공1998하, 1712; 1993. 11. 26. 93다18389, 공1994, 194.

54) 대법원 1996. 5. 28. 94다33828, 공1996하, 1973(유명연예인 불법유학알선보도사건)은 유학알선업체의 형식적 대표자인 유명연예인(원고)과 실질적 운영자가 여권법위반 및 사기혐의로 입건된 사실을 경찰의 보도자료, 연합통신의 통신문, 다른 신문의 기사 등을 참고하여 기사화한 영자신문사(피고)에게 명예훼손책임을 인정한 사건인데, 보도 시점에서의 허위사실은 유명연예인이 미국으로 도피하지 않았음에도 도피하였다고 보도한 점이었고, 기타 보도자료에 없는 유학간 학생들의 미국생활이 부정적으로 소개되었으며, 이 기사가 나간 후 2달이 지난 시점에 검찰수사에 의하여 유명연예인(원고)은 위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무혐의확인되었다. 그런데 위 허위사실은 경찰의 보충설명에서 나온 것이었고 이 허위사실과 관련 기사내용은 이미 다른 언론에서 보도된 것이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기사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명예훼손을 부정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가 인용하지 않고 직접 취재한 것처럼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진실확인의무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 1998. 5. 8. 96다36395, 공1998상, 1572(유명연예인 접대보도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정보원의 신빙성이 충분하고 보도의 신속성이 요구되며 유명연예인(원고)으로부터의 사실 확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실민음의 상당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55)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 4. 29. 선고, 87가합3739판결(『언론중재』, 1988년 가을호, p.187)은 경찰의 보도자료에 게재된 대로 보도한 이상 그 보도내용 중에 전과 7범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진실확인의무의 이행은 필요치 않고 따라서 진실민음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56) 미국의 판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이 반드시 타당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미연방대법원이 보여주는 헌법적 명예훼손법리는 우리의 그것과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 예컨대, 미연방대법원은 현직 시장인 Leonard Damron과 형제인 James Damron을 혼동한 신참 기자가 동생의 위증죄 기소 사실을 현 시장에 대한 것으로 오해하고 보도한 사건에서 New

IV. 맺는 말

명예훼손을 넓게 인정한다는 것은 그 만큼 민주정치의 초석인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공공의 관심사항에 대한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 우리의 명예훼손법은 개인의 명예보호에 치우쳐 있고 그 만큼 언론자유 가치가 도외시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면책사유를 적용하는 법원의 태도는 지나치게 상황구속적이어서 법질서가 제공해야 될 예측가능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법원의 해석이 명예보호에 치우친 것은 어쩌면 우리의 언론기관들이 자초한 것인지도 모른다. 언론기관들이 민주사회의 公器로서 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현재의 명예훼손법도 변화될 것이고 또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

York Times Co. v. Sullivan 판결에 따라 “현질적 악의(actual malice)”가 없음을 이유로 신문사의 명예훼손책임을 부정하였다. Ocala Star-Banner Co. v. Damron, 401 U.S. 295(1971).

언론의 자유와 형사책임의 한계

—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

오 경 식

강릉대 법학과 교수

사건의 개요

가. 제3대 강원도의회 의원이었던 청구인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동료 의원인 청구외 정○철, 김○룡(이하 “청구외 인”이라 한다)과 남북 강원도 교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간사장으로 활동하면서 1994. 11. 17. 통일원으로부터 북한주민 접촉 승인을 받았다. 1995. 3. 20. 중국 북경에서 북한대사관 직원을 만나 남북 강원도 교류문제를 논의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인의 명의로 된 김정일에게 보내는 편지(이하 ‘이 사건 편지’라고 한다)를 전달하였다. 이 사건 편지는 강원도 의회와 북강원 인민위원회 간의 자매결연, 의원 세미나 개최, 특산물 교환, 문화체육행사과 학생 수학여행단 교류, 남북 청소년 야영대회 등 남북 강원도 교류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그 편지 앞머리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귀하. 안녕하십니까. 김일성 주석께서 서거 이후 애통한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셨을 총사령관께 삼가 위로와 격려 말씀드립니다.”라는 인사말과 중간 부분에는 청구인이 1994. 11.에 김정일로부터 서한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청구인이 역대 군사정권에 저항한 반독재 투쟁경력을 소개하고 끝에는 1995. 4. 평양에서 개최되는 “국제체육문화축전”에서 교류방안에 관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통일원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 편지의 내용과 전달 경위를 조사하게 되었다.

강원일보는 1995. 4. 9.자 신문에서 “북 접촉도 의원 3명 내사”라는 제목과 “김·경 김정일에 ‘김일성 사망 애도’ 편지”라는 부제목으로 된 기사를 게재한 이래 같은 해 9. 6.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김일성 애도 편지’라는 표현을 제목 또는 본문에 사용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인이 김정일에게 이 사건 편지를 보낸 사실과 그 내용, 이에 대한 통일원의 조치, 경찰 및 검찰의 수사상황, 이북5도민회의 반응 등에 관한 기사와 독자투고를 게재하였다.

나. 청구인은 강원일보의 보도가 비방 목적에 의한 허위 내용으로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1996. 11. 22. 춘천지방법원에 피고소



□ 연세대학교 법대 법학과 조, 동대학원 석사, 법학박사
일본 동북대학교 법학부 객원연구원, 독일 튜빙겐대학 법대 객원교수
□ 현재 강릉대학교 법학과 교수,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 저서: 「신용카드범죄의 실태와 법적 문제점」, 「북한 형사법에 대한 일고찰」, 「기업비밀침해범죄」, 「수배제도에 관한 연구」 외 다수

인 조○진(강원일보사 발행인 겸 편집인), 이○종(강원일보사 편집국장), 이○표(강원일보사 사회 2부 기자), 최○현(강원일보사 사회부 기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각 고소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1997. 2. 26.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를 거쳐 1997. 8. 21.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강원일보를 상대로 신청한 정정보도 심판사건은 일부인용 판결이 있었고(춘천지방법원 1996. 10. 10. 선고, 95카기299 판결), 강원일보와 피고소인 이○표를 공동피고로 제기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사건에서도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97. 11. 6. 선고, 96가합2272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4. 23. 선고, 97나57360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4624 판결).

판결이유 요지

도의회 의원인 청구인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북한의 김정일에게 보낸 이 사건 편지에 대해서 통일원과 경찰·검찰이 그 경위와 내용을 조사한 사실을 강원일보가 보도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고소인인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보도한 것이 아니고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한 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1) 편지 내용의 전체 취지는 교류를 촉구하는 내용임이 분명하나, 애도를 나타내는 인사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으므로 신문사가 사건의 성격을 “김일성 사망 애도편지”라고 평가·규정한 것이 비합리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소인 이○표는 춘천지방검찰청 공안 담당검사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내사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기사를 작성

한 것이므로 허위가 아니며 정보보고 기재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3) 기사에서 “통일원은 ...의원들에 대해 경고 조치 하기로 결정하고 금명간 해당 의원들에게 경고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는 부분은 그 내용이 다르나 피고소인 이○표는 그 전날인 4. 11. 통일원 교류2와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그 내용을 확인한 바 있고, 같은 신문사 문○기 기자가 통일원에 확인하였더니 관계자를 경고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알려주므로 사실인 것으로 믿고 기사를 작성한 것이지 허위인 줄 알고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의 명예훼손적 표현은 진실한 사실로 믿고서 한 행위이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4) 당일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조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했다고 해서 중요부분이 아닌 위부분이 명예훼손적 표현이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뿐더러 진실한 사실로 믿고서 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다.

5) 비방할 목적의 유무

강원일보는 1995. 1.부터 같은 해 3. 23.까지 청구인과 청구외 인 등 도의원들의 대북접촉 활동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도해 왔던 점(수사기록 65~68면), 통일원과 검찰·경찰에서 이 사건이 종결되자 같은 해 9. 29.자 기사에서 내사종결 배경에 관하여 자세하게 혐의가 없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점(수사기록 69면), 김일성 사망에 따른 조문 문제는 당시 전국적인 관심사였고 청구인은 도의원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편지를 전달한 경위와 내용을 관계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보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의도에서 기사화하였다는 피고소인들의 변소에 수긍이 가고 달리 비방할 목적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6) 끝으로, 피청구인은 1995. 4. 9. 이전에 고소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내사하지 않은 점, 통일원에서 고소인에게 경고 결정을 않은 점, 1995. 9. 5. 검찰조사시 김일성 애도서신에 반

정부 투쟁을 담은 경위에 대해 조사받은 사실이 없는 점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이 김일성 애도 서신을 북한측에 전달하였으며 경찰·검찰에서 내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보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소인들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우리 재판소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그에 대한 평가결과와는 이유를 일부 달리하고 있으나, 결론은 옳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기한 정정보도 심판사건과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사건이 각 일부승소로 판결이 확정된 사정은, 이 사건과는 인정사실에 대한 평가와 적용법률의 차이로 인하여 결론이 다르게 된 것이다.

결 론

이상의 이유로 청구인의 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 결정의 의의 및 문제점

위 현재결정은 공적 인물의 공적인 활동과 관련된 사실을 보도한 신문기사가 명예훼손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보호와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보장이라는 상반된 권리에 대한 한계설정이 쟁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본 사건은 신문사를 상대로 신청한 정정보도 심판사건에서 일부 인용판결을 받았으며, 신문사와 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언론으로 인한 구제와 민사적인 구제는 일부 회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청구인이 신문사와 관련 기자를 상대로 비방목적에 의한 허위내용으로 명예를 훼손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2. 26.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를 거쳐 1997. 8. 21.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본 사건은 민사법적으로 명예훼손이 인정된 사건에 대하여 인정사실에 대한 평가와 적용법률의 차이로 결론이 다르다는 이유로 형사법적 명예훼손사실을 거부하여 민사법적 명예보호와 형사법적 명예보호의 한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등을 들 수 있다. 적시사실의 진실성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이므로 민사적 관점과 형사적 관점이 다를 수 없다. 또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는 일반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의 행위태양으로 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므로 출판물에 의한 경우라도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에 해당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판시이유가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만약 형법 제307조에 해당된다면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도 결여되었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II. 명예보호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1. 민사법적 명예보호

가. 민사법적 명예훼손의 개념과 판단

민사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¹⁾ 특히 언론보도에 의한 민사법상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취재기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 둘째 피해자에게 사회적 평가가 저

1) 대법원 1998. 10. 27. 98다24624(…이러한 일련의 보도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보아 충분히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내용을 담고 있으며…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는 바…).

해되어 명예가 침해되었을 것, 셋째 언론보도가 위법할 것, 넷째 가해행위(언론보도)와 손해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²⁾ 민사법상의 명예훼손의 경우 형사법상의 명예훼손과 달리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의 적시를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공연성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³⁾ 그러나 언론보도에 의한 경우에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의 적시나 공연성은 언론의 특성상 당연히 요건으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확인 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⁴⁾

본 사건은 언론보도 중 신문보도에 의한 경우로서 민사법적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며, 그 판단의 기준으로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적인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기준으로 삼았으며,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제목이 본문의 내용과 다른 인상을 줄 경우에 제목만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즉 기사가 제목과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기사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제목만으로 기사내용을 파악할 것은 아니며, 제목이 본문과 달리 자극적이고 과장된 표현이라 하더라도 독자들에게 주의 환기시켜 흥미를 끌게 할 정도인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나.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법적 구제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법적 구제방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명령을 들 수 있다. 명예훼손이 된 경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함께 자신에 대한 사회적 평가저하의 고통을 받게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통설과 판례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⁵⁾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란 그 동안 사회광고를 의미하였으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사회광고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려⁶⁾ 사회광고 대신 허용될 수 있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해자의 비용으로 그가 패소한 민사손해배상판결을 신문, 잡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형사명예훼손죄의 유죄판결을 신문, 잡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과 명예훼손기사의 취소광고⁷⁾ 등을 들 수 있다.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법적 구제방법과는 달리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가처분이 인정되어

2) 장영민·정진수, 「언론보도에 의한 인권침해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1995. 11, 형사정책연구원, p.116 참조.

3) 대법원 1964. 9. 22, 64다261(공연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판례).

4) 대법원 1998. 5. 8, 96다36395; 대법원 1998. 2. 27, 97다19038; 대법원 1998. 10. 27, 98다24624.

5) 장영민·정진수, 앞의 책, p.119; 대법원 1965. 11. 30, 65다1707.

6) 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회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미는 동조 소정의 처분에 사회광고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동조와 같이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거나 多義의인 解釋可能性이 있는 조문에 대하여 限定縮小解釋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한 合意의 意味를 천명한 것이며, 그 의미를 넘어서는 확대는 바로 헌법에 위반되어 채택할 수 없다는 뜻이다).

7) 이는 사회광고의 문안 중 사죄한다는 취지의 진술부분만을 삭제하고 피고의 진술이 명예를 침해했으며,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문면을 신문, 잡지 등에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이다(위의 책, p.120. 주18참조).

야 한다. 금지가처분의 방법은 그 발행, 판매, 반포 등의 금지 및 집달관 보관 등을 들 수 있다.

2. 형사법적 명예보호

가. 형사법적 명예훼손의 개념과 판단

형사법상 명예에 관한 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한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석하는 판례가 대다수이다.⁸⁾ 그 구체적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석되며, 전파될 가능성이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고도의 가능성 즉 전파개연성을 의미한다.⁹⁾ 다만 특정소수인에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전파가능성 또는 전파개연성이 있을 경우에 통설과 판례가 견해를 달리한다. 통설에서는 공연성을 부정하는데 비하여 판례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개념의 확정여부는 법관에게 위임하고 있다.¹⁰⁾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로서 가치판단과는 구별된다.¹¹⁾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한다.¹²⁾ 반드시 惡事·醜行을 지적할 것을 요하지 않고, 널리 사회적 가치를 해할 만한 사실이면 충분하며, 여기의 사회적 가치에는 인격·기술·지능·학력·경력은 물론 건강·신분·가문 등 사회생활에서 존중되어야 할 모든 가치가 포함된다. 다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키는 것은 신용훼손죄를 구성하게

되므로 여기의 가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¹³⁾ 판례는 충분한 근거 없이 사실을 적시하거나,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실에 반하는 주장을 하거나, 기사 중간에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연결시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상을 주거나, 기사와 상관없는 사람의 사진을 실는 행위를 모두 허위의 사실의 적시로 보고 있다.¹⁴⁾ 그리고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보도할 경우 그 시점의 진실을 보도하여야 되므로 그 이후 보도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경우라도 그 보도는 진실된 보도로 보아야 하지만, 기사와 객관적 사실이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한계를 넘는 정도의 보도는 진실된 보도라 해석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기소사실의 일부유죄의 사건을 전부유죄인 것처럼 보도한 경우, 제목에는 강도로 되어 있으나 기사본문에는 강도라고 표현한 부분이 없는 경우, 절도사건의 피의자로서 체포되었고 수사기관에서 강도미수사건의 공범자로 추정하였을 뿐인데 이를 강도용의자로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의 보도라 할 것이다. 이미 민사사건에서 허위 또는 충분한 근거 없이 사실을 적시한 것을 본 현재 결정에서는 달리 평가하고 있다.

신문, 잡지, 라디오, TV, 기타 출판물에 의한 보도의 경우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본 현재 결정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의 일반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만약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성립되면 이에 따라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으로 행위의 진실성과 공공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8) 대법원 1991. 6. 25, 91도1347; 대법원 1990. 7. 24, 90도 1167등이다.

9) 대법원 1982. 3. 23, 81도2491.

10) 법관에게 위임되어 있는 전파가능성개념이 구체적으로 판결에서 어떻게 확정되는가는 오영근,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형사판례연구』 [1], 1993, pp.130-131. 참조.

11) 사실은 그것이 진실임을 증명할 수 있지만, 가치판단은 그 정당성이 주관적 확신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다.

12) 이재상, 『형법각론』, p.173.

13) 위의 책, pp.173-174 참조.

14) 서울민사지법 1992. 3. 17, 91가합64567; 서울민사지법 1992. 12. 15, 91가합38193; 서울민사지법 1992. 6. 9, 91가합3081; 서울민사지법 1992. 12. 4, 91가합82923; 서울민사지법 1993. 7. 8, 92가단57989.

한다.

나. 언론매체의 비방의 목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뿐만 아니라 초과주관적 요건인 비방의 목적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비방의 목적 없이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형법에서 이러한 목적성을 구성요건화 한 것은 출판물이 갖는 사실공개적 성격과 공익성을 동시에 염두에 둔 것이라 보아야 한다. 즉 언론매체의 기사내용이 그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고 처벌한다면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는 그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물론 이 경우 기사내용의 진실성 또는 진실성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언론매체의 보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한도내에서 형법 제309조의 가벌성은 그 의미가 있다. 즉 비방의 목적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사이의 경제적 역할을 한다.¹⁵⁾

이러한 의미에서 본 현재 결정은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관한 신문보도가 명예훼손적 표현이나 비방의 목적이 없으므로 형법 제309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생각건대 형법 제309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형법 제307조에 해당되어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일 경우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되거나 언론자유와 명예보호의 이익조정의 기준을 담고 있는 형법 제310조의 요건에 해당되어 가벌성이 조각되는지는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그 행위가 허위일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되므로 형법 제310조에는 적용의 여지가 없다. 단 행위자가 진실성에 대한 착오를 한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조건에 대한 착오의 법리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신문보도의 내용이 진실성 또는 진실

성을 믿는 상당한 이유가 결여된 경우에 그 보도는 허위보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허위보도행위는 형법 제310조의 면책이 될 수 없다. 즉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9조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허위보도가 경미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허위보도 그 자체가 정당화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상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허위(비진실)보도의 정정의무와 민사상의 손해배상 의무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¹⁶⁾

비방의 목적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기로 하자.

다. 대법원 판례의 경향

(1)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여 형법 제309조를 인정한 경우

* 대법원 1986. 10. 14. 86도1603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은 조각되나 형법 제309조 위반의 이 사건 범행에는 피고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 공공의 이익을 위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의 규정의 적용을 거부한 판례라 할 수 있다.

(2)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였으나 형법 제310조를 인정한 경우

a. 대법원 1989. 2. 14. 88도899

...교회담임목사를 출교 처분한다는 취지의 교단산하 재판위원회의 판결문은 성실상 교회나 교단 소속신자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전파, 고지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판결문을 복사하여 예배를 보러 온 신도들에게 배포한 행위에 의하여 그 목사의 개인적인 명예가 훼손된다 하여도 그것은

15) 박상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사판례연구』 [3], 1995, p.168.

16) 권영성, 『헌법학원론』, 1999, p.452. 참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교단 또는 그 산하교회 소속신자들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소행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함께 숨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본 사건의 경우 판결문을 복사하여 배포한 행위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행위인 제309조 제1항의 적용이 되지 않고 형법 제307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의 목적이 함께 숨어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인정한 판례라 할 수 있다.

b. 대법원 1993. 6. 22. 92도3160 명예훼손

...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나)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노동조합 조합장이 전임 조합장의 업무 처리 내용 중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 대자보를 작성 부작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고 그렇게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 본 사건의 경우 행위자가 적시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위법성 여부와 형법 제310조의 성격을 밝힌 판례로 볼 수 있다.

c. 대법원 1993. 6. 22. 93도1035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진실한 것이어야 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형법 제310조의 성격을 밝힌 내용이라 할 수 있다.

d. 대법원 1996. 10. 25. 95도1473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형법 제310조의 성격을 밝힌 내용이라 할 수 있다.

(3) 결 어

대법원에서는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여 형법 제

309조를 적용한 판결이유에서와 같이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적용요건으로 비방의 목적, 출판물에 의하여 형법 제307조 1항의 죄를 범한 자로 보고, 형법 제310조의 경우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법문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307조 제1항과 형법 제309조 제1항과의 차이점은 출판물에 의한 것과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309조 제1항이 적용되어 형법 제310조의 적용가능성을 배제한다는 점을 다수의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 중에는 비방의 목적과 관련하여 출판물에 의해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거의 자동적으로 비방목적의 존재를 부인함으로써 제309조가 아니라 제307조가 적용됨으로써 형법 제309조에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한다.¹⁷⁾ 결국 대법원에서는 형법 제310조의 적용해석과 관련하여 비방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요소에 의해 상쇄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Ⅲ. 언론의 보도와 공공의 이익

언론기관은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항상 완벽한 조사에 의한 진실된 보도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언론의 보도의 자유란 언론매체를 통하여 의사를 표현하고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여론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¹⁸⁾ 이러한 보도의 자유는 의사표현의 자유와 달리 '평가적인 의사표현'뿐만 아니라 단순한

'사실의 전달'도 주요기능으로 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신문사가 추구하는 여론형성의 기능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¹⁹⁾ 언론기관의 진실보도의무와 공익성과 관련하여 언론의 자유가 허위를 보도하거나 불가피함을 이유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담당자는 보도내용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해야 함은 당연하다.

대법원의 경우 언론기관의 보도와 공익성에 대하여는 상당히 재량적 해석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에 대한 증명의 경우 행위자가 이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증명은 엄격한 증거에 의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있다.²⁰⁾

언론의 자유와 형사책임의 한계에 대하여 형법 제309조에서 그 한계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허위의 사실을 알고서 보도한 경우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 형법 제309조에 적용이 되나 허위인 경우를 모르고 보도한 오보의 경우는 허위사실인 줄 알았으나 비방할 목적이 없는 경우와 허위사실을 몰랐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비방의 목적이 없으므로 형법 제309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²¹⁾ 후자의 경우 본 헌재결정과 관련되는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30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법 제307조 1항에 해당되나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에 대한 진실성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이므로 평가대상인 상황에 대한 착오라는 점에서 위법성의 착오가 아니라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조건에 관한 착오에 해당된다.²²⁾ 따라서 법 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생각한 심정에 비추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17) 배종대, 『형법각론』, 박영사, 1996, p.234.

18) 허영, 『한국헌법론』, p.518.

19) 박상기, 앞의 논문, p.166.

20) 공언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때에는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6. 10. 25. 95도1473).

21) 배종대, 앞의 책, pp.233-234.

2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조건에 대한 착오에 대해서는 이형국, 『고시제』, 1991. 9. 참조.

책임을 지울 수는 없으며 이로서 책임형식으로서의 고의 즉 고의책임이 탈락된다. 그러나 구성요건적 고의는 그대로 남으며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단지 과실범의 책임만 질 뿐이나 이에 관한 과실범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언론보도로 인하여 관련 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기관의 주의의무가 강조되어야 한다. 본 사건의 경우 원고는 곧이어 있을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자로서 신중하지 못한 보도로 인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쳐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출판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행위정황에 따른 척도를 비방의 목적 판단에 가감해야 할 것이다.

IV. 맺음말

본 현재 결정은 언론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라는 두 권리의 헌법적 평가문제와 명예보호의 형법적 평가문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본 결정이유에서 보듯이 언론매체의 명예훼손적 표현에 실정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언론의 자유와 명예보호라는 상반되는 헌법상의 두 권리의 조정과정에서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한다.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알 권리)로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표현내용과 방식에 따라 상반되는 두 권리를 유형적으로 형량한 비례관계를 따져 언론의 자유에 대한 한계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이 사건의 피해자는 도의원이므로 그의 공적활동과 관련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허위라는 것을 알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데도 진위를 알아보지 않고 게재한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현재에서 결정한 판시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신문사가 사건의 성격과 기사제목을 “김일성 사망 애도편지”, “김일성 애도편지”, “김일성 애도서신”, “김일성 애도 도의원 3명”, 등의 제목으로 한 것을 비합리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시이유는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재 결정이유에서 밝혔듯이 편지내용의 전체 취지는 교류를 촉구하는 내용이 분명하였다고 판시하였으나, 인사말에 포함된 ‘위로’라는 표현을 애도편지로 바꾸어 여러 차례 보도한 것은 기사 본문 전체내용을 당시 관심이 집중된 애도편지의 일종으로 몰아가도록 하여 독자들에게 청구인이 김일성 사망을 애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편지를 보낸 것이라는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전체적인 인상으로 보아 충분히 청구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므로 명예훼손의 의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간과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신문보도에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법익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당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김일성 조문 파동시점에 곧 있을 도의원선거에 영향을 미칠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청구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할 수 있다.

본 현재 결정에서 비방할 목적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라고 하고 있으나 본 사안에서 비방의 목적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유무를 결정하는 요건일 뿐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의 성립요건과는 관계없다. 즉 명예훼손사실이 신문·잡지·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한 경우 비방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고의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적합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있으면 성립되며 이는 미필적 고의로 족하다. 명예훼손의 목적 내지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²³⁾

23) 대법원 1991. 3. 27. 91도156.

만약 피청구인의 보도행위가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형법 제307조 제1항(진실한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가를 현재가 판단했어야 한다. 만약 보도내용이 진실한 사실인 것으로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헌법제21조(언론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적시사실의 진실성과 공공성으로 인하여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도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에는 세부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전체로 보아 진실과 합치하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²⁴⁾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민사판결에서도 명시되었듯이 보도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았고, 증명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으로 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본 결정은 형법 제307조(일반 명예훼손죄), 형법 제309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형법 제310조(개인의 명예보호와 언론출판의 한계)성립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24) 대법원 1958. 9. 26, 4291형상323.

감정 다스리기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도 중재를 요청할 수 있을까? 글쎄, 상상하기 어렵다. 내 자신 중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기분이 좋아서 언론중재를 신청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것이 어떤 중재는 이미 상당히 감정적으로 크게 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언론과 수용자,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 남편과 아내, 친구간 등 모든 인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들은 당장 영원히 헤어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설사 헤어지더라도 손해보고 헤어지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 불가피하게 재삼자의 중재를 필요로 할 때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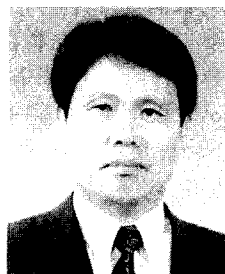
언제인가 사회적으로 지도급에 있는 어떤 여자 분이 언론중재를 신청한 사건을 내가 속한 중재부에서 맡은 적이 있다. 그 분에게 신청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주었더니, 거의 몇 마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감정이 격한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말의 논리가 없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거의 횡설수설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반면에 피신청인인 언론인은 매우 조리(條理) 있게 대응하였다. 그러나 우리 중재위원들은 이미 문서로 제출된 신청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언론인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원만하게 중재합의에 이르도록 유도할 수 있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피신청인, 즉 언론인이 감정이 격해있는 상태도 가끔 있다. 특히 아직 경험이 일천하고, 현장에서 언론의 힘 내지 특권을 한창 누리고 있는 또는 나름대로 사회정의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언론인일수록 피신청인이 된 것 자체에 분개한다. 한 마디로 사회악을 뿌리뽑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데 왜 쓸 데 없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는 식이다.

이런 경우, 중재위원이 신청인의 입장을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면 ‘언론의 기능을 전혀 모르는 소리’라면서 노골적으로 중재위원에게 분개한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언론인이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 특히 신분사 소속일수록, 자기 주장을 조리 있게 펴지 못한다. 만약, 신청인이 변호사라도 대동해서 나오면 백발백중 논리에서 밀린다. 그래서 글쓰는 언론인과 말하는 중재현장과는 너무 다르고, 언론의 높은 콧대에 젖어있는 언론인일수록 격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여 자기변호에 실패한다.

중재현장에서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만 감정이 격해지는 것은 아니다. 나를 포함한 중재위원들도 때로는 부지불식간에 감정에 휘말릴 때가 있다. 특히 나 같이 대학에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젖어있는 사람은 중재현장에서 정말 참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 왜냐하면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훈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령도 어리고,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는 즉각 학생들을 대하는 자세가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말투 자체도 반드시 정중하기 어렵고, 그것을 참으려고 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다.

**“신청인, 피신청인인 언론인, 그리고 중재위원 모두가
통제 가능한 능력의 범위 안에서 기대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야말로 중재현장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



김 학 수

서강대 교수 · 중재위원

감정(emotion)은 과학적으로 말해서 행위결과의 산물이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밟으려고 할 때,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 거는 기대나 목표치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 기대와 목표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돌진한 결과, 그것을 성취하면 행복, 만족, 기쁨의 감정을 맛보지만, 그것에 실패하면 실망, 좌절, 분노 등을 맛본다.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은 폭발하고, 심지어 자살 내지 타살의 경지에 가까운 다음 행위로 발전할 수 있다.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잣대로 삼고 있는 가치 기준들은 분석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감정의 축적물이다. 그 축적물이 사회를 더불어 살아가는 데 매우 바람직한 것이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면 큰 일이다. 예컨대, 질서를 지키면서 기대하는 목표를 성취했을 때 얻는 행복의 감정과 그렇지 못할 때 생기는 분노의 감정 중 어느 것이 더 많이 쌓이느냐에 따라 질서 지키기와 새치기에 대한 가치선호가 달라지는 법이다. 따라서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은 또한 가치관을 사려 깊게 형성하는 것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어떤 기대나 목표를 세울 때 흔히 말해서 현실성이 있도록 해야 한다. 전혀 불가능한 기대나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그 만큼 이미 감정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겸손, 겸허, 마음을 비우는 것이 도(道)를 닦는 데, 즉 감정의 굴곡을 줄이는 데 긴요한 이유가 그 때문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성취하는 데 수반되는 절차나 능력을 얼마나 자신의 통제능력 범위 안에 설정하느냐에 있다. 이것은 곧 우리가 환경변화에, 다시 말해서 운(運)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떻게 되겠지’보다는 ‘어떻게 할 수 있지’를 생각할 때, 그 행위의 결과로 생기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법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재현장에서 어떻게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 해법은 오히려 간단하다. 신청인, 피신청인인 언론인, 그리고 중재위원 모두가 통제 가능한 능력의 범위 안에서 기대나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다. 그것은 바로 ‘상호이해’를 목표로 한 ‘커뮤니케이션활동’이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설득(persuasion)’하려고 하기보다 상대방과 서로 ‘이해(understanding)’하려는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가치(values) 중심보다는 사실(facts)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지고, 그것은 상호이해를 진작시키며, 나아가 중재합의를 이끌어내어 종국적으로 행복한 감정을 생산하는 것이다. 모든 갈등현장을 평화로 이끌 감정 다스리기에 대한 과학적 해법은 이렇게 간단하나, 그것과 동떨어지게 살아온 우리의 행위습관을 타파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아는 것과 실천은 별개의 것이며, 실천을 위해 운동연습처럼 즐기찬 연습이 필요한 법이다. □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제목이나 리드만이 아니라 기사전체를 가지고 판단해야

— 일본 福岡고등재판소 판결 —

福岡의 스모 애호가 단체의 전 사무국장이 朝日신문사를 상대로 300만엔의 손해배상과 사죄광고의 게재를 청구한 명예훼손소송 항고심에서 福岡고등재판소 제3민사부는 1999년 7월 16일 “제목과 리드가 명예를 훼손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 1심의 朝日신문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전 사무국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제가 된 것은 朝日신문 서부본사가 1993년 11월 12일자 조간 지면에 게재한 기사로, “고참 사무국장을 해임 ‘회계 등 운영 엉망’” 등의 제목으로 ‘福岡溜會’의 운영을 둘러싼 내분을 보도했다.

1심에서는 “‘해임’이라고 표현한 제목과 리드는 간결한 표현으로 약간의 과장이 허용되

는 성질을 고려하더라도 허용범위를 넘어 부적절하다.”고 판단, 朝日신문사에 50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이번 판결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신문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대해 “제목과 리드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사전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 독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형성시키는 것이 아닌 한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평가를 가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한 다음 “제목과 리드가 독자에게 본문의 내용을 오인시켰거나 해임의 정당성을 인식시켰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外紙에서)

□

영국 언론과 왕실, 왕실관련 보도에 대한 새로운 보도협약에 합의

PCC는 찰스 황태자가 미러지와 데일리스타지의 해리 왕자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해 제기한 불만을 평결없이 해결하고 동시에 왕실과 신문편집인들이 왕자에 대한 새로운 보도기준에 합의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찰스 황태자가 PCC에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이래로 몇몇 타블로이드지와 왕실간의 관계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미러지는 왕실에서 해리 왕자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자 신문 1면에 항의문을 게재했다. PCC는 미러지의 편집인과 찰스 황태자의 비서인 스티븐 램포트, 찰스황태자를 차례로 면담한 후, 현재의 불만을 해결하고 보다 실질적인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향후 나아갈 방향(The

Way Ahead)"이라는 문건을 발표했다.

다이나나 왕세자비의 사망후 보다 엄격해진 보도실천강령에 따라 어린이들과의 인터뷰나 사진은 부모의 동의 없이 실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비록 무해한 내용이지만 왕자들에 관한 기사가 더 자주 신문에 실리자, 이 문건에서는 이러한 기사가 실천강령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영향이 누적된다는 점은 우려할만한 하다고 지적했다. PCC는 언론과 왕실이 준수해야 할 다음 3가지 규칙을 제안했다.

▶ 14세와 16세의 왕자들이 매주 발행되는 신문의 1면기사에 노출되는 것은 옳지 않다.

▶ 왕자들의 학교생활에 대해 전면적으로 보도를 금지할 수 없으며 신문은 공익에 필요할 경우 때때로 기사를 게재해야 한다.

▶ 편집인들은 왕자들의 학교생활과 정서에

미칠 수 있는 해악을 고려해야 한다.

양측은 왕실에서 왕자들에 대한 진실한 내용의 기사와 사진촬영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그 횟수가 지나치게 적어서는 안된다는 데 동의했다. 비록 윌리엄 왕자의 16세 생일때 인터뷰 기회가 주어지긴 했지만 지난 3년반 동안 이런 기회는 2회에 불과했다.

PCC는 한 신문사가 왕실에 대한 특종을 잡았을 경우 왕실에서 공익을 위해 사실확인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며, 이 경우 더 이상의 확대보도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모든 편집인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PCC는 편집인들이 이러한 종류의 특종기사를 1면에 게재하여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기사화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外紙에서)

□

일본 신문계, 정신병력이 있는 범죄 혐의자의 익명·실명보도를 둘러싸고 논란

1999년 7월 23일에 발생한 '쫄日空'항공기 납치사건 혐의자의 익명, 실명보도문제를 놓고 일본 신문들의 견해가 양분된 현상을 보였다. 다수 신문이 "형사책임능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익명'으로 보도한 데 반해 '산케이(産經)신문사'는 동월 27일자 조간부터 익명보도의 근거가 사라졌다고 실명보도로 방침을 바꿨다.

사고 여객기는 '하네타(羽田)'발 '치도세(千歳)'행 항공편으로, 오전 11시 23분에 이륙한 직후 식칼을 든 무직의 남자가 조종실에 침입했다. 기장을 칼로 죽이고 스스로 조종을 했으나 곧 승무원에게 붙잡혔다.

조사에서 이 남자는 "모의비행 게임을 좋아해 실제로 조종을 해보고 싶었다."고 진술했으며 정신과병원에 입원, 통원한 병력도 있었다.

각 신문은 사건의 첫 보도를 한 23일자 석간에서 이 남자가 자칭한 본명을 보도했으나 그 다음부터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익명으로 바꿨다. '마이니치(毎日)신문사'는 "정신과병원에서의 치료가 계속되고 있는 등 정신장애와 사건과의 관계가 아주 강하게 추정되는 경우에는 '실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는 예외규정을 적용했다. 수사당국에서 형사책임능력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때

는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산케이’는 27일자 조간부터 혐의자를 실명으로 보도했다. ‘미야타(宮田)’ 사회부차장은 “정신과병원에 통원했다는 이유로 일률적으

로 익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의 사례에 따라 대응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外紙에서)

□

소설의 모델이 된 인물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과 출판 금지 판결 내려

— 일본 도쿄지방법재판소 판결 —

‘아쿠타가와상(芥川賞)’ 작가인 유미리 씨의 소설 모델이 되었던 한국인 여성이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어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했다.”고 유씨와 발행사인 新潮社를 상대로 1,500만엔의 손해배상과 소설의 공표금지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도쿄지방법재판소 민사 제38부는 1999년 6월 22일 “소설은 모델인 여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며 사실의 공표는 정신적 고통을 준다.”고 판단, 작품의 공표금지와 130만엔의 배상을 명했다.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소설의 출판금지를 인정한 판결은 처음 있는 일이다.

유씨는 이에 불복, 7월 5일 도쿄고등재판소에 항소했다. 유씨는 월간 ‘新潮’ 1994년 9월호에 데뷔소설 ‘石に泳ぐ魚’를 발표했다. 소설은 원고인 한국인 여성을 모델로 했는데 얼굴에 종양이 있다든가 수술전력, 출신대학, 성장내력, 아버지의 체포전력 등 원고의 특징과 경력을 그대로 기록했다.

‘新潮’ 1995년 12월호에는 ‘表現のエチカ’를 기고, 여성을 ‘K’로 표시한 다음 원고와의 교제계기라든가 소설의 출판증지를 둘러싼 소송의 경과 등을 썼다.

유씨 등은 ① 소설의 모델이 누구인지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다, ② 원고는 저명인사도 아니고 원고를 특정할 수 있는 독자는 한정되어 있다, ③ 소설의 인물은 허구이며 모델이 존재한다고 해도 독자는 모델과 다른 허구의 인물로 인식할 수 있다, ④ 사회의 정당한 관심사로 내용이 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더라도 위법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와 유씨의 교우과정과 소설의 내용으로 비추어보아 “상당한 부분에서 현실의 교우과정에 의거하여 쓰여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등장인물에 원고의 속성이 모두 주어져 있음은 명백하며 원고를 특정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말하고 “소설은 현실의 사실과 허구의 사실이 혼재되어 있다. 원고의 속성을 알고있는 독자는 허구와 현실을 오해할 위험성이 많으며 명예훼손,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얼굴에 종양이 있는 것이라든가 부친이 범죄혐의로 체포됐던 사실의 공표에 대해서는 “통상 공표를 원하지 않는 사실이며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表現のエチカ’의 집필로 인해 “원고를 특정할 수 있는 독자가 확대되고 정신적

고통이 한층 더 증대했다.”고 지적했다.
(外紙에서) □

영국 정부, 청소년 재판보도 제한 범위 완화

신문업계의 강력한 로비에 의해 정부가 “청소년재판 및 형사증거법안(the Youth Justice and Criminal Evidence Bill)”에서 제시했던 보도 제한 조치가 완화되었다.

내무부 장관인 폴 보텔은, 범죄 사건의 증인이나 희생자로서 18세 이하인 청소년의 신원을 언론이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안의 시행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안에서 18세 이하의 범죄 용의자의 신원을 재판 시작 이전에 공개하는 것을 금한 대목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못박았다.

이러한 정부의 양보 조치는 언론계 전반의 광범위한 환영을 받았다. 물론, 몇몇 신문은 문제의 보도 제한 조치가 신문의 경각심 유지를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두고 신문편집인협회 회장인 제프 엘리엇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법안은 좋은 의도로 제정되었으나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사례 중의 하나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나서 이 법안을 제정했다는 점이 문제다. 결국 정부는 언론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여지가 담긴 타협안으로 이 사건을 해결했다. 신문은 이미 어린이의 복지와 관련된 기사에 대해선 특별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도록 규정한 강력한 실천강령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린 정당한 명분 없이 추가적인 법적 제한을 가하려는 시도에 대해 항상

주의해야만 한다.”

보텔 장관은 자신이 직접 관련규정 초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이상 미성년자인 증인이나 범죄피해자의 신원 보도에 대한 제한 조치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결정은 하원과 상원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의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책임 있고 합법적인 뉴스보도에 대해 제한을 가하진 못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PCC가 어린이 보호를 위해 실천강령 상의 어린이 보호 관련 규정의 강화를 검토 중에 있다는 사실이 정부를 기쁘게 했다고 밝혔다.

신문편집인협회와 신문협회, 전국발행 일간지 등은 정부 법안에 담긴 보도제한 조치를 반대하는 강력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그들은 보도제한 조치로 인해 청소년이 연루된 각종 사고들과 범죄사건의 일상적 보도마저 왜곡될 것이며, 편집인은 형사고발의 위협에 내몰리게 될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신문협회 법률팀장이자 신문편집인협회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라사이어씨는 “정부가 우리 의견에 귀기울였다는 사실에 기쁘다. 이런 제한조치가 시행됐더라면 청소년·어린이와 관련한 일상적 사건보도마저 불가능해졌을 것이다.”고 말했다.

(外紙에서) □

PCC, 공인관련 보도에 대해 강경한 입장 취하라는 정부 압력에 직면

영국 PCC는 공인을 언론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는데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라는 정부 장관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버킹검궁이 왕자의 약혼녀인 소피 라이스존스의 상반신 노출 사진을 게재한 선(The Sun)지를 상대로 제기한 불만에 대해 PCC가 내린 결정의 수위로 보서는 정부의 압력으로부터 충분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 장관들은 PCC가 사생활을 침해받은 공인을 대신하여 자체적으로 조사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PCC는 부유하고 유명한 불만신청인을 위한 시스템과 일반적인 불만신청인을 위한 시스템을 서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 염려한다. PCC 대변인은 PCC가 적절하게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언론통제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왕실은 선지에 실린 사진을 '계획적인 잔인함'이라고 설명했다. PCC 위원장인 웨이크햄은 신문이 실천강령을 위반하고 사후에 사과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선지가 사진을 게재한 다음날 라이스존스에게 공개 사과했지만 이미 저지른 중대한 실수에 대해 변명이 될 수 없을 뿐더러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시키지도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진을 게재하기로 결정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러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위원장은 모든 기사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이거나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한 실천강령을 편집인의 계약(editors' contracts)에 삽입했음에도, 선지의 편

집장은 아무런 주저없이 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위원장은 선지의 발행인과 경영진과 나눴던 대화내용은 공개하길 거부했다.

위원장은 신문과 잡지의 자율규제를 강조하면서 이번 사건은 어떤 프라이버시 관련법으로도 사전에 방지할 수 없었던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선지가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왕실이 불만을 제기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올바른 방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공인과 일반인들은 불만이 있을 경우 이번 사건을 전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지의 편집인인 데이비드 엘런드가 에드워드 왕자의 약혼녀를 곤혹스럽게 한 것에 대해 한 페이지 분량의 사과문을 게재한 후 PCC는 성명을 발표하여 일주일에 걸친 언론과 여론의 비난을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뉴스 인터내셔널의 회장이자 PCC 산하 보도실천강령위원회(Code Committee)의 위원장인 레스 힌튼이 사진게재를 사전에 허가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데일리 텔레그래프지의 편집인이자 실천강령위원회 위원인 찰스 무어는 힌튼에게 서한을 보내 이 사진을 게재한 것이 실천강령을 위반했다고 믿는지, 그리고 게재를 허가했는지 여부를 질문했다. 이에 힌튼은 PCC에서 불만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답변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外紙에서)

□

미기자협회(SPJ), 언론자유 관련 소송 지원키로

한바탕 내부논쟁을 거친 끝에 미기자협회(the 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는 언론자유와 관련한 소송을 준비 중인 라스베가스의 한 여기자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 기자는 자신의 취재를 방해하고 자신의 상관을 위협함으로써 언론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라스베가스 지방보안관을 고소하였다.

지난 4월 17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제2차 정기회의에서 협회 임원진은 라스베가스 선지의 전직기자였던 캐시 스콧에게 1,000달러의 법률변호기금을 지원키로 했던 산하위원회의 결정을 승인하였다. “협회의 이번 결정은 나의 소송에 대한 지지이며, 단순히 돈을 지원했다는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스콧의 얘기다.

지난 해 9월 스콧 기자는 제리 켈러 보안관과 그의 관할하에 있는 라스베가스 경찰국을 상대로 연방법 차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라스베가스 경찰국이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된 언론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정헌법 제14조가 보장하고 있는 정부정보에 대한 정당한 접근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녀는 보안관과 경찰국이 그녀에 대한 음해공작을 공모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정부 정보에 대한 자신의 접근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했다.

Las Vegas Review Journal의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소장에서 “켈러 보안관이 경찰국 직원에게 스콧 기자의 기사를 단어 하나 하나까지 철저히 검토하여 잘못된 점을 발견토록 지시했으며 이를 근거로 ‘라스베가스 선’지를 상대로 그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빌미를 찾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

국의 행위로 인해 스콧 기자는 극심한 근심을 겪었으며 건강상의 문제까지 발생하였다고 주장했다. 경찰 간부들은 이러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범죄사건을 다룬 책 “The Killing of Tupac Shakur”의 저자이기도 한 스콧은 소송을 제기한 일주일 후에 선지로부터 해고당했다. 선지는 그녀가 휴가 후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근무태만을 이유로 그녀를 해고했다. 스콧은 편향된 기자라는 이유로 자신이 해고됐다고 말한다. 스콧은 지금 자유기고가로 활동하고 있다.

13,500명의 회원을 가진 미기자협회에는 회원들이 정부에 대한 공격접근(public access)과 관련한 소송에 연루되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법률변호기금이 있다. 협회 사무총장인 제임스 그레이는 적립된 기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선 밝히길 거부했다.

이 협회의 네바다주 책임자인 마크 스카프는 보통 일년에 8건 내지 10건의 기금지원 요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해의 경우 협회는 11건의 재판에 9천달러를 지원했다고 협회 웹사이트(www.spj.org)에서 밝히고 있다. 협회는 기금 지원을 관장하는 위원회의 3인 위원 중 2인 이상이 찬성할 경우 1,000달러 내외의 기금을 지원토록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표결 끝에 1,000달러를 지원토록 결정했으나 몇몇 협회 지도부의 반대에 부딪쳐 기금 집행은 수주일 동안 지연됐으며, 다른 위원회와 협회 이사진 전체회의가 열려 이 문제를 토의했다고 스카프는 말한다. 이사회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기금 지원이 결정됐음을 인정하고 1,000달러를 지원토록 결정했다.

(外紙에서)



미국기자협회(SPJ), 법원의 사전제한 조치에 전면 대응

녹스빌에서 발행되는 ‘뉴스센티넬’지는 테네시주의 출판물 사전제한 조치(prior restraint)와 관련한 소송을 주항소법원에 제기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살인사건의 피고인에 관해 법정 변호인단(court-appointed attorneys)이 제출한 소장의 내용을 자세히 다룬 신문기사가 한 사실심판사에 의해 출판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사실심판사는 기사 게재가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할 피고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아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뉴스 센티넬’지는 판사의 명령과 상관없이 제1면에 문제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미국기자협회(the 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와 이 협회의 중부테네시주 지부, 테네시주 신문협회 등은 ‘언론 자유’와 ‘공정 재판’이 서로 뒤엉켜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참고인 진술(an amicus curiae brief)’을 차정하였다. 이들 단체는 참고인 진술을 통해, ‘뉴스센티넬’지는 판사의 명령에 대한 항변을 통해, 판사의 명령이 테네시주 헌법과 연방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존 노스 기자는 신문을 밝힐 수 없는 정보원으로부터 획득한 비공개 기록에 근거해 문제의 기사를 작성하였다. 피고측 변호인단은 자신들이 작성한 소장의 세세한 부분까지 기사화될 경우 검사측이 자신들의 변호 전략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불평해 왔다. 전통적으로 테네시주에선 법원에 의해 선임된 변호인의 소장은 검사측이 알지 못하도록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기자협회를 비롯한 유관단체들은 참고인 진술에서, “결정의 내용만큼 결정이 내려지는 방식과 절차도 중요하다.”는 것이 자신들의

입장이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사실심재판에선, 상호 경합하는 처지의 수정헌법 제1조와 제6조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판정을 통해 사전제한 조치를 허용하기도 하고 금지하기도 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美연방대법원이 사전제한 조치와 관련한 재판에서 이러한 판정 결과를 적용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출판에 대한 사전제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부당하게 추정되며, 이러한 부당성은 출판으로 인해 국가안보 등의 중대한 이익이 분명하고도 불가피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美연방대법원의 판결이었다.”

미국기자협회를 비롯한 유관단체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에 개입하게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가 이번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재판부로 하여금 수정헌법 제1조와 제6조에 대한 이익비교 결정을 철회하고,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미연방대법원의 해석과 테네시주 헌법 제1장 제19조에 분명히 명시된 사전제한 조치의 원칙적 부당성을 수용토록 설득하기 위해서다.”

존 노스의 기사를 게재한 이후 ‘뉴스센티넬’지는 이 사건 재판과 관련한 소장을 몇 달 전부터 확보하고 있었지만, 그 자료에 근거하여 기사를 작성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정식으로 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존 노스 기자는 소장의 상세한 내용을 다룬 10월 25일자 일요일판 1면 기사를 준비하면서 피고인 변호인단 중의 한 명과 10월말경 만났으며, 당시 이 변호사는 기사 작성을 중지시키려 했다. 당시 바움가트너 판사는 도시 외부에 있

다가 연락이 닿았다. 그는 허스키 변호인단과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협상을 시도한 후, 신문사에 자발적으로 기사 게재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10월 24일 토요일의 일이었다. ‘뉴스센티넬’지는 이 요청을 거부하였고, 담당 판사는 해당 기사의 게재 금지 명령을 편집국으로 전송했다.

내쉬빌로 돌아온 바움가트너 판사는 청문회

를 소집함과 동시에, 허스키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뉴스센티넬’지가 변호인단의 소장에 근거한 기사 작성을 더 이상 못하도록 하는 임시 명령장(a temporary injunction)을 발부하였다. ‘뉴스센티넬’지는 허스키 재판에 관한 기사를 계속 게재하였으나, 첫 기사 이후엔 더 이상 소장의 상세한 내용을 다루진 않았다.

(外紙에서)

□

일본 최고재판소, 외설성을 이유로 한 세관의 수입금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

남성의 나체나 성기 등을 피사체로 한 충격적인 사진으로 주목을 받은 미국의 유명 사진가 고 ‘로버트 메이플소프’ 씨의 사진집을 일본의 도쿄 세관이 외설성을 이유로 수입금지 처분한 것은 검열을 금지한 헌법 21조에 위반되는 것인가? 표현의 자유와 외설을 둘러싼 문제로 주목되었던 상고심 판결이 1999년 2월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에서 있었다.

재판부는 “세관검사는 검열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진집은 성기 그 자체를 강조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이 정한 ‘풍속을 해치는 서적, 도화’ 등에 해당되어 도쿄세관의 조치는 시인할 수 있다.”는 1, 2심 판결을 지지, 사진집을 수입하려는 회사 사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판결은 재판관 5명 중 3명의 다수 의견으로 세관검사에 있어서의 외설성의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園部逸夫 재판관은 다수 의견을 지지했으나 보충의견으로 “외설성이 있는 것이라도 미술관에 전시되었다든가 카탈로그 등이 공공연히 판매되는 경우는 공

권력에 의한 개입은 인정될 수 없다.”고 전제, 사진집이 미국의 휘트니 미술관에서 개최되었던 메이플소프 회고전의 카탈로그이며 개인의 소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면 수입규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개인의 소지가 목적인지, 판매를 목적으로 한 수입인지의 판단이 어려운 세관검사의 현 상황에서는 수입목적의 여하에 관계없이 현장에서 사전에 저지하는 것은 부득이한 조치”라고 인정했다.

다른 두 재판관은 세관검사는 검열을 금지한 헌법 21조에는 위반되지 않으며 외설표현물의 수입규제도 관세정율법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도쿄세관이 사진집을 ‘풍속에 해하는 서적, 도화’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수입금지를 한 것은 “세관검사에 있어서 외설성의 판단과 한계에 대해 법률해석의 적용을 잘못하고 있으며 위법”이라는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外紙에서)

□

영국 PCC, 당사자가 촬영되지 않은 사적 공간의 무단촬영도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

영국PCC는 프랑스 남부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밀회를 즐기던 데이비드 베컴(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의 프로축구선수)과 4인조 여성그룹 스파이스 걸즈의 멤버인 빅토리아 아담스를 망원렌즈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이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엘튼존 경의 불만을 수용하였다.

이례적으로 PCC는 존경이 사진촬영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기한 불만을 검토하였다. 그는 ‘데일리스타’지와 ‘스포츠’지가 지난 여름 프랑스 남부의 휴양도시 니스에 있는 자신의 집 수영장에서 휴식을 즐기던 베컴과 아담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재하자 즉각 불만을 제기했다.

엘튼존 경의 소송 대리를 맡은 에버세츠사는, PCC도 처음엔 존경의 사진이 게재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의 불만제기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밝혔다. “과거에 PCC가 사적인 공간의 무단 촬영과 관련한 불만을 검토했었던 사례는 있지만, 촬영되지 않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를 다룬 적은 없었다. 그래서, 약 1년 전에 보도실천강령이 수정되어 집이라는 사적 공간에 대한 침해도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었음을 PCC 측에 강하게 제시하였다.”

에버세츠사는, 수정된 보도실천강령에 의해 개인 주택의 사생활이 보호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그 집의 손님의 사생활도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문제의 사진은 비밀리에, 존경의 저택 담벼락에 사다리를 세워 촬영된 것이라고 에버세츠사는 주장했다.

PCC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존경의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두 신문에 대한 존경의 불만 청구를 받아들였다. 두 신문의 사진 보도가 보도실천강령의 사생활 보호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간주한 것이다.

‘데일리스타’지와 ‘스포츠’지는, 사진촬영 대행업체가 문제의 사진들을 제공했으며, 대행업자들은 존경의 저택과 인접한 도로 상에서 사진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데일리스타’지 측은 사진촬영 대상자들이 사진의 신문 게재에 동의하였다고 믿고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존경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外紙에서)

□

자신이 취재한 자료를 가지고 퇴직한 기사를 자료절취혐의로 고소한 미국의 한 언론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 물어

1997년 12월 18일, 잠에서 깨어난 전직 신문 기자 크롭스키는 자신의 삶이 과거로 되돌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사직서를

내기 일주일 전까지 그녀는 콜로라도주의 일간신문인 ‘데일리카메라’지에서 “존벤티 램지 살인사건” 취재팀장으로만 1년간 일했었다.

오랜 취재기간과 설 새 없는 기사작성 요청으로 인해 그녀는 탈진상태에 이르렀다. 400시간이 넘는 연장근무에 건강을 해쳤으며, 정신착란증에 걸린 지역주민에 의해 충격까지 당하였다. 모두 “존베넷 사건”의 담당기자였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다. 이 사건은 그녀의 첫 취재였다.

하지만 1997년 12월 18일 크롭스키는 자신이 콜로라도 州都인 덴버시의 한 라디오 토크쇼에서 애깃거리로 등장한 것을 알게 되었다. 하루 전날, 그녀에게 통보하지도 않은 채 ‘데일리카메라’지는 “존베넷 사건” 관련자료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그녀를 상대로 4만5천 달러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당일 자 지방면 머릿기사에서 그녀는 도둑으로 몰려 있었다. 다음 날 크롭스키는 변호사를 선임, 명예훼손과 극악한 행위(outrageous conduct), 허위사실 유포(false light) 등의 이유로 신문을 발행하는 보울더사를 상대로 맞고소를 했다.

분명 ‘데일리카메라’지가 먼저 선택한 싸움이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만두기를 바란 쪽도 ‘데일리카메라’지측이었다. 하지만 크롭스키는 끝까지 소송을 밀고 나갔으며, 8일간의 법정 증언을 마친 1999년 3월 24일 마침내 그녀는 승리하였다. 배심원들은 크롭스키에게 11만5천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토록 ‘데일리카메라’지에 명령하였다.

크롭스키를 상대로 ‘데일리카메라’지가 벌인 전투는 “존베넷 사건”을 둘러싸고 가열되었던 사회적 소동이 초래한 촌극 중의 하나였다. 배심원단이 내린 평결은, 보도를 둘러싼 경쟁이 가열될 경우 그 열기가 어떤 식으로 지면 밖으로 튀어나가 조그만 보도국 내부와 기자 개인까지 집어삼키게 되는지를 시사해주었다.

사건은 1997년 12월 11일부터 시작되었다. ‘데일리카메라’지의 편집장은 크롭스키가 전날 밤 책상을 정리한 뒤 그녀가 갖고 있던 “존

베넷 사건” 관련자료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다. 발행인 겸 편집인인 코넬트씨는 조만간 닥쳐올 “존베넷 사건 1주년” 기념 특집기사에 그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원칙에 따라 크롭스키를 상대로 한 소송을 결정하였다. 코넬트는 법정에서의 증언 도중에도 여러 번 “그녀는 관련자료를 훔쳤습니다.”라고 외쳐댔다.

크롭스키에 대한 코넬트의 법적 공세는 중죄에 해당하는 절도죄에다 사유재산 반환소송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사라진 문서들은 1만5천 달러의 가치를 지닌다고 코넬트는 소장에서 주장했으며, 관련법은 최대 세 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크롭스키는 사라진 자료의 대부분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서의 사본에 불과하였으며, 자기 기사의 진실성이 도전 받을 경우에 대비해 가져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은 항상 편집장의 요구에 대비해 자료의 사본을 준비했었고, 사직하기 전날의 번잡한 마감시간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책상을 정리한 것으로만 봐도 결코 관련자료를 훔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데일리카메라’지는 12월 18일자 신문에 “법원, 전직 기자에 기사 게재 사전제한 명령을 발부하다.”라는 제하로 자사의 소송제기 관련 기사를 내보냈다. 크롭스키는 ‘데일리카메라’지가 되찾고자 하는 자료를 이용하거나 판매하거나 파기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주 후 담당판사는 크롭스키에게 그녀가 가진 관련자료의 사본을 제출토록 명령했다. 1998년 4월 ‘데일리카메라’지는 담당판사에게 자사가 제기한 소송을 취하시킬 것을 요청하였으나 크롭스키가 이를 저지하고 나섰다. 그렇게 될 경우 그녀는 명예훼손을 비롯한 다른 소송사유를 잃기 때문이었다. 판사는 크롭스키의 요청에 동의하였으며, 그녀의 소송사유는 1999년 3월 15일의 판결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소송 중간에 담당판사는 ‘데일리카메라’지

가 제기한 크롭스키의 절도혐의를 기각시켜 ‘데일리카메라’지를 상대로 그녀가 제기한 문 제점만을 배심원단의 평결에 맡겼다. 한편, 담 당판사는 전례가 많지 않은 언론법 상의 문제 도 해결하였다. 크롭스키가 공적 인물에 속한 다고 주장함으로써 명예훼손에 따른 처벌을 경감시키려는 ‘데일리카메라’지의 시도를 무 산시킨 것이다. 자료 반환과 관련한 부분은 재 판 이후의 결정사항으로 남겨두었는데, 이는 “누가 크롭스키의 사건 관련자료를 가지고 있 는가”라는 법률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문제에 대응한 적절한 판결이었다.

가장 격렬한 논쟁은 신문사가 가진 보도상 의 특권을 두고 벌어졌다. ‘데일리카메라’지의 변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보도가 공정보도 특권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 롱스키의 변호인은 ‘데일리카메라’지가 소송 의 원고이자 보도자의 입장에 섬으로써 관련 특권을 상실했다고 반박했다. ‘데일리카메라’ 지에 보도상의 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정과 신문지상을 통해 아무런 거리낌없이 자사의 견해를 밝힐 수 있도록 허용함을 의미하는데, 이럴 경우 ‘데일리카메라’지는 모든 명예훼손 혐의로부터 면책된다는 것이다.

‘데일리카메라’지가 면책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진실’ 밖에 없다고 크롭스키의 변호인 은 주장했다. 담당판사는 크롭스키측의 주장 에 동의했으며, 보도특권과 관련한 평결은 제 외하도록 배심원단에 요청했다.

배심원들은 ‘데일리카메라’지의 기사가 크 롱스키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여, 4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토록 평결했으며, 극악 한 행위와 허위사실 유포 부문에 대해서도 3만 달러를 배상토록 판결했다. ‘데일리카메라’지 의 코네티컷 발행인은 평결에 매우 실망한 나며 지, 아직도 담당판사가 수정헌법 제1조를 이해 하지 못함이 분명하다고 믿고 있다. ‘데일리카 메라’지의 항소에 따른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크롭스키의 변호인은, ‘데일리카메라’지가 보 여준 일련의 행동들이 크롭스키의 명예를 훼손 하고 모든 언론이 탐내는 “존베넷 사건” 관련정 보가 다른 경쟁지에 실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전 술적 계획의 일환이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여섯 명의 배심원들은 ‘데일리카메라’지가 크롭스키로부터 받아내려 했던 4만5천 달러를 징벌적 손해배상금(punitive damages)으로 추 가하여 부과했다.

(外紙에서)

□

사실 확인취재에 소홀한 日 언론사에게 손해배상 판결

‘오렌지’공제조합의 사기사건을 둘러싸고 ‘아사히신문’기자가 수사정보를 동조합에 누 설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한 ‘週刊現代’의 기사 와 광고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아사히

신문사’가 ‘週刊現代’의 발행회사인 講談社를 상대로 5천만엔(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과 사 죄광고의 게재를 청구한 소송에서 도쿄지방법 판소 민사 제15부는 1999년 2월 26일, “기사와

광고는 ‘아사히신문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판시, ‘講談社’에 3백만엔(3천만원 상당)의 지급을 명령했다.

문제가 된 것은 ‘週刊現代’의 1997년 3월 8일호 『‘양식’을 팔고있는 대신문에 추문이 속출 “‘아사히신문’이 ‘오렌지’공제사건의 수사 정보를 누설”의혹을 주궁』이라는 제목으로 강제수사의 일시가 ‘아사히신문’ 기사를 통해 누설되었다는 등의 기사를 게재했다. 광고는 수도권권의 국철과 사철의 차내에 게시되었다.

재판부는 “경시청이 기자에 대해 혐의를 갖고 있고,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가 극히 강하다는 인상을 독자에게 주고 있다.”는 점에서 “보도기관으로서의 ‘아사히신문사’의 사회적 신용을 실추시켰음은 명백하며 기사와 광고는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아사히신문’기자가 수사정보를 누설한 사실이나 기사게재 당시에 의혹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경시청 관계자나 변호사에게 입증취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의 한 시의회의원이 홋카이도신문

사의 기사로 인해 정치가로서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동 신문사를 상대로 5백만엔의 손해배상과 사죄광고 게재를 청구한 소송에서 삿포로 지방재판소 민사1부는 “기사는 의원으로서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판시, 홋카이도신문사에게 2백만엔 지불을 명했다.

문제가 된 기사는 1996년 6월 13일자 기사로 주민들의 반대진정이 잇따르고 있는 빠징코점의 건설계획을 둘러싸고 시의회 의원인 원고가 건설업자에게 금전적 해결을 제안한 내부자료의 존재가 밝혀졌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기사는 빠징코점의 건설에 반대하는 원고가 건설업자에게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건설에 협력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가 실제로 금전적 해결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신문사는 이러한 추론을 입증할 취재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홋카이도신문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外紙에서)

□

美, 취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유아포르노 수집은 유죄

미국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은 1993년 3월 8일, 인터넷으로 유아포르노를 수집, 타인에게 유포한 죄로 미 공공라디오 방송국의 프로듀서 랠리마슈즈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 벌금 4천달러를 선고했다.

판결에 의하면 랠리마슈즈 씨는 워싱턴의 라디오 방송국 WTOP사에 근무하고 있었던 1995년 인터넷의 보급으로 유아 포르노 입수가 용이해졌다는 기사를 작성하면서 취재상의 필요에 따라 자택 컴퓨터로 유아포르노를 수

집, 취재대상자에게 전송했다. 랠리마슈즈 씨는 끝까지 취재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범의를 부정했으나 검찰측은 피고의 행동은 마약사건과 관련한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실제로 마약을 소유, 밀매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1982년 이후 유아포르노의 수집, 유포가 비합법화 되어 있다.

(外紙에서)

□

일본 경찰, 수사목적으로 기자가 입수한 자료 압수

常陽은행(본점-水戸市)에 대한 공갈미수 사건을 둘러싸고 茨城縣警과 上浦경찰서는 1999년 7월 16일 '도쿄신문' 水戸지국을 강제 수색, 관련 보도자료를 압수했다.

체포된 회사사장 酒寄久夫 혐의자가 '도쿄신문' 기자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악용하여 공갈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도쿄신문'측은 "정보원의 비극은 보도의 대원칙이며 공권력의 행사는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범행에 사용된 자료는 常陽은행의 거액거래선 리스트로, 99년 6월 상순 '도쿄신문' 水戸지국에 익명의 정보제공자로부터 우송되었다.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지방의 사정에 밝은 酒寄사장에게서 취재를 하고 그 때 리스트의 사본을 넘겨주었는데 이것이 공갈의 자료로 악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酒寄혐의

자는 6월 26일에 체포되었다.

縣警은 리스트의 원본을 임의제출 하도록 요구했으나 '도쿄신문'이 ① 입건에 필요한 증거는 충분히 갖춰져 있다 ② 우송한 인물의 색출 등 공갈미수 이외의 수사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였기 때문에 강제수색으로 압수되었다. 준항고는 하지 않았다.

수사단계에서의 보도자료 강제압수로는, 1998년 7월 '中日신문' 岐阜총국이 녹음테이프를, 1988년과 90년에는 '日本텔레비'와 TBS가 각각 비디오테이프를 압수당했었다. '日本텔레비전'과 TBS는 준항고 했으나 최고재판소는 "적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취재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약을 받는 것도 부득이하다."고 준항고를 각각 기각한 바 있다.

(外紙에서)

□

취재목적으로 범 집행과정에 동반한 언론, 사생활 침해에 주의해야

-미 대법원, 현장 동행 취재관행에 잇단 철회가해

美연방대법원은 연방기관 직원이 몬타나에 거주하는 한 부부의 목장을 수색하는 과정을 CNN의 카메라기자가 촬영한 사건에 대해 이 부부가 해당 방송사를 고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CNN은 이 부부가 독수리를 죽인 혐의에 대한 연방어류·야생동물관리국(U.S. Fish and Wildlife Service)의 수색활동에 자사의 기자가 동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

는지에 대해 항소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연방대법원의 이런 결정은 언론의 현장동행 취재(ride-alongs) 관행이 사생활 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배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는 지 일주일 만에 내려졌다. 이번 결정은 법을 집행하는 관리가 체포 또는 수색활동에 기자나 카메라 기자를 동행시켜

개인의 거주지역에 들어가도록 허용한다면 고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언론인은 법집행 현장에 동행할 수는 있지만 당시 진행되는 상황을 증거로 남기려는 목적으로 개인의 거주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사건과 관련한 결정에서는 언론의 책임문제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몬타나 사건은 1993년에 연방기관 직원이 버거부부의 목장을 불시에 수색하면서 발생했는데, 이때 이용된 정부기관 차량의 후드에 CNN의 소형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었고 연방기관 직원은 CNN의 마이크를 지니고 있었다. CNN직원은 수색 과정의 일부를 녹화했다. CNN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방송사가 사생활 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4조

를 위반한 것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불법적으로 확보한 비디오 필름과 녹음내용의 추가 방송을 금지시켰다.

유죄판결이 내려진 후 CNN은 조사과정 중 일부를 방송했고 버거부부는 CNN과 연방기관 직원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한 연방판사는 이 소송을 기각시켰으나, 항소법원은 이 문제를 다시금 검토하여 원고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항소법원 측은 CNN이 자사의 환경 프로그램에 이 필름을 삽입하여 방송해도 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연방기관 측과 사전에 작성했다는 점에서, 연방기관과 CNN의 불시 수색을 합동 작전(joint enterprise)이라 불렀다.

(外紙에서)

□

일본 최고재판소,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 知的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판결전문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기로

일본 최고재판소는 1999년 7월 5일부터 인터넷으로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판결전문을 공개하고 있다.

전국의 지방재판소와 고등재판소의 판결이 대상이며 도쿄와 오사카에서 언도된 재판은 모두 다음날에, 그 밖의 하급심판결은 매스컴에 보도된 관심이 높은 것을 게재한다. 프라이버시 보호가 필요한 것이라든가 열람이 제한된 것은 제외한다.

최고재판소는 공개이유에 대해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은 세계적으로 높아가고 있고 소송의 판결을 한시라도 빨리 알고싶다는 요망은 강하다. 특히 첨단기술에 관한 소송의 판결은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있

어서도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外紙에서)

□

사이비언론 신고

건전한 언론문화 정착을
위하여 사이비 언론을
신고합시다

문화관광부
사이비언론 신고센터

Tel : 734-4242
www. mct. go. kr

言論仲裁申請事例

本 事例은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權益을 위해 公
表치 마시기 바라며, 만약 인용할 때는 假住所・假名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編輯者 註

신청인들이 마산시 개항 100주년기념 사진공모전에 남의 작품을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기재, 출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99경남중재9

청 구 명: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1. 전 강 용

2. 김 승 권

피신청인: 경남도민일보

중 재 부: 경남중재부

접 수 일: 1999. 6. 21.

처리결과: 합 의

보도내용

경남도민일보: 『마산시 개항 100주년 기념 사진
공모전, 남의 작품으로 버젓이 수
상』 제하의 기사(1999년 6월 16
일자 1면)

내 용: (전략)

사진작가협회 마산지부(지부장 박용덕)는 지
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마산시로부터 3,
200만원의 예산지원을 받아 개항 100주년 마산
발전상을 주제로 한 작품을 공모했다.

마산지부는 이에 따라 지난 3월 27일 출품된 400
여 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금상과 은상, 동상, 가작,
입선 등 모두 111점의 입상작을 선발하고, 지난달

마산 올림픽 국민생활관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그러나 이들 입상작 가운데 경남신문 사진부
기자로 재직 중인 전강용 씨(33)가 출품한〈4·19
합동미사 1969〉와 〈서성동 분수로타리 개통시절
(1970)〉, 〈창신공고 자매결연 차전놀이(1970)〉
등의 경우 작가의 나이(66년생)로 보아 3~4세
때 촬영한 셈이어서 신뢰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역시 같은 회사 기자로 재직 중인 김승권 씨
(30)의 〈KBS 노래자랑 인파(1970)〉와 〈대한유
리 영남새마을공장 준공(1978)〉, 〈경남종합체육
관 기공식(1979)〉도 작가가 1세 또는 10세 때 촬
영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정환 작 〈산호매립지의 모습〉,
〈양덕동 택지조성 전〉, 〈허허벌판(석전동, 합성
동 개발 전)〉 등 이씨가 출품한 7점의 작품은 하
나같이 촬영연대가 누락돼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작품에는 모두 스스로 촬영한
것처럼 ‘○○○작’으로 기입돼 있으며, 전씨와 김
씨의 작품이 각각 5점, 이씨의 작품 7점이 입상작
으로 선정됐다.

이에 대해 박용덕 사협 마산지부장은 “이번 공
모전은 사진의 작품성보다 역사적 가치에 더 중
점을 두고 심사를 했기 때문에 작가의 진의여부

는 별로 따지지 않았다”면서 “심사를 마친 후 작가의 나이와 촬영연대가 맞지 않는다는 의문이 제기돼 논란을 빚기도 했으나 작품의 사료적 가치를 고려해 그냥 넘어갔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전강용, 김승권으로서 경남도민일보 6월 16일자 1면 『마산시 개항 100주년 기념 사진 공모전, 남의작품으로 버젓이 수상』 제하의 기사에 대해 중재를 신청한다.

이 기사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남도민일보측이 공모전의 개최 취지와 개최요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보이다.

이번 공모전은 마산 개항 100년의 역사를 조명하고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기록 사진이 주 취지로 옛날과 현재의 도시모습, 문화유적, 마산의 발전상 등 기록사진은 모두 해당된다고 공모요강의 작품내용에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응모자격에도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원판 필름 소유자는 출품이 가능토록 했다.

명칭은 공모전이나 일반적인 공모전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고, 마산의 역사적 사진들을 시민들에게 널리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출품요강은 작품제목과 촬영장소, 촬영날짜, 원판필름 소유 여부, 주소, 성명 등을 사진 뒷면에 기재해야 한다고 돼 있을 뿐 출품자 본인이 촬영, 출품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다.

요강의 전체 맥락은 기록사진의 특성상 원판 여부만 확인되면 출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협마산지부 정기총회에서도 이같은 요강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입상작 절반 이상 두 작가 독차지”라고 했으나 전, 김기자의 작품은 모두 10개로 전체 111개 입상작에 비하면 엄청난 과장허위 보도이다. 피신청인이 보도한 이모 씨 7점을 감안하더라도 17점에 불과하다.

특히 전기자 1점(만날제례, 96년)과 김기자 2점(발전하는 마산, 만날제 줄이은 시민, 이상 97년) 등 3점은 두 기자가 실제 촬영한 것으로 이 사진들까지 모두 남의 것으로 싸잡아 보도했다.

기자에게 있어서 윤리와 도덕성은 생명과도 같

은 것인데 피신청인은 두 기자를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기자로 내몰아 기자의 품위를 고의적으로 손상시켰으며, 기자생활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그리고 53년 전통의 소속 신문사에도 엄청난 누를 끼쳤으며, 가족들에게도 유·무형의 큰 피해를 입혔다.

이에 피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요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 제목 : 『개항사진공모전』 기사 사과드립니다

● 내용 : 경남도민일보 6월 16일자 1면 『마산시 개항 100주년 기념 사진 공모전, 남의작품으로 버젓이 수상』 제하의 기사에서 “경남신문 사진부 전강용(33), 김승권(30) 두 기자가 남의 작품을 출품해 입상했다”라는 오지로 보도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바로잡습니다. 사실 확인결과 개항100주년 사진 공모전은 원판 필름만 있으면 실제 촬영자가 아니더라도 출품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소재목으로 “입상작 절반 이상 두 작가 독차지”라고 보도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 확인결과 입상작 총 111점 가운데 두 기자가 입상한 작품은 10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이들의 작품에는 모두 스스로 촬영한 것처럼 ○○○작으로 기입돼 있으며”라고 보도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 확인결과 출품사진에는 출품자의 성명 등만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라고 바로잡습니다.

경남도민일보는 이같은 보도에 따라 경남신문 전강용, 김승권 두 기자가 입은 명예적 손상과 정신적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아울러 해당 경남신문사측에도 사과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목 : 중재합의서

● 내용 : 본보는 99년 6월 16일 1면에 『마산시 개항 100주년 기념 사진 공모전, 남의작품으로 버젓이 수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경남신

문 사진부에 재직 중인 전강용, 김승권 두 기자가 남의 작품을 자신의 것인 양 출품해 수상했다는 오지로 보도한 바 있다.

본보는 위 공모전의 응모요강을 토대로 취재하였으나 응모요강은 본인 작품만 출품할 수 있다거나 제3자의 작품도 출품할 수 있다고 해석할 소지가 있어서, 본보의 위 기사는 행사주최측의 출품대상작품에 대한 다소 불분명한 응모요강에 기인한 것이었다.

한편 보도는 위 기사에서 공모전에서는 두 기자가 전체 입상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남모, 김모 두 출품자가 전체 입상작 13점 가운데 7점을 차지한 것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편집과정에서 본문내용이 삭

제되면서 생긴 실수였다.

본보는 이번 기사와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전강용, 김승권 기자 및 경남신문사에 본의 아니게 누를 끼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1999. 7. 3.까지 경남도민일보 14면에 2단 크기로 보도하되 제목활자는 중재대상기사의 제목 중 『입상작 절반이상 두 작가 독차지』과 같은 크기의 활자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남도민일보 : 『중재합의서』 제하의 기사(1999년 7월 3일자 14면)

내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과의 일상적인 전화통화를 마치고 인터뷰를 한 것처럼 보도하면서 그 내용을 왜곡해 명예가 훼손됐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99서울중재 209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박 인 주

피신청인 : 일요서울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1999. 6. 22.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일요서울 : 『‘김태정 유임’ 여론조사 월드리서치 사장 인터뷰』 제하의 기사(1999년 6월 27일자 8~9면)

내 용 : (전략)

청와대가 문제의 여론조사를 의뢰한 날은 김대통령이 외국 순방 중이던 지난 달 28일 ‘고급 옷로비 의혹’으로 국민 여론이 비등하던 시점이었다. 여론조사를 의뢰했던 소속 부서는 정책기획수석실 내 국정홍보조사국. 의뢰를 맡은 곳은 ‘월드리서치’라는 여론조사 전문 기관이었다. ‘월드리서치’는 청와대로부터 의뢰를 받은 이틀 뒤인 30일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런 다음 그 결과를 청와대측

에 전달했다. 다음날인 1일, 김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여론조사 내용의 일부를 언급했고, 그렇잖아도 고관부인들의 사치 행각에 분노를 느끼던 민심은 기름에 불을 끼얹듯 더한층 악화되기 시작했다.

심지어 정부 여당 내에서도 “어떻게 여론조사를 했는지 몰라도 ‘우물안 개구리’식 처방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나왔다. 언론은 즉각 “대통령이 김장관 유임의 명분으로 내세운 여론조사는 잘못된 것”으로 보도했고, 어떤 경위로 그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취재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월드리서치사 및 청와대측을 상대로 한 언론사들간의 물밑 취재 경쟁은 뜨겁게 전개됐다. 그러나 막상 설문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거세지자, 실무부서였던 정책기획실은 큰 곤욕을 치르면서도 끝내 완전 공개를 거부했다. (중략)

이런 상황에서 〈일요서울〉 취재팀이 월드리서치사를 찾은 것은 지난 12일.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월드리서치사는 한창 이사점을 싸고 있었다. 문제의 여론조사건에 관해 묻자, 여직원은 대답을 회피했다. 이틀 뒤인 14일 취재팀은 월드리서치사의 박인주 사장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었

다. 박사장은 여론조사건으로 많이 시달린 듯 조 심하는 태도가 역력했다. 다음은 박사장과 의 일 문일답.

월드리서치사의 이번 여론조사가 잘못된 것 아 니냐는 견해가 많다. 이 점을 인정하고 있는지?

▲그렇잖아도 많이 시달렸다. 항의전화도 많 이 받고...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그렇게 조사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른 중 요한 문항도 많았는데 언론에서 두 세 개 항목만 다뤄 마치 전체적으로 공정치 못한 조사였던양 보도했다. (중략)

－박사장의 말대로라면 귀사측은 여론조사에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됐는가.

▲더 이상은 노코멘트하겠다. 다만 한가지 더 말하자면 우리는 잘못된 것 없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여론조사를 잘못했다면 청와대에서 가만 히 있었겠는가, 세무조사를 당하든가 난리가 났 겠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아무 잘못된 게 없다. 청와대 측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른다.

박사장은 그 말을 끝으로 ‘이쯤에서 그만하자’ 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의 답변은 많은 궁금 증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목소리는 항변에 가까 운, 그러면서도 뭔가 억울하다는 느낌마저 질 게 풍겼다. 더욱이 “청와대가 오히려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른다”고 말한 부분은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대목이었다.

청와대쪽에서 왜 월드리서치사에 미안하게 여 기고 있다는 것인지, 또 여론조사를 맡은 월드리 서치사 박인주 사장과 김대통령의 언급 사이에 현격한 인식의 차이가 왜 생긴 것인지 다시금 확 인할 필요가 있었다. 취재팀은 다시 그와 통화를 시도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6일 어렵사리 다시 통화를 가졌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지난번에 설명을 듣고 한가지 의문이 들었 다. 박사장은 국민의 76%가 김장관의 해임을 바 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귀사측의 그런 견해가 청와대측에 전달한 여론조사보고서에 담 겨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

－왜 말할 수 없는가. 그런 견해를 보고서에 담 았다면 대통령의 인식도 달라졌을 것이 아닌가.

박사장은 이 질문에 계속 노코멘트로 일관했 다. 그러나 취재팀이 끈질기게 이 부분을 물고 늘 어지자 그는 매우 충격적인 얘기를 털어놓았다.

▲나도 개인적으로는 여론조사 내용을 공개하 고 싶다. 하지만 현 상황에선 불가능하다. 이 말 은 처음 하는 얘기지만, 실은 얼마 전 공개를 하 려 했던 적도 있다. 유력 일간신문사인 모신문사 에서 ‘자료를 줄 수 있느냐. 준다면 가감없이 그 대로 보도해 주겠다’고 제의가 왔었다. 고민 끝에 공개하기로 마음을 먹고 청와대에 의사를 전했 다. ‘공개해서 회사의 명예를 회복시켜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막았다. 그래서 공개 되지 않았다.

－청와대에서 왜 공개를 막았나.

▲더 이상 자꾸 묻지 말라. 공개가 된다면 심각 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심각한 상황이라니, 무슨 뜻인가

▲여러 사람이 다칠 수가 있다는 뜻이다.

박사장은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지 금은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언젠가 기회가 오면 그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다.

박사장이 털어놓은 말은 한마디로 충격적이 다. 청와대의 ‘옷 사건 여론조사’를 둘러싸고 뭔 가 정당치 않은 면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게 한다. 그것이 아니면 박사장이 거짓을 말한 것인데, 과연 그가 청와대를 상대로 그런 거짓말 을 꾸미고 털어놓을 수가 있을까. 그의 말처럼 회 사도 명예회복하고, 청와대도 ‘잘못된 여론조사’ 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선, 여론조사의 내용을 상 세히 공개하는 길밖에는 없을 것 같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신청인은 (주)월드리서치 대표이사로서, 일요서울 1999년 6월 27일자(268호) 『‘김태 정 유임’여론조사 월드리서치 사장 인터뷰』제목 의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에서 기사내용이 신청인과 의 정상적인 일문일답의 인터뷰를 진행한 후 요

약한 내용이고, 조사결과를 공개하면 청와대의 여러 사람이 다친다고 인터뷰했던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청와대에서 모종의 압력을 통해 조사 결과의 공개를 막은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은 정식 인터뷰에 응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의 내용도 모두 사실무근으로 이러한 내용을 전혀 언급한 바 없다.

신청인은 이 보도가 조사기관에서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기관의 신뢰도 및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며, 여론조사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일요서울 1999년 6월 27일자(268호) 『‘김태정 유임’여론조사 월드리서치 사장 인터뷰』 제하의 기사 내용에서, (주)월드리서치 대표이사인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당 신문사 기자의 인터뷰에 응했던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본인은 기사보도를 전제로 한 인터뷰에 응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더욱이 조사결과를 공개하면 청와대 여럿이 다친다는 내용 및 청와대에서 조사결과 공표를 막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차제에 일요서울 신문사와의 전화 통화 사실은 있으나 이는 (본인이) 인터뷰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뿐, 기사화나 정식인터뷰 및 언론 보도를 전제로 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반론보도신청인

(주)월드리서치 대표이사 박인주

합의사항

• 제목 : 반론보도문

• 내용 : 일요서울 1999년 6월 27일자 『‘김태정 유임’여론조사 월드리서치 사장 인터뷰』 제하의 기사 내용에서 (주)월드리서치 대표이사인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당 신문사 기자의 인터뷰에 응했던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당 신문사 기자의 인터뷰에 응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더욱이 청와대 운운한 부분은 본인의 진의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차제에 일요서울 신문사와의 전화 통화 사실은 있으나 이는 본인이 인터뷰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뿐, 기사화나 정식 인터뷰 및 언론 보도를 전제로 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반론보도신청인

(주)월드리서치 대표이사 박인주

•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요서울 1999년 7월 11일자 5면 우측상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와 크기는 중대대상기사의 부제목(97년 대선때 ‘빅5’뿔혀... DJ득표율을 1% 안쪽 오차로 적중) 활자크기의 고딕체로 하고, 본문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일요서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1999년 7월 18일자 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들이 통장직을 수행하면서 주민 위에 군림하고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99광주중재25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이해순 외 2인

피신청인 : 광산신문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1999. 6. 2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광산신문 : 『통장권력 남용 주민갈등 심화』 제하의 기사(1999년 6월 15일자 2면)

내 용 : 광산관내 일부 통장들이 동장 1등 기관장들과 밀착 권한을 남용하는 등 통장들의 횡포가 심해 문제시 되고 있다. 더욱이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관계당국 마저 관리를 소홀히 해 주민들간에 갈등만 남고 있다. (중략)

우산동 D아파트 주민들에 의하면 현 이모 통장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무를 처리하기 보다는 주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횡포를 부리고 있으며 공지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는 등 업무태만으로 주민들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

주민들은 또 통장이 구청 행사 등에 주민들을 선별 참석시키는 등 주민들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산동 J아파트 주민들은 현 통장 김모 씨가 7년간 업무를 관장하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 4월 7일 동대표자 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통장을 교체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같은달 29일 동대표 34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박모 씨를 통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대해 김통장은 자신이 법적인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주민 180세대 중 일부 주민들이 모여서 통장을 바꾸기로 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주민들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도 감독해야 할 동장은 소극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광산신문 6월 15일자 『통장권력 남용 주민갈등 심화』 제하의 기사에서 우산동 D아파트 통장 이모 씨와 우산동 J아파트 통장 김모 씨로 거명되어 있는데, 광산구 관내 우산동에는 대덕아파트와 동산아파트가 있으나 대덕아파트의 경우 박모 씨가 통장을 맡고 있고, 우산동 J아파트로 제일아파트 하나뿐이 없는 결과로 위 보도에서 지칭한 우산동 D아파트와 J아파트 통장 이모 씨와 김모 씨는 신청인들을 지칭한 것이

확실하다.

신청인 이모 통장은 5년 동안 통장 업무일을 보면서 봉사정신으로 주민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통장 일을 잘해 왔으므로 위 기사 내용과는 무관하다.

또한 J아파트 통장의 경우도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통장을 교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 J아파트 통장도 통장 업무일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봉사정신과 주민화합에 앞장서서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구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위 기사로 명예가 훼손되어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바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광산신문은 6월 15일자 2면 『통장권력 남용 주민갈등 심화』 제하의 기사에서 광산구 관내 D아파트의 경우 통장이 주민 위에 군림하려는 횡포를 부리고 있으며, 공지사항을 제대로 알려 주지 않는 등 업무태만하고 있으며, J아파트 김모 통장의 경우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들이 통장을 교체하기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D아파트 이모 통장은 지난 5년간 봉사정신으로 통장업무를 봐 지난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고, J아파트 김모 통장도 지난 1월 구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이들은 통장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합의사항

- 제목 : 반론보도문
- 내용 :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광산신문 1999. 7. 1. 자 2면에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광산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1999년 7월 15일자 2면)

내 용 : 광산신문은 지난 6월 15일자 2면 『통장권력 남용 주민갈등 심화』 제하의 기사에서

‘광산구 관내 D아파트의 경우 통장이 주민 위에 군림하려는 횡포를 부리고 있으며, 공지사항을 제대로 알려 주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고, J아파트 김모 통장의 경우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들이 통장을 교체하기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D아파트 이모 통장은 지난 수년간 봉사정신으로 통장업무를 봐 지난 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고, J아파트 김모 통장도 지난 1월 구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이들은 통장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합니다. □

신청인 회사가 중고엔진을 신제품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반론보도)

사건번호: 99제주중재4

청 구 명: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현대마린공업(주)

(대표이사 김동욱)

피신청인: 제민일보

중 재 부: 제주중재부

접 수 일: 1999. 6. 24.

처리결과: 합 의

보도내용

제민일보: 『“어선엔진 못 믿겠다”』 제하의 기사

(1999년 6월 18일자 13면)

내 용: 불량 선박엔진으로 인해 조업에 차질을 빚는 등 어민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어선주협회와 모슬포어선주협회는 인천소재 선박 부품공급업체인 H마린이 불량 엔진을 공급하는가 하면 중고 엔진을 신제품처럼 속여 어민들에게 판매해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17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선주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H마린으로부터 선박엔진을 구입한 후 피해를 본 어민은 10여 명에 이르고 있다.

강모 씨(40·대정읍 상모리)의 경우 엔진에 문제가 발생해 조사해 본 결과 중고품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보호원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엔진 수리비의 50%를 H마린측에서 부담한다는 공증각서를 작성하고서도 현재까지 조치가 없다는

것.

또 강모 씨(40·대정읍 상모리)는 지난 95년 H마린으로부터 구입한 엔진이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데다 제품의 기관제작증명서도 없어 중고품을 신제품처럼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엔진이 고장을 일으켜 조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도 H마린측에서는 피해보상에 미온적으로 나서고 있어 어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현대마린공업(주)는 1987년 11월에 창립하여 선박용 엔진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이다.

제주 지역은 신청인 회사 제품이 약 300여 대 보급되어 있는 지역이며, 앞으로도 많은 어민들이 제품을 구매, 선호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었으나, 이번 문제의 보도로 인하여 회사의 이미지와 제품의 신뢰도면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면키 어렵게 되었으며, 따라서 영업 손실에서도 엄청난 손해가 예상되므로 중재신청을 한다.

‘현재까지 조치(A/S)없다’고 기사화 되었는데 강모 씨 선박 현재 상황은 2월말부터 정상조업하고 있다. 신청인 회사 제주 A/S 팀장이 무료로 A/S를 완료하였다.

‘기관제작증명서’는 기관 검사증을 잘못 알고 하는 소리인데 엔진 공급 당시 선주인 강모씨의 요구사항이었다. 시간이 없어서 현지에서 자기가 K.F검사를 필할테니 그냥 인수 요구로 엔진

제작사에서 검사는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제민일보 기자는 일방의 허위 주장 사실을 간단한 확인 절차도 없이 기사화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1999년 6월 18일 제민일보의 지방종합면의 『어선 엔진 못 믿겠다』의 기사는 사실확인 없이 보도된 잘못된 보도였으며, 본 기사를 제보한 사람 ○○○은 허위의 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하여 진실된 사실을 보도해야 하는 언론을 우롱하는 악의적인 생각으로 허위 사실을 제보했으며, 제보를 받은 기자는 사실확인 없이 기사화한 실수가 있어 공개 사과해야 하고 제민일보의 책임있는 사람도 사과해야 한다.

사실을 확인해 보니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해 당사자인 현대마린은 손해에 따른 법적 대응을 하겠다.

합의사항

- 제목 : “현대마린, 어민들에게 불량·중고엔진 공급한 사실 없다”
- 내용 : 지난 6월 18일 지방종합면 『어선 엔진

못 믿겠다』 제하의 기사에서 선박부품공급업체인 (주)현대마린이 중고엔진이나 불량엔진을 공급하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고 현대마린의 엔진을 구입하여 사용하다 고장이 난 강모 씨의 엔진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어 어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현대마린측은 선박엔진 구매자의 조속한 구입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구매자와 사전협의로 기관예비검사를 받지 않았을 뿐 불량엔진이나 중고부품을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강모 씨의 엔진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리조치를 마쳐 현재 정상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제민일보 1999년 7월 16일자 13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크기는 14급 고딕으로, 본문은 본문활자체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제민일보 : 『“현대마린, 어민들에게 불량·중고엔진 공급한 사실 없다”』 제하의 기사 (1999년 7월 16일자 1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예수전도협회가 ‘사이비적 특성’이 있음을 인정, 한국성결교회 교단측에 일방적으로 사과한 것처럼 보도해 협회의 명예가 훼손됐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99서울중재219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예수전도협회(협회장 이유빈)

피신청인 : 한국성결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1999. 6. 28.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한국성결신문 : 『예수전도협회, 본 교단에 사과 표명』 제하의 기사(1999년 5월

29일자 1면)

내 용 :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형구목사)가 「사이비적 특성」이 있는 집단으로 규정한 예수전도협회 대표 이유빈 장로가 본 교단을 지난 18일 직접 방문해 사과의 뜻을 전해옴에 따라 상호 대화로 갈등을 풀게됐다.

이유빈 장로를 비롯, 예수전도협회 관계자 3인과 함께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를 방문한 자리에서 『본 협회의 훈련을 받은 성결교단의 일부 목회자가 본 협회의 가르침과 의도와는 달리 목회 현장에서 잘못 적용하는 실수로 인해 빚게 된 본의 아닌 피해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

다』며 『본 협회가 교단 산하의 개교회에서 성명서를 발송한 점에 대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또 예수전도협회측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법적인 송사를 제기한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히면서 법적송사를 철회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는 예수전도협회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본 교단의 결정으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이단사이비대책위는 예수전도협회측에 『본 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귀 단체에 사이버적 특성이 보여지는 경계집단이라고 결의한 것을 언론기관에서 이단성이 있다고 잘못 보도함으로 인해 발생한 본의 아닌 피해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또한 『추후 본 교단 산하 교회 안에 유사한 문제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귀 협회를 관심있게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기독교의 선교단체인 예수전도협회 대표(이유빈)로서 1999년 5월 29일자 한국성결신문의 1면 기사 『예수전도협회, 본 교단에 사과 표명』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중재를 신청한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이하 기성)가 본 예수전도협회에 대해 사이버적 특성이 있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갈등을 겪어 오다가, 5월 18일 양측이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 유감과 사과의 뜻을 담은 문건을 공문 형식으로 주고받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교단 신문인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왜곡하고 편파적으로 보도하였다.

본 협회와 기성측 간의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은 기성측이 내린 결정이 잘못이었음을 시인하는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성측이 본 협회에 전달한 공문의 내용 “귀측 대표 이유빈 장로의 설명을 통해 본 교단 교회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들이 귀 협회의 가르침과 훈련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난 것이었음을 이해하고, 본 교단이 결정한 사이버적 특성이 보여지는 단체라는 표현에 오해가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사항은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이같은 보도로 인하여 아직까지 신청인측의 명예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신청인측이 주관하는 집회의 참석을 기피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개교회의 집회가 취소 또는 보류되고 있는 피해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사태 해결 과정과 그 결과를 바로 잡기 위해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한국성결신문은 지난 5월 29일자 1면에 『예수전도협회, 본 교단에 사과 표명』이라는 제하로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이하 기성)와 예수전도협회 사이에 갈등을 빚어온 ‘사이버적 특성’ 문제를 해결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본 협회의 대표가 교단을 방문하여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했으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한 양측 대표단(기성측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전권위원과 교육국장, 예수전도협회측은 대표 이유빈 장로와 대변인 윤병운 박사를 포함한 4인)이 참석하여 시종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3시간여 동안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상호간에 본의 아니게 입힌 상처를 공감하여 이에 관한 공문을 서로 주고 받는 것으로 갈등을 해소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양측의 갈등이 첨예화된 문제였던 ‘예수전도협회가 사이버적 특성이 보여지는 경계해야 할 집단’이라는 결정에 대해서 기성측은 “본 교단 교회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들이 귀 협회의 가르침과 훈련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난 것이었음을 이해하고, 본 교단이 결정한 사이버적 특성이 보여지는 단체라는 표현에 오해가 있었음을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양측의 갈등이 해소된 것은 예수전도협회가 잘못을 시인하고 기성측에 사과를 구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양측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 기성측이 본 협회에 대한 결정이 오해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문제로 인해 서로가 상처를 입게 된 부분에 대해 유감과 사과의 뜻을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사태가 일단락되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반론보도신청인

예수전도협회 대표 이유빈

합의사항

- 제목 : 반론보도문
- 내용 : 지난 5월 29일자 1면 『예수전도협회, 본 교단에 사과 표명』 제하의 기사에서 예수전도협회 대표 이유빈 장로가 기독교대한성결교회측에 사과의 뜻을 전함에 따라 상호 갈등이 해결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예수전도협회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요청으로 성결회관을 방문하여 서로 우호적인 분위기 가운데 3시간여 동안 대화를 나누고 상호간에 사과를 나눔으로써 그동안의 갈등을 해소했던 것이다.

반론보도신청인

예수전도협회 대표 이유빈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국성결신문 1999년 7월 17일자 1면 중앙 우측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대화 받아들여...)과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성결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1999년 7월 17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씨랜드 화재사고 당시 담당 경찰관인 신청인들이 경위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상부기관에 보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99서울중재224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1. 황 재 도

2. 전 을 수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1999. 7. 5.

처리결과 : 합 의

경기경찰청 조사 결과 파출소측은 화재신고를 접수한 뒤 소방서에는 연락조차 하지 않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서신의용소방대와 마도의용소방대 등에만 전화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고 시간도 오전 1시쯤 신고를 받았다는 파출소의 보고와는 달리 오전 1시40분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백미리 주민 장모 씨가 서신파출소에 최초로 화재신고를 했으며, 오전 1시45분 박재천 씨가 두 번째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내용

중앙일보 : 『경찰 상황보고서 허위로 작성』 제하의 기사(1999년 7월 2일자 14면)

내 용 : 경찰이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 화재 사고에 대한 경위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행정자치부 장관 등 상부기관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경찰청 감찰반은 1일 씨랜드 화재사고의 화재발생 시간이 경찰보고서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집중 추궁, 서신파출소 소장 황재도(黃載道) 경위와 전을수(全乙洙) 경장 등이 허위로 상황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밝혀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들은 화성경찰서 서신파출소장 경위 황재도, 경장 전을수로 중앙일보 7월 2일자 사회면 『경찰 상황보고서 허위로 작성』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중재신청한다.

신청인들은 최초 보고서 허위 보고를 한 사실이 없다.

파출소측이 화재 신고를 접수한 뒤 서신·마도의용소방대에만 연락하고 소방서에는 연락조차 않았다는 데 대하여 신청인 경장 전을수가 남양소방파출소에 화재 발생전화 통보한 것으로 화재 신고 접수 후 가까운 소방파견소로부터 순차적으

로 화재 사실 전화 통보하였다.

6. 30. 01:40경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백미리 주민 장모 씨가 서신파출소에 최초로 화재 신고하고 동일 01:45경 박재천 씨가 두 번째로 신고했다는 데 대하여 최초 전화신고는 동네 주민 장모 씨가 아니라 씨랜드 관리부장이며, 박재천 본인은 전화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중앙일보가 지난 7월 2일자 사회면 『경찰 상황 보고서 허위로 작성』 제하의 기사에서 “1) 신청인들이 최초 보고서 허위보고를 했다 2) 파출소 측이 화재신고를 접수한 뒤 서신, 마도의용소방대만 연락하고 소방서에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3) 6. 30. 01:40경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백미리 주민 장모 씨가 서신파출소에 최초로 화재신고하고 동일 01:45경 박재천 씨가 두 번째로 신고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서신파출소장 경위 황재도, 같은 직원인 경장 전을수는 이와 관련 위 내용과 같이 상황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잘못 조치한 사실이 없다.

사실은 1) 6. 30. 15:30경 화재현장 씨랜드대표 박재천 등의 주장대로 상황보고서를 작성, 경찰서 상황실로 보고하였으며, 7. 1. 03:45경 화성경찰서에서 소망유치원 원장 천경자 등 10명의 목격자 조사 결과 6. 30. 01:20경 화재가 발생 동일 01:35경 신고 접수, 동일 01:41경 서신파견소(의용소방대), 01:45경 마도파견소(의용소방대) 순으로 전화통보 조치한 것이 확인되어 경기지방경찰청에 정정 보고한 것이고

2) 신청인 경장 전을수가 6. 30. 01:40 파출소에서 화재신고 접수후, 01:41 남양소방파출소 서신파견소(경주소방공무원 상주)에 전화통보, 01:46 마도파견소(소방공무원 상주)에 전화통보, 01:48~01:51간 궁평1리 김영구 이장, 매화1리 권동춘 이장에게 화재발생통보 및 의용소방대원, 민간인 순찰대원 동원토록 방송요청, 01:58 오산소방서 남양소방파출소에 화재발생 전화 통보한 것으로 화재 신고 접수 후 가까운 소방파견소로부터 순차적으로 화재사실을 전화 통보하는 등 소방관서에 연락하였으며,

3) 최초전화 신고자는 서신면 백미리 주민 장모 씨가 아닌 씨랜드 관리부장 전기홍이며(신고 시간 01:40확인됨) 두 번째로 박재천(41세·씨랜드 건물주)이 전화 신고한 것이라고 보도되었으나 박재천의 휴대폰 전화통화기록을 조회한 결과 6. 29. 14:41:02~20:56:01간에는 통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박재천 본인도 전화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다른 신문들은 경찰이 정정 발표한 내용을 확인하고 보도하였으나 유독 중앙일보만은 『경찰 상황보고서 허위로 작성』 제하의 기사로 사실을 왜곡, 악의적인 내용으로 보도하였고, 특히 신청인들이 7월 1일 저녁 중앙일보 가판에 위 내용이 보도된 것을 확인하고 이무영 기자 등에게 전화로 항의하면서 본판에서는 기사를 삭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본판에서도 위 신청인들을 실명으로 표현하고 잘못된 내용을 수정 없이 보도함으로써, 이는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의 상사들에게 누를 끼치고, 나아가 전체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킨 것으로서 그 피해는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것이다.

합의사항

• 제목 : 정정과 반론

• 내용 : 정정=본지 7월 2일자 27면 『경찰 상황보고서 허위로 작성』 기사와 관련, 경기지방경찰청은 화성경찰서 서신파출소 전을수 경장 등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잘못 조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다. 전경장은 신고접수와 함께 소방파견소에 연락했으며 화재신고 접수시간도 상부기관에 정정보고를 했을 뿐임이 밝혀졌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1999. 7. 22.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일보 제2면 「정정과 반론」란에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앙일보 : 『정정과 반론』 제하의 기사(1999년 7월 20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허위내용의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99부산중재15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장 상 희

피신청인 : 울산연합신문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1999. 7. 9.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울산연합신문 : 『배후 조종자는 ○○신문 “장상희기자”』 제하의 기사(1999년 7월 5일자 1면)

내 용 : 지난 2주일동안 울산여성계에 그야말로 평지풍파요 울산여성사회 전체에 여론의 검은 회오리 바람이 되었던 (사)중앙부인회 울산지부장 崔東順 여사(울산여성단체협의회 회장겸 울산 일하는 여성집 판장)의 자격박탈, 해임결의, 또는 ‘징계회부결정’, ‘지부해체위기’ 등등의 당시의 공문내용 사실과는 전혀 다른 허위 추측 비방성 보도자료를 타어평하여 모일간신문 김모여기자에게 팩스로 보낸사람은 모신문 장상희 기자(37)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장기자가 보낸 이 ‘괴문서’ 한 장 때문에 울산 지역 주요신문 방송들이 그 내용이 진실인 것으로 믿고 그대로 보도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울산여성신문에 근무하던 장상희 기자로서 울산연합신문 7월 5일자 1면 『울산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비방보도음해사건, 배후조종자는 ○○신문 “장상희”기자』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신청인은 사실과는 다른 허위 추측 비방성 보도자료를 만든 적이 없으며, 이 괴문서를 통해 주요 신문·방송에 보도가 나가도록 배후조종한 일이 없다.

단 모신문사 김모 기자가 최동순 씨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전화가 왔고 알고 있다고 답하자 운전 중이니 그 내용을 김모 기자가 근무하는 신문사로 넣어달라고 하여 최동순 씨 전화번호까지 적어 확인해 보라며 팩스로 전송시켰다.

신청인은 김모 기자의 요청에 응한 것 밖에 없으며, 최동순 씨 해임사실 역시 기사가 나오기 전부터 확인된 사실이며 그 이후 신청인이 서울중앙부인회까지 방문취재해 또다시 확인했기 때문에 허위 추측 비방성 보도자료와 배후조종 운운은 엄연한 허위보도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 제목 : 울산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해임’ 사실로 밝혀져 배후조종자란 애초부터 없었다

• 내용 : 본지 7월 5일자 1면 『배후 조종자는 ○○신문 “장상희기자”』 제하의 기사에서 장기자가 보낸 ‘괴문서’ 한 장 때문에 울산지역 주요신문, 방송 등이 그 내용이 진실인 것으로 믿고 그대로 보도를 한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실 확인결과 장상희 기자가 취재한 최동순 씨 해임은 사실이며 신문사와 방송사가 보도한 내용은 배후조종을 받아서 아니라 각기 취재에 근거해서 보도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본지의 오보로 인해 장기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와 명예훼손에 깊은 사과의 뜻을 표합니다.

합의사항

• 제목 : 반론보도문

• 내용 : 본지가 지난 7월 5일자 1면에 보도한 『울산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비방보도 음해사건 배후 조종자는 ○○신문 장상희 기자』라는 기사에서 장상희 기자가 당시의 공문내용과 다르게 허위 추측 비방성 보도자료를 모 일간신문 김모 여기자에게 팩스로 보냄으로써, 울산지역 주요 신문 방송들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사단법인 중앙부인회 울산지부장 최동순 씨의 자격박탈, 해임결의 또는 징계회부결정, 지부해체 위기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게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장상희 기자는 김모 기자에게 팩스로 전송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추측한 허위비

방이 아니며, 울산지역 주요 신문 방송들도 각기 취재한 내용에 근거하여 보도한 것이지 배후 조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을 1999년 8월 2일자 울산연합신문 1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1999. 7. 5.자 중재대상기사의 제목 중 『울산여성단체협의회』와 같은 크기의 활자로 표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울산연합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1999년 8월 2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인천시 부평구의회가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지급을 부당하게 막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99경기중재26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박남수 외 4인

피신청인 : 경기도민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1999. 7. 12.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경기도민일보 : 『부평구의회 퇴직금 지급거부, 퇴직 미화원들 고통의 나날...』 제하의 기사(1999년 6월 2일자 8면)

내 용 : 1일 부평구와 부평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97년 6월 26일 인천시장과 산하 8개 구청장이 협의하에 결정해 시달된 시가 업무대행시킨 인천위생공사에서 근무하던 생활쓰레기 수거운반하는 환경미화원들이 퇴직한 퇴직금을 지급키로 해 8개 구청 중 7개 구청은 이미 지난해에 시비와 구비로 퇴직금을 지불했으나 오직 부평구청

만이 구의회가 퇴직금에 대한 예산책정을 부결시켜 이미 퇴직한 1백6명에 대해 퇴직한지 1년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주지 못하고 있어 퇴직한 미화원들은 고통과 실의에 빠져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인천시가 지난 67년 2월 쓰레기 대행업체로 위탁한 인천위생공사(당시 사장 곽재영)의 미화원 총 8백18명이 인천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수거운반하는 환경미화원들로 운영해 오던 것이 지난해 IMF 외환위기와 각계의 구조조정으로 지난해 현재까지 전 인천위생공사 부평구관리하에서 근무하던 1백6명이 퇴직한 것을 비롯, 8개 구산하에서 총 3백56명이 퇴직했는데 이 중에서 7개 구청관리 산하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2백50명은 이미 지난해 시와 구에서 합산한 예산으로 퇴직금을 전부 받았으나 오직 부평구관리하에 근무하다 퇴직한 미화원 1백6명의 퇴직자들만이 이날 현재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략)

이런 불상사에 부평구청측은 인천시장과 8개 구청장이 합의결의돼 각 구에 시달까지 된 전 인

천위생공사 근무 환경미화원들 퇴직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것에 답답하다는 말과 부평구의회 대다수 의원들도 일부 구의원들이 퇴직금 지급을 봉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당사자들인 쓰레기 청소환경미화원들은 부평구의회 모의원이 청소대행업자와 감정대립으로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며 의회를 비난하고 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들로서 1999. 6. 2.자 경기도민일보가 『부평구의회 퇴직금 지급거부, 퇴직 미화원들 고통의 나날...』이라는 제목으로 신청인들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된 허위보도를 한 바가 있으므로 중재신청한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에서 부평구청의 청소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근로자의 퇴직금을 당연히 지급할 의무가 있는 보편타당한 예산집행을 지방의원 소수의 제동으로 지급하지 못했으며, 또 부평구의회 모의원의 감정으로 이 문제가 빚어졌다는 취지의 기사를 사실과 다르게 게재하여, 구의원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지방의회에서 중요하게 심의되어야 할 사안을 개인의 감정과 소수의 부당한 행위로 이 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적시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인 신청인들의 명예를 심대하게 손상시켰다.

또한, 부평구의회가 관계서류와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는 등 심사숙고하여 심사 및 심의하여 결의된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비록 항소 중에 있어 아직 확정판결은 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미 1심 재판부가 그 금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여 부평구의회 결의가 합당하였음을 검증받은 것임에도 이 부분은 숨기고 개인의 감정이 존엄한 의회 결의과정에 개입된 것으로, 또는 소수의 의원이 대다수의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행적으로 의회를 이끌어 가는 것으로 보도하였다.

더욱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소수의 의원’ 또는 ‘모의원’이라고 표현하여 독자로서 하여금 부평구의회 의원들 모두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게 하여 신청인들의 명예에 손상을 입혔음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신청을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 경기도민일보는 지난 6월 2일자에 『부평구의회 퇴직금 지급거부, 퇴직 미화원들 고통의 나날...』 제하의 기사에서 ‘인천시 8개구청 중 7개 구청은 지난해 인천위생공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미화원들에게 퇴직금 지불을 끝냈으나 유독 부평구 한 곳만 인천시 보조금 3억3천만원까지 받아 놓고 구의회 일부의원의 제동으로 퇴직한지 1년 이상이 지난 미화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상사에 부평구청측은 인천시장과 8개 구청장이 합의 결의돼 각 구에 시달까지 된 전 인천위생공사 근무 환경미화원들 퇴직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것에 답답하다는 말과 부평구의회 대다수 의원들도 일부 구의원들이 퇴직금 지급을 봉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당사자들인 환경미화원들은 부평구의회 모의원이 청소대행업자와 감정대립으로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며 의회를 비난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기업체인 부원산업이 관할구청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지난 92년도에 노조와 퇴직금을 150%의 누진율을 적용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서도 실제로는 퇴직자에게 100%만 지급하다가 퇴직근로자가 퇴직금 잔여분 청구소송을 하여 회사가 패소하자 이를 인천시에 건의한 바 있는데, 인천시가 직접 청소업무를 담당하던 1987년 이전까지는 지급하겠다고 그 이후는 각 자치구에서 책임지라는 지침을 1997년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부평구의 1998년도 본예산안 중 그 부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부평구의회는, 청소업무는 자치구의 고유업무이므로 시의 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고 부평구청과 부원산업간에 체결된 쓰레기수거·운반 위탁 계약서상에는 총비용을 합산한 총액제로 되어 있어 인건비의 항목별지급규정이 없으므로 지급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심

사특별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심의 등의 절차에서 각각 만장일치로 그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부원산업이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1일 ‘부평구청이 이 금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여 부원산업이 패소하였습니다.

현재 부원산업측이 고등법원에 항소 중에 있기는 하지만, 결국 당시 부평구의회 의사결정은 옳은 것으로 판명된 셈입니다.

따라서 본 경기도민일보의 1999. 6. 2. 자 기사는 위 내용을 숨기고, 또 소수의 의원이나 모의원이 제동이나 감정이 개입되어 부당하게 예산집행이 안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목 : 정정보도

• 내용 : 경기도민일보가 지난 6월 2일자 8면에 『부평구의회 퇴직금 지급거부, 퇴직 미화원들 고통의 나날...』 제하의 기사에서 “인천시 8개구청 중 7개 구청은 지난해 인천위생공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환경미화원들에게 퇴직금 지불을 끝냈으나 유독 부평구 한 곳만 인천시 보조금까지 받아놓고 구의회 일부의원의 제동으로 퇴직한지

1년 이상이 지난 미화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미화원들에게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자는 개인기업체인 부원산업(전 인천위생공사)이고, 부평구는 법적인 지급 책임이 없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의 및 본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각각 만장일치로 그 예산을 삭감한 것이고, 그 후 부평구는 지급의무가 없다는 법원판결이 있었으며, 일부의원의 제동이나 개인감정에서 처리한 일이 아니므로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이 중재조서 정본을 송달 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기도민일보 8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을 자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시산하 8개구청 중 7개는...)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기도민일보 : 『미화원 퇴직금 지급의무 匾에 없고 개인업체에』 제하의 기사
(1999년 7월 27일자 8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학원 관선 이사장인 신청인이 교사들에게 돈을 뜯어 내는 등 물의를 일으키면서 판공비만 수령하고 있다는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99서울중재228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민 병 선

피신청인 : 사건뉴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1999. 7. 13.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사건뉴스 : (1) 『판공비만 받아가는 민병선 관선 이사장, 17세 연하의 내연여인까지 학교에 끌어들여 눈살, 교사들에게 돈까지 뜯어냈다』 표지제목(1999년 7월 7일자 1면)

내 용 : (2) 『판공비만 받아가는 민병선 관선 이사장은 누구?』 제하의 기사(1999년 7월 7일자 6면)

인문계 사설학원 경영후 건설업에 종사한 바

있는 민씨는 학교 교육에 대해 문외한인 행동으로 교장 및 교감, 교직원 등 학교 관리 책임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인물이다.

학교별로 일과 중인 전체 교직원회의를 소집시켜 놓고 교장 및 교감, 행정실장, 각부장 등을 차례로 일으켜 세워 교직원들에게 절을 하도록 시키는 등의 행동을 했다. 또한 개인적인 행사에 교장 및 교직원들을 도열시켜 개인 친분관계인 사설학원 관계자 30명에게 인사를 강요하는 등 들러리를 세워 교직원들에게 모욕감을 줬다.

교직원들은 17세 연하라고 밝힌 정선임(여·44세)씨가 2회에 걸쳐 학교에 내방해 자신이 5년 전부터 내연의 관계에 있음을 밝히면서 민이사장에 대한 경계를 촉구한 사실이 있다. 또한 민이사장이 직원들에게 금전을 차용해 달라고 한 사실도 있다.

민이사장은 본인의 사인을 박상임 이사에게 맡겨 놓고 대리로 날인케하고 있고, 특히 지난 3월 31일 법인통장에서 1억6천2백만원의 명퇴수당 지원금 압류, 지난 4월 17일 선덕학원 산하 4개 학교 회계별 통장에서 6천3백여 만원의 공급금 압류 및 추심명령, 지난 4월 19일 법인 사무용 집기 비품 압류 등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출근을 하지 않고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민씨는 관공비만을 수령하러 학교에 나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신청인은 학교법인 선덕학원 관선 임시 이사장 민병선으로 사건 뉴스(주간지) 1999년 7월 7일자 표지와 6면의 기사가 전혀 사실과 다르며, 보도의 저의가 의심스러운 뿐만 아니라, 단 한번도 취재 또는 확인 사실이 없이 일방적 보도에 막심한 피해가 발생하여 중재신청한다.

신청인은 서울교육청이 지원하는 업무비 70만원 외에는 학교법인측이 마련할 수 있는 단 한번의 관공비도 받은 적이 없으며, 내연의 여인 등의 표현은 잘못된 것이며, 거명된 분도 다른 많은 사람들의 방문과 같은 것이었으며, '학교에 끌어들이 눈살'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표현이다.

'교사들에게 돈까지 뜯어냈다'는 보도도 돈을 뜯어낸 일도, 받아본 적도 없으며 단 한명의 접대도 받은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보도에 가족과 지인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되었을 뿐 아니라, 더욱이 수많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실망을 주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목: 선덕학원 관선이사장 민병선, 교사들에게 돈 뜯어낸 사실 없어

• 내용: 본지가 지난 1999년 7월 7일자 표지기사와 6면 『관공비만 받아가는 민병선 관선이사장은 누구?』 제하의 기사에서 선덕학원 민병선 이사장이 관공비만 받아 가고 17세 연하의 내연여인을 학교에 끌어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교사들에게 돈까지 뜯어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선덕학원 민병선 관선이사장은 관공비를 수령하거나 내연여인을 학교로 끌어들이 사실이 없으며, 교사들에게 돈을 뜯어낸 사실 또한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7월 7일자 보도는 사실 무근이므로 정정보도합니다.

민병선 이사장은 관선 이사장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합의사항

• 표지제목: 선덕학원 민병선 이사장 관련기사(7월 7일자)에 대한 정정보도문

• 본문제목: 선덕학원 민병선 이사장, 교사들에게 돈 뜯어낸 사실없어

• 내용: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주간 사건뉴스 제28호에 표지제목은 1면 제호 아래에 32포인트 고딕으로 게재하고, 본문제목은 중재대상기사 중간제목(교사들에게...)와 같게 하고, 본문은 본문활자크기로 제6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사건뉴스: (1) 『선덕학원 민병선 이사장 관련기

사(7월 7일자)에 대한 정정보도문』
표지제목(1999년 8월 4일자 1면)
(2) 『선덕학원 민병선 이사장 관련기사(7월 7일

자)에 대한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1999년 8월
4일자 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들이 회사공금을 횡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99서울중재229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주)장호원컨트리클럽
(대표이사 박인준) 외 2인
피신청인 : 주간 시사건국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1999. 7. 1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주간시사건국 : (1) 『국세청 세무조사 축소·은폐
의혹』 제하의 기사(1999년 7월
12일자 2면)

내 용 : 국세청(청장 안정남)이 특정업
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나, 조사 결과를
축소·은폐 하려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
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이미 99년 1월부터 실시된 세무
조사 결과를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과통지
를 하지 않는 등 ‘특정업체 봐주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당초 국세청은 98년 7월경 전 장호원C.C 대표
이사 송동일(47) 씨의 제보에 따라 홀인원클럽과
장호원C.C(현 대표이사 P씨)에 대한 출금
내역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지난 4월 20일
경 업자들로부터 횡령부분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놓는 등 상당부분의 혐의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홀인원클럽과 장
호원C.C의 전 대표이사인 S(50)씨의 횡령 사실
을 상당부분 밝혀내고도 이를 고의적으로 묵인하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세청이 세무조
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세금탈루 및 비리사실이 확인됐을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하도록 돼 있는 것과는 정면배치
되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지방국세청 특별조사1과 7
반 조사 실무자였던 박씨(37) 씨가 재보 당사자
인 송씨에게 자신이 공무상 조사과정에서 밝혀낸
S씨의 횡령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백일하에 드러
났다.

송씨는 이와관련 “특별조사1과 7반 조사실무
자였던 박씨가 어느날 갑자기 만나자는 전화를
해와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그를 처음 만났다.”
면서 “박씨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세무조사 과정
에서 밝혀낸 송석린 씨의 횡령 사실을 귀뜸해 주
었다.”고 밝혔다.

송씨는 특히 “박씨는 S씨가 공사대금을 과다
책정하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며 “박씨는 자신
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상사로부터 송석린 씨를
봐주라는 말과 함께 없던 일로 덮어두라는 압력
도 수차례 받아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
다.

송씨는 또 “S씨가 공사하청업체인 T조경의 J
씨에게 주어야 할 공사비를 70억원으로 과대책
정. 이 중 50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포함해 클럽하
우스업자 S씨의 수령액 40억원 중 과다책정금 28
억, 전기업자 J씨의 공사비 수령액 16억원 중 과

대책정금 10억, 나의 가수금 및 급료 약 16억원을 각각 S씨가 횡령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박씨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후략)

(2) 『국세청 직원이 피조사자 골프장서 라운딩?』 제하의 기사(1999년 7월 12일자 2면)

서울지방국세청 직원 박씨의 직속상관인 특조 1과 박모 과장과 같은 과 7반 김모 사무관은 박씨의 증언과 관련, 시종 불성실한 대답으로 일관했다.

특히 김사무관은 세무조사결과를 아직까지 통보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이미 S씨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상태”라고 밝혔으나, 장호원C.C측은 현재까지도 국세청으로부터 추가자료 요청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쌍방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호원C.C의 경리부장 한광빈 씨는 국세청이 최근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면 자료요청 공문을 보여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대해 역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사무관도 역시 이미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발송 대장 확인을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어느 쪽 말을 믿어야 할까. 양측 모두 거짓말이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세무조사에 참여한 조사관 전원의 직인이 모두 찍혀야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담당조사관인 박씨가 온갖 회유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는 국세청이 장호원C.C측의 비리사실을 포착하고도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 세무조사 결과를 계속 연장하거나 은폐·축소하기 위해 양측이 공히 차단막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사무관은 국세청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피조사자인 장호원C.C에서 골프를 쳤던 것으로 밝혀져 양측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시사건국 신문 2면에 『국세청 세무조사 축소, 은폐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허위의 기사를 게재하고 그 축소 은폐된 의혹의 당사자가 신청인인 (주)장호원컨트리클럽임을 나타나게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여 신청인의 명예와 신용을 크게 실추시키는 피해를 당하였으므로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바이다.

신청의 송동일이라는 자는 신청인과 수년전부터 경영권 및 차용계약서 등으로 각종 송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이며, 송동일이 99년 1월초 국세청에 신청인회사를 진정, 투서를 접수시켜 국세청의 특별조사 2국으로부터 동년 1월부터 현재까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신청인의 횡령 사실이 없다는 것이 계속 밝혀져 법정에서 국세청 조사를 미끼로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려는 의도가 빛나게 되자 국세청 직원인 박씨와 임의로 해석하고 결탁하여, 주간신문 ‘시사 건국’에 사실도 아닌 허위내용을 기사화 한 것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가 지난 7월 12일자 2면 톱에 『국세청 세무조사 축소, 은폐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국세청이 홀인원골프클럽과 장호원C.C의 전 대표이사인 S씨(50)의 횡령사실을 상당부분 밝혀내기도 이를 고의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사실 확인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에서는 장호원C.C에 대하여 세금 탈루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한 결과의 ‘세무결과통지서’를 지난 6월 22일자로 송부하였고 추정예상세액인 14억6천7백만원에 불과하였다.

이에 대해 장호원C.C는 지난 7월 12일자에 추정세액이 과대하게 책정되었다는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또한 국세청 직원이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보도에 대하여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이 본지 99년 7월 12일자 보도는 사실과 다른 오보였음을 위와 같이 바로잡는 정정 기사를 게재합니다.

본의 아니게 국세청, 조사국 공무원 여러분, S

씨 및 장호원 C.C, 홀인원골프클럽 임직원 여러
분의 명예를 훼손한 점 사과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목 : 정정보도문

• 내용 : 본지가 지난 7월 12일자 2면에서 『국
세청 세무조사 축소, 은폐 의혹』 제하의 기사에
서 국세청이 홀인원골프클럽과 장호원C.C의 전
대표이사인 S씨(50)의 횡령사실을 상당부분 밝
혀내고도 이를 고의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국세청에서는 장호원C.
C에 대하여 세금 탈루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
한 결과의 ‘세무결과통지서’를 지난 6월 22일자
로 송부하였고 추정세액 14억6천7백만원
을 통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장호원C.C는 지난 7
월 12일자에 추정 세액이 과대하게 책정되었다는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또한 국세청 직원이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보도에 대하여 골프장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
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1999. 8. 9.까지 피
신청인이 발행하는 주간 시사건국 2면에 1단 상
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중재대상기
사 부제목(국세청 세무비리 고발...)과 같게 하고
본문활자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
다.

• 신청인은 중재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
인에게 1999년 7월 22일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주간시사건국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1999
년 8월 9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회사가 유령 영농회사이며, 국유지를 불법 분양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99경기중재27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대우개발(주) (대표이사 박사학)

피신청인 : 京仁日報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1999. 7. 1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京仁日報 : 『국유지 멋대로 농지분양』 제하의 기
사(1999년 6월 18일자 15면)

내 용 : 반월 특수지역인 화성군 마도면 송정
리 앞 시화지구내 국유지인 간석지 6만여 평이
유령 영농회사에 의해 불법으로 농경지로 조성돼
분양되고 있으나 주민들의 신고로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던 수자원공사가 불법을 사실상 방치해
온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사고 있다.

17일 이 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정부에 의해 시
화지구 2단계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는 송정리
320일대 6만여 평이 농경지로 개발돼 분양이 진
행 중이라는 것이다.

D개발이라는 영농회사는 지난 4월초부터 중장
비를 동원해 이 지역에 농지를 조성한 뒤 이땅을
1천5백평 단위로 분할해 평당 5천원씩에 분양하
고 있으며 일부주민들은 농경지 무상임대불 조건
으로 사업비까지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 주
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대우개발(주) 대표이사로 경

기도 화성마도 송정 323-20번지 일원의 국유지를 임대하여 영농하는 영농법인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신청인은 1999년 6월 18일자 15면에 『국유지 멋대로 농지분양』제하로 “유령영농회사 불법으로 1천5백평단위로 평당 5,000원에 분양”이라고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기사화했으며 D개발이라고 전제한 회사는 공유수면을 개발한 대우개발주식회사밖에 없으므로 위와 같은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대우개발(주)는 법인등기를 마친 합법한 영농회사이며 국유지를 평당 5,000원에 분양한 사실이 전혀 근거없는 내용이므로 이로 인해 회사의 존폐위기에까지 이르게 되어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극심하여 실추된 기업의 명예를 보상받고자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지난 6월 18일자 본지 15면 『국유지 멋대로 농지분양』기사와 관련, 본지는 유령 영농회사로서 국유지 평당 5천원씩 받고 불법분양이라는 허위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대우개발(주)은 법인등록이 된 합법적인 영농회사로 국유지를 불법 분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목 : 반론보도

• 내용 : 경인일보가 지난 6월 18일자 15면 『국유지 멋대로 농지분양』 제하의 기사에서 “D개발이 유령 영농회사로서 국유 간석지를 개발하여 평당 5천원씩 받고 분양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는 보도를 하였으나 대우개발(주)은 법인등록이 된 영농회사로서 간석지를 타인에게 분양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기사에 대해 반론합니다.

반론보도신청인 :

대우개발(주) 대표이사 박사학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인일보 1999년 7월 24일 15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중대대상기사의 소재목(수자공 주민 신고 불구 방치...)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京仁日報 :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1999년 7월 24일자 1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단체가 상류층 회원만을 상대로 유기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99서울중재230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사단법인 한살림(회장 박재일)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1999. 7. 1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SBS-TV : 「제3취재본부」 프로그램(1999년 6월 15일 22 : 55)

내 용 : (전략)

▷ 기자 : 리치 마케팅은 먹거리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강남에서는 채소와 과일 등 거의 모든 먹거리를 회원에게만 공급하는 이런 전문점이 성업 중입니다. 당초 토질, 환경보호 차원에서 생산자가 농약을 쓰지 않고 시작한 유기농산물도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상류층들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가격은 어느정도 돼요?”

▷유기농야채대리점 직원 : 농약 안치고 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추수되는 것도 적고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죠.

▷기자 : 회원에 가입한 사람들은 대부분 알음알음으로 찾아온 사람들.

“드신지가 오래됐어요?”

▷소비자 : 오래됐어요. 난 멀리서도 와요. 가회동, 이촌동 이런 데서도 오시고...

▷기자 : 멀리서 일부러 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사단법인 한살림 회장으로로서 지난 6월 15일 서울방송의 「제3취재본부」가 기획한 ‘상류층은 없다’의 보도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먹거리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 직거래운동의 장인 한살림 강남매장과 소비자 회원들의 구매모습을 비추면서, 이 또한 상류층의 자기과시적 물적 소비욕망을 충족하는 생활행태로 다룬 것은 친환경농산물 자체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소비실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된다. 결국 이런 이해부족으로 한살림과 2만5천세대 회원가족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친환경농산물을 권장해야 할 언론이 친환경농산물 소비의 억제와 위축을 유도하였다.

신청인 법인은 전국적으로 2만5천세대의 회원들이 있으며 이들은 평범한 젊은 주부들이다.

앞선 의식을 가져야 할 언론이 시대의 징표를 알지 못하고, 더욱이 수많은 시민들이 고쳐하며 오랜 세월동안 애써 만들어온 내용을 진지하게 알아보고 정확하게 확인해보려는 생각과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한 순간의 왜곡보도로 짓밟았다. 따라서 언론중재를 신청하고자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서울방송이 지난 6월 15일자 ‘상류층은 없다’ 제하의 보도에서 리치마케팅이다, VIP 마케팅이라며 고급 의상실과 비싼 회원제 헬스클럽 등

을 다루면서, 먹거리도 예외가 아니더라도 한살림 매장과 소비자 회원들의 구매모습을 비추면서, 이 또한 상류층의 자기과시적 물적 소비욕망을 충족하는 생활행태로 다루고 환경농업을 하는 생산자들은 처음의 의도는 변질되고 지금은 마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살림은 상류층만을 대상으로 회원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 한살림은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직거래운동의 장이며, 밥상의 안전은 건강한 농업을 지키고 농업을 통해서도 농촌에서 생활이 가능한 농업인의 삶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농업을 살리는 일을 토대로 온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한살림에는 피약벌에 잡초와 씨름하고 병충해와 갈등하며 경제적 어려움은 뒷전으로 한 채 농업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수많은 환경농업인과 갖은 불편을 마다하지 않고 시중가격과의 차이를 유공해 음식물을 줄이는 것으로 보완하고 공해유발 생활을 고치면서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착실하고 건전한 소비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우리 정부(농림부)도 지난해 땅 환경 먹거리 등의 오염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친환경농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 서울시의 경우도 서울시민의 돈으로 팔당상수원 수질보호와 시민의 안전한 밥상을 위해 한살림을 비롯한 농협, 경실련 정농생협, 한국여성민우회 등을 통해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서울방송에서 상류층이 즐겨찾는 리치마케팅의 현장으로서 보도한 한살림 강남매장과 똑같은 형태)을 서울시가 직접 확보해서 무료 임대해 주고 있는 상태이다.

합의사항

● 제목 : 반론보도문

● 내용 : 지난 6월 15일 방송된 「제3취재본부」 ‘상류층은 없다’에서 리치마케팅으로 언급된 유기농산물에 대해 한살림측은 이 판매가 농업인

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주므로 리치마케팅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SBS-TV 1999년 7월 27일 「제3취재본부」 프로그램 방송말미에 자막과 육성으로 방송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SBS-TV : 「제3취재본부」 프로그램(1999년 8월 3일 22 : 55)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협회가 PC통신의 'MP3 파일' 제공을 중지하도록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99서울중재233

정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사)한국레코딩뮤지션협회

(회장 윤영인)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1999. 7. 16.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경향신문 : 『법정싸움 번진 'MP3'』 제하의 기사 (1999년 7월 12일자 23면)

내 용 : 음악전송파일인 「MP3」을 둘러싼 저작 인접권단체, PC통신사, 파일공급업체간의 다툼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MP3 파일」 공급업체인 흥사는 11일 PC통신사들이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달말부터 MP3 파일전송 서비스를 중단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하이텔」을 운영하는 한국통신하이텔과 「천리안」을 운영하는 데이콤을 상대로 전송서비스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중략)

흥사는 소장에서 『세계 최초로 MP3 플레이어 개발하는 등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내수시장과 수출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며 『저작인접권 단체들과 벌이고 있는 민사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보제공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레코딩뮤

지션협회 등 저작 인접권단체들은 『음원 소유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며 지난달말부터 PC통신사의 MP3 파일공급을 전면 중단시켰고 지난 4월에는 파일공급업체들을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사) 한국레코딩뮤지션협회 회장으로 경향신문 1999년 7월 12일자 23면 『법정싸움 번진 'MP3'』 제하의 기사로 인해 신청인 협회가 반 사회적인 단체로 인식되는 등의 부작용과 회원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지경에 이르러 중재를 신청한다.

기사에서는 '저작 인접권 단체들'이란 복수 개념의 용어를 사용했으나 현재 국내에서 저작 인접권을 소유한 단체는 신청인 협회와 한국 연예제작자 협회 두곳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흥사는 (사) 한국연예제작자협회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신청인 협회는 서비스의 중지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통신상의 MP3 음악 파일의 이용 촉진을 장려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서비스가 중단된 흥사를 비롯한 전체 IP업체들이 원활히 서비스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는 지난 99년 7월 12일자 23면에 『법정싸움 번진 'MP3'』 제하의 기사에서 “음악 전송 파일인 'MP3'를 둘러싼 저작 인접권 단체, PC통신

신사, 파일공급업체간의 다툼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저작권 인접권 단체들과 벌이고 있는 민사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보제공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에 앞서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레코딩뮤지션협회 등 저작권 인접권단체들은 음원 소유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며 지난달말부터 PC통신사의 MP3 파일공급을 전면 중단시켰고…”라는 내용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저작권 인접권 단체 중 한국레코딩뮤지션협회는 이번 사태와 아무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목 : 정정보도문

• 내용 : 지난 7월 12일자 23면에 보도한 『법정 싸움 번진 ‘MP3’』기사에서 저작권 인접권 단체 중 ‘한국레코딩뮤지션협회’는 통신상의 MP3파일 공급서비스 중지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향신문 1999년 7월 26일자 6면 『여론·독자』란에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향신문 : 『‘MP3기사’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1999년 7월 26일자 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위원회가 도축장 설치 주민업체로부터 마을발전기금으로 받은 돈을 관계자끼리 나누어 가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99경기중재28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추계리도축장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형배)

피신청인 : 용인연합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1999. 7. 16.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용인연합신문 : (1) 『금품요구설…반대명분 ‘논란’』 제하의 기사(1999년 7월 14일자 2면)

내 용 : 용인도축장 설치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이형배)가 도축장 건축허가 재신청 시점에 대양측에다 수억여 원의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말썽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대책위가 애초부터 도축장 설치

반대 목적보다는 한몫을 차지하기 위한 노림수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중략)

이에 대해 이광우 씨(40·추계1리 이장·주민대책위)는 “우리측에서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다”며 오히려 “대양측이 일부 주민들을 매수해 주민들을 상대로 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한편, 추계리 주민들은 지난해 3월 추계1리 272-1 일원 전원주택 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주체인 J업체로부터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으나 이중 절반 가까이를 일부 주민대책위 관계자끼리 나눠 가진 사실이 알려져 고소사건으로 비화됐었다.

당시 합의금을 개별적으로 받은 이들의 영수증에는 ‘본인 집에 인접한 도로사용·확장 및 복개공사·공사차량과 입주차량의 통행허용에 동의하며 동의대가로 금액을 영수함’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금액은 제각기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2) 『국회의원 반대 압력 ‘확인’』 제하의 기사 (1999년 7월 14일자 2면)

대양산업(주)(대표·정진홍)가 추진 중인 양지면 추계리 용인도축장 건립사업과 관련, 현직 국회의원이 인허가 관청을 상대로 수차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반대 압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309호 2면>

이는 축산물작업장(도축장) 설치허가권자인 경기도와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용인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밝혀졌다.

이아무개 의원(68)의 도축장 반대압력은 당초 창윤식품(주)가 추진할 당시 축산발전기금까지 융자받을 수 있도록 농림부에 추천서를 써줄 정도로 호의적인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더욱이 이 의원은 도축장 반대에 대해 추계리가 자신의 고향인 점과 주민반발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미 전체 세대수의 70여%가 도축장 설치 동의 의사를 표했던 것으로 나타나 갖가지 의혹마져 낳고 있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용인시 양지면 추계리 도축장 대책위원회위원장으로서 1999년 7월 14일자 용인연합신문 2면『금품요구설…반대명분 ‘논란’』제목의 기사에 대해 중재신청한다.

첫째, ‘수억여 원 요구사실’을 보도하고 있으나 그렇게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둘째, “1억원을 받았으나 이중 절반 가까이를 주민대책위 관계자끼리 나눠 가진…”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사실은 마을회의를 거쳐 실재 거주하는 가구를 중심으로 전원주택단지 조성시 공사차량 출입이 빈번하여 많은 피해를 보는 가구는 5백만원씩, 그리고 그 외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가구는 2백만원씩 보상금 형식으로 나눠 갖기로 결정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 것이며 위 금액은 도축장설치를 찬성하는 가구에도 똑같은 원칙으로 배분하였다.

셋째, 계산상 오류를 범하여 지금까지 2년여 동안 도축장설치반대 투쟁을 벌여온 추계리 주민의 명예 실추라는 피해와 진실을 모르는 독자로 하여금 70여%가 찬성하는 듯한 착각을 하게 하

였으므로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가 지난 7월 14일자 2면에 『금품요구설…반대명분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용인도축장 설치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 이형배)가 도축장 건축허가 재신청 시점에 대양측에다 수억여 원의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말썽이 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용인도축장 설치반대 주민대책위원회측은 그렇게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J업체로부터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으나 이중 절반가까이를 일부 주민대책위 관계자끼리 나눠 가진 사실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이 보도내용도 마을회의를 거쳐 정당하게 마을 주민들에게 분배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본지가 지난 7월 14일자 2면에 『국회의원 반대 압력 ‘확인’』 제하의 기사에서 이미 주민의 전체 세대수의 70여%가 도축장 설치 등의 의사를 표했던 것으로 드러나…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약 25%였던 것으로 드러나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목 : 반론보도

• 내용 : 용인연합신문이 지난 7월 14일자 2면에 『금품요구설…반대명분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용인도축장 설치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 이형배)가 도축장 건축허가 재신청 시점에 대양측에다 수억여 원의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말썽이 되고 있고, J업체로부터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으나 이중 절반 가까이를 일부 주민대책위 관계자끼리 나눠 가진 사실이 있으며, 주민의 전체 세대수의 70여%가 도축장 설치 등의 의사를 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대책위원회는 위와같은 금품을 요청한 바 없고, J업체로부터 받은 마을발전기금은 마을회의를 거쳐 정당하게 분배되었으며, 추계리 전체 주민들의 25% 정도만이 도축장설치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위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반론보도신청인 : 추계리도축장설치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형배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용인연합신문 1999년 8월 4일자 2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소제목(추계리 용인도축장)과 같게 하고, 내

용은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용인연합신문 :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1999년 8월 4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회사가 학생골프대회 참가자들로부터 타 지역보다 2배의 입장료를 받아 폭리를 취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99경기중재29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주)신태진(대표이사 강형식)

피신청인 : 경기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1999. 7. 19.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경기일보 : 『인천 국제컨트리클럽 학생골프대회 유치 ‘장삿속’ 입장료 타 시·도 2배 폭리』 제하의 기사(1999년 7월 12일자 15면)

내 용 : 인천시 골프협회장이 운영하는 인천시 서구 경서동 국제컨트리클럽(대표 김태진)이 학생대회 참가자들로부터 타· 시도 골프장보다 2배 가까운 경비를 받고 있어 지역 골프꿈나무 육성은 외면한 채 영리추구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11일 시 골프협회와 학부모들에 따르면 국제컨트리클럽은 각종 학생골프대회를 유치하면서 참가자들에게 입장료로 일반인과 똑같은 11만2천원을 받고 있다.

이는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회원대우 자격

으로 분류해 입장료를 절반 정도 할인해 주는 다른 시·도 골프장의 대회경비 5만5천원의 두배를 넘는 것이다.

특히 타 골프장의 경우 선수 4명당 한명의 캐디를 붙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골프장 규정을 들어 선수 한명당 캐디를 한명씩 붙여 1인당 4만원의 캐디파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석하는 선수들은 15만2천여 원의 경비를 지출하고 있다.

인천시내 초·중·고교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골프대회는 1년에 5개 정도로 거의 인천유일의 18홀 규모인 국제컨트리클럽에서 열리고 있다.

학부모 A씨는 “대회경비가 너무 비싸 운동을 포기해야 할 판”이라며 “학생 교육차원에서 다른 시·도의 골프장처럼 대회 참가선수를 회원대우 자격으로 분류, 맘 놓고 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주)신태진 <인천국제컨트리클럽> 대표이사로서 경기일보 1999년 7월 12일자 15면 『인천 국제컨트리클럽 학생골프대회 유치 ‘장삿속’ 입장료 타 시·도 2배 폭리』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중재신청한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에서

1) 인천국제컨트리클럽 학생골프대회 유치 장
삿속

2) 할인혜택없이 1인당 캐디비까지 챙겨

3) 인천시 골프협회장이 운영하는 국제컨트리
클럽(대표 김태진)

4) 대회참가자들에게 112,000원 받아 다른 시
· 도 골프장 대회경비의 2배를 넘는다고 하였
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즉, 사실은

1) 매년 초 인천광역시 골프협회로부터 경기장
사용 및 일정을 요청 받아 경기일정을 배정하고
있으며 당사에서는 대회를 줄여 명분 있는 2개
대회만 개최해 줄 것을 수차 요청하고 있으며

2) 캐디비는 골퍼가 캐디(경기보조원)에게 직
접 지불하는 금액으로 회사수입금과는 전혀 상관
없음.

3) 인천국제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주)신태
진의 대표이사는 강형식, 허박자이다.

4) 현재도 대한골프협회에 등록된 골프대회 경
기성적우수자(등록선수)에게는 연습경기 및 대
회 기간 중 회원대우(55,000원)하고 있으며 인천
시 소재 학교선수 중 등록된 선수가 20명 있다.

5) 인천광역시 골프협회장(김태진) 취임은 '93년
1월 전임 협회장의 임기만료로 동골프협회의 임
원진에서 마땅한 인사가 없으므로 필히 취임하여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아 수락하였으며 '95년
9월경 협회장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협회 임
원진에게 통보한 바 있으나 이 당시에도 책임자
가 없으니 계속 유임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
어 이후 협회주관 행사 등에 일체 관여나 참여하
지 않고 있으며, 각종 대회 팜플릿상에 격려사
등도 일체 사양하고 있고 협회재정상 협회장 찬
조금만 지급하고 명의만 협회장직으로 있을 뿐
이다.

6) 당골프장은 타골프장보다 지리상으로 매우
유리한 여건에 있어 전국 골프장 중에서 내장객
을 많이 유치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1개 대회(3일
간) 기간 중 일반 내장객을 받지 못함으로서 영
업손실이 약2천5백만원(연간 약 1억원) 발생을
감수하면서 인천광역시에 하나뿐인 유일한 골프

장으로 최대한 협조하는 상황으로서 당골프장 입
장에서는 대회를 치루지 아니하는 것이 영업이익
이 많다.

신청인은 위와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사실확
인이 되지않은 제보자의 일방적인 제보내용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도함으로써 선량한 일반 구독자
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오게 하고 당사의 명예와
전통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혀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경기일보가 지난 7월 12일자 15면에 『입장료
타시 · 도 2배 폭리』 제목의 기사내용에서

1) 인천국제컨트리클럽 학생골프대회 유치 장
삿속

2) 할인혜택 없이 1인당 캐디비까지 챙겨

3) 인천시 골프협회장이 운영하는 국제컨트리
클럽(대표 김태진)

4) 대회참가자들에게 112,000원 받아 다른 시
· 도 골프장 대회경비의 2배를 넘는다고 하였
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사실은 인천국제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법인
(주)신태진의 대표이사는 강형식, 허박자이며
인천 광역시 골프협회장 김태진은 93년 1월 전임
협회장의 임기만료로 동 골프협회의 임원진에서
마땅한 인사가 없으므로 필히 취임하여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아 수락하였으며 '95년 9월경
협회장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협회 임원진에
게 통보한 바 있으나, 이 당시에도 책임자가 없으
니 계속 유임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어 이후
협회주관 행사 등에 일체 관여나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각종 대회 팜플릿상에 대회사나 격려사
등도 일체 사양하고 있으며, 협회재정상 협회장
찬조금만 지급하는 등 명의만 협회장으로 있을
뿐인데도 마치 김태진이 협회장직을 이용, 학생
골프대회를 유치하여 영리추구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다고 아니
할 수 없으며 본 학생골프대회는 매년 초 인천광
역시 골프협회로부터 경기장사용 및 일정을 요청
받아 경기일정을 배정하고 있으며, 캐디비는 골
퍼가 캐디(경기보조원)에게 직접 지불하는 금액
으로서 회사수입금과는 전혀 상관없으며 현재도

대한골프협회에 등록된 선수에게는 연습경기 및 대회기간 중 회원대우(55,000원)하고 있으며, 인천시 소재 학교 선수 중 등록된 선수 20명에 대하여 회원대우하고 있습니다.

반론보도신청인
(주)신태진 대표이사 강형식

합의사항

- 제목 : 반론보도
- 내용 : 경기일보가 지난 7월 12일자 15면에 『입장료 타시·도 2배 폭리』 제목의 기사에서 ‘인천시 골프협회가 운영하는 국제컨트리클럽이 장삿속으로 학생골프대회를 유치하여 할인혜택 없이 1인당 캐디비까지 챙기고 대회참가자들에게 112,000원을 받아 다른 시·도 골프장 대회경비의 2배가 넘는다’라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사실은 국제컨트리클럽은 영리 추구를 위해 학생골프대회를 유치한 바 없고, 캐디비는 골퍼가 캐디(경기보조원)에게 직접 지불하는 금액으로서 회사수입금과는 상관없으며, 현재도 대한골프협회에 등록된 선수에게는 연습경기 및 대회기간

중 회원대우(55,000원)하고 있으므로, 위 기사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합니다.

반론보도신청인 (주)신태진 대표이사 강형식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기일보 1999년 8월 2일자 15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소재목(할인혜택없이 1인당 캐디비까지 챙겨...)과 같게하고, 내용은 본문활자와 같게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기일보 :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1999년 7월 31일자 15면)

내 용 : 인천 국제컨트리클럽은 경기일보 12일자 15면 ‘입장료 타 시도 2배 폭리’ 기사와 관련해 영리추구를 위해 학생골프대회를 유치한 바 없고 캐디비는 골퍼가 캐디에게 직접 지불하는 금액으로 회사수입과는 상관이 없으며 현재도 대한골프협회에 등록된 선수에게는 연습경기 및 대회기간 중 회원대우(5만5천원)하고 있으므로 위 기사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합니다. □

신청인 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숙취해소용 천연차가 아무런 효과도 없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고 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99서울중재235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주)그래미(대표이사 신삼래)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1999. 7. 19.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KBS-1TV : 「KBS 리포트」 프로그램(1999년 6월 18일 22:00)
내 용 : ▷ 기자 : 다양한 수상경력을 내걸고

있는 한 중소기업의 진열장입니다. 상을 많이 받은 만큼 제품이 우수할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세계3대 발명전시회를 석권했다고 하는 현수막을 내건 이 회사도 국내외 수상경력이 화려합니다.

이 회사는 26년만에 법정기념일로 부활된 올해 발명의 날에서 최고의 영예인 철탑산업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이 회사가 자랑하는 상품은 탁월한 효능을 가졌다는 숙취해소 음료입니다. 이 숙취해소음료는 발명특허는 물론이고 정부출연기관인 식품개발연구원에서부터 알콜분해에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를 장식한 다양한 수상경력과 수많은 특허등록증이 눈길을 끄니다.

홍보담당자는 이 음료가 숙취해소가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자랑합니다.

▷홍보담당자 : 주무시기 전에 한 캔을 드시고 주무시면 아침에 숙이 안쓰려요. 해장국이 필요 없고, 머리가 안아프고, 입냄새가 안나고..., 술먹으면 입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걸 제거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약품쪽으로 간 회복이 굉장히 빨라요. 술로 인한 지방간은 하루 한 캔씩, 두 달만 복용하면 깨끗이 나아요.

▷기자 : 음주운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까지 합니다.

▷홍보담당자 : 소주 2병이 한 캔으로 되니까 30분 후에 한 캔 마시고 2시간 후에 운전을 하면 (음주농도가) 제로가 돼요. (중략)

▷기자 : 직원이 얘기하는대로 효과가 있는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성인 남자 세 명에게 단백질이 풍부한 안주와 함께 각각 소주를 한 병반씩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측정한 알콜농도는 0.11에서 24까지, 모두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술을 마신지 30분이 지나 이 음료를 한 캔씩 마시고 노래방에서 두시간 정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시간 반이 넘어 다시 음주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알콜농도가 제로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술마신 직후에 측정한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영등포경찰서 경찰관 : 이것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다운된 것이지 약에 대한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회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서울시에 통보했습니다. 숙취해소라는 기능성을 상품에 표시하는 것 자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장 : 과대광고니까, 이런 것을 숙취해소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고 서울시에 통보를 하고 서울시는 다시 송파구에 처분하도록 내려보냈.

▷기자 : 그러나 음료회사는 이에 대해 헌법소원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발명인의 권리는 헌법

으로 보장되어 있어 특허의 명칭인 숙취해소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의 발명자는 올해 발명의 날에 국가에서 주는 산업훈장을 받았습다.

발명의 날 산업훈장은 특허청 산하기관인 발명진흥회의 1차심사를 거쳐 특허청의 국장급으로 구성된 2차심사에서 사실상 최종 결정됩니다.

1차심사에서 이 회사는 발명특허 등록건수와 각종 입상실적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중략)

(특허청에서 대담)

▷기자 : 특히 심사과정에서 최근 해외에 1,700만달러 수출계약을 했다는 사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특허청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서기관 : 해외 국제발명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많이 있고요, 발명품을 천만불 수출계약을 했는데, 수출계약을 했다는 것은 물건이 안나갔을 뿐이지 곧 물건이 나간다는 것이지요.

(OPCO회사 관계자와 전화통화 장면)

▷기자 : 프랑스에 900만불을 수출하기로 했다는 OPCO라는 회사의 계약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곳 회사 이름이 OPCO 맞습니까?

▷외국인 : 아니다. 이곳은 회계법인이다. 전화 잘못됐다.

▷기자 : 그래미를 아느냐?

▷외국인 : 모른다.

▷기자 : 그래미와 수출계약을 했다는데...

▷외국인 : 도대체 무슨 회사 얘기하는 거냐?

▷기자 : 천만달러 어치를 수출하기로 했다는 독일회사와의 계약서도 수출계약이라기 보다는 대리점 계약과 유사한 법정판매의향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수출계약실적을 그대로 믿고 있는 특허청의 심사과정에 의문이 남습니다. (중략)

▷기자 : 이 업체는 산업훈장을 딴 직후 미국 피츠버그 발명전에서도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특허청 산하 발명진흥회에는 해마다 국내업체와 발명가들이 해외전시회에 참여하도록 주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올해 미국 피츠버그 발명전시회에도 발명진흥회 주선으로 국내에서 14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리인을 통해 출품한 두 개 업체를 제외한 12개 업체가 금상과 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업체의 80% 이상이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상식 전날 한 회사 대표는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최고상을 받게 되어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주최측과 협상을 통해 한국 참여업체 모두에게 상을 주기로 했다는 사실도 폭로했습니다.

▷참여업체 관계자 : 어제 아침부터 계속 본부측과 협상해서 올피플코리아(한국의 모든 업체수상)을 해주어야 값이 나가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OK하면서 날 보고 심사실로 오라고 해 갔더니 이번에 최고 그랑프리를 나를 준다, 나에게 그랑프리를 주는데... 좋다. (내가) 5만불 주겠다고 사인했어. 사인하는 조건하에 올피플코리아로... 금, 은, 동은 얘기 않았다.

▷기자 : 이번뿐 아니라 지금까지 해외 발명전에서 발명진흥회가 행사주최측과 협상해서 가짜 상을 받아왔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참여업체 관계자 : 제 맘에 드는 높은 금, 조금 덜들면 은,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어. LA전시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지... (진흥회에서 주최측에) 가짜상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받아 갔으니 나라꼴이 뭐야, 이거... (중략)

▷전시회 참여업체 관계자 : 이번 피자버그 대회에서는 상에 사인을 안하고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사인을 받아와야 한다고 다시 다 거 뒤가고 하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글자가 틀려서 바뀌야 한다고 했더니, 상을 다워서 종이가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기자 : 이렇게 해외전시회에서 받아온 상들은 국내에서 소비자들의 눈을 끌기 위한 광고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자 : 상품선전을 위해서 해외발명전시회의 수상경력을 노리는 기업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치레 상잔치에 불과한 해외전시회에 매년 중소기업을 모집해서 참여시키는 발명진흥회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대한민국 특허는 물론 미국 특허까지 등록된 특허 제품인 숙취해소용 천연차 ‘여명 808’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서 KBS가 99년 6월 18일 22:00~22:14에 방송된 KBS 리포트 방송내용으로 피해를 입은 바 본 중재를 신청한다.

영등포경찰서 경찰관이 “음주 농도를 측정할 코올 농도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술 마신 직후 측정한 것과 별 차이가 없다.”, “이것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다운된 것이지 약에 대한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고 방송한 내용에 대하여 당사는 약으로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공개된 장소에서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여 방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 측정한 후 방송함으로써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임상실험 등을 전부 부인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숙취해소라는 기능성을 상품에 표시하는 것 자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라고 하면서 본 제품이 법을 어기고 생산한 것으로 방송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과장의 “과대광고니까, 이런 것을 숙취해소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라 라고 서울시에 통보하고 서울시는 다시 송파구에 처분하도록 내려보냈다.”라는 발언을 방송함으로써 영업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신청인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특허법 제223조에 의한 특허 표시를 하여 제품에 특허의 명칭 특허 번호 등을 기재하고 발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

또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의 발명자는 올해 발명의 날 국가에서 주는 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특허 출원이 많고 시상 경력, 포상 경력이 많다는 것을 가지고 이번 산업 훈장이라는 아주 큰 상을 받았는데 그것은 기준에 발명의 날 산업훈장을 받는 것과고는 상식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라는 것은 발명의 날 특허가 많고 지적 재산권이 많으며 산업화에 성공하고 그러므로 시상도 많이 받고 포상을 받아야 발명의 날 상을 수상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뇌물성 수상인 양 보도함으로써 수상자뿐 아니라 국가 기관 및 통치권자가 수상한 산업 훈장의 흑막을 파헤치는 듯한

방송을 하였다.

OPCO는 당사와 프랑스 지역에 ‘여명 808’을 수출하기로 하였으나 방송후 당사는 OPCO와 수출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는 억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신청인이 피츠버그 국제 신기술 발명전시회에 서 세계어린이 기금 50,000달러를 기증하여 세계 어린이들이 명랑하고 밝게 자라기를 기원한다는 연설과 함께 기증하는 것을 앞과 뒤를 조작하여 전부 삭제하고 상을 50,000달러에 사온 것인 양 방송하였다.

위와 같은 보도내용으로 인하여 프랑스와의 계약이 해약되고 국내 판매가 30% 이하로 떨어지고 수출지역의 판매 피해도 30%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져 그 피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명예가 실추되어 회생불능의 상태가 되었기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 방송이 보도한 1999년 6월 18일 22:00~22:14분에 방송한 ‘KBS 리포트’ 프로그램에서 (주)그래미에서 발명특허 제181168호로 생산판매하고 있는 숙취해소용 천연차 ‘여명808’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방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숙취해소용 천연차 ‘여명 808’은 한국 식품개발연구원의 박사들이 8개월의 실험 연구결과 숙취해소에 획기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고 특히 미국 특허 등록 및 FDA 공인 연구기관의 독성검사도 마친 20세기 최고의 숙취해소천연차로 입증되었습니다.

(주)그래미 회장인 남종현은 발명인으로서 특허가 많고 해외 수상 등 수출실적 또한 크며 중소기업으로서 성실한 모범을 보였고 종업원의 복지,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참된 기업인으로 20세기 한국의 TOP10으로 KBS가 선정한 100년만의 최고의 발명가임을 본 방송은 확인하였습니다.

피츠버그 국제 수상 50,000 US\$에 대한 문제도 발명가 남종현이 피츠버그 국제 발명전 수상에 앞서 세계최고 발명가상, 아시아 최고 발명가상 식음료 분야 금상을 수상하고 굶주리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세계어린이 기금으로 기부한

것입니다. 이를 불법 복취하여 편집보도한 자들을 형사 고발할 것입니다. 특히 일본 최고의 발명가 요시르 나가마츠를 누르고 세계최고의 발명가 상을 받은 ‘여명 808’ 발명가 남종현은 한국 발명을 세계에 널리 알린 한국 발명 역사의 쾌거이며 온 국민의 영광이고 자랑거리입니다.

본 방송이 지난 99년 6월 18일 22:00~22:14에 방송한 KBS리포트 「국제 발명전 상술에 놀아난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발명가 남종현 씨는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사실은 발명가들의 훌륭한 업적이 자세히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목 : 반론보도문

• 내용 : KBS 방송은 1999. 6. 18. 방송된 KBS리포트 프로에서 주식회사 그래미에서 발명특허를 받아 생산판매하고 있는 ‘여명 808’의 숙취해소 효과에 관하여 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방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숙취해소용 천연차 ‘여명 808’은 한국 식품개발연구원의 박사들로 구성된 실험팀의 8개월에 걸친 실험결과에서도 숙취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고, 미국에도 특허등록이 되었으며, 미국의 FDA공인 연구기관의 독성검사에도 합격한 제품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남종현 씨는 숙취해소용 천연차 ‘여명 808’을 발명한 공로로 INPEX국제발명전 주최측의 심사에 의하여 참가자 중의 최고 영예상인 그레이트 그랑프리상을 수상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KBS-1TV 1999년 7월 30일 22:40 「KBS 리포트」 끝부분에 진행자의 육성으로 빠르지 않게 보도하되, 제목은 화면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한다.

• 신청인은 위 중재대상보도와 관련, 피신청인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위 보도문을 광고 등 다른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KBS-1TV : 「KBS리포트」 프로그램(1999년 7월
30일 22:40)

합의사항 이행결과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신문사가 재정난으로 정상적인 임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99서울중재237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주)호남신문노동조합(위원장 이관영)

피신청인 : 주간광주전남내일신문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1999. 7. 22.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주간광주전남내일신문 : (1) 『“망할 언론사는 빨리 망해야 한다”』 제하의 기사(1999년 7월 14일자 3면)

내 용 : “지방 언론사가 자율 개혁이라는 이름의 칼 도마 위에 올랐다. 다음 차례가 곧 올 것 같다.” 광주지역 한 일간지 편집국장은 무등일보의 자진 폐간 사태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무등일보의 자진 폐간 사태가 광주·전남 언론계에 개혁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문화관광부는 광주·전남지역의 언론시장에 대해 “존립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신문사들의 난립으로 언론의 폐해가 극심한 상태”라고 규정해 왔다.

그 중의 하나로 지목되던 무등일보의 폐간 사태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신문사들에게 존폐의 선택을 강요하는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언론사 중 무등일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곳은 10개 신문사 중 정상적인 일간

지 발행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전광일보, 전라일보 등 3개사와 모기업 청전가든이 부도 이후 회의를 중인 호남신문, 납입자본금 유용 및 지방주채기자 채용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대표이사가 구속됐던 전남매일이 있다. (중략)

지난 22일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이후 재정난으로 기자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언론사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실태파악이 급속히 진행중이다. 국세청과 검찰 역시 지방언론사에 대한 개혁 압박 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주지점의 한 관계자는 “임금체불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사주는 1차적인 조사 대상으로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후략)

(2) 『정상적인 급여지급 3개사에 불과』 제하의 기사(1999년 7월 14일자 4면)

광주지역 10개 일간 언론사 중 97년 IMF 이후 현재까지 노사간 정해진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회사는 광주일보, 전남일보, 광주매일 3개사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호남일보의 경우 올해 노사협상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급액 기준으로 5년 경력 기자가 850만원에서 900만원 10년차가 1천50만원에서 1천1백만원 수준이다.

지난 97년에는 5년차가 1천8백91만원, 10년차 기자는 2천3백26만원을 받아 왔다. (중략)

이같은 저임금 구조는 곧바로 언론사의 비정상적인 운영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정상적인 급료 지급이 되지 않았던 무등일보를

비롯 일부 언론사들은 편집국 간부들이 앞장서서 기자들에게 광고를 강요한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 출입처의 춘지 수수 관행도 더욱 노골화 됐다는 게 공무원 사회의 공공연한 시각이다.

진년 재경부 장관은 지난 6월 22일 각료회의 석상에서 “일부 지역에서 신문사가 기자들에게 봉급을 제대로 주지 않아 지방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실상을 보고하기도 했다.

광주지역 어떤 신문사에서는 사장 및 편집국장 등이 편집국 차장 이상의 간부들에게 노골적으로 1건 이상의 광고를 따오도록 지시한 사례도 있다. 또 일부 신문사에서는 건설업체의 입찰 비리 등을 집중 취재 광고와 연계시키는 사례가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내일신문 99년 7월 14일자 『“망할 언론사는 빨리 망해야 한다”』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기사로 호남신문과 소속 직원들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당하여 중재를 신청한다.

이 기사는 호남신문이 98년도 노사임금협상에 따라 체불없이 매달 정상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임금을 지급치 않는 것으로 사실과 다른 기사를 게재했다.

또 최근 언론개혁 분위기에 맞춰 호남신문 등 특정사를 겨냥, 망해야 할 신문으로 게재하는 등 악의적인 기사를 보도,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내일신문이 1999년 7월 14일자로 보도한 『“망할 언론사는 빨리 망해야 한다”』는 제하의 기사 내용 중 호남신문의 임금지급이 비정상적이라고 보도한 것은 호남신문이 98년도 노사임금 협상에 따라 체불없이 매월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정확한 사실 확인없이 보도한 것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내일신문은 14일 광주전남판 4면에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상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회사는 광주일보 등 3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정확한 확인절차 없이 예단하여 쓴 추측성 기사였으며 특히 호남신문은 IMF관리체제 이후에도 정상적인 임금지급이 이뤄졌을 뿐아니라 98년도 노사 임금협상에 따라 호봉별 정해진 임금지급액을 매월 제날짜에 체불없이 지급해 온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이를 정정합니다.

또 “정상적인 급여지급이 되지 않았던 무등일보를 비롯, 일부 언론사들은 편집국 간부들이 앞장 서서 기자들에게 광고를 강요한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춘지 수수관행도 더욱 노골화됐다.”는 표현부분에 대해서도 “호남신문과 소속기자들은 결코 광고강요나 춘지수수를 노골화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정상적인 일간지 발생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회사는… 모기업 청전가든이 부도이후 화의인가 중인 호남신문 등의…” 부분에 대해서도 모기업의 부도, 화의인가와는 별도로 호남신문은 정상적으로 신문을 발행해 왔을 뿐아니라 기자들 역시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의 여건을 냉철하게 인식,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신문제작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내일신문은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없이 무책임한 보도를 일삼았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정정보도합니다. 또 책임있는 언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본보의 보도로 호남신문 임직원과 동료기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호남신문 노동조합측에 전합니다.

합의사항

- 제목 : 호남신문, 3개사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급여 지급되고 있어
- 내용 : 본지 지난 7월 14일자 『“망할 언론사는 빨리 망해야 한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상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회사는 광주일보 등 3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호남신문은 98년도 노사임금협상에 따라 호봉별 정해진

지급액을 매달 체불없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주간내일신문 제295호 2면에 가로 12cm×세로 10cm의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사진식자 44급 고딕으로 하고, 본문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 본문과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주간광주전남내일신문 : (1) 『호남신문, 3개사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급여 지급되고 있어』 제하의 기사(1999년 8월 19

일자 2면)

내 용 : 본지 지난 7월 14일자 『망할 언론사는 빨리 망해야 한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상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회사는 광주일보 등 3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호남신문은 98년도 노사임금협상에 따라 호봉별 정해진 지급액을 매달 체불없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로 인해 누를 끼치게 된 호남신문 노동조합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호남신문은 모 기업인 청전가든의 화의 인가와는 별도로 정상적으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

경찰관인 신청인이 교통사고사건을 처리하면서 사망자의 유족에게 수고비를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99서울중재239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천 상 환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1999. 7. 23.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한겨레 : 『정신 못차린 ‘투캅스’』 제하의 기사 (1999년 7월 8일자 15면)

내 용 : 경기 파주경찰서 경찰관들이 교통사고를 조사하면서 뒷돈을 요구하는가 하면, 사건 현장에서 도난당한 수포의 인출자까지 확인하고도 몇달 동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파주서 교통사고조사반의 천아무개 경장(현재 조리파출소 근무)은 지난해 9월 파주시 조리면 죽원리 앞길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교통사고로 숨진 황정수(68) 씨의 아들 대인(38) 씨에게 500만원의 ‘수고비’를 요구했다.

천경장은 “당직과 야근을 하려면 밥값 등이 필요하다”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며칠 뒤 황씨쪽에서 200만원을 주자, 천경장은 “너무 적다”며 되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경기도지방경찰청 파주경찰서 조리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장 천상환으로서 한겨레신문 ‘99. 7. 8.자 15면 『정신 못차린 투캅스』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중재신청한다.

신청인은 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사고발생 이틀 후 현장검증시 황씨측이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난 것으로 현장검증을 마치고 신청인의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던 중 유족측의 일행 한명이 병원에 도착하자 “잘봐달라”는 말을 하며 차에서 내리면서 봉투를 차에다 두고 병원으로 가는 것을 곧바로 따라가서 봉투를 되돌려 주었다.

신청인은 허위보도로 경찰 전체의 명예와 개인

의 명예를 훼손당하는 피해를 입고 있어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한겨레신문이 99년 7월 8일자『정신 못차린 투캅스』 제하의 기사에서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가해자의 유족인 황대원에게 야근시 밥값 등이 필요하다는 500만원의 수고비를 요구 며칠 뒤 200만원을 주자 너무 적다고 돌려 주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파주경찰서 천상환 경장은 교통사망사고를 처리하면서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하여 당시 운전자 남상미를 구속하였는 바, 유족측에게 밥값으로 500만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으며 “잘 봐 달라”고 하면서 흰봉투를 차에 두고 내려 곧바로 뒤따라가 병원입구에서 돌려주어 뇌물을 거절한 사실이 있다.

합의사항

● 제목 : 반론보도문

● 내용 : 본지가 지난 7월 8일 15면에『정신 못차린 투캅스』 제하의 기사에서 경찰이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족측에게 수고비를 요구하였다고 보도한 데 대하여 천경장은 “유족측에게 밥값 등으로 500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유족들이 돈봉투를 차함에 두고 내려 즉시 되돌려 주었다.”고 밝혔다.

●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 13면 우측 하단에 게재하되, 제목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교통사고 유족에 수고비 요구)과 같은 크기로 하고 본문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1999년 8월 9일자 1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변호사인 신청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압선통과지역 주민들에게 소송을 부주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99부산중재16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김 중 철

피신청인 : 釜山日報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1999. 7. 26.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釜山日報 : (1)『원정관측 변호사 빚나간 ‘法魂’』 제하의 기사(1999년 6월 25일자 27

면)

내 용 : 법률사무소가 고압선 통과지역 주민들에게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비를 받아 주겠다”며 한국전력을 상대로 소송할 것을 부추기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 법률사무소는 ‘특정고객이나 사건을 유인해서는 안된다’, ‘광고물을 변호사 사무실이 외의 장소에 배포해서는 안된다’, ‘고객에게 부당한 기대를 가지게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변호사회 자체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에 있는 새서울합동법률사무소는 이달 초부터 부산 남구 대연3, 6동 일대 50여 가구에 ‘송

전선로(고압선)철거 등에 관한 의견서'라는 전단을 배포하고 있다. 이 곳 상공에는 15만5천kv와 6만6천kv 고압선이 지나고 있다.

이 전단에는 “한전에 송전선로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송전선로 철거가 가능하고 향후 철거될 때까지 매월 토지임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 10년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상응하는 토지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며 “본 법률사무소에 청구소송을 위임하면 재산권을 보전해 주겠다”고 부추기고 있다.

일부 주민들이 소송에 관해 문의하자 이 법률사무소 사무장 안석환 씨는 “소송만 제기하면 승소 확률은 1백%이고 수임료는 보상비의 30%”라며 “위임장에 도장만 찍은 뒤 6개월~1년정도 기다리면 1천여 만원의 보상비를 받을 수 있다”고 장담했다.

또 “고압선이 통과하는 지역은 많지만 공시지가가 높아 보상비가 많은 주택이나 상가지역에만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조만간 부산 북구 구포동 지역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씨는 또 “부산에는 고압선과 관련된 부당이득청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없으며 한전 본사가 서울에 있어 우리에게 위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이 법률사무소의 김종철 변호사는 “사무장 안씨가 고압선로 소송에 대해 수임활동을 벌이겠다고 해 허락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일반인들이 모르는 권리구제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법률가의 정당한 도리지만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당사자에게 해당 소송을 위임할 것을 제안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참여연대 박재율 사무처장은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할 것을 부추기는 것은 변호사의 양심을 어기는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전 부산전력관리처 관계자는 “대연 3, 6동을 통과하는 고압선은 각각 69년 12월과 66년 11월 송전을 시작했으며 이미 송전선로 건설 당시 보상규정에 따라 지주들에게 보상했다”고 밝혔다.

(2) 『변호사의 도덕불감증』 제하의 기사(1999년 6월 26일자 21면)

경제사정이 어려워 모든 업종의 거래가 지지부진해 먹고 살기가 어렵다.

변호사업도 경기를 타기는 마찬가지여서 사건수임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사무실 직원들 월급주기도 힘든 곳이 많은 실정이다.

하지만 법률사무소가 변호사회 자체규정까지 어겨가면서 고압선 통과지역 주민들에게 “한전에 소송을 제기하면 보상비를 받을 수 있다”며 소송을 부추긴 것은 사회지도층인 변호사가 양심과 품위를 스스로 저버린 행위다.

서울에 있는 새서울합동법률사무소는 이달 들어 부산 남구 대연동 일대 고압선 통과지역 50여 가구에 ‘송전선로(고압선) 철거에 관한 의견서’라는 전단을 배포하고 “한전에 소송을 제기하면 1백% 승소하고 임료와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며 소송을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상술이 지나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전단배포는 “특정고객이나 사건을 유인해서는 안되고 광고물을 변호사 사무실 이외에서 배포해서는 안된다”는 변호사회자체 규정마저 어기고 있어 해당변호사의 윤리마저 의심케하고 있다.

또 이 법률사무소 사무장은 지역주민들에게 “소송에 대한 착수금은 필요없고 승소하면 보상금의 30%를 수임료로 주면 된다”고 공언하면서 한전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할 것을 부채질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오피물 의혹, 환경부장관의 격려금 소동 등으로 사회지도층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가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이번 사건은 변호사가 자신의 이익을 앞세워 주민들에게 소송을 부추겼다는 사회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고 사회지도층에 대한 도덕적 불신을 가중시킬 것이다.

변호사 윤리강령 중 변호사는 성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명예와 품위를 보전한다는 구절이 있다.

이는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명예와 품위를 중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급급하기 보다 진정한 법의 정신을 지키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사건을 수

임하는 바람직한 변호사상이 아쉬운 대목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새서울합동법률사무소에 소속되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이다.

신청인은 그간의 법률도우미 활동으로 많은 상담을 하던 중 한전의 송전선로(고압선) 설치로 부당하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많은 사례를 접하게 되었고, 마침 사무장에게 법률문제를 상담한 사람 중에 부산시 남구 대연4동에 거주하는 서정복 등 주민이 고압선 피해를 문의하여 온 사실이 있다고 하므로 이를 계기로 소송에의 착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무장을 부산으로 출장을 보내게 된 것이고, 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의 성격상 한, 두 사람만을 선임하여 소송을 하는 것은 감정비의 부담이 과중하여 불가능하므로 소송착수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묻게 된 것이다.

‘송전선로(고압선)철거 등에 관한 의견서’는 동일한 내용의 반복 상담의 수고를 덜기 위하여 간명하게 요지만을 정리한 것으로 요청인에 대한 의견이므로 소위 ‘전단’이라는 광고지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또한, 새서울합동법률사무소가 주민들 일부의 요청으로 소송착수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송제기 여부를 문의한 사실은 있으나, 소송을 스스로 부추긴 사실은 전혀 없으며, 빈축을 산 사실 역시 없다.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신청인의 업무행위로 함께 근무하는 다른 변호사님들의 명예까지 훼손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송구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진실을 모르는 일부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변호사와 당사자간에 가장 중요한 신뢰를 일부 손상당하였으며, 변호사 본연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당보가 1999. 6. 25.자 27면에 『원정판촉 변호사 빚나간 ‘法魂’』 제하로 서울 소재 새서울합동법률사무소가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주민들의 고압선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부추기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고, 위 사무소의 김종철 변호사는 일부 주민들의 상담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의 수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이 집단소송적 성격인 관계로 같은 피해주민에게 동시에 소송에 임할 것인가 여부를 상담하던 중 편의를 위하여 ‘송전선로(고압선)철거 등에 관한 의견서’라는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여 주민들 중 일부에게 준 사실이 있으나 이는 변호사의 정당한 직무행위로서 작성된 것을 이해관계 주민에게 교부한 것으로 기사 내용 중 이른바 ‘전단’을 배포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또한 변호사회 규정을 무시하였다는 내용도 확인된 바 없으므로 이와 같이 정정보도합니다.

합의사항

● 제목 : 반론보도문

● 내용 : 본지는 지난 6월 25일자 27면의 『원정판촉 변호사 빚나간 ‘法魂’』이라는 기사에서, 서울에 있는 새서울 합동법률사무소가 부산 남구 대연동 주민들의 고압선 관련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을 부추겨 빈축을 사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위 사무소의 김종철 변호사는, 집단소송의 성격을 띤 소송의 수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피해 주민들에게 함께 소송할 것인가를 상담하다가, 편의상 작성한 ‘송전선로(고압선)철거 등에 관한 의견서’라는 법률의견서를 일부 주민들에게 준 일이 있으나, 이는 변호사의 정당한 직무행위로서 작성된 것을 관계 주민에게 교부한 것이지 ‘전단을 배포’한 것이 아니며, 변호사회 규정을 무시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1999. 8. 6.까지 부산일보 ‘정정과 반론’란에 보도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釜山日報 : 『정정과 반론』 제하의 기사(1999년 8월 6일자 1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국민회의의 영입대상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99서울중재241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함 세 웅

피신청인 : 朝鮮日報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1999. 7. 27.

처리결과 : 함 의

보도내용

朝鮮日報 : 『누구를 영입하려하나』 제하의 기사
(1999년 7월 23일자 4면)

내 용 : 국민회의가 ‘제2 창당(創黨)’을 위해 영입할 대상에 정가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여권의 한 책임인사는 이와 관련, “외부인사의 영입은 ‘비정치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5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고 국민들의 정치혐오가 심각한 데다, 내년 4월 총선이 신(新) 천년시대에 치러지는 특수성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국민회의는 외부의 수혈(輸血)을 통한 정치권의 물갈이로 승부하겠다는 것이다. (중략)

또 ‘DJ개혁’ 기원의 깃발을 든 친여(親與) ‘개혁그룹’도 관심의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발족된 ‘민주개혁국민연합’의 경우, 상임대표인 김상근(金祥根) 목사를 비롯, 박형규(朴炯圭) 목사, 윤영규 전 전교조위원장 등이 시선을 모은다. 또 지난 3월 발족한 ‘국민정치연구회’의 경우, 이사장인 이재정(李在禎) 성공회대총장, 함세웅(咸世雄) 신부, 소설가 유시춘(柳時春) 씨 등도 영입 0순위에 올라 있다.

이에 대해서 이총장 등은 “직접 정치할 생각은 없다.”고 손을 짓고 있다. 하지만 국민정치연구회 회원 300여 명 중 정치권 진입 대상인물이 100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천주교회 소속신부로서 교회법상 정치적 단체에 가입하여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나아가 신청인 개인으로서도 정당에 가입할 의사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신청인이 확인한 바로는 국민회의도 신청인을 신당에 영입하려는 의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더구나 신청인은 “‘DJ개혁’ 지원의 깃발을 든 친여(親與) ‘개혁그룹’”의 일원도 아니며, 신청인은 한국사회에서 소외 받고 억눌린자를 돕고, 부당하게 인권을 탄압하는 불의한 정치 권력에 대항하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신부본연의 임무와 소명으로 알고 수십년간 이 일에 종사하여 왔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이러한 신청인의 활동을 마치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에서 시작한 일인 양 폄하하고 왜곡시키는 취지의 허위 기사를 작성하여 수십년간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나름대로 애써온 신청인의 활동과 나아가서 신청인이 소속된 천주교회와 소속 신부들 그리고 정의구현사제단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다.

국민회의 관계자의 그 누구도 사제의 입당을 제안한 바도 없고 제안할 뜻도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설령, 이러한 제안이 있다하더라도 그 어떤 사제도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받아드릴 수도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확인절차도 없이 신청인의 이름을 신당 창당과 함께 언급하면서, 신청인을 “‘DJ개혁’ 지원의 깃발을 든 친여(親與) ‘개혁그룹’”의 일원으로 지칭한 것은 신청인과 사제단에 대해 사목적, 도덕적 명예를 엄청나게 실추시킨 고의적 행위라 하겠다.

조선일보의 보도 후에 사제단소속 신부들을 아

끼는 사제들과 수도자 그리고 많은 신자들, 특히 상도동 성당의 사목위원들은 신청인에 대하여 심한 불신감을 표했을 뿐 아니라 항의까지 했습니다. 신청인이 오보임을 잘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언론의 보도를 사실 그대로 믿고 있다. 그리고, 중립적 처지에서 그래도 이해를 했던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이 보도를 읽고 그러면 그렇지 신부들의 최종 목적은 결국 정치 참여였다고 부정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평소에 사제단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을 가졌던 사람들은 더욱 심하게 사제단 소속 사제들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신청인 개인뿐 아니라 신청인과 함께 사제단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나아가 한국 천주교 전체에 대한 모욕이다. 사제가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제신원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사실 자체가 사제와 교회에 대한 비하이며 모욕이다.

언론은 개인의 권리뿐 아니라, 교직자들의 양심과 사상, 그 삶을 보호하고 나아가 존중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바로 공동선을 위한 언론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이렇게 반론보도청구를 하는 이유는 그동안 피신청인의 잘못된 관행과 타성에 쫓겨 박고 교직자들에 대한 흥미위주의 단편적 보도가 얼마나 엄청난 잘못인지를 깨우치기 위한 경고와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적 의미임을 밝힌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 대제목 : 반론보도문
- 중제목 : 함세웅 신부, 국민회의 영입대상으로 잘못 알려지
- 소제목 : 천주교 신부는 교회법에 의해 정치 단체에 가입할 수 없어
- 내용 : 조선일보의 1999년 7월 23일 「누구를 영입하려 하나」라는 제목으로 국민회의가 제2차 당을 위해 영입할 대상으로 함세웅 신부도 포함된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왜냐하면 천주교회 신부는 교회법에 의하여 정치적 단체에 가입하여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본인 개인으로서도 정당에 가입할 의사가 전혀 없고, 새정치국민회의

도 본인을 신당에 영입하려는 의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확인한 바 있다.

본인은 천주교 상도동교회 주임신부로서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소외받고 억눌린 자를 도우며 부당하게 인권을 탄압하는 불의한 정치권력에 대항하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신부본연의 임무와 소명으로 알고 수십년간 이 일에 종사해 왔다. 조선일보의 위 기사는 위와 같은 본인과 본인이 소속된 정의구현사제단의 활동을 마치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에서 시작한 일인 양 폄하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으로, 수십년간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애써온 본인의 활동과 나아가 본인이 소속된 정의구현사제단은 물론 천주교회 전체와 소속 신부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사제는 신앙을 토대로 자신의 온 삶을 하느님과 이웃, 교회공동체에 봉헌한 사람이며 사제는 예수그리스도를 철저히 따르는 하느님과 이웃을 위한 위타적 존재이다. 이를 위해 그도 부족한 한 인간이기에 늘 수덕의 삶을 살아야 하며 때로는 피눈물나는 반성과 다짐을 해야 한다. 사제는 그 정상적 직무를 통해 비록 인간이지만 인간을 넘어선 초월의 은총, 하느님을 체험케 하며 이 은혜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신적 봉사자이기도 하다. 사제의 삶을 기도와 성령, 봉사와 실천, 전례와 교육 등의 반복과 연속이다.

따라서 사제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참여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제가 스스로 그 공개적 약속을 파기하고 신앙을 배반했다는 의미가 된다. 그것은 사제의 길을 벗어나 세상의 욕심 곧 권력과 명예 황금을 찾아나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사제가 신당영입대상이라는 보도는 사제직에 대한 모욕이며 그 어떠한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치명적 훼손이다.

결국 본인을 국민회의의 신당영입 대상자라고 보도한 조선일보의 기사는 사실이 아닐 뿐더러 본인과 천주교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

반론보도청구인

천주교 상도동교회 신부 함세웅

합의사항

● 제목 : 함세웅 神父 국민회의 영입 잘못 알려
져

● 부제목 : 천주교 신부는 교회법상 정치단체
가입할 수 없어

● 내용 : 조선일보는 99년 7월 23일자 4면 '누
구를 영입하려 하나'라는 제목으로 국민회의가
제2창당을 위해 영입할 대상으로 함세웅 신부도
포함된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함신부와 한국천주교
회, 정의구현사제단에 본의 아니게 누를 끼친점
사과드리며 다음과 같이 함신부의 반론문을 실습
니다.

천주교회 신부는 교회법에 의하여 정치적 단체
에 가입해 공직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본
인 개인으로서는 정당에 가입할 의사가 전혀 없
고, 국민회의도 본인을 영입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확인한 바 있다.

본인은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소외받고 억눌린
자를 도우며 부당하게 인권을 탄압하는 불의한
정치권력에 대항하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사제 본연의 임무와 소명으로 알고 종사해 왔다.
사제는 신앙을 토대로 자신의 온 삶을 하느님과
이웃, 교회공동체에 봉헌한 사람이며 예수그리
스도를 철저히 따르는 하느님과 이웃을 위한 위
타적 존재이다.

사제는 그 정상적 직무를 통해 비록 인간이지
만 인간을 넘어서신 초월의 은총, 하느님을 체험케

하며 이 은혜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신적 봉사
자이기도 하다. 사제의 삶은 기도와 성덕, 봉사와
실천, 전례와 교육 등의 반복과 연속이다.

따라서 사제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참여
한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그 공개적 약속을 파
기하고 신앙을 배반했다는 의미가 된다. 그것은
사제의 길을 벗어나 세상의 욕심, 곧 권력과 명
예, 황금을 찾아나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결국 본인을 국민회의의 신당영입 대상자라고
보도한 조선일보의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그동
안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활동했던 본인과 본인
이 소속된 정의구현 사제단은 물론 천주교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
는 조선일보 1999년 8월 7일자 제7면 「오피니언」
란에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사진식자 20급
고딕으로, 부제목활자크기는 15급고딕으로 하
고, 본문활자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본문과 같
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朝鮮日報 : 『함세웅 神父 국민회의 영입 잘못 알
려져』 제하의 기사(1999년 8월 7일자
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조합이 채무자 본인 확인없이 부당대출을 하였다가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보증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99서울중재242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하성신웅협동조합(이사장 이철호)

피신청인 : 현대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1999. 7. 3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현대일보 : 『본인자필·확인없이 부당대출』 제
하의 기사(1999년 6월 29일자 7면)

내 용 : 김포시 하성면 하성신용협동조합(조합장 이철호)이 채권확보를 위해 대출과정 의혹 제기<본보 6월 19일자 보도>와 관련하여 보증피해자 배모 씨(40· 하성면 마곡리)와 대출을 인정 못한다는 곽모 씨(54· 하성면 마곡리)가 확인한 결과 본인 곽씨가 알지도 못하는 대출이 사실로 드러나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곽·배씨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규정은 조금씩 다른 점이 있다 하지만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였다고 마구잡이식 본인 자필과 사실 확인도 없이 3회에 걸쳐 대출해 준 것은 실험이 잘못된 행위라며 대출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실험측의 조모 전무는 당시 상황으로 보아 본인 김모 씨가 모든 가사일을 하고 있어 대출이 가능하였다고는 하고 있지만 부부간의 대출은 묵시적으로 인정할 수는 있겠으나 원칙을 알고보면 본인 자필과 사실 증명없이 절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금융가의 원칙이다.

이로 인해 상환능력도 없는 조합원 부인에게 본인 허락없이 대출을 해줌으로써 보증인에게 피해만 끼치게 되었다며 신문에 이 사실이 보도되자 실험중앙회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나 별다른 대책이 없이 항의하는 보증인 배씨 가구에만 법적 조치만 바로 이루어짐에 따라 실험은 채권 확보에만 급급하기에 이르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한편 동행 취재하는 기자에게 실험직원 소모과장은 언론중재위원회를 들먹이며 보도가 잘못된 양 앞으로의 취재에 기자들과 말도 하지 말라며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보다는 감정적인 일 처리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에서 과연 하성실험의 주인(조합원)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타까운 실정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 조합은 하성면내 거주하는 주민을 공동유대료 하여, 3,000여 명의 조합원과 자산 160여 억원의 농촌지역 협동조합으로, 신용사

업과 복지사업 등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635번지에 소재한 하성신용협동조합으로서, 현대일보의 1999. 6. 16. 자 및 동년 동월 29일자 7면 사회면 각각 “채권 확보 위해 부정대출-상환능력 없는 조합원에 보증인 세워”, “본인자필·확인없이 부당대출-채권 확보 급급 보증인에 책임전가”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으로서, 신청인 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명예를 대내외적으로 현격히 실추시키어, 위 허위보도 기사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반박·중재를 신청한다.

대출당시 채무자 곽경남의 처 김삼례와 보증채무자 배인수가 신청인 조합에 동행, 대출서류 일체에 자서날인 하였으므로 동 대출당시 보증인 배인수는 보증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또한 이 사건 법적조치 이전부터도 수차례 독촉·최고·내용증명 등을 통지하였으며, “기타임증자료”인 금감원 보고자료에서 신청인이 밝혔듯이, 신청인 조합은 배인수와 그후 신문보도일 최근까지 수차 만나서 채권회수와 관련한 협의를 하였고, 배인수는 동 보증채무 상환을 수차 약속하였기에, 보증채무자 배인수는 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 아니고, 동 대출 실행시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기사 내용과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신청인 조합은, 수차에 걸쳐 채무자 곽경남에게 동 대출의 회수를 위하여 독촉·최고·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 청구 당시 법원의 소환장 송달 불능으로 집달관에 의한 야간 특별송달신청으로 곽경남에게 직접 송달하였고, 그후 채무자는 법정에 불출석·의제 자백하였으며, 대출당시 여건상 주채무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그의 처인 김삼례가 가정 경제살림을 도맡아 함으로서 기사대리권을 수여 받은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었음은 물론, 대출당시 조합은 채무자인 곽경남에게 동 사실에 대한 대리권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동건 대출당시 340여 만원의 연체이자를 조합이 상계하였다는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동건 대출금 전액은 수표로 채무자에게 지급되었으며, 금 일원도 공제한 사실이 전혀 없다.

아울러, '96. 12. 13. 담보대출 운운도 오보로서, '96. 2. 13. 실행 되었으며, 조작·위조된 서류라는 기사는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며, 조합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는 것으로서 이 또한 기사내용이 위와 같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

주채무자 광경남 씨가, 자서날인없이 처 김삼례에게 부정대출하여 항의차 실험을 방문한 사실은, 6. 16. 피신청인 기사 보도 이전까지 일체 없었으며, 97년말 미수이자 회수차 신청인 조합이 수차 채무자 광경남에게 상환을 독려할 당시부터, 위 광경남은 차일피일 상환 약속만 하고 불이행하는 등 대출 상환에 협조적인 약속만 되풀이하였을 뿐, 부정대출 운운·상환불가의 항의사실은 일체 없었으므로, 기사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피신청인의 보도내용은, 신청인 조합이 인천지법 김포시법원 98가소1777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으로 귀책사유가 없음이 이미 법적으로 확인되었고, 동 기자 또한 같은 협동조합인 농협에서 십수년간 장기간 근무하여, 신청인 조합이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없음을 직시한 바 있음에도, 신청인 조합으로부터 위 배인수가 강제집행을 당할 처지에 있게 되자, 공모사실을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강제집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지연되었고, 그후 배인수가 신청인의 집행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매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신청인 박성삼 기자와 보증채무자 배인수는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사실을 신문기사화함으로써 신청인과 신청인 조합에 대하여 업무 방해 및 명예를 실추시켰음은 물론, 수차 동건 취재차 기자가 신청인 조합을 방문, 동건 관련 서류 일체를 내사, 부당대출이 아님을 확인하고도 부정대출로 1차 기사화 한 후, 또다시 모호한 내용으로 유사한 내용을 2차 허위 보도한 것은, 피신청인이 보증채무자 배인수가 공모·조합을 해하고 보증채무를 면탈 받으려는 불순한 목적의 기사라고 판단되어, 언론중재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현대일보가 지난 6월 29일자 7면에 “본인자필·확인없이 부당대출” 제하로, 김포시 하성면 하성신용협동조합(조합장 이철호)이 조합원의 불량거래 대출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조합원에게, 보증인을 세워 신용대출을 함으로써 조합의 채권 확보에만 급급하였다는 6월 16일자 7면의 보도에 대한 속보를 보도하면서, 이 보도에서 ‘보증피해자 배모 씨와 대출을 인정 못한다는 광모 씨에 의하면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였다고 본인 자필과 사실 확인도 없이 3회에 걸쳐 대출해 준 것은 실험이 잘못된 행위라며 대출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실험중앙회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나 별다른 대책없이 항의하는 보증인 배씨 가구에만 법적인 조치가 바로 이루어짐에 따라 실험은 채권 확보에만 급급하기에 이르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또한, ...취재하는 기자에게... 언론중재위원회를 들먹이며...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어...’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하성신용협동조합이 본인 사실 확인없이 3회에 걸쳐 대출하여 보증인에게만 피해를 끼쳤다는 주장은, 배모 씨가 광모 씨의 대출보증을 선 것은 1차례에 불과하고, 대출자 광씨 본인에게 대출 발생사실을 확인한 후, 실제 생활능력이 있고 가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출인 처의 가사대리권을 인정하여 보증인 배씨의 자필서명하에 정당한 방법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실과 다르고, 실험중앙회로부터의 감사 결과에서도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고, 이 전과 관련, 하성 실험측이 광·배씨의 대출금 미상환으로 인해 인천지법에 청구한 대여금 청구 소송(98가소 1777)에서도 승소하여 적법한 대출이었음이 입증된 바 있고, 또한 실험직원이 기자에게 어떤 협박도 한 사실이 없어, 위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반론보도신청인

하성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이철호

합의사항

• 제목 : 반론보도문

• 내용 : 현대일보가 지난 6. 29. 자 7면 『본인 자필·확인없이 부당대출』 제하의 기사에서 김포시 하성면 소재 하성신용협동조합(이사장 이철호)이 “조합원의 불량거래 대출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조합원에게 보증인을 세워 신용대출을 함으로써 조합의 채권 확보에만 급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하성신용협동조합측은 배모 씨가 광모 씨의 대출보증을 선 것은 3회가 아니라 1차례에 불과하며, 대출자 광씨 본인에게 대출 발생 사실을 확인한 후 실제 가사를 담당하고 있는 광씨의 처의 가사대리권을 인정하여 보증인 배씨의 자필서명을 받아 정당하게 대출한 것이다. 또한 위 대출에 대하여 신탁중앙회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이 사건과 관련, 하성신탁이 광·배씨를 상대로 청구한 대여금청구소송(인천지법 김포시법원 98가소1777)에서도 신탁이 승소하여 적법한 대출

이었음이 입증된 바 있고, 또한 신탁직원이 기자에게 어떤 협박도 한 사실이 없어 위 보도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다.

반론보도신청인

하성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이철호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이 중재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현대일보 제7면에 2단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채권 확보 급급 보증인에 책임전가)과 같게하고 본문 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현대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1999년 8월 17일자 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전주성산교회 화재사건의 원인이 신청인 교회 신도의 방화때문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99서울중재243

청 구 명 : 반론보도청구

신 청 인 : 안산홍증인회 하나님의 교회
(총회장 김주철)

피신청인 : 國民日報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1999. 7. 3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國民日報 : 『이단소행 추정 화재 전주성산교회 전소』 제하의 기사(1999년 6월 8일자 27면)

내 용 : 5일 새벽 3시경 전북 전주시 금암동

전주성산교회(진용식 목사)에 불이 나 예배당 내부와 집기가 전소됐으며 소방차 출동 40분만에 꺼졌다.

이날 불은 새벽기도회가 없는 토요일에 일어났으며 그동안 한국기독교목회자포럼 이단분과위원회 총무로 일해 온 진목사가 이단단체들의 협박전화를 받아온 점 등으로 미루어 방화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진목사는 “97년 12월에도 화재가 발생, 예배당 1층이 전소된 적이 있으며 최근 교회 담장에 나뭇잎을 비방하는 낙서가 발견됐고 차량이 부서지기도 했다.”고 밝히고 “모든 정황으로 미뤄볼 때 이단들의 소행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진목사는 그동안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증인회’, ‘무료성경신학원(이만회)’ 등을 목회자포럼 이단비판세미

나를 통해 비판하고 그 내용을 출간한 바 있다.

한편 한국기독교목회자포럼에서는 이번 화재 사건의 철저한 조사를 경찰에 요청하는 한편 진용식 목사돕기에 나서기로 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대한민국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나라로 모든 국민은 각자의 양심과 신앙적 판단에 따라 종교를 결정하고 이를 영위할 권리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표현의 자유를 좇아 다른 종교를 비판할 권리 또한 있음을 시인하고 수긍하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누구라도 자신의 믿음과 상반된 것을 추구하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허용된 한도를 넘어서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가정을 파괴하고 심각한 정신적·신체적인 위해를 유발한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고 제재를 가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다.

피신청인의 허위사실 유포로 신청인은 협회 전체적으로 명예가 크게 훼손되고 선교활동 등의 업무가 방해받으며 전국과 해외의 10만 이상의 각 신도 개인적으로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심하게 억압당하고 다수의 가정이 파괴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유발되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에서는 1999. 6. 8.자 27면 『이단소행 추정 화재 전주성산교회 전소』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위 기사는 “전주성산교회 진용식 목사가 하나님의교회 안상홍증인회를 이단으로 비판한 데 대하여 97년에 이어 2번째 위 증인회 신도소행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교회가 전소되고 40분 만에 꺼졌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기사는 화재발생 3일 후 현장출동한 사실없이 작성된 것으로, 현장을 취재한 전주 MBC·KBS 등 타언론사들과 경찰의 화재 당일 발표에 따르면 위 화재는 300여 만원의 재산피해

를 내고 20분만에 진화되었으며, 화인이 방화일 것이라는 진목사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경찰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정밀감식을 실시했지만 진목사의 주장처럼 방화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는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위 진목사의 주장에 대하여 본 교회 전주지역 신도 355명은 단순화재 사건을 방화라 주장하며 본 교회 신도의 관련 가능성을 진목사가 추정 발언한 것은 구체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 하여 진목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해 현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합의사항

● 제목 : 반론보도문

● 내용 : 안상홍증인회 하나님의교회는 지난 6월 8일자 27면 『이단소행추정 화재 전주성산교회 전소』 제하의 기사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이번 화재는 3백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20분만에 진화된 것으로 전소된 것이 아니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감식을 의뢰했지만 방화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안상홍증인회 하나님의교회 전주지역 신도 3백55명은 “진목사가 구체적인 근거없이 신도들의 방화관련 가능성을 주장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재사건과 관련한 진목사의 주장은 개인적 주장일 뿐 국민일보와는 무관한 것임을 밝힙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국민일보 1999년 8월 19일 이전 23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중재대상기사의 제목(이단소행추정...)과 같은 크기로 하고, 본문은 본문활자체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國民日報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1999년 8월 14일자 1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外國의 言論關係判決

美國判決

가십칼럼란에 보도되었다 하여 모두 익견이라 볼 수 없으며,
유명 가수의 남편인 원고는 공적 인물이 아니므로
현실적 악의를 입증할 책임이 없다

Huggins v. Moore, 27 Med. L. Rptr. 1691
(뉴욕주 지방법원 항소부 1999. 4. 8. 선고)

판시요지

1. 신문 가십란(gossip column)에서 여자 가수와 음반 제작자인 남편과의 이혼 관계를 다룬 보도는 그 내용을 볼 때, 소송의 대상이 안 되는 의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2. 신문 가십란에 보도된 내용을 반드시 의견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공적 관심사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위 음반 제작자인 남편은 원래 공적 인물(public figure)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공적 인물로 전화(轉化)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4. 따라서 신문사 및 가십 칼럼니스트는 이 사건 보도에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사건개요

1. 소송의 경과

이 사안은 음반제작자인 원고가 가수인 전처

(前妻) 개인 및 신문사와 가십 칼럼니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이다. 1심인 뉴욕주 지방법원(New York Supreme Court)에서는 원고의 약식판결 신청을 기각하고, 피고의 약식판결신청을 인용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이 판결의 항소부에서는 1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것이다.

2. 사실관계

가수인 Melba Moore와 그녀의 남편이면서 음반제작인 Charles Huggins(이 사건 원고)의 이혼 관계를 다룬 Daily News라고 하는 신문사의 가십란(gossip column)에서의 보도를 문제삼은 소송이다.

가십 칼럼니스트인 Linda Stasi는 위 신문사를 통하여 한 달 동안에 도합 세 번의 보도를 하였는데, 이 보도에서는 위 이혼관계에 관한 Moore의 견해와 진술을 주로 인용하였다.

Moore는 Tony상 수상자이고, 두 번에 걸쳐 Grammy상의 후보자로 지명된 바 있는 유명한 연예인이다. 한편 그녀의 남편인 Huggins(원고)는

음반 제작자로서 그가 경영하는 제작회사에는 Moore 및 다수의 연예인이 소속되어 있다.

이들 부부는 1976년에 결혼하여 한 명의 딸을 두고 있었는데, 1990년에 Huggins는 Pennsylvania주에서 이혼판결을 얻어냈다. 그런데 이 판결은 Moore가 다투어 보지도 못하고 내려진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안 Moore는 곧바로 뉴욕주 지방 법원에 위 이혼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뉴욕주 지방법원은 1993. 4. 12. 위 이혼판결의 무효를 확인하는 한편, 위 부부 사이에 남편인 Huggins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인정하였다. 한편 위 뉴욕주 지방법원의 이혼판결에는 새로운 합의조항이 포함되어었는데, 그 중 몇 가지는 당사자들은 향후 비밀을 유지할 것, 상호 비난을 하지 않을 것, 상대방 혹은 결혼관계를 다루는 어떤 언론매체의 보도에도 참가하지 말 것이었다.

한편 1993. 5. 5. Moore는 미연방 뉴욕주 남부 지역 지방법원에 Huggins의 이혼 사건 변호사인 Brian Golden을 피고로 하여 사기를 이유로 한 연방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주장 내용에 의하면, Huggins가 Pennsylvania주에서 사기 이혼 판결을 받아내는데 위 변호사가 공모하였다는 것이었다. 즉 Huggins가 Pennsylvania주 이혼소송의 관할을 사기로 획득하기 위하여 가짜로 위 주에 주소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는 곧 Moore가 가진 뉴욕주의 관할에 대한 권리를 사기로 박탈하는 공모적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뉴욕주 이혼 판결의 비밀유지 합의조항에도 불구하고, Moore는 Daily News의 Linda Stasi와 접촉하였고, 그 결과로 Stasi는 위 신문에 3개의 칼럼 기사를 1993. 6. 11., 동년 6. 25., 동년 7. 9. 각 연재하였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하 이 판결에서는 위 각 연재 보도의 내용 중 원고가 문제로 삼은 18가지 부분을 옮겨 적고 있고, 한편 두 번째 기사가 발표되기 직전에 Moore가 Huggins의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하기 위하여 뉴욕주 가정법원에 낸 신청의 경과를 요약하고 있다.)

1993. 7.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Melba Moore, Daily News, 그리고 Linda Stasi이다.

피고인 Daily News와 Stasi는 우선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보통법 및 헌법에 의한 항변을 하였는데, 이는 그 보도가 소송의 대상이 안 되는 의견(nonactionable opinion)이고, 만일 사실 보도라 하더라도 원고는 공인(public figure)으로 간주되어야 하므로 여기에는 헌법상 요구되는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의 요건이 필요한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것이다.

원심(原審)에서는 위 보도를 전부 의견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의 약식판결(summary judgment) 신청을 인용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이유

1. 의견 보도인가 여부

우리는 원심이 이 사건 보도 내용을 소송의 대상이 안 되는 의견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이 사건 보도 내용을 볼 때, 그 중의 몇몇은 비록 명백히 원고에 대한 공격적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시사하는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소송의 대상이 안 되는 의견에 불과하고, 또한 몇몇은 소송절차를 비교적 정확히 보도하고 있는 한 민권법(Civil Rights Law) 제74조에 의하여 허용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또한 몇몇은 명백히 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실보도에 해당한다.

생각건대, 법원이 해야 할 첫 번째의 작업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실보도의 주장과 소송의 대상이 안 되는 의견보도의 주장을 구별하는 것이다. 연방법 및 뉴욕주 헌법에 의거하여 이러한 구별을 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① 문제가 되는 특정 언어 표현이 곧바로 이해될 수 있는 정확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부, ②당해 보도가 진위인지의 입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③당해 보도를 하게 된 매체상의 제반 여건이나 이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적 여건이나 제반상황을 놓고 볼 때, 독자나 청취자들이 보도되는 내용이 사실이라기보다는 의견에 불과하다고 믿게 될지 여부이다.

또한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당해 보도를 의견의 표시라고 일단 분류한다고 해서 그 자체 곧

바로 그 보도가 명예훼손 책임에서 면제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뉴욕주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통법상의 구별 기준이 있다. 즉 외관상 의견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독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사실관계의 기초를 암시하고 있는 보도와 그러한 사실관계의 기초를 암시하지 않는 보도의 구별이다. 전자의 의견보도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서는 보통의 독자라면 그 보도된 의견이 독자 자신이 검증할 수 없는 원고에게 유해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후자의 의견보도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는 보통 추측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뉴욕주의 선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표현이 의견에 불과하다고 하여 반드시 더 강력하게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당해 표현에 의하여 나타난 인상과 함께 그 표현의 전반적 어조(語調)를 합리적 독자의 시각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언론매체는 그 출처를 제3자로 확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보도를 함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여 특권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적 목표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개인의 명예를 옹호하는 역사적 권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명예훼손 대상으로 원고가 주장한 위 18개의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원심의 결론과는 달리 그 모두를 소송의 대상이 안 되는 의견의 보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2. 민권법(民權法, Civil Rights Law) 제74조에 의한 소송절차 보도에 관하여

민권법 제74조는, “민사소송은 개인, 단체 혹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절차나 입법절차 또는 다른 공식 절차에 관한 진실하고도 공평한 보도를 이유로 하여 유지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이러한 특권(the fair reporting privilege)에 의하여 이 사건 원고가 주장하는 18가지 문제 보도 중 몇몇은 보호를 받는다 할 것이나, 나머지 몇몇은 위 민권법 제74조 보호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

3. 가십(gossip) 보도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도가 가십란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명백한 의견란(예컨대 “Op Ed”)에서가 아니라, 가십란(gossip column)에서 보도된 것에 불과한데, 그렇다면 이러한 보도가 딱딱한 뉴스 보도가 아니라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의견에 유사한 면책을 얻게 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반대로 이 사건 보도는 일면(一面) 보도보다는 덜 고상하다 하더라도 뉴스로서 보도된 것임에 틀림없다.

이 점에 관한 뉴욕주의 선례인 Brian v. Richardson에서는, “당해 기사가 보통 의견을 쓰는 신문란에 나타나게 되었다 하여 그것이 저자로 하여금 명예훼손 책임을 자동적으로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다. 사상의 교환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우리의 확고한 신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편집자란이나 칼럼란이 허위의 사실보도를 함으로써 개인의 명예를 부당히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하여도 좋다는 면죄부가 부여되었다고는 시사한 바 없다. 합리적 독자가 문제되는 보도를 의견으로 이해할 것인가 혹은 사실보도로 이해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유일하게 유익한 기준이 되는 것은 당해 보도가 이루어진 장소와 함께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여건을 구성하는 다른 제반 상황들이라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 다른 선례에 의하면, “본질적으로 사적 관심사나 사적 불화는 그것들이 관심을 끈다고 하여 곧바로 공적 논쟁거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적 논쟁거리는 직접 참여자가 아닌 사람들이 그 분파성을 느끼게 되어 공적 관심을 끌게 되는 그런 분쟁이라 할 것이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은 개인들의 이혼과 이혼에 따른 비밀유지의 합의 조항에 관한 것으로서 사적인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 가십이 보도되었다 하여 그 내용이 공적 관심사로 되는 것은 아니다. 뉴욕 법원에서는 전통적으로 개인의 이혼 관계가 공적 관심사로 승격되어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왔고, 비록 유명 인사들이 관련되어 있고 대중에게 인기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4. 원고가 공적 인물(public figure)인지에 관하여

피고는 비록 이 사건 보도 내용 중 몇몇 부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원고인 Huggins는 공적 인물로서 피고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를 갖고 보도를 하였음을 분명하고도 설득력 있게 입증(by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구를 충족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각건대, 원고는 공적 인물이 아니므로 그 주장은 옳지 않고 따라서 그 입증 부담의 기준은 사적 인물에 관한 언론보도에 적용되는 수준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 (이하 이 판결에서는 “general purpose’ public figure”와 “limited purpose’ public figure”에 관한 개념 정의 및 선평의 분석을 하고 있다.)

즉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사회적 명사가 아니

고, 또한 그러한 원고가 유명 가수와 결혼하고 이혼하게 되었다 하여 곧바로 사회적 명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건 신문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공적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하여 이로 인하여 그를 공적 인물이라 할 수도 없다.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피고가 그 자신의 거동에 의하여 그 소송 청구인을 공적 인물로 만들고 또 그에 의하여 공적 인물의 항변을 창조해 내는 것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는 공적 인물이 아니고 그 보도 내용이 공적 관심사도 아니므로 피고들은 뉴욕주의 과실책임 기준에 의하여 명예훼손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러한 수준의 입증을 못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약식판결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역 : 오관석(변호사)

□

日本判決

검찰에 송치된 고소장 내용을 기사화하면서 마치 조사에 의해 범죄혐의가 농후한 것처럼 보도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항소인 주식회사 아사히신문사-대표이사 松下宗之

피항소인 細浦義孝

仙台高裁 1997(ネ) 제302호, 손해배상청구항소사건

1998. 6. 26. 민사1부 판결, 항소기각(확정)

1심 仙台地裁石巻支部 1995(ワ) 제111호, 1997. 7. 22. 판결

주 문

본건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및 이유

1. 당사자가 구하는 재판

1) 항소인

가. 원판결 중, 항소인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항소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 소송비용은 1심, 2심 모두 피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2) 피항소인

주문과 동일하다.

2. 사안의 개요

1) 본건은 피항소인이 항소인이 보도한 피항

소인의 범죄혐의에 관한 신문기사에 의해 피항소인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한 사안이다.

2)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증거상 명백한 전제사실
가. 피항소인은 宮城縣石巻市에서 부동산거래업을 하는 大藏상사주식회사(이하 ‘大藏상사’라고 한다)를 경영하고 있다.

나. 大藏상사는 1990년 10월 30일 埼玉縣上尾市에 사는 의사 甲野太郎(이하 ‘甲野’라고 한다)와 石巻市에 있는 병원을 대금 4억5천만엔, 계약금 1천만엔의 약정으로 매도계약을 체결했다(이하 ‘본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甲野는 1993년 2월 16일 본건 매매계약과 관련, 피해를 입었다고 다음과 같은 고소사실(요지)을 근거로 변호사 中川徹을 대리인으로 하여 大藏상사와 피항소인 및 島田浩를 大宮경찰서에 고소했다.

① 본건 병원에는 그 시가를 초과하는 거액의 근저당권과 그 밖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경매개시결정까지 되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大藏상사 및 피항소인은 甲野에게 고의로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시켰다(宅地建物取引業法 제47조1호, 80조, 84조).

② 大藏상사는 계약금대부 명목으로, 채권자 大藏상사, 채무자 甲野, 금액 1천만엔, 변제기일 1990년 12월 31일, 이자 연 1할5부의 약정에 의한 1990년 11월 1일자 공정증서를 작성시켰다(宅地建物取引業法 제47조3호, 81조, 84조).

③ 피항소인과 島田浩는 공모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할 것을 기도,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케 하는 동시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甲野에게 백지위임장을 교부하게 하고 계약금을 대부목적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실제로 금전대부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천만엔의 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마치 甲野가 금전소비대차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만일 금전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 공정증서를 폭력단에게 넘긴다”고 말하고는 이후 집요하게 甲野를 뒤쫓아 다니면서 1991년 4월부터 5월사이 수차례에 걸쳐 계좌에 불입하게 하여 3백만엔을 편

취했다(형법 제246조1항, 60조).

라. 항소인은 1993년 10월 20일자 아사히신문 埼玉縣版에 별지1의 기사를, 宮城縣版에는 별지2의 기사(이하 이 기사들을 ‘본건 각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여 발행했는데 본건 각 기사 중 宮城縣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石巻市内의 부동산업자 등이 거액의 담보가 설정된 동 시내의 병원의 매매를 의사에게 권유, 계약금 3백만엔을 사취했다고 하여 埼玉縣大宮경찰서는 19일까지 부동산업자 2명을 사기와 宅地建物取引業法 위반(중요사항 불고지) 혐의로 浦和지검에 서류송청했다.

송청된 사람은 石巻市門脇의 부동산회사 임원(58)과 埼玉縣坂戸市片柳의 의료컨설턴트(67).

조사에 의하면 두 사람은 1990년 10월 초순경 당시 同縣上尾市内에 근무하고 있던 의사(48)에게 “石巻市内의 1등지에 좋은 병원이 있으니 사지 않겠느냐”고 권유, 동월 30일 大宮市内의 호텔에 서 대금 4억5천만엔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의사는 예정했던 은행융자를 얻지 못해 매매는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부동산업자들은 계약금 대부명목으로 1천만엔을 의사에게 빌려주었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해놓고 있었으며 1991년 1월경 “공정증서를 매입해 주었으면 좋겠다. 매입하지 않으면 증서는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고 의사를 위협, 4월부터 5월사이 수차례에 걸쳐 3백만엔을 사취한 혐의이다. 또한 부동산업자들은 병원에 수억엔에 달하는 거액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사에게 고지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병원은 원래 石巻市内의 한 의사가 경영하고 있었으나 거액의 빚을 지고 의료보험의 부정청구 등을 했기 때문에 1987년 7월 保険醫의 자격이 취소되어 사실상 폐업을 하고 있었다. 계약당시는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었다. 부동산업자들은 1991년 1월 병원을 都内の 의료법인에 매도했다.」

마. 浦和지방검찰청은 피항소인에 대한 앞서 언급한 고소사건과 宅地建物取引業法 위반 피의사건을 1993년 10월 29일자로 혐의불충분 및 기소유예를 이유로, 사기피의사건은 1994년 3월 31일자로 혐의불충분을 이유로 각각 불기소처분을 했다.

바. 甲野는 浦和지방법판소에 피항소인과 大藏상사를 피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 그 청구원인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본건 병원에는 거액의 담보권 설정과 함께 이중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차압등기가 되어 있었는데도 피항소인 등(피항소인과 大藏상사, 이하 같다)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는 중요사항설명의무의 불이행(宅地建物取引業法 제47조1호 위반)에 해당한다. 또 피항소인 등은 甲野에게는 수중에 자금이 없을 뿐 아니라 희망하는 액수의 은행융자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실제로는 금전수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大藏상사가 甲野로부터 계약금 1천만엔을 수령한 것처럼 영수증을 발행하는 등의 모양새를 갖추었다. 이는 계약금의 대부분을 금지한 宅地建物取引業法 제47조3호에 위반된다.

② 피항소인 등은 계약금이라는 명목하에 금전을 받기로 계획, 본건 매매계약 체결과 함께 사정을 모르는 甲野에게 백지위임장을 교부하게 한 다음 금액 1천만엔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시키고는 “이 공정증서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만일 돈을 갚지 않으면 이 증서를 폭력단에게 양도할거야”라고 말하면서 이후 집요하게 甲野를 뒤쫓아 다니며 네 차례에 걸쳐 합계 3백만엔을 편취 또는 갈취했다.

사. 浦和지방법판소는 1995년 10월 12일 甲野의 위 제소에 대해 청구기각의 판결을 언도했으며, 그 항소심인 도쿄고등재판소는 1996년 5월 29일 항소기각의 판결을 언도했는데 이들 판결에서의 인정판단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피항소인은 1990년 10월 7일경 본건매매계약서에 앞서 甲野를 본건병원의 현지로 안내하여, 본건병원이 매물로 나오게 된 사정, 담보권설정등기의 내용, 그 채권자와의 사이에 합계 2억9,417만 4,446엔의 채무를 변제하면 경매신청을 취하하도록 한다는 양해가 이루어졌다는 것 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甲野는 본건 병원의 구입희망을 강하게 갖고 있었으나 구입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구입에 필요한 용자를 받을 필요가 있었으며 피항소인에게도 그 취지를 이야기했다.

② 甲野는 동월 9일자로 본건 병원을 4억5,000만엔으로 사들일 것을 증명하는 취지의 매입증

명서를 大藏상사에 송부했으며 이어 전부터 거래가 있었던 은행에 용자를 의뢰함과 동시에 피항소인에게 용자를 의뢰하고 있다는 사실, 근무처인 진료소를 동월 31일자로 퇴직할 예정이라는 사실 등, 본건 병원에 대한 매입의욕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 때문에 피항소인은 甲野가 틀림없이 용자를 받을 것이라고 믿고 본건 병원을 甲野에게 매각하기로 했다.

③ 피항소인과 甲野간에는 동월 27일경까지 본건 병원을 대금 4억5,000만엔, 계약금 1,000만엔으로 매도한다는 취지의 개략적인 합의가 성립되었으나 甲野는 피항소인에게 갖고 있는 돈이 없으니 계약금 1,000만엔을 일시 입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뢰를 했다. 大藏상사가 甲野에 대해 본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조로 1,000만엔을 빌려주고 이 빌린 돈에 대해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한다. 甲野는 용자를 받으면 이 빌린 돈을 일괄변제한다는 등의 합의가 성립되어 있었다. 동월 29일 大藏상사는 본건 병원을 3억6,000만엔, 계약금 1,000만엔으로 매입했다.

④ 동월 30일 甲野, 피항소인, 사법서사, 그 밖의 관계인이 동석하여 본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같은 날 大藏상사로부터 甲野에 대한 계약금조의 1,000만엔이 대부되어 甲野로부터 大藏상사에 대한 계약금 1,000만엔이 지불된 상환처리가 이루어져 甲野는 공정증서 작성수속을 위 사법서사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위임장에 서명날인했다. 또 같은 날 大藏상사로부터 본건 병원의 물건안내서가 甲野에게 교부되었다.

⑤ 본건 매매계약에서는, 大藏상사가 甲野에 대해 1990년 11월 30일까지 본건 병원을 인도하는 동시에 아무런 부담이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하는 한편 甲野는 大藏상사에 대해 매매대금잔금 4억4,000만엔을 지불하도록 했으며 매도자 위약에 의한 해제시에는 계약금의 배를 변제하고 매입자 위약에 의한 해제시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약속되었다.

⑥ 그런데 甲野의 은행용자가 난항, 결국 용자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甲野는 동년 12월 25일 大藏상사에 대해 은행으로부터의 용자가 되지 않아 본건 병원을 매입할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를 알렸다. 그래서 大藏상사는 甲野에 대해 동월

28일경 1991년 1월 1일자로 甲野의 대금지불채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본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했다.

⑦ 甲野는 동년 1월 하순 大藏상사를 방문, 사죄하는 한편 전기 대부금채무를 100만엔으로 감액해 주도록 부탁했으나 大藏상사는 이를 거절했다. 동월 15일 甲野와 大藏상사는 위 대부금을 300만엔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고 甲野는 이 합의에 따라 大藏상사에 각서와 함께 동년 5월 17일까지 5회로 나누어 합계 300만엔을 지불했다.

⑧ 위 ① 내지 ⑦의 사실과 같이 피항소인 등이 甲野에 대해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있었으므로 宅地建物取引業法 제47조1호 위반사실이 없으며 또 동법 제47조3호는 고객에게 계약금을 대부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위반도 없다. 더욱이 공정증서작성의 경과에 위법은 없으며 300만엔의 수령은 편취도 갈취도 아니다. 따라서 甲野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쟁점

본건의 쟁점은,

가. 본건 각 기사가 피항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의 여부,

나. 본건 각 기사에 대해 진실성의 증명이 있는가, 또 항소인이 진실이라고 오신한 데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

다. 손해액이며 이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주장은 원판결 「사실 및 이유」란의 ‘2) 쟁점’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4) 當審에서의 항소인의 주장

본건 각 기사에는 서류송청 되었다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 이상의 기재는 없다. 따라서 진실성의 증명의 대상은 서류송청의 사실뿐이다. 이러한 경우 서류송청된 내용에 대해 그 혐의가 농후하다는 것까지 증명할 수 없는 한 보도할 수 없다고 한다면 범죄사실 혐의라는 공공적 사항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현저하게 제약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서류송청된 사실 이상으로 고의로 범죄를 범한 것이 확실한 것처럼 보도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범죄사실의 혐의에 관한 사실의 보도로서 허용된다고 해석해야만 할 것이다.

5) 증거 (생략)

3. 당재판소의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당 재판소는 본건 각 기사 중 埼玉縣版의 기사에 대해서는 그 독자들이 기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이나 병원을 특정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宮城縣版의 기사에 대해서는 불특정의 독자들이 기사와 피항소인과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어 피항소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원판결의 이유 설시대로이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가. 본건 기사의 진실성에 대하여

본건 각 기사 중 宮城縣版(이하 ‘본건 기사’라고 한다)은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죄에 관한 사실을 보도한 것이므로 그 성질상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다.

본건 기사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문단에는 부동산업자 등 두 사람이 사기와 宅地建物取引業法 위반의 혐의로 서류송청된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2문단 이하가 단순히 송청된 피의사실을 명시한 데 지나지 않았다면 항소인의 주장과 같이 본건에 있어서의 진실성 증명의 대상이 서류송청의 사실뿐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안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건 기사 중 제3문단 이하에는 우선 “조사에 의하면”이라고 되어 있으며 이어 부동산업자 등이 부동산에 거래의 담보가 붙어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매매 이야기를 꺼내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는 宅地建物取引業法 위반의 사실과 계약금대부 명목으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300만엔을 사취한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이는 사기와 宅地建物取引業法 위반에 의한 서류송청의 사실에만 그치지 않고,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 혹은 기자의 취재 등에 의한 조사의 결과에 의해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명백해졌다는 것을 보여준 기사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제목은 별지2와 같이 우선 “거래의 담보가 붙은 병원의 매매이야기”로 되어 있고 줄을 바꾸어 굵은 고딕체로 “계약금 300만엔 빼앗다”라고 강조하고 다시 줄을 바꾸어 “石巻의 부동산업자 등 2인 사기혐의로 서류송청”으로 하고 있다.

항소인은, 본건 기사는 단순히 서류송청 되었다는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수사를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청하지 않으면 안되며(형사소송법 제246조), 특히 고소를 받았을 때는 신속하게 이에 관한 서류 및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고(형사소송법 제242조), 또 송청되는 사건에는 반드시 증거에 의한 뒷받침이 충분하게 있는 것은 아니며 혐의가 없어 불기소되는 사건도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송청의 사실에 관한 보도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송청의 사실만을 보도하는 것이라면 위에서와 같은 송청의 성질을 참작하여 표현상 신중한 배려가 요청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본건 기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서류송청 되었다는데 그치지 않고, 혐의사실의 존재를 단정했다고까지 말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마치 그 혐의사실이 위의 조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독자에게 주며 일반 독자가 제목에서 강조된 표현과 합쳐서 읽으면 이것은 서류송청 되었다는 사실의 보도 혹은 그 한도 내에서의 범죄의 혐의라는 것을 넘어, 범죄사실이 조사에 의해 그런 대로 뒷받침되어 혐의가 농후하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하는 보도기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의 2. 2) 마. 내지 사.의 사실과 같이 피항소인의 혐의는 불기소처분(중요사항고지의 무 위반 및 사기는 혐의불충분, 계약금대부금지 위반은 기소유예)으로 종결되었을 뿐 아니라 피항소인이 본건 병원에 거액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던 일 및 300만엔을 편취했던 일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수가 없으며, 계약금대부금지의 규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민사사건 판결이 나와있는 등 피항소인의 혐의가 농후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어 이를 뒤집고 피항소인의 혐의가 농후했다든가 조사에 의해 혐의가 입증되었다는 것을 인정시키기에 충분한 증거는 없다.

나. 진실성의 오신에 대하여

당 재판소는 피항소인의 宅地建物取引業法 위

반 및 사기의 각 죄의 혐의가 농후하다는 점에 대해, 항소인이 진실이라고 오신함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며 본건 기사에 의한 보도에 대해서는 항소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부가(付加)정정하는 외에 원판결의 이유 설시대로이므로 이를 인용한다.

원판결 24매째 뒷면 4행째 다음에 줄을 바꾸어 “甲野의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병원에는 거액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게다가 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져 있었는데도 이러한 사실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은 피항소인들의 宅地建物取引業法 위반을 구성하는 사실임과 동시에 甲野에게 있어서는 사기사실의 전제사실로서 중요한 사실로 인식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등기부의 기재를 보면 일목요연하다. 부동산업자인 피항소인이, 의사로서의 오랜 경험을 갖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상식인으로 이해되고 있는 甲野에 대해 이와 같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굳이 고지하지 않고 4억5,000만엔이나 되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일은 통상 상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사실을 모른 채 몇억엔이나 되는 용자를 은행에 신청, 용자교섭을 계속했다는 것은 위에서와 같이 고액의 부동산거래에 관여하는 자의 행동 으로서는 극히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더하고, 원판결 24매째 뒷면 끝줄의 “원고 細浦良”을 “피항소인 등 甲野와 대립하는 쪽의 관계자로부터는 전혀 사정을 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교적 제3자적인 입장의 관계자이다.”로 고친다.

3) 쟁점 다.에 대하여

이상의 인정판단을 전제로 하면 본건 기사에 의해 항소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는 데 족한 금액 50만엔과 또 변호사비용에 대해서는 항소인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10만엔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4) 이상에 의하면 원판결은 상당하며 항소인의 본건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判例時報』, 1672호, pp.73~77.

역 : 한동원(전 중재위원)

□

外國新聞評議會事例

美國事例 1

선거 시기에 사실과 칼럼을 통해 특정 후보를
불공정하게 다루었고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에게만
독자투고 기회를 부여한 것은 잘못

사건의 배경

넨시 바스니스 씨는 1998년 미네소타주 하원의
원 선거에 출마했다. 상대는 현역의원인 토레이
웨스트롬. 선거전이 진행되는 동안 주 노동산업
부(Department of Labor and Industry)가 웨스
트롬가 소유의 건설회사가 노동자들에게 급여 보
험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웨스트롬과 그의
가족들에게 벌금을 부과했었던 사실이 알려졌다
(추후 벌금부과는 취소되었다). 바스니스가 속
한 DFL당은 투표일이 임박한 시점에 이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이 문제를 집중 부각
시켰다. 이 사건을 소재로 한 정치광고도 제작하
여 주간지인 '모리스'지에 게재키로 했으나 바스
니스 후보의 요청으로 광고게재는 철회되었다.
모리스지 편집장은 이 광고와 관련한 논평기사를
실었다. 편집장은 논평을 통해 바스니스 선거운
동본부가 웨스트롬 후보의 노동관련 사건을 사전
에 알고 있었으나 공표하지 않고 있다가 투표일
이 임박해서야 뒤늦게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반사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바스니스는 이
를 부인했다.

불만 내용

바스니스는 '모리스'지가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으며, 신문사가 지지의사를 표명한 바 있는 웨
스트롬 후보에게 치우쳐 있으며, 이러한 편향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 98년 10월 29일자 신문의 기사는 바스니스
가 거짓말을 일삼아왔다는 잘못된 결론을 암시하
였다. 모리스지는 기사에 대한 바스니스측의 의
견을 요청하지 않았다.

2. 98년 10월 29일자 신문의 논평기사는 부정
확하고 사실을 오도하였으며, 바스니스가 거짓
말을 해왔음을 암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차별
주의적 발언으로 바스니스 개인에 대해 공격하였
다. 그럼에도 바스니스의 의견은 요청하지 않았
다.

3. 98년 10월 29일자 모리스지는 웨스트롬에게
논평 및 독자투고란(editorial /letters page)을
제공하여 정견을 발표토록 하였다. 이를 위해 주
간으로 발행되는 모리스지는 공식적인 독자투고
마감일이 며칠 지난 시점에서 웨스트롬측의 투고
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바스니스측에는 동일한
분량의 지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4. 모리스지는 바스니스 선거운동본부장의 투
고에 대해선 게재를 거부하였다.

5. 이 밖에 게재를 앞둔 정치광고의 내용을 사

전에 웨스트롭측에 알려줌으로써 해당 사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전략 마련을 도왔으며 수시로 발행하는 광고전용 신문의 일면을 웨스트롭측에 전매하여 마지막 3주간의 선거운동 기간에 정치광고를 게재토록 도왔다. 또한 바스니스에 대한 지지내용을 담은 여러 개의 독자투고를 게재하지 않았다.

※미네소타주 뉴스평의회는 ‘광고’와 관련된 불만신청은 거부했다. 정치 선전의 성격을 띠며 내용상의 부정확성이 문제가 된 광고만을 다루도록 한 평의회 내부정책에 따른 것이었다. 요컨대 광고는 사업상의 문제라는 것이다.

신문평의회는 바스니스 후보가 제기한 불만을 다음 세 가지 질문으로 요약하여 검토했다.

첫째, 1998년 10월 29일자 모리스지 뉴스기사는 바스니스에 대한 편견을 담고 있었나?

둘째, 1998년 10월 29일자 모리스지 사설은 바스니스에게 불공정한 것이었나?

셋째, 모리스지의 독자투고란은 상대편 후보에 부당한 이익을 안겨주었나?

심의 내용

바우어라인 위원은 제한된 제작 여건 아래서 운영되는 조그만 주간지가 특히 이번 선거와 같은 엄청난 뉴스거리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일련의 노력에 격려를 보냈으나 편향적이란 비난을 피하려면 “일정한 선을 긋고 그것을 고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셀비 위원은 ‘편견을 보였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의 필요성을 신문평의회에 제기했다. 그는 신문기사에 나타난 수많은 문제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령, 인용부호를 이용하여 “10월의 놀랄만한 사건(October Surprise)”이란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그에 걸맞는 사건이란 없었다고 말했다. 스타우퍼 위원 역시 바스니스에 관한 기사에서 발견되는 이례적인 인용부호 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헤이지 위원은 인용부호의 사용이 초래한 사실과 의견간의 불일치가 편견의 수준까지 다다른 것 같았지만, “극도로 나태한 보도”의 단적인 사례들인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셀비 위원은 모리스지가 언론의 본령을

지키지 못했으며, 사실상 바스니스 진영의 호토백과 켄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모리스지는 웨스트롭 진영의 변호사의 발언을 인용하여 정적관계인 호토백과 켄슨이 진실서약을 어기고 거짓말을 일삼았다고 보도했다. “당신네 신문사는 웨스트롭측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호토백과 켄슨에게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셀비 위원은 되물었다.

헤이지 위원은 모리스지가 “10월의 놀랄만한 사건”과 관련한 문제를 부각시킨 방식은 바스니스에 대항한 웨스트롭 진영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그 사건이 모든 기자들이 취재의 필요성을 느낄만한 것임은 인정했다.

언론위원인 토니 카리데오는 관련된 모든 사안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것을 평의회에 요청했다. 모리스지가 웨스트롭측에겐 독자투고란을 통한 의견개진의 기회를 허용할만큼의 친절을 베풀었지만 바스니스 진영엔 그런 호의를 베풀지 않았다고 그는 지적했다. 카리데오 위원은 모리스지가 독자투고란을 이용해 웨스트롭 진영을 도운 것에 대해 독자들은 어리둥절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자투고란과 관련하여 캐닝 위원은, 신문사가 독자들에게 정상적인 지면 운영 규칙을 왜곡한 것에 대한 책임있는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너 위원은 이에 동조했다. “웨스트롭의 의견은 실으면서 바스니스의 의견을 실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만약 당신네 신문사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자 한다면, 독자투고나 뉴스보도의 공정성 유지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캐닝 위원은 주간지에게 주어진 시간적 한계를 고려할 때 보도기사는 적절하게 작성됐다고 보지만 바스니스측의 의견을 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모리스지의 사설에 대해선 실망을 표시했다. “10월 29일자 사설의 내용은 매우 실망스런 것이었다. 거기에 적힌 여러 주장들을 뒷받침할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바스니스 후보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불공정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언론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나 개인적으로라도 바스니스 후보에게 사과하고 싶을 지경이다.”

코너 위원은 만일 군소 신문사가 인력이나 가

용자원이 부족하여 뉴스와 사실간의 바람직한 경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신문사는 절대적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뉴스와 사실을 구분할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 결

1. 1998년 10월 29일자 모리스지 뉴스기사가

바스니스에 대한 편견을 보였다는 불만에 대해 평의회는 수용도 거부도 하지 않았다. 투표 결과, 찬성과 반대 의견이 반반씩 나타났기 때문이다.

2. 1998년 10월 29일자 모리스지 사실이 바스니스에게 불공정한 것이었다는 불만을 평의회는 표결 끝에 14:4로 수용하였다.

3. 모리스지의 칼럼이 상대편 후보에 부당한 이익을 안겨주었다는 불만에 대해 평의회는 표결 끝에 16:2로 수용하였다. □

美國事例 2

문제된 칼럼이 비록 불만신청인의 반론을 담지 못했으나 공인에 대한 의견은 폭넓게 보장되어야

사건의 배경

1999년 3월, 세인트 클라우드 주립대학(SCSU)은 16년 경력의 노련한 체육코치 노엘 마틴과의 고용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계약갱신 포기과 관련한 고지문은 등기우편으로 배달되었다. 마틴은 자신의 관점에서 재작성한 계약관련 내용을 '세인트 클라우드 타임스'지로 보냈고, 이는 3월 13일자 신문기사로 실렸다. 이 신문의 스포츠 담당부장인 데이브 델런드는 마틴 코치의 재계약 탈락과 관련, SCSU의 체육담당 국장인 모리스 커츠를 비난하는 내용의 기명칼럼을 3월 21일자 신문에 게재했다. 담당 국장과 아무런 접촉도 없이, 추잡하고 아둔하며 전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마틴 코치는 해고되었다는 것이 델런드 부장의 주장이었다. 델런드 부장은 커츠 국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몇 걸음만 옮기면 갈 수 있는 마틴의 사무실로 가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커츠 국장은 자신에 대한 델런드 부장의 견해에 반발했다. 몇 차례의 모임과 전화통화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입장 차이를 해소하지 못했다.

불만 내용

불만신청서에서 커츠 국장은 문제의 기명칼럼을 아무런 근거 없이 작성된 "비열한 글"로 지칭했다. 그가 제시한 불만은 아래와 같다.

1. 세인트 클라우드 타임스지의 칼럼은 불공정하게 자신의 진실성을 훼손했다.

2. 칼럼의 필자는 칼럼 내용에 대한 신청인의 견해도 포함했어야만 했다.

3. 칼럼은 사실이 아닌 뒷얘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사실적 오류도 포함되어 있었다.

a) 필자는 집단적 계약(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형식에 의해 처리되는 인사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b) 필자는 마틴 코치가 재계약 탈락 사실을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c) 필자는 마틴 코치의 해고와 관련하여 인사와 관련한 최종결정권자인 대학 총장보다 커츠 국장에게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평의회는 문제의 칼럼이 신청인인 커츠 국장에

게 의견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
서 그에게 불공정하였는가에 중점을 두고 최종
결정을 위한 투표에 부쳤다.

심의 내용

언론위원(media member)인 헤이지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뉴스평의회가 하는 일은 기자와
신문사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이번 사건은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뉴스평
의회는 매우 폭넓은 의견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
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칼럼은 굉장한 기사였
다. 필자의 견해가 매우 강하게 개진되었으며 날
카로움이 번득이는 글이었다. 하지만 우리 평의
회 위원들은 칼럼니스트와 사실 작성자 역시 변
함없는 취재기자이길 바란다. 스스로 취재하여
자기 글의 주제를 결정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
것은 때론 힘든 일이며, 시간낭비라고 생각하
기도 한다. 하지만 기자에게 바라는 기본적인 사
안임은 분명하다.”

공익위원(public member)인 켈러는 칼럼니
스트가 인사 결정 체계를 문제삼아 커츠 국장을 사
악한 인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셀비 위원도
이에 동의했다. “특정 절차를 편견에 치우쳐 비
난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 비
난이 한 개인을 다치게 할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절차란 것은 제대로 설명하기만 한다면
냉혹하게만 보이진 않게 마련이다.”

공익 위원인 킬리는 “내 생각엔 비록 커츠씨가
맹렬한 비난의 희생이 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건은 ‘개인’이 아닌 ‘절차’에 관한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 커츠씨가 公人이 아니었다면 전혀
다르게 받아들였을 것이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퀴네모인 위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公人’의
한계가 쟁점이라 생각한다. 대학이란 공적 기관
의 체육계 인사는 공인 중의 공인이다.”고 말했
다. 그녀는 커츠씨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학 당국에 의해 임명되어 기관을 대표
하는 사람으로서 커츠씨는 “개인적 선호 여부와
관계없이 인사 절차를 이행하든지, 아니면 그 절
차를 보다 인간적으로 개선하든지, 그도 아니면
자신의 직위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바켈루 위원은 이번 사건을 ‘사실’에 관한 문제
라고 보았다. “편집장은 칼럼니스트에게 사실에
충실할 것을 원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칼럼에서
델런드 부장은 커츠씨가 관련 법조문을 살펴봤다
고 말했다. 바로 이 대목은 델런드 부장이 대학의
인사절차를 잘 알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하
지만 실제 기사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델런
드 부장의 칼럼은 마땅히 담겨져 있어야 할 사실
검증을 빠트렸다.”

술스태드 위원의 주장이다. “의견제시에 치중
한 칼럼은 어떤 경우에 뉴스기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 판단으로는 사실에 좀더 치중할 때 의
견 칼럼도 뉴스기사가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실 검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커츠 국장에게 의견개진의 기회를 주지 않았
다는 문제와 관련하여 언론위원인 캐닝은 커츠씨가
칼럼 게재를 전후하여 여러 차례 기회를 제공받았
지만 스스로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문사
는 칼럼을 게재하기 전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
다. 하지만 그 대답이 무엇이였을까요? ‘개인 신상
과 관련된 자료라 응답할 수 없습니다’였습니다.”

표결 결과

사회를 본 스트린저 위원과 ‘세인트 클라우드
타임스’지의 사실 담당 편집자인 로페즈 위원을
제외한 17인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12 대 5로 신
청인의 불만은 기각되었다.

요 약

불만을 기각하는데 표를 던진 몇몇 위원을 포
함한 많은 평의회 위원들은, 의견 기사를 쓰는 기
자일수록 철저한 검증을 거쳐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는데 강한 동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비록 칼
럼의 필자가 대학의 세세한 인사절차를 알지 못
했고 체육담당 국장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지 못
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다수의 평의회 위원들은
칼럼 필자가, 주요 사회기관의 행정에 깊숙이 관
여하는 公人の 행동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폭넓
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 □

濠洲事例 1

유명인의 확인되지 않은 염문설을 보도한 후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잘못

신문평의회는 펠리시티 케넷 씨와 티모시 플레처 씨가 뉴아이디어지를 상대로 제기한 불만을 수용하였다. ‘뉴아이디어’지는 두 사람간의 “충격적인 새로운 연애사건”을 파헤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평의회는 잘못된 기사를 게재한 후 뒤늦게라도 두 사람(케넷씨는 빅토리아 주지사의 부인이며 플레처 씨는 잘 알려진 기업가이다) 간의 연애사실을 부인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뉴아이디어지를 강력히 비난했다.

두 사람은 기사가 게재된 직후 해당 잡지사에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렸다. 두 사람은 기사가 나가기 전에 잡지사와 접촉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던 플레처 부인은 잡지 기사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케넷 부인은 더 심한 충격을 토로했다. 기사내

용대로라면 그녀가 자신의 가장 절친한 친구 중의 하나인 마가렛 플레처(티모시 플레처의 부인)를 배신한 것이기 때문이다.

잡지사측은 악의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사내용은 전적으로 두 사람을 동정하는 것이었지, 악의적 비방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잡지사는 두 사람에게 기사화 사실을 알리려는 시도를 여러 번 했었다고 주장했다. 잡지사는 두 사람의 염문설을 제공한 정보제공자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기사내용이 사실이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과연 뉴아이디어지의 보도가 공익에 부합한 것이었는가 등등의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긴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지난 해 6월의 첫 보도 이후 염문설에 대한 두 사람의 부인 사실은 잡지에 실리지 않았다. 이러한 잡지사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

濠洲事例 2

구체적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는 해명기사는 불충분하다며 신청인의 불만을 수용

호주신문평의회는 베로니카 피소닉 씨가 ‘테이크 5’라는 잡지에 실린 자신의 기사와 관련하여, 그녀가 판단하기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는 시도와 불만에 대해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평의회가 다루는 대부분의 다른 불만들과 비교할 때, 이번 건은 독특한 배경을 갖고 있다. 피소닉 씨는 십대 시절에 정부가 운영하는 병동에 수용되었으며 힘든 삶을 살아왔다. 그녀는 상담원

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하였는가에 관한 글을 썼다. 그녀는 이 글을 여성주간지인 ‘테이크 5’의 자매지인 “오스트레일리언 우먼위클리”에 보냈다.

그녀의 동의 하에 그녀의 이야기는 ‘테이크 5’에 전달되었으며 ‘테이크 5’의 기자가 그 이야기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그녀를 인터뷰했다. 그 글은 재작성되어 1998년 8월에 출간되었다. 평의회는 그 잡지사가 피소닉 씨에게 동정적이었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새로이 출간된 책에서 언급한(그녀의 초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녀가 한때 킹스크로스 지역에 살면서 창녀로 생계를 꾸려나갔다.”는 부분에 대해 피소닉 씨가 반발하였다. 그녀는 킹스크로스에서 살지 않았으며 창녀는 더더욱 아니었다며 강하게 부인하였다. 그녀는 출간 취소와 잡지사측의 사과를 요구하였다.

잡지사는 그녀가 인터뷰 중, 문제가 된 대목에 대해 언급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녀는 그런 말을 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잡지사는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데에 대해 인정하였다.

평의회의 원칙에 있어 중요한 점은 잡지사가 그녀를 공정하게 다루었느냐는 것이다. 잡지사는 1998년 9월호에 그 사건과 관련한 해명 기사를 게

재하였는데 관련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시드니 킹스크로스 지역에 살았던 시절에 관한 언급에 대한 오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테이크 5’는 “피소닉 씨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하여 그랬다는 듯이” 창녀란 단어를 고의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것은 결국 불만신청인만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녀는 잡지사가 어떤 형태로든지 킹스크로스의 창녀에 대한 그녀의 명확한 부인을 실어주기를 원했다. 평의회는 잡지사가 그녀의 부인 사실을 인색화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녀에게 주어졌다고 믿는다. 평의회는 잡지사가 어느 정도 그 상황을 해명하려 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창녀에 관한 명확한 부인이 실리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시했다. □

英國事例 1

부모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어린이에 관한 보도라도 어린이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불만 내용

배쓰시에 거주하는 롱스트레쓰 씨는 1998년 11월 22일자 선데이 타임스 매거진의 한 기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계모(stepmother)’라는 제하의 이 기사가 자신의 열네살난 딸의 사생활을 상세히 다뤘으므로 실천강령 제6조(어린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이 불만은 수용되었다.

문제의 기사는 모린 프릴리 기자가 작성한 것으로 가족생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다룬 특집 기사들 중의 하나였다. 기자는 계모의 입장에서 이 기사를 썼다. 불만신청인은 프릴리 부인의 의붓자식의 생모이다. 이 기사는 세례명을 사용하고 가족사진을 게재함으로써 아이들의 신원을 노출시켰으며, 프릴리 부인이 신청인의 아이들 즉 의붓자식들을 새 가족으로 결속시키는 과정에서

부딪혔던 어려움들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그 기사는 프릴리 부인과 의붓아들 사이의 행복한 현재와 의붓딸과의 어려웠던 지난 날을 대비시켰다. “어떤 사진에 찍힌 의붓딸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건 경멸 뿐이었다. 또 어떤 사진에선 귀신에 홀리거나 우울하게 보였다.”고 신청인은 주장했다.

신청인은 자신의 열네살난 딸에 대해 이렇듯 자세히 밝히는 것은 실천강령 제6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딸의 어릴적 이름이 지금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기사 속의 어린이가 자신의 딸임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녀의 아들은 매우 드문 특이한 이름을 가졌다.

잡지의 편집장은 그 기사가 사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신청인의 전 남편이 현재 아내인 기자에게 자신의 딸에 대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허용했으므로 실천강령 제6조에 저촉되는 사항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자신의 딸이 아버지인 전 남편과 3년 동안이나 아무런 접촉없이 지냈으므로, 딸의 유일하고 실질적인 보호자는 그녀 자신뿐이라고 반박했다.

평 결

PCC는 프릴리 기자가 자신의 가족생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PCC는 미성년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에 상응할 만큼의 특별한 공공 이익이 문제의 기사에 걸려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만 했다.

PCC는 프릴리 기자의 기사에는 그런 예외적인 공공이익이 담겨 있지 않았으며, 姓을 밝히지 않은 것을 제외하곤 어린이의 신원을 보호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시했다. 비록 PCC가 부모가 동의했다는 점을 고려한 했지만, 최고의 관심사는 피해를 입게 될 어린이의 이익이어야 한다. 나아가, 신청인의 전 남편이 자신의 딸을 3년 동안이나 돌보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실천강령 상의 보호자는 그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

英國事例 2

전체 기사의 내용으로 볼 때 사소한 표현상의 오류는 보도실천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불만 내용

맨체스터시에 거주하는 조나단 헌트 씨는 1998년 10월 19일자 및 10월 21일자 가디언지 기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신문윤리 비판서의 저자, 세금탈루로 2만3천파운드의 벌금형을 선고받다” “공모한 상인들(Conspiracy Merchants)”이란 제하의 두 기사가 부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어 실천강령 제1조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또한 헌트씨는 제삼자를 대표하여 실천강령 제11조 위반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결론적으로 그가 제기한 모든 불만은 기각당했으며, 그 자세한 내막은 아래와 같다.

신청인인 헌트씨는 “공모된 재판(Trial by Conspiracy)”이란 책의 저자다. 이 책에서 저자는 전직 수상인 해밀턴 및 그와 페이어드간의 관계를 다룬 가디언지의 일련의 기사를 작성했던 기자들이 보여준 행위에 대해 몇 가지 주장을 펼쳤다.

PCC는 신청인의 두 가지 불만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였다.

첫 번째 기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부정확하게 기술된 9개 부분을 지적했다. 먼저 이 기사에선 자신을 단지 언론인이라고만 밝힘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잘못 기술했다고 주장한다. 자신이 한때 북서지역 왕립텔레비전협회(the Northwest Royal Television Society)가 수여하는 상의 수상후보까지 올랐던 적이 있었음을 빠트렸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뉴스의 진행자(presenter)였다는 내용도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사실은 자신이 그 프로그램의 리포터였다는 것이다. 그는 이 차이를 중요하게 간주했다.

신청인은 또한 몇 대의 수입차 구입과 관련해 자신이 부가가치세를 추정당했다는 언급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국세청 담당자들과 처음 면담했을 때 자신이 수입가를 낮게 신고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자신이 그 사실을 직접 인정하고 세금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이 외제차 수입을 1990년에 중단했으므로 세무 당국이 1991년까지의 수입 현황을 조사했다는 보도내용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국세청 담당자들과 추정 세액에 대해 협상했다는 사실을 부인했으며, 부과된 세금 전액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 금액도 2만3천파운드의 벌금을 포함한 11만9천파운드가 아니라, 소액의 벌금을 포함하여 2만3천파운드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헌트씨는 가디언지 기자들에게 벌금부과 사실을 부인했다.”는 보도내용도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벌금 부과와 같은 가벼운 범죄(misdemeanour)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므로 자신이 그것을 감출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었다.

신청인은 자신을 두고 “홍보사업 분야에도 손을 대었다.”라고 언급한 것은 그 사업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자신은 홍보 분야에 뛰어들기 이전에 리비아 석유탐사사업에 참여했었음을 지적하며 자신의 이력에 대한 소개도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시간을 운송사업에 관여했으며 간간히 석유시추업자나 자동차경주자로 나서기도 했다.”는 소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자신이 육상운송사업에 소비한 시간은 성인이 된 이후의 57% 밖에 되지 않으므로, “대부분”이란 표현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석유시추업자로 고용된 적이 없으며 단지 자신이 석유산업에서 했던 일 중에서 油井에 석유나 가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었으며 또 자신은 자동차경주자로 고용된 적이 없으며 단지 그것은 소일거리일 뿐이었다고 반박했다.

신청인은 그의 전 사업파트너가 자신에 대해 행한 발언에 대해 반박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자신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하는 신문기자들을 다섯 번이나 접촉했었으므로 “그는 자신이 고발한 가디언지 기자들과 한 마디도 나누지 않았었다.”는 보도내용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이 기사대로라면 독자들은 자신이 관련 기자들을 만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평 결

보도실천강령은 심대한 오보일 경우 즉각 정정되어야 하며 정정 사실은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된 기사에서 중대한 오보는 신청인이 벌금으로 추정당한 부가가치세의 금액과 관련한 부분이었으며 신문사는 관련기사가 오보였음을 인정했다. 편집장이 오보 사실을 인지한 직후에 실천강령의 규정대로 관련 기사를 정정하였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배경에서 PCC는 벌금과 관련한 불만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삼을 것이 없었다. 더군다나 PCC는 이 기사의 핵심이 신청인이 밝혔듯이 벌금의 액수가 아니라 벌금의 성격(경범죄냐 중죄냐)과 관련되어 있다고 간주했다.

보도실천강령은 관련 당사자에게 잘못된 보도를 반박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PCC는 신청인이 자신의 사업 파트너였던 사람이 행한 발언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불만을 실천강령에 의거하여 판단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전직 사업 파트너의 발언내용은 명백히 견해 차원의 문제이지 편집상의 오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PCC는 자신이 고소한 신문기자들과 한 마디도 나누지 않았다는 보도내용이 독자들에게 잘못 전달될 수 있다는 신청인의 불만에 대해 그가 걱정하는 수준만큼은 아니라고 간주했다.

PCC는 부정확한 보도내용에 대해서 검토했다. 신청인이 뉴스 진행자가 아니라 리포터였다는 불만, 신문보도의 문제로 볼 때 신청인의 홍보업계에서 능력이 의심받았다는 사실, 석유산업에서 활동한 기간에 부정확하다는 점, 자신을 석유시추업자로 기술한 것은 틀렸다는 지적, 자신은 자동차경주자로 고용된 적이 없다는 사실, 육상운송 사업에 성인 이후의 57%의 인생을 투자한 것을 두고 ‘대부분’이란 표현을 쓴 것은 잘못이라는 점 등. PCC는 신청인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이 모든 내용들이 전체기사의 흐름상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므로 보도실천강령에서 규정한 특별한 조치를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PCC는 두 번째 기사가 논평과 추측,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실천강령 제1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간주했다. 기사는 편집장의 개인적 견해를 분명히 제시하였고 이는 편집장에게 주어진 권한이며, 독자들은 이 기사가 이 사건에 관한 전체기사의 일부분임을 인지하였을 것이라고 PCC는 판단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자신의 견해를 압축하여 제시한 부분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기사에서 실천강령을 위반한 부분은 없다고 PCC는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편집장이 신청인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기사화한 것에 대해서도(비록 신청인이 과장되었다고 간주한다 하더라도) 비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실천강령 위배를 따질 부분은 없다고 결정했다.

끝으로, 신청인은 자신의 책의 공동저자의 어

머니를 대신하여 불만을 제기했다. 가디언지의 한 기자가 속임수를 써서 공동저자의 어머니로부터 공동저자의 브라질 현주소를 빼냈는데 이는 실천강령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록 이 속임수 사건이 1998년 3월에 발생하여 문제가 된 이번 기사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였지만 PCC는 정황자료들을 검토하였고, 결국 위반사항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공동저자의 어머니로부터 자기 아들의 브라질 주소를 알아내어 관련 기사를 작성하려한다는 것을 밝힌 기자에게 주소를 가르쳐주었다는 진술이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불만사항들 중에서 실천강령을 위반한 부분을 찾을 수 없었기에 PCC는 모든 불만을 기각시켰다. □

최근의 國內言論關係判決

判決 1

중재신청인의 불출석에 대해 불이익을 줌으로써 출석을 강제하도록 하는 정간법 제18조 제5항은 중재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중재절차를 실질화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事實概要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1999년 7월 22일 한국전기통신공사노동조합이 중재피신청인의 경우 2회 불출석시 합의간주된 것으로 보는 반면 중재신청인의 경우 단 1회 불출석시에 중재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간법’이라 함) 제18조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동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간법 제18조 제5항의 입법목적은 중재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중재재판부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중재절차를 실질화하는 데 있으므로 중재신청인의 불출석에 대해 불이익을 줌으로써 중재신청인의 출석을 강제하도록 하는 위 조항은 중재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실질화를 위하여 적합한 방법이라고 인정된다. 또한 전제·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함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중재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이 허용되어 있으며, 언론중재제도가 전파력이 강

한 대중매체인 정기간행물에 의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중재신청인과 피신청인을 합리적 기준 없이 차별취급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중재신청인이 불출석하여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정당한 신청기간 내에 다시 중재신청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재신청인이 불출석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피신청인에 비해 완화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청구인 한국전기통신공사노동조합은 조선일보의 1995년 5월 20일자 『한통파업때 국가위협간주』 제하의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95서울중재161)을 하였으나 중재기일에 불출석하여 철회 간주되었고, 이후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에 항소하여 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1996년 3월 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決 定 文

사 건 : 96헌바19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위헌소원

청 구 인 : 한국전기통신공사노동조합

서울 종로구 세종로 100

대표자 위원장 유 덕 상

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김기중

당해사건 : 서울고등법원 95라178 정정보도

주 문 :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
니한다.

이 유 :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청구인은 1982. 1. 6. 정부투자기관인 한국
전기통신공사의 소속 근로자 62,000여 명 중 52,
000여 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다.

조선일보는 1995. 5. 20.자 1면 왼쪽 상단부분
에 『한통과업맨 국가위협간주』라는 큰 제목 아
래, “김대통령 불법분규 엄벌 경고”라는 중간 제
목으로, “통신비상대책 마련 흥부총리”, “제3자
개입 단호대처 박통상”이라는 작은 제목으로 별
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청구인은 그 조합활동이 국가를 전복하거나 국
가의 안전을 위협한 것이 아닌데도, 조선일보가
과장·왜곡된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함으
로써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언론중재
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중재기일(1995. 7. 3. 09:30)
에 출석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자, 청구
인의 중재신청은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
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 본문에 의하여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에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정
정정보도 불이행시의 간접강제 신청(95카기3525)
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청구인의 위 신청이 언
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
적법한 신청임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여 그 소송(95
라178)이 계속 중 재판의 전제가 된 이 법률조

항의 위헌여부심판 제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1996. 3. 5. 헌법재판소에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
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은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정간법”이라 한다) 제18조 제5
항(이하 “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
고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간법 제18조 ④ 중재부의 장은 중재당사자나
이해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는 자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출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중재신청인
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내용대로 정정기사를 게
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소
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청구인이 중재기일에 단 1회 불출석하여 중
재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면 청구인으로서
는 더 이상 중재신청을 할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
로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이
법률조항은 표현의 자유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
반된다.

(2) 중재피신청인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
니하여야 중재신청 내용대로 정정기사를 게재하
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는 반면 중재신청인은 단
‘1회’의 불출석을 이유로 바로 중재신청을 철회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중재신청인과 피신청인
을 합리적 기준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나. 당해법원의 제청신청기각 이유와 공보처
장관 및 언론중재위원회의 의견 요지

(1) 정간법 제18조 제1항은 피해자가 중재기일
에 불출석을 반복함으로써 중재절차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언론보도와 관련된 분
쟁을 신속하게 종결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중
재신청인으로서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리
인을 통하여 중재를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간법 제18조 제1항, 제16조 제2항), 중재기일의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을 면할 수 있는 점(정간법 제18조 제5항 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중재기일 1회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규정한 이 법률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중재절차의 적극적 당사자로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는 소극적 당사자보다 출석의무 불이행에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우리 법제도에 특유한 언론중재제도는 피해자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된 점, 청구인은 1회 불출석으로 중재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다시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데 반하여(정간법 제18조 제1항), 피신청인이 2회 불출석하면 중재신청 내용대로 정정 기사를 게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되고 더 이상의 구제절차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다.

다.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의 의견 요지

이 법률조항이 위헌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양보로 화해가 성립될 수도 있고, 신청인이 스스로 취하할 수도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그 밖의 내용은 위 나.의 요지와 같다.

3. 판단

가. 정정보도청구권과 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정간법은 제16조에서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해자에게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다만 위 정정보도청구권은 1995. 12. 30. 법률 제5145호 개정법률에 의하여 그 명칭이 반론보도청구권으로 변경되었다). 정정보도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에 그 바탕을 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보도된 사실적 내용에 대하여 반박의 기회를 허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공정한 여론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언론보도의 객관성을 향상시켜 제도로써의 언론보장을 더욱 충실하게 한다는 취

지 아래 신설된 것이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5).

정간법은 정정보도청구권을 둘러싼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로써 언론중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바, 제18조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이 있는 자 또는 그 상대방은 분쟁된 공표가 있는 날로부터 1월(일간신문 또는 통신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언론중재제도는 우리 법제에 독특한 제도로써 화해에 의한 명예로운 해결의 기회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중재를 담당하는 중재부에 직업법관 이외에 언론계의 실정에 정통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함께 참여하게 함으로써 언론과 피해자 쌍방을 이해시키는 데 유리하고,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법원의 재판절차 이전 단계에서 절충할 기회를 갖게 되는 이점이 있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법원의 재판절차상의 비용과 번잡함을 피하여 피해구제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제도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법률조항은 중재부의 장이 중재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한 경우 중재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내용대로 정정 기사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조항이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라 중재절차가 조기에 종결되도록 규정하는 취지는 중재절차의 지연을 방지하여 중재절차가 신속한 분쟁해결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재부의 장의 출석요구를 실질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 재판청구권의 침해여부

(1) 정간법은 제18조 제1항에서 분쟁된 공표가 있는 날로부터 1월(일간신문 또는 통신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단기간의 중재신청기간만을 허용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에서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에 따라 중재신청이 철회간주되면 중재신청인은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법원의 재판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실질적 불이익을 입게 된다(다만 피해자가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함

을 이유로 민법 제764조에 의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의 정정보도를 구하는 것은 별론이다).

결국 이 법률조항은 재판절차의 전심절차인 중재절차를 규율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6. 11. 28. 96헌가15). 한편, 청구인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제한을 받는 기본권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이고, 표현의 자유는 재판청구권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그 실현이 제한될 뿐이므로, 여기에서는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2) 우리 헌법은 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재판청구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요건 아래 법률로 제한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목적의 정당성), 수단이 목적달성에 적합하며(방법의 적합성), 기본권침해가 필요최소한에 그치고(최소침해성), 제한되는 기본권과 그로 인하여 실현되는 공공이익 사이에 상당한 비례관계(법익의 균형성)를 갖추어야 한다(헌재 1996. 10. 4. 95헌가1등).

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중재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중재재판부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중재절차를 실질화하는 데 있다. 특히 중재신청인의 태만으로 피신청인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재부의 장의 출석요구를 실질화 함으로써 중재절차가 법원의 재판을 위한 단순한 통과례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제27조 제3항에 비추어 헌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법률조항은 중재신청인의 불출석에 대하여 불이익을 줌으로써 중재신청인의 출석을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중재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실질화를 위하여 적합한 방법이라고 인정된다.

그리고 정간법은 천재·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

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제18조 제5항 단서), 중재신청인은 중재절차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제18조 제1항, 제16조 제2항) 중재신청인이 중재절차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이 허용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법률조항은 최소침해성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언론중재제도가 전파력이 강한 대중매체인 정기간행물에 의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재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실질화를 위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내지 정정보도청구권을 위와 같이 일부 제한하였다고 하여도, 제한되는 기본권과 그로 인하여 실현되는 공공이익 사이에 상당한 비례관계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비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평등원칙 위반여부

중재절차에 있어서 중재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면 중재신청 내용대로 정정기사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는 반면 중재신청인은 단 ‘1회’의 불출석을 이유로 바로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중재신청인과 피신청인을 합리적 기준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만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차별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이라고 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그 차별의 목적이 헌법에 합치하는 정당한 목적이어야 하고, 다음으로 차별의 기준이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실질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며, 차별의 정도 또한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6. 10. 4. 95헌가1등).

위에서 본 것처럼 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중의 하나가 중재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고, 이러한 중재절차의 신속성은 주로 피해자인 중재신청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절차진행의 신속성과 관련하여 중재신청인과 피신청인에 대하여 각각 법적으로 다른 내용의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리고 한편, 중재신청인이 중재기일에 불출석하여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정당한 신청기간 내에는 다시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재신청인이 불출석시에 받게 되는 불이익은 피신청인이 불출석한 경우에 받게 되는 확정적인 불이익보다는 완화된 내용의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이와 같이 중재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중재절차에서 가지는 법적 지위 및 이들이 불출석한 경우에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법률조항이 불리한 법률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중재신청인에 대하여는 1회의 불출석을 요건으로 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2회의 불출석을 요건으로 한다고 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4. 결론

이상의 이유로 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재판관 조승형의 다음 5.와 같은 주문표시에 대한 별개의견과 재판관 이영모의 다음 6.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

나는 주문표시 중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법률(…) 제18조 제5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로 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리재판소가 1995. 10. 26. 선고한 92헌바45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93헌바62 주택건축촉진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94헌바7, 8(병합)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위헌소원, 95헌바2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94헌바28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의 각 사건 결정시에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

7항, 제47조 소정의 기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합헌결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는 국민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뜻을 받아 들일 수 없는 결론 즉 합헌이라면 굳이 아무런 실효도 없이 국민이 청구한 바도 없는 “합헌”임을 주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6. 재판관 이영모의 반대의견

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기본권)는 구체절차가 있어야 그 실효성이 보장된다. 기본권의 역사는 바로 공정·공평한 구체절차의 보장·강화의 역사이다. 우리 헌법도 기본권 보장의 핵심수단으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절차적 기본권 규정을 두고 있다(제27조 제1항).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재판절차를 통하여 구제받는 제도는 헌법이 추구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실현·지탱하는 필수 불가결한 수단에 속한다. 재판을 받을 권리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자유와 권리 등 다른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는 이러한 점을 헤아린 신중한 배려가 요청된다. 그러므로 재판의 전심인 중재절차에서 당해 조항이 이 권리의 본질을 훼손하고 재판의 이념인 공정과 공평을 해치는 결과를 빚는 것이라면, 이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기본권 제한한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 조항이 겉 보기에 한쪽 당사자에게만 사소한 절차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일지라도, 이것이 곧 재판을 받을 길을 가로 막는 장애물로 보이면 망설임 없이 위헌선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 중재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은 정정보도신청사건의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 있는데도 중재절차의 한쪽 당사자를 다른 당사자에 비하여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 법률조항은 헌법 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쌍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신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제241조) 반하여, 중

재신청인은 전심인 중재절차에서 단 한번 불출석하는 경우 신청철회간주효과로 인하여 법원에 정정보도심판 청구를 못하게 된다(정간법 제19조 제1항). 중재신청인의 1회 불출석으로 인한 정정보도신청의 철회간주효과는 정정보도의 적부(適否)에 대한 사법통제의 길을 봉쇄당하는 사실상의 패소확정을 뜻하고, 피신청인의 2회 불출석으로 인한 정정기사 게재 합의간주 또한 성질상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법률조항은 중재당사자의 불출석 회수(回數)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이것이 정당하고 합리적인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수의견은, 중재신청인(청구인)은 천재·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소명하면 예외가 인정되고, 대리인 선임할 수 있으며, 신청철회간주효과가 생겨도 재청구를 할 수 있고, 또 절차의 신속한 진행으로 중재를 실질화하는 데 기여하므로 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중재신청인의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는 중재부가 결정하고, 중재부의 장의 출석요구에 변호사의 선임은 필요적 요건 사항도 아니다. 피해자의 청구기간은 일간신문 또는 통신의 경우에는 14일, 그밖의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1월이내 이고(정간법 제16조 제1항), 중재는 14일이내에 하지 아니하면 중재 불성립으로 본다(정간법 제18조 제7항)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청철회간주효과가 생겨도 재청구가 가능하고 절차의 신속한 진행으로 중재의 실질화를 도모한다는 이유는, 재판청구권을 제한하기 위한 기본권 제한 한계의 요건과 차별의 정당성 및 합리성을 요구하는 평등원칙에 대한 논증으로는 설득력이라는 측면에서 수긍이 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이해관계가 동일한 중재당사자 중 피신청인을 중재신청인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지 않으면 안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 결론적으로, 이 법률조항은 공정·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제한 한계의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중재당사자를 차별취급하고 있어 평등원칙 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것은 중재신청인인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 제27조 제

1항(재판청구권), 제11조 제1항(평등권)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생각한다.

1999. 7. 22.

재판장	재판관	김 용 준
	재판관	김 문 희
	재판관	이 재 화
	재판관	조 승 형
	재판관	정 경 식
	재판관	고 중 석
	재판관	신 창 언
주 심	재판관	이 영 모
	재판관	한 대 현

〈별지〉 보도내용

김영삼 대통령은 19일 한국통신 노조가 법으로서는 불가능한 파업을 결행할 경우, 『정부는 이를 단순한 노사분규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로 보고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낮 IPI(국제언론인협회) 한국위원회(위원장 방상훈 조선일보사장) 이사들과의 오찬석상에서 『한국통신은 국가의 중추신경으로서, 한국통신이 파업을 할 경우 국민생활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나라의 행정, 경제, 산업 등 국가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그렇게 말했다.

김대통령은 『한국통신 노조가 이런 점을 분명히 알면서도 작년 5월부터 정부의 통신정책에 대한 반대투쟁을 전개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하여 정보통신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국가를 전복하려는 음모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법을 어기는 파업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정부는 작년말부터 파업과 같은 극한상황에 대비하여 즉각 대체할 수 있는 요원을 훈련시켜 놓았으므로 국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후 우수발명인 2백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다과를 베푼 자리에서도 같은 내용을 강한 어조로 되풀이했다. □

이 사건보도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보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는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므로 피고소인들을 무혐의 불기소처분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事實概要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1999년 6월 24일 전 강원도의회 의원인 정인수 씨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강원일보 발행인과 편집국장, 기자들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것이 위법하다며 낸 불기소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간과 싸우는 신문보도에 오류를 수반하는 표현은, 사상과 의견에 대한 아무런 제한 없는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는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고 이러한 표현도 자유토론과 진실확인에 필요한 것이므로 함께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속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신문의 속성상 허위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서 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거나,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는 모두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비록 강원일보사가 고소인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것이 인정되나, 고소인이 김일성 애도서신을 북한측에 전달하였고, 경찰·검찰에서 내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보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소인들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혐의 불기소처분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강원일보가 1995년 4월에서 9월에 걸쳐 당시 강원도의회원이었던 청구인이 김일성 애도서신을 보냈고 이와 관련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위 보도가 비방 목적에 의한 허위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피고소인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 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청구인은 강원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인에게 2천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決 定 文

사 건 : 97헌마26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 정 인 수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삼천리아파트 508호

대리인 변호사 고 광 록

피청구인 :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1388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제3대 강원도의회 의원이었던 청구인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동료 도의원인 청구외 정상철, 김덕룡(이하 “청구외 인”이라 한다)과 남북강원도 교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간사장으로 활동하면서 1994. 11. 17. 통일원으로부터 북한주민 접촉 승인을 받았다. 1995. 3. 20. 중국 북경에서 북한대사관 직원을 만나 남북 강원도 교류문제를 논의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인의 명의로 된 김정일에게 보내는 [별지 제1]과 같은 편지(이하 ‘이 사건 편지’라고 한다)를 전달하였다. 이 사건 편지는 강원도 의회와 북강원 인민위원회 간의 자매결연, 의원세미나 개최, 특산물 교환, 문화체육행사와 학생 수학여행단 교류, 남북 청소년 야영대회 등 남북 강원도 교류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그 편지 앞머리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

국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귀하. 안녕하십니까. 김일성 주석께서 서거 이후 애통한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셨을 총사령관께 삼가 위로와 격려 말씀드립니다”라는 인사말과 중간 부분에는 청구인이 1994. 11.에 김정일로부터 서한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청구인이 역대 군사정권에 저항한 반독재 투쟁경력을 소개하고 끝에는 1995. 4. 평양에서 개최되는 “국제체육문화축전”에서 교류방안에 관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통일원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 편지의 내용과 전달 경위를 조사하게 되었다.

강원일보는 1995. 4. 9.자 신문에서 『북 접촉 도의원 3명 내사』라는 제목과 “검·경 김정일에 ‘김일성 사망 애도’ 편지”라는 부제목으로 된 기사를 게재한 이래 같은 해 9. 6.까지 [별지 제2]와 같이 모두 17차례에 걸쳐 ‘김일성 애도 편지’라는 표현을 제목 또는 본문에 사용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 인이 김정일에게 이 사건 편지를 보낸 사실과 그 내용, 이에 대한 통일원의 조치, 경찰 및 검찰의 수사상황, 이북5도민회의 반응 등에 관한 기사와 독자투고를 게재하였다.

나. 청구인은 강원일보의 보도가 비방 목적에 의한 허위 내용으로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1996. 11. 22. 춘천지방법경찰청에 피고소인 조○○(강원일보사 발행인 겸 편집인), 이○○(강원일보사 편집국장), 이○○(강원일보사 사회 2부 기자), 최○○(강원일보사 사회부 기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각 고소하였다.

피청구인은 1997. 2. 26.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를 거쳐 1997. 8. 21.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강원일보를 상대로 신청한 정정보도 심판사건은 일부인용 판결이 있었고(춘천지방법원 1996. 10. 10. 선고, 95카기299 판결), 강원일보와 피고소인 이○○를 공동피고로 제기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사건에서도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97. 11. 6. 선고, 96가합2272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4. 23. 선고, 97나57360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4624 판결).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등은 공모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인이 김정일에게 남북교류 성사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낸 행위에 대하여 검찰·경찰이 수사 중임을 기화로 제4대 강원도의회 의원선거(1995. 6. 27.) 임후보 예정자였던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가. 이 사건 편지에 교류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형식상 상주(喪主)인 김정일에게 의례적으로 완곡하게 “위로”라는 표현을 단 한차례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5. 4. 9.자 강원일보에 ‘김일성 사망 애도 편지’라는 부제를 붙여 기사화한 이래 같은 해 9. 6.자 보도에 이르기까지 17차례에 걸쳐 같은 표현을 반복·사용함으로써 청구인이 김일성의 사망을 애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편지를 작성 전달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고,

나. 강원도지방경찰청이 청구인의 서신 전달 행위에 대하여 내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1995. 4. 9.자 강원일보에 ‘청구인의 서신 전달 행위에 대하여 검찰과 경찰이 도의원 3명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내사 중이다’라는 허위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고,

다. 통일원이 아무런 경고조치를 취한 일이 없는 데도, 1995. 4. 11.자 신문에 ‘통일원에서 관계도의원들에 대하여 경고조치 하기로 결정하고 금명간 경고 공문을 보내기로 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고,

라. 강원도지방경찰청이 1995. 4. 24. 청구인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였음에도 같은 달 28.자 신문에 ‘김일성 애도 도의원 3명 보강수사 계속’이란 제목 아래 ‘강원도지방경찰청이 같은 달 27. 도의원 3명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등을 계속 조사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고,

마. 청구인이 1995. 9. 5. 검찰 조사시 편지에 반정부 투쟁을 담은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달 6.자 신문에 ‘검찰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위 서신에 반정부 투쟁을 담은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는 허위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피청구인은 허위 기사가 보도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이나 범의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으나, 17차례 중 16차례의 기사는 1995. 4. 9.부터 같은 해 6. 11.에 보도된 것으로, 제4대 강원도의회 의원 선거일이 같은 해 6. 27.인 점, 강릉시 주문진 읍은 실향민들이 많고 반공의식이 강한 지역정서상 김정일에게 보낸 김일성 사망 애도 서신 관련 보도는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점, 언론사에 근무하는 피고소인들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거를 앞둔 시점에 집중 보도한 것은 비방 목적이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편지는 김일성 사망을 애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교류사업에 협력하여 달라라는 것이었고, 의례적으로 ‘위로’라는 표현을 한마디 사용하였을 뿐인데도 ‘애도’라고 기사화한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편지의 전체적인 내용은 도외시한 채 지엽말단의 한 표현을 문제삼아 서신 내용이 마치 김일성 사망 애도 서신인양 보도한 것은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

나. 피청구인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만을 검토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으나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에 대한 판단을 빠뜨린 잘못이 있다.

4. 판단

가. 언론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이 사건은 공적(公的) 인물(도의회 의원)의 공적인 활동과 관련된 사실을 보도한 신문기사가 명예훼손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 인격권(헌법 제10조)으로서의 개인의 명예 보호와 언론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반되는 두 권리를 조정하는 한계 설정을 하는 것이 쟁점으로 된 사건이다.

(1) 헌법은 제21조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 … 를 가진다(제1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제4항)”고 하고,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타인의 인격권인 명예는 모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두 권리의 우열은 쉽사리 단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자

기의 사상과 의견 표현에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타인의 인격권인 명예를 함부로 침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자기모순에서 헤어날 수 없으므로,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이하 ‘언론의 자유’라 한다)는 보장되 명예 보호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제한을 받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개인이 언론 활동을 통하여 자기의 인격을 형성하는 개인적 가치인 자기실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평등한 배려와 존중을 기본원리로 공생·공존관계를 유지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회적 가치인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개인의 언론 활동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라는 개인 대 개인 간의 사적(私的) 관계에서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하나, 당해 표현이 공공적·사회적·객관적인 의미를 가진 정보에 해당되는 것은 그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알 권리)는 개인의 인격형성과 자기실현은 물론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하는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공적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이 듣고, 읽고, 보는 이른바 알 권리는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매체의 보도에 의존하는 바가 크고 이 보도를 통한 정보는 활발한 비판과 토론을 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게 된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하는지를 감시하고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보장하며, 소수의견을 외면하지 않는 정치적 언론이 숨쉬는 열린 공간에서 여론을 수렴하여 그것을 다수의사로 결집·형성하는 과정을 갖는 것은 우리들 모두가 만들고 가꾸는 민주제의 참된 모습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본다면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의 확보와 언론매체에 의한 정보의 전달은 민주제의 필수불가결한 본질적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2) 개인의 명예 보호를 구체화한 일반법으로는 민법과 형법을 들 수 있다. 민법은 제750조, 제751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

을 가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규정을 두고, 형법은 제307조 내지 제309조에서 공연히 사실(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공연히 모욕하는 행위에 형사제재를 과하는 한편, 제310조는 위법성의 조각으로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둔 것이 그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명예)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든 명예훼손 관련법은,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제한·억압하는 수단으로 쓰여졌다.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기본권이고, 명예 보호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하는 기초가 되는 권리이므로, 이 두 권리를 비교형량하여 어느쪽이 우위에 서는지를 가리는 것은 헌법적인 평가 문제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매체의 명예훼손적 표현에 위에서 본 실정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언론의 자유와 명예 보호라는 상반되는 헌법상의 두 권리의 조정 과정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自招)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알 권리)로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표현 내용과 방식에 따라 상반되는 두 권리를 유형적으로 형량한 비례관계를 따져 언론의 자유에 대한 한계 설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공적 인물과 사인, 공적인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고,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은 공적 인물이 그의 공적 활동과 관련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하는 등 개별사례에서의 이익형량에 따라 그 결론도 달라지게 된다. 이곳에서는 이 사건의 쟁점인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형사제재의 면책요건에 관한 일반적인 원리만 실시하기로 한다.

(3)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언론의 자유와 명예 보호라는 두 가치를 유형적으로 형량하는 조정을 꾀하고 있다.

그런데 진실성의 증명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위법성의 조각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형사제재의 범위는 넓어지고 언론의 자유는 위축된다. 가치있는 공적인 사안이나 국민이 알아야 할 사안(알 권리)에 대하여 자유로운 비판이나 토론을 하지 못하게 형사벌로 규율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질식하고, 비교형량의 비중은 명예 보호쪽에 너무 치우치게 된다. 이와 같은 언론 자유의 위축이나 질식은 바로 다수결 원리의 형해화로 이어지고 민주주의 또한 이름뿐인 존재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형사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헌법적인 요청을 고려하여 첫째, 그 표현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입증 없이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오인(誤認)하고 행위를 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둘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라는 요건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그 적용범위를 넓혀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의 배려라는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실(알 권리)에는 공공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결과 이로 인하여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은 쉽게 수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6. 22. 92도3160, 공 1993하, 2188; 1994. 8. 26. 94도237, 공 1994하, 2572. 각 참조). 셋째, 명예훼손적 표현에서의 “비방할 목적”(형법 제309조)은 그 폭을 좁히는 제한된 해석이 필요하다. 법관은 엄격한 증거로써 입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위자의 비방 목적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상의 법리를 공적 인물의 공적인 활동과 관련된 신문보도에 비추어 생각건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알 권리)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사안의 게재(掲載)를 주저하게 만들어서는 안된

다. 신속한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신문의 속성상 허위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서 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거나, 중요한 내용이 아닌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는 모두 형사 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대법원 1996. 8. 23. 94도3191, 공 1996하, 2928 참조). 시간과 싸우는 신문보도에 오류(誤謬)를 수반하는 표현은, 사상과 의견에 대한 아무런 제한없는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고 이러한 표현도 자유토론과 진실확인에 필요한 것이므로 함께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허위라는 것을 알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진위(眞僞)를 알아보지 않고 게재한 허위보도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합헌성

도의회 의원인 청구인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북한의 김정일에게 보낸 이 사건 편지에 대해서 통일원과 경찰·검찰이 그 경위와 내용을 조사한 사실을 강원일보가 보도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고소인인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보도한 것이 아니고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한 결정의 당부(當否)를 검토하기로 한다.

(1) 고소사실 “가”항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건대, 첫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귀하. 안녕하십니까. 김일성 주석께서 서거 이후 애통한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셨을 총사령관께 삼가 위로와 격려 말씀드립니다”로 시작되는 이 사건 편지의 인사말에는 김일성의 죽음을 적시하고 그로 인한 김정일의 슬픔에 대해 위로와 격려를 표시하고 있다. 여기에 사용된 “위로”[(몸이나 마음의 괴로움이 풀어도도록) 좋은 말과 행동으로 따뜻하게 대하다]와 격려(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아 주는 것)는 김일성의 사망과 관련된 것이고, 상주(喪主)의 슬픔을 위로하는 이른바 “조문(弔問)”[(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나타내며 상주를 위문하는 것]에 해당된다. 이 “조문”은 “애도(哀悼)”(사람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석해 하는 것, 이상, 연세 한국어사전, 두산동아 1998)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다. 비록 조문과 애도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일상적인 어법에서 그 차이가 뚜렷한 것은 아니다.

둘째, 편지 내용의 전체 취지는 교류를 촉구하는 내용임이 분명하나, 애도를 나타내는 인사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강원일보가 1995. 4. 9. 자 처음 보도를 하기 전인 같은 해 3. 29. 통일원이 이 인사말을 비롯한 그 밖의 내용들을 문제삼아 청구인 일행으로부터 이 사건 편지의 작성 전달과정에 대한 경위서를 받는 한편, 경찰과 검찰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대외비로 내사한 사실이 있는 점(수사기록 2-7, 11, 2-19, 21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편지는 애도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 공적 토론의 쟁점이었던 애도의 뜻이 담긴 인사말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신문사가 사건의 성격을 “김일성 사망 애도 편지”라고 평가·규정한 것이 비합리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강원일보의 “애도 편지”라는 표현이 편지의 인사말 부분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실질적으로 볼 때에 그 뜻을 임의로 변경한 것도 아니다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서(1995. 4. 13. 자)도 “김일성 사망의 애도와 김정일에 대한 위로의 인사말을 사용하였다”고 내용을 정리한 다음, “의례적 애도와 위로”라고 평가하고 있다(수사기록 139면)].

(나) [별지 제2]의 강원일보의 일련의 보도내용을 모두 살펴보면, 객관적으로 볼 때에, 강원일보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편지의 주된 내용은 남북교류 성사의 촉구이고 김일성 사망 애도는 편지의 인사말이라는 취지를 되풀이 하였으므로 일반 독자들 또한 그와 같은 취지대로 인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더욱이 강원도민일보는 4. 21. 자 기사에서 『김일성 애도한 것 아니다』라는 제목에 “김덕룡 의원 대북서한 협조요청 차원 의례적 표현에 불과, 남북교류추진위, 도의회서 공식해명”이라는 부제목으로 해명 기사를 쓰고(수사기록 30면), 다른 지면에서는 “인사치레가 와전된 것”이라는 제목과 “‘슬퍼할 이유없어’ 강력주장, 실정법 위반 사실무근 강조” “통일원 사과가 증거일부 매도비판”이라는 부제목하에 김덕룡 도의원의 공식발언내용을 보도하여(수사

기록 31면), 일반 독자들로서는 두 신문보도를 통하여 사건의 전말을 올바르게 알 수 있었다. 강원도민일보가 “애도 편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청구인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실었다는 것이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의 결론을 뒤집는 증거로 되는 것은 아니다.

(2) 고소사실 “나”항에 대하여

피고소인 이○○는, 1995. 4. 7.자 춘천지방검찰청에서 법무부와 대검에 보낸 정보보고 문건을 보면 그 이전에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청구인의 남북교류 추진 배경, 성향 등에 대하여 대외비 공작 내사 중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튿날 춘천지방검찰청 공안 담당검사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내사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기사를 작성한 것이므로 허위가 아니라고 변소하고, 위 정보보고 기재내용(수사기록 2-7, 11면)도 이에 부합한다.

(3) 고소사실 “다”항에 대하여

통일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한 바가 없음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통일원이 회신한 문건에 의하여 확인되므로(수사기록 2-43면), 4. 12.자 기사에서 “통일원은 … 의원들에 대해 경고조치 하기로 결정하고 금명간 해당 의원들에게 경고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는 부분은 일단 위의 회신과는 그 내용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소인 이○○는 그 전날인 4. 11. 통일원 교류2과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그 내용을 확인한 바 있고, 같은 신문사 문익기 기자가 통일원에 확인하였더니 관계자를 경고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알려주므로 사실인 것으로 믿고 기사를 작성한 것이지 허위인 줄 알고 기사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하고, 위 문익기의 진술내용(수사기록 175, 178면)도 위 변소에 부합한다.

4. 12.자 기사는 『‘김일성 애도 편지’관련 도의원 3명이 경찰에 자진 출두’라는 제목과 ‘찬양목적 없었다’ 진술… 통일원 ‘경고’결정’이라는 부제목으로 이 사건 편지를 보내게 된 경위와 중국 방문 중 북측과의 직·간접적인 접촉 활동내용 등을 조사받은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서, 통일원의 경고결정은 그 기사의 말미 부분에 있다.

통일원은 1995. 3. 29. 편지를 전달한 경위서를 받고 난 다음, 청구인과 청구의 인에게 교류취소

통고문을 작성하여 북측에 발송하도록 하였다가 정부당국이 남북교류를 방해한다는 역선전의 빌미를 줄 것을 우려하여 구두로 교류취소 통고를 하도록 종용하였고(수사기록 2-7, 11면), 4. 10. 통일원 대변인 성명에서 통해 이 사건 편지를 보낸 것은 당초의 승인사항을 명백히 벗어나는 것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힌(수사기록 2-25면) 일련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여기의 “경고”는 대북접촉 승인취소와 관련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소사실 “다”항에 대하여는 피고소인들의 명예훼손적 표현은 진실한 사실로 믿고서 한 행위이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4) 고소사실 “라”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강원도지방경찰청이 4. 24.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마지막으로 내사를 종결하였는 데도 같은 달 28.자 기사에서 ‘27일 이들 의원들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계속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수사기록 2-32면). 이에 대해 피고소인 이○○는 청구인을 “소환”하여 조사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경찰에 사건이 계류 중이라는 의미로 기사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경찰담당자와 춘천지검 차장검사에게 확인하였다고 하고 소환조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사내용에 “소환”이라고 쓰는데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만 보아도 허위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변소한다.

경찰청은 1995. 4. 15. 일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상황보고를 하였더니,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하여(수사기록 132-137면) 같은 달 20. 통일원에 수사관을 파견 조사하고, 같은 달 24. 청구인에 대해 소환조사를 마친 후 제품신을 하자 “검찰에서 직접 조사할 예정이니 내사 상태로 즉시 송치할 것”이라는 검사의 지휘에 따라 같은 해 5. 3. 춘천지방검찰청으로 내사 기록을 송부하였다(수사기록 2-19, 132, 145면). 위의 기사는 내사종결 여부가 쟁점이고 4. 24.은 아직 내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다. 4. 28.자 기사는 보강수사를 계속한다는 것으로 “소환”이라는

표현도 쓰지 아니 하였으므로(수사기록 2-32면) 피고소인 이○○의 변호에 수궁이 가고,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볼 증거도 없다.

(5) 고소사실 “마”항에 대하여

피고소인 최○○은 담당 검사에게 청구인을 상대로 남북접촉 승인과정, 접촉 경위와 방법, 서신에 반정부 투쟁 내용을 담은 경위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느냐고 물어 본 바 그렇다고 대답하여 기사화한 것이라고 하면서 허위가 아니라고 변호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자신이 조사받은 조서에는 반정부 투쟁에 관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 피고소인의 기사는 허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그 부분을 조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청구인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 사건 편지의 주된 내용이 아닌 사소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그 동안 경찰과 검찰이 조사한 것은 이 사건 편지의 내용과 전달 경위로서 편지내용 중의 일부인 반정부 투쟁에 관한 부분도 조사대상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당일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조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했다고 해서 중요부분이 아닌 위 부분이 명예훼손적 표현이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더러 진실한 사실로 믿고서 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다.

(6) 비방할 목적의 유무

강원일보는 1995. 1.부터 같은 해 3. 23.까지 청구인과 청구외 인 등 도의원들의 대북접촉 활동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도해 왔던 점(수사기록 65-68면), 통일원과 검찰·경찰에서 이 사건이 종결되자 같은 해 9. 29.자 기사에서 내사종결 배경에 관하여 자세하게 혐의가 없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점(수사기록 69면), 김일성 사망에 따른 조문 문제는 당시 전국적인 관심사였고 청구인은 도의원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편지를 전달한 경위와 내용을 관계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보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의도에서 기사화하였다는 피고소인들의 변호에 수궁이 가고 달리 비방할 목적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7) 끝으로, 피청구인은 1995. 4. 9. 이전에 고

소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내사하지 않은 점, 통일원에서 고소인에게 경고 결정을 않은 점, 1995. 9. 5. 검찰조사시 김일성 애도서신에 반정부 투쟁을 담은 경위에 대해 조사받은 사실이 없는 점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이 김일성 애도 서신을 북한측에 전달하였으며 경찰·검찰에서 내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보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소인들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우리 재판소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그에 대한 평가결과와는 이유를 일부 달리하고 있으나, 결론은 옳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기한 정정보도 심판사건과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사건이 각 일부승소로 판결이 확정된 사정은, 이 사건과는 인정사실에 대한 평가와 적용법률의 차이로 인하여 결론이 다르게 된 것이다.

5. 결론

이상의 이유로 청구인의 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24.

재판장	재판관	김	용	준
	재판관	김	문	희
	재판관	이	재	화
	재판관	조	승	형
	재판관	정	경	식
	재판관	고	중	석
	재판관	신	창	언
주	심	재판관	이	영
	재판관	한	대	현

[별지 제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귀하.

안녕하십니까.

김일성 주석께서 서거 이후 애통한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셨을 총사령관께 삼가 위로와 격려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은 대한민국 강원도 의회 의원들로서 지난 1월 중국 길림성 및 베이징을 방문하여 길림성 정부와 베이징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을 통해 문건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남강원 도의회와 북강원 인민위원회 간에 자매결연을 비롯하여 상호간 의원세미나 개최, 특산물 교환, 문화체육행사 교류, 학생 수학여행단 교류, 남북청소년 야영대회를 주요골자로 한 교류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제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제의는 순수한 민족애의 발로로서 분단 50년을 극복하고 조국은 하나라는 동질성을 회복하여 민족의 과업인 통일위업에 일조하기 위한 충정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평소 이러한 통일위업에 뜻을 같이해온 강원도의 회 정상철 민자당 협의회장과 김덕룡 무소속 협의회장 그리고 김정일 사령관께서도 지난 94년 11월에 서한(일본 천엽시에 거주하는 오덕중 씨로부터)을 보낸 바 있는 정인수 의원(무소속) 등은 강원 남북교류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정인수 의원의 경우는 역대 군사정권과 온몸으로 저항하며 반독재 운동을 가열차게 전개한 사람입니다.

80년도 군부깃쇼무리에 의해 보안사 및 삼청교육대와 감옥에 끌려가면서도 불굴의 투지로 민주화를 위해 소신을 굽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악명높은 살상극인 삼청교육의 진상을 최초로 한국에서 발행되는 신동아 87년 10월호에 폭로한 바 있고(북조선에서도 문예출판사 발행 천리마 90년 3월호에 삼청교육 관련 정인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어 전국에 있는 피해자를 규합하여 삼청교육 진상규명 전국투쟁위원회를 조직하여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평화민주당 명주·양양 지구당 위원장직에 있으면서 군사정부와 강력히 투쟁한 바 있습니다.

우리들은 오로지 뜨거운 민족애로 동 사업을 계획하였고 한국정부로부터 우여곡절 끝에 1년 여만에 대한민국 강원도 의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강원 인민위원회와의 접촉 허가를 어렵게 얻어 내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충정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

니다.

동 교류사업 제의를 위해 낫설은 중국땅까지 마다하지 않고 건너가 어렵게 제의 문건을 전달한 바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교류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지난 번에 제의한 교류사업에 대한 구체적 대화를 위해 단기 4328년 3월 9일 다시 중국 베이징까지 날아 왔습니다.

북강원 인민위원회와 교류원칙에 합의되면 향후 강원도 의회 차원에서의 동 사업을 본격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정일 총사령관 귀하,

남강원 도의회와 북강원 인민위원회와의 교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십시오.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4월 평양에서 개최되는 “국제체육문화축전”에 우리들을 초청하여 북강원 인민위원회 관계자들과 교류방안에 대하여 격의없고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배려하여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뜨거운 민족애가 헛되지 않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좋은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4328년 3월 19일

대한민국 강원 남북교류 추진위원회

위원장 정 상 철(인)

부위원장 김 덕 룡(인)

간사장 정 인 수(인)

[별지 제2]

1. 1995. 4. 9.자 기사

• 제목 : 北접촉 道議員 3명 內査

• 부제목 : 檢·警 김정일에 ‘金日成 사망 애도’ 편지

• 소제목 : 통일원 경위서 요구에 ‘교류 위한 순수의도’ 답변

도의회 정상철, 김덕룡, 정인수 의원 등 도의원 3명이 당국의 승인 하에 남북교류를 추진하면서

임의로 김정일에게 김일성 사망을 애도하며 교류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긴 서신을 보낸 데 대해 검·경찰이 국가보안법 저촉 여부를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철 의원 등 3명은 지난해 11월 통일원의 승인을 받아 강원남북교류추진위를 구성 지난 달 16일부터 21일까지 중국 방문 기간에 북경과 심양 등 현지에서 북한 대사관 고위층과 만나 북강원도 인민위원회와의 자매결연 등 6개 항의 교류사업을 추진하면서 김정일에게 전해 달라고 보낸 서신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이란 호칭과 김일성 사망을 애도하는 내용을 담아 전달했다는 것. 통일원은 이와 관련 지난 달 29일 이 서신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 교류위 대표인 정상철 의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의원이 통일원에 제출한 경위서에는 “지난 달 20일 중국 북경에서 김정일에게 보내는 편지를 북한대사관 직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며 “김정일에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류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기 위하여 보낸 것일 뿐이며, 이는 교류사업을 성사시켜 보자는 순수한 일념에서 이뤄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경위서에는 또 “서신에 김일성 사망에 대한 애도 위로로 표현한 것은 김일성의 죽음을 고무 찬양할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편지 형식을 취하다 보니 의례적으로 수식한 것에 불과하며, 유화 제스처에 의한 최소한의 예의 표시일 뿐 다른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귀하’로 보낸 이 서신에는 ‘김일성 주석께서 서거 이후 애통한 마음으로 나라를 보내셨을 총사령관께 삼가 위로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란 내용이 실려 있다.

2. 1995. 4. 11.자 기사

● 제목 : 「金日成 사망 애도」편지 道義員 3명, 통일원 ‘경고’ 검토

● 소제목 : 접촉 승인사항 명백한 위반

속보=도의회 정상철, 김덕룡, 정인수 의원 등 도의원 3명이 중국 북한대사관을 통해 김정일에게 보낸 김일성 사망 위로를 담은 편지(본보 9일자 1면 보도)와 관련, 통일원은 이 편지가 명백히 당국의 승인사항을 벗어난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도경찰청은 이에 따라 금명간 정상철 의원 등 3명을 불러 편지를 보내게 된 경위와 사전 승인 여부, 김일성 사망 애도문구 등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통일원 김경웅 대변인은 10일 “도의회 의원 3명이 김정일에게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은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려는 것이라고 하지만, 당초 북한 주민 접촉신청 및 승인사항을 명백히 벗어나는 것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대변인은 “현재 김일성 사망 애도 부분에 대한 법적 위반 여부는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며 “그러나 제3국에서 남북간 학술 교류 및 접촉은 앞으로도 계속 허락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통일원은 이와 관련, 지난 달 25일 이들 의원들이 보낸 편지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 당초 접촉 승인을 취소할 방침이었으나 이들 의원들이 접촉 중단의사를 표시했고, 의원직 임기만료 등을 고려, 승인 취소는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대신 이들 의원들에 대해 경고조치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원 관계자는 “지난 달 25일 서신 내용 중 김일성에게 애도를 표시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있어 경위서를 제출 받은 데 이어 교류취소 통고문을 작성해 북측에 발송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취소통고문이 북측에 전달될 경우 정부에서 교류를 방해한다는 역선전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어 발송은 보류하고 구두로 통보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3. 1995. 4. 12.자 기사

● 제목 : ‘金日成 애도’ 편지 관련 道義員 3명, 경찰에 자진출두

● 소제목 : ‘찬양 목적 없었다’ 진술... 통일원 ‘경고’ 결정

속보=도의회 鄭上撤 金德龍 鄭仁壽 의원 등 도의원 3명은 김정일에 보낸 ‘김일성 애도편지’와 관련, 11일 오후 도경찰청에 자진출두해 서신을 보내게 된 경위와 중국 방문 등 북측과의 직·간접적인 접촉 등 활동내용 등을 조사 받았다. 鄭上撤 의원 등 3명은 이날 경찰에서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은 실질적인 교류대상이 북강원도 인민위원회이지만 북한 실정상 최고실권

자인 김정일을 통하지 않고서는 교류를 성사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서신을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鄭위원 등은 또 “김일성 사당 애도 표현은 김일성의 죽음을 찬양할 목적이 아니라 편지 형식상 취해진 의례적인 수식에 불과하다”고 했다. 경찰은 현재 이들 의원들이 김정일에게 보낸 서신이 대북 접촉 승인사항을 벗어난 행위인지 여부와 서신내용 중 김일성 애도 문구가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에 해당되는 행위인지에 대해 관련서류를 토대로 정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도의회 임시회의가 11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지는 점을 고려, 이들 의원들이 의회활동에 차질을 빚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조사를 벌이기로 했으며 금명간 조사결과를 토대로 검찰의 지휘를 받기로 했다. 한편 통일원은 지난 10일 이 편지가 명백히 당국의 승인사항을 벗어난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이어 11일 이들 의원들에 대해 경고조치하기로 결정하고 금명간 해당 의원들에게 경고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4. 1995. 4. 13.자 기사

● 제목 : 김일성 애도 편지 파문, 道의원 2차 조사

속보=도의회 鄭上撤 金德龍 鄭仁壽 의원 등 도의원 3명은 김정일에게 보낸 ‘김일성 애도 편지’와 관련 12일 오후 시내 모처에서 서신을 보내게 된 경위 등에 대한 경찰의 2차 조사를 받았다.

5. 1995. 4. 18.자 기사

● 제목 : ‘金日成 애도’ 서신 관련, 도의원 3명 규탄 성명서

● 소제목 : 이북5도민회

이북5도민회 도연합회(회장=王正杰)는 17일 최근 도의원 3명이 남북교류를 위해 북한에 보낸 金日成 애도 편지와 관련,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원들이 남북교류법이 규정한 실정법을 무시해도 좋으냐”며 “도의회는 이들 의원에게 대해 분명하게 시비를 가려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우리는 李承晚 朴正熙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북한이 조문했다는 보도를 들은 바 없으며 북한은 남북 도처에 심어놓은 고정간첩의 활동을 통해 남

북적화통일전술을 실천하고 있다”며 “연합회는 도의회의 조치결과에 따라 만족한 처분이 있을 때까지 30만 실향민의 이름으로 이들 의원을 규탄하겠다”고 밝혔다.

6. 1995. 4. 19.자 기사

● 제목 : 道의원 3명 보강수사

● 부제목 : ‘김일성 애도 편지’ 서신 발송 경위 추궁

● 소제목 : 道警, 통일원에 수사관 파견

속보=도의회 鄭上撤 金德龍 鄭仁壽 의원 등 도의원 3명이 김정일에게 보낸 ‘김일성 애도 편지’ 사건을 조사 중인 도경찰청은 18일 이들 의원들을 대상으로 서신을 보내게 된 경위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와 관련, 지난 15일 이들 의원들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춘천지검에 지휘품신을 올렸으나 서신을 보내게 된 경위 및 접촉 승인 범위 등에 대한 조사를 보강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날 이들 의원들을 대상으로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김정일에게 보낸 서신이 통일원의 접촉 승인 범위를 넘었는지를 가리기 위해 수사관을 통일원에 파견, 승인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으며 鄭仁壽 의원을 대상으로 서신을 작성하게 된 경위 등을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조사를 마무리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통일원 대변인 金京雄 씨는 이날 본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도의회 의원 3명이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는 북한주민 접촉 신청 및 승인사항을 명백히 벗어난 것이라는 게 통일원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확인했다.

7. 1995. 4. 19.자 기사

● 제목 : 이북5도민회 도연합회 定總

이북5도민회 도연합회(회장 王正杰) 95년 정기총회가 18일 오전 11시 춘천시 삼천동 그린파크에서 李敏燮 국회의원, 柳種洙 국회의원, 鄭泰燮 춘천시의회 의장 등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날 행사에서 이북5도민회 도연합회는 최근 도의원 3명이 북한에 보낸 金日成 애도 편지와 관련, 지난 17일 발표한 성명서를 낭독하고 의원들을 규탄했다.

8. 1995. 4. 22.자 독자투고

• 제목 : 金日成 애도 서신 도의원들에 有感

최근 도의원 3명이 남북교류를 위해 북한에 보낸 김일성 애도 편지와 관련,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도의원이 남북교류법이 규정한 실정법을 무시함은 물론 대표성이 없는 행동을 해 유감이 다. 또 도의회는 이들 의원의 행동에 대해 분명하게 시비를 가려 도민의 의아심을 풀어주기를 촉구한다. 6·25 당시 남과 북의 정규군의 전사자만도 2백여 만명 그리고 남과 북의 민간인의 전사자는 3백만명, 남한에서만 남편을 잃고 미망인이 된 여성이 30만명,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아이들만 10만명, 남한의 지도급 인사 가운데 북으로 납치되어간 인사는 10만명 그리고 우리 국토의 40%를 잣대미로 초토화시킨 장본인이고 정전후는 삼척·울진 무장공비 침투사건, 서해안 다대포 무장공비 침투사건, 미안마 군포지 폭파사건, 김현희 KAL기 폭파사건 그 외에도 휴전선 비무장지대에서 2만여 건의 각종 도발행위 등 엄청난 범죄행위를 저지른 김일성의 사망에 대해 애도 운운함은 상식 밖의 일이다. 북한은 호시탐탐 남한 적화통일의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도의원 3명의 처사에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安泰石(바르게살기운동 도협의회장)

9. 1995. 4. 28.자 기사

• 제목 : ‘김일성 애도’ 도의원 3명, 보강수사 계속

도의회 정인수, 김덕룡, 정상철 의원 등 도의원 3명이 김정일에게 보낸 김정일 애도 편지 사건을 조사 중인 도경찰청은 27일 이들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에 대한 보강수사를 계속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지난 20일 이들 의원들이 김정일에게 보낸 서신이 통일원의 접촉 승인 범위를 넘었는지를 가리기 위해 수사관을 통일원에 파견,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지난 24일 정인수, 김덕룡 의원을 불러 북한 주민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팩스 또는 전화를 사용하고도 통일원에 보고하지 않은 경위 및 통화 내역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통일원 관계자는 지난 20일 경찰조사에서 “도의회 의원 3명이 김

정일에게 보낸 편지는 접촉 승인 사항을 위반했으나 통일원은 이들 도의원들에게 경위서 제출 및 접촉취소통고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사후조치를 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금명간 이들 의원들을 다시 불러 보강수사를 한 후 빠르면 다음주 중 검찰에 지휘품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0. 1995. 5. 25.자 기사

• 제목 : 검찰, 金德龍 도의원 소환

• 부제목 : 金日成 애도 서신 관련, 내용 보안법 저촉 여부 조사

• 소제목 : 남북교류협조와 무관한 일부 文句 집중 추궁

속보=춘천지검은 도의회 鄭上撤 金德龍 鄭仁壽 의원 등 도의원 3명이 북한의 김정일에게 보낸 서신(본보 4월 9일자 1면 보도)과 관련, 24일 金德龍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이들 의원들에 대한 재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20분께 金德龍 의원(영월2)을 소환, 강원남북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金의원 등 도의원 3명이 김정일 앞으로 편지를 보내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鄭仁壽 鄭上撤 의원에 대해서도 금명간 출석요구서를 보내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鄭仁壽 의원 등 도의원 3명이 김정일 앞으로 보낸 서신내용 중 ‘김일성 주석께서 서거 이후 애통한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셨을 총사령관께 삼가 위로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문구와 강원남북교류협조와는 상관없는 대정부 투쟁 등을 담은 부분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鄭의원 등 도의원 3명의 이름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인민군총사령관’ 귀하로 보낸 서신에는 ‘鄭仁壽 의원의 경우 역대 군사정권과 온몸으로 저항하여 반독재 운동을 가열차게 전개한 사람’이며 ‘80년도 군부파쇼 무리에 의해 보안사 및 삼청교육대와 감옥에 끌려가면서도 불굴의 투지로 민주화를 위해 소신을 굽혀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 서신에는 ‘鄭仁壽 의원이 악명높은 살상극인 삼청교육의 진상을 한국에서 발행되는 모잡지 87년 10월호에 폭로한 바 있고 북조선에서도 문예출판사 발행 천리마

90년 3월호에 삼청교육 관련 정인수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는 등 총 51행 중 11행이 교류협조와는 상관없는 대정부 투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서신 말미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있는 4월 평양에서 개최되는 국제체육문화축전에 우리들을 초청하여 북강원 인민위원회 관계자들과 교류방안에 대해 격의없는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배려해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11. 1995. 5. 26.자 기사

• 제목 : “서신 鄭仁壽 의원이 작성”, 金德龍 도의원 일단 귀가조치

• 소제목 : 鄭仁壽 · 鄭上撤 의원도 곧 소환

속보=도의회 鄭仁壽 鄭上撤 金德龍 의원 등 도의원 3명이 북한의 김정일에게 보낸 서신사건을 재조사 중인 춘천지검은 24일 金德龍 의원을 소환, 서신을 보내게 된 경위와 강원남북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측과 직·간접적인 접촉 등 활동내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이날 밤 12시에 일단 귀가조치 했다. 金의원은 이날 검찰에서 “鄭仁壽 의원이 직접 서신을 작성했고 자신은 鄭의원이 보여준 서신에 동의만 했을 뿐”이며 “남북교류를 위한 사전승인 관계는 鄭의원이 통일원 측으로부터 모든 절차를 밟았다고 해 구체적인 승인절차 관계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金의원에 대해 금명간 재소환, 보강 조사를 벌이기로 했으며 鄭上撤 의원은 오는 6월 1~3일 사이에, 鄭仁壽 의원은 6월 7~9일 사이에 각각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12. 1995. 6. 2.자 기사

• 제목 : 鄭上撤 의원 소환

• 소제목 : 검찰, 김일성 애도 서신 발송 경위 조사

속보=도의회 鄭仁壽 金德龍 鄭上撤 의원 등 도의원 3명이 북한의 김정일에게 보낸 서신사건을 재조사 중인 춘천지검은 1일 오후 鄭上撤 의원을 소환, 서신을 보내게 된 경위와 강원남북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측과 직·간접적인 접촉 등 활동내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鄭의원을 상대로 서신작성 경위 및 서신

에 반정부투쟁 등을 담은 경위, 강원남북교류 추진과정에서의 접촉 승인 절차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서신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鄭仁壽 의원에 대해서는 오는 7~9일 사이에 소환, 조사하기로 하고 지난 달 24일 조사한 金德龍 의원에 대해서도 금명간 재소환, 보강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13. 1995. 6. 3.자 기사

• 제목 : 金日成 애도 서신, “작성 관여 안했다”

• 소제목 : 鄭上撤 의원 귀가조치

속보=도의회 鄭仁壽 金德龍 鄭上撤 의원 등 도의원 3명이 북한의 김정일에게 보낸 서신사건을 재조사 중인 춘천지검은 1일 鄭上撤 의원을 소환, 서신을 보내게 된 경위와 강원남북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측과 직·간접적인 접촉 등 활동내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이날 밤 11시 40분께 귀가조치 했다. 金의원은 이날 검찰에서 “강원남북교류추진위원장은 자신이지만 김정일에게 보낸 서신은 鄭仁壽 의원이 직접 작성했다”며 “사전승인 관계도 자신이 관여하지 않아 구체적인 승인절차 관계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오는 6일께 鄭仁壽 의원을 소환, 서신을 작성하게 된 경위 및 강원남북교류추진위의 활동사항 전반에 걸쳐 조사하기로 했다.

14. 1995. 6. 8.자 기사

• 제목 : 鄭仁壽 도의원 검찰 내일 소환

• 소제목 : “애도서신 직접 작성”

속보=도의회 鄭仁壽 金德龍 鄭上撤 의원 등 도의원 3명이 북한의 김정일에게 보낸 서신사건을 재조사 중인 춘천지검은 9일 鄭仁壽 의원을 소환, 서신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강원남북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측과 직·간접적인 접촉 등 활동내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당초 7일 오후 鄭仁壽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鄭의원이 몸이 아프다며 진단서와 함께 출두할 수 없다는 서신을 보내 옴에 따라 9일로 조사를 연기했다. 한편 검찰은 鄭仁壽 의원에 대해 1차 조사를 벌인 후 이들 도의원 3명에

대한 보강수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5. 1995. 6. 10.자 기사

• 제목 : 서신 작성 조사, 鄭仁壽 도의원 소환

속보=도의원 鄭仁壽 金德龍 鄭上撤 의원 등 도의원 3명이 북한의 김정일에게 보낸 서신사건을 재조사 중인 춘천지검은 9일 오후 鄭仁壽 의원을 소환, 서신을 보내게 된 경위와 강원남북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측과 직·간접적인 접촉 등 활동내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鄭의원을 상대로 서신 작성 및 서신에 반정부 투쟁을 담은 경위, 강원남북교류 추진과정에서의 접촉 승인 절차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16. 1995. 6. 11.자 기사

• 제목 : 金日成 애도 서신 불순 의도 없었다.

• 부제목 : 鄭仁壽 의원 귀가조치

속보=도의회 鄭仁壽 金德龍 鄭上撤 의원 등 도의원 3명이 북한의 김정일에게 보낸 서신사건을 재조사 중인 춘천지검은 9일 오후 鄭仁壽 의원을 소환, 서신 작성 및 서신에 반정부 투쟁 내용을 담은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이날 오후 8시 40분께 일단 귀가조치 했다. 鄭의원은 이날 검찰에서 “자신이 서신을 작성하면서 반정부 투쟁 내용을 담아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불순한 의도는 없었다”며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는 데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鄭의원 등 도의원 3명에 대해 보강조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소환일정은 추후 결정

하기로 했다.

17. 1995. 9. 6.자 기사

• 제목 : 鄭仁壽 씨 검찰소환

• 소제목 : 金日成 애도 서신 관련

제1판 : 속보=선거사범 처리 문제로 전 도의원 정인수, 김덕룡, 정상철 씨 등 3명이 북한의 김일성에게 보낸 서신사건 재조사를 미루어 왔던 춘천지검은 5일 오후 정인수 씨를 소환, 서신을 보내게 된 경위와 강원남북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측과의 직·간접 접촉 등 활동내용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서신에 반정부 투쟁 등을 담은 경위, 남북 접촉 승인 과정에서의 승인 절차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제3판 : 속보=선거사범 처리 문제로 전 도의원 정인수, 김덕룡, 정상철 씨 등 3명이 북한의 김일성에게 보낸 서신사건 재조사를 미루어왔던 춘천지검은 5일 오후 정인수씨를 소환, 서신을 보내게 된 경위와 강원남북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측과의 직·간접 접촉 등 활동내용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서신에 반정부 투쟁 등을 담은 경위, 남북 접촉 승인 과정에서의 승인 절차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였다. 특히 정상철, 김덕룡 씨가 지난 5, 6월 소환조사 당시 김일성 애도 서신은 정인수 씨가 직접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을 중시, 서신 작성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금명간 정씨와 김덕룡, 정상철씨를 재소환, 강원남북교류추진위의 활동사항 전반에 걸쳐 추가 보강조사를 벌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判決 3

검사인 원고가 청탁을 받아 범죄혐의자의 구속영장 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한 것처럼 표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이성룡 부장

판사)는 1999년 6월 23일 서울지방검찰청 최운식 검사가 한국방송공사와 보도국장, 사회2부장, 기자, 앵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한국방송공사가 1999년 2월 3일 오후 9시 뉴스시간에 『납득하지 못할 영장 기각』이라는 제목으로 ‘경찰공무원이 근무 중에 폭행을 당하는 경우 가해자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는 것이 상례임에도,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대한 경찰 공무원의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받은 검사가 구속영장 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하였는데, 그 피의자는 부산에 있는 동료 검사의 처남’이라는 취지의 방송을 하자 원고가 마치 동료검사의 청탁을 받아들여 부당하게 기각결정을 한 것처럼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납득하지 못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가 기각해서는 안될 범죄에 대한 영장신청을 기각한 것처럼 단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었고, 원고가 독자적인 판단에서 기각결정을 내렸음에도 이 사건 방송내용의 전체 흐름, 제목, 경위, 구성과 배치 및 진행자의 태도에 비추어 원고가 청탁을 받아들여 부당한 결정을 한 것처럼 표현하였으므로 한국방송공사와 방송이 되기까지 기획, 취재, 편성과정에 참여한 피고들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는 정정보도문의 방송도 요구하였으나 재판부는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원고의 명예회복에 충분하다며 이를 기각하였으며, 사건 방송당시 뉴스 앵커였던 피고 김○○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방송의 기획, 취재, 편성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했다.

한편, 원고는 동 보도와 관련하여 1999년 2월 20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신청(99서울중재51)을 했으나 중재불성립결정된 바 있다.

判 決 文

사 건 : 99가합14391 손해배상(기)

원 고 : 최 ○ ○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342동
206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 영 기

피 고 : 1. 한국방송공사

대표자 사장 박 권 상

2. 류 ○ ○

3. 이 ○ ○

4. 박 ○ ○

5. 김 ○ ○

피고들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변론종결 : 1999. 6. 9.

주 문 : 1. 피고 한국방송공사, 류○○, 이○○, 박○○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원과 이에 대하여 1999. 2. 4. 부터 1999. 6. 23.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로 각 설했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김○○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0%는 원고가, 80%는 나머지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5억원과 이에 대하여 1999. 2. 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로 각 설했돈을 지급하고,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별지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취지의 정정보도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 1. 명예훼손의 성립

가. 원고는 서울지방검찰청에 재직하고 있는 검사이고, 피고 한국방송공사(이하 피고 공이라 한다)는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전국에 방송의 시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방송 문화의 발전과 공공 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류○○, 이○○, 박○○, 김○○은 피고 공사의 피용자들이다. (피고 류○○ : 보도국장, 피고 이○○ : 사회2부장, 피고 박○○ : 기자, 피고 김○○ : 뉴스 앵커)

나. 한국 휴렛팩커드 주식회사의 과장인 임성준은 1999. 1. 29. 23: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리치칼튼 호텔 로비에서 술에 취해 회사 동료 1명과 상의를 벗고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는 소란을 피웠는데, 위 호텔 직원의 신고를 받은 역삼1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장 김옥원, 심상묵이 현장에 출동하여 임성준에게 임의 동행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자, 위 경찰 공무원들은 임성준을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려 하였고, 이에 화가 난 임성준은 위 경찰관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버둥을 쳐, 위 경찰 공무원들에게 약 14일,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무전기 1대(시가 10만원 상당)도 부수었다.

다. 위 사건의 조사를 맡은 강남경찰서 담당 경찰 공무원은 수사를 마친 뒤 1999. 1. 30. 16:00경 위 범죄 사실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의율하여 서울지방 검찰청에 임성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라. 위 구속영장 신청 사건은 당시 영장 당직 검사인 원고에게 배당되어, 원고가 위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을 검토하였는데, 원고는, ① 회사 동료들 사이에 일어난 단순 소란 행위임에도 임의 동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경찰 공무원이 강제 연행을 시도하다가 위 사건이 발생된 점에서 공무 집행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고, ②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신청한 구속 영장에 대한 영장 기각률이 전국 평균 영장 기각률보다 현저하게 높아서 구속영장 심사를 신중히 하여 영장을 청구하라는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에 신중을 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③ 임성준이 초범이고,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건실한 회사의 중견 간부로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④ 임성준의 가족이 피해 경찰관에 대한 보상을 다짐한 점, 임성준이 근무하는 회사의 상사와 동료 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위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한편, 피고 박○○는 위 피해 경찰 공무원과 위 사건의 관할 경찰서인 강남 경찰서의 담당 경찰 공무원을 취재한 다음, 별지 방송 내용 기재

에 상응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 이○○, 류○○과 순차 방송할 내용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피고 류○○, 이○○가 위 기사를 방송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999. 2. 3. 오후 9시 정구 뉴스 시간에 별지 방송 내용 기재와 같이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서울지방검찰청이 1998. 12.에 처리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총 사건수는 145건인데, 그 중 구공판한 사건이 25건, 구약식한 사건이 100건, 불기소 처분되었거나 이송된 사건이 17건이고, 미제가 3건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피고 공사, 피고 류○○, 이○○, 박○○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방송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시청자에게 부여하는 인상도 그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인바, 피해자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는 비록 인적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기사나 영상 자체만으로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후자의 판단에서는 진행자를 비롯한 출연자들의 발언 내용 이외에도 일반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프로그램의 제목, 배경 화면과 자막, 내용의 전체 흐름, 구성과 배치 및 진행자의 태도, 그밖에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지식 수준을 종합하여, 그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주는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둘이켜 이 사건에서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 공사는 ‘납득하지 못할 영장 기각’이라는 제목으로 ‘경찰 공무원이 근무 중에 폭행을 당하는 경우 가해자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는 것이 상례임에도,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대한 경찰 공무원의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받은 검사가 구속영장 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하였는데, 그 피의자는 부산에 있는 동료 검사의 처남'이라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는바, 위 방송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를 평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원고의 직역과 관계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영장을 기각한 검사가 원고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위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 영장을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검사가 부당히 영장을 기각하였다는 표현만으로도 원고가 피해자임을 특정하기에 충분하며, 아울러 위 방송 내용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방송을 편성하면서도 제목에서 '납득하지 못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도저히 기각해서는 안될 범죄 사실에 대한 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처럼 단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었고, 사실은 경찰 공무원이 근무 중에 폭행 또는 상해를 당하는 경우 가해자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는 비율이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동료 검사의 청탁을 받음이 없이 독자적인 판단에서 정당한 결정을 하였음에도, 마치 경찰 공무원이 근무 중에 폭행을 당하는 경우 가해자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는 것이 상례인 것처럼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방송 내용의 전체 흐름, 제목, 경위, 구성과 배치 및 진행자의 태도에 비추어 원고가 동료 검사의 부당한 청탁을 받아들여 검사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기각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 아주 부당한 기각 결정을 한 것처럼 표현을 하여, 원고가 검사로서 가지는 자긍심과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공사와 이 사건 방송이 되기까지 기획, 취재, 편성 과정에 참여한 피고 공사의 피용자인 피고 류○○, 이○○, 박○○는 연대하여 이 사건 방송을 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위법성 조각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공사, 피고 류○○, 이○○, 박○○는, 이 사건 방송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방송된 것으로서 내용이 진실하므로, 이 사건 방송 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방송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그 방송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방송 내용이 진실하다고 증명되는 한 그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게 된다고 할 것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방송은 검사가 가진 기소 독점 주의에 대한 폐단을 지적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한편 이 사건 방송 내용의 전체 흐름, 제목, 구성과 배치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방송의 일부 내용은 관계자들의 진술을 내세워 피해자를 일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서 비방하려는 데 보도의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 공사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방송을 하였는지 강한 의구심이 들고, 마치 경찰 공무원이 근무 중에 폭행을 당하는 경우 가해자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는 것이 상례이고, 원고가 동료 검사의 부당한 청탁을 받아들여 검사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기각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 아주 부당한 기각 결정을 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아서, 이 사건 방송 내용은 일부 허위인 사실인 점도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피고 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방송 당시 피고 공사의 9시 뉴스 앵커였던 위 피고에 대하여도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가 뉴스 진행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피고에게 나머지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달리 위 피고가 이 사건 방송의 기획, 취재, 편성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정정보도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공사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아울러 별지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방송의 내용과 경위,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모아보면, 원고의 명예 회복을 위한 처분은 아래에서 인정된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 공사, 피고 류○○, 이○○, 박○○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방송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방송의 제목과 내용 및 방송 시점, 방영 시간, 위 피고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에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방송이 법집행자로서, 검사라는 사회적 지위에 있는 원고 개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공정한 법집행을 담당한 검사, 기타 법조인들이 부당한 청탁을 받아 들여 왜곡된 판단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우리 사회에 공적 사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감을 심어 준 데 일조를 한 점, 나아가 이른바 “대전 법조 비리” 사건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원고와 동료 검사들에게 국민들의 따갑고도 의혹어린 시선을 부당히 더하여 줌으로써 커다란 고통과 좌절을 안겨 준 점, 피고 공사가 우리 나라 언론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그리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1억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공사, 피고 류○○, 이○○, 박○○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억원과 위 불법 행위일 다음날인 1999. 2. 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9. 6.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로 각 셈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공사, 피고 류○○, 이○○, 박○○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1999. 6. 23.

재판장 판사 이 성 룡
판사 함 석 천
판사 김 선 일

방송내용

• 제목 : 납득하지 못할 영장 기각

▶ 김○○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관이 근무 중에 폭행을 당할 경우 가해자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구속되는 것이 상례입니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에 박○○ 기자입니다.

▶ 박○○ 기자 : 경찰관 2명이 파출소에 피를 흘리며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눈이 찢어지고 한 사람은 손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연행하러 갔다 오하려 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 김옥현(피해 경찰 공무원) : 그 사람 차에 올라 가 가지고 차에 탑승을 안 하려고 하면서 발길과 손질을 하면서 손으로 3회에 걸쳐 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 박○○ 기자 : 파출소에 들어온 뒤에도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발길질을 하며 행패를 부립니다. 얼마 후 피의자 일행의 처남이라는 검사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 파출소 경찰 공무원 : 부산에 있는 검사라고 하더라고요.

▶ 박○○ 기자 : 전화를 받은 뒤 이들은 더욱 기세가 등등해 집니다.

▶ 가해자 모씨 : “뭐가 찼니까? 공무집행 방해가 뭐를 했습니까? 증인이 누굴니까?”

▶ 박○○ 기자 : 경찰은 폭력을 휘두른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경찰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사유는 피의자가 술에 취해 있었고 피의자 부인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 담당서 경찰 공무원 : “일반적으로 공무집행 방해는 진단에 관계없이 영장 신청하죠.”

▶ 박○○ 기자 : “검찰도 영장 청구하구요?”

▶ 담당서 경찰 공무원 : “그렇죠.”

▶ 박○○ 기자 : 그러나 경찰은 영장 청구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고 푸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입니다.

정정보도문

피고 공사는 1999. 2. 3. 오후 09:00 뉴스에서 “납득하지 못할 영장 기각”이라는 제목으로 영장 담당 검사인 원고가 구속이 상례인 공무집행 방해 사범을 동료 검사의 청탁으로 부당하게 기각하였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던 바, 공무집행 방

해 사범은 구속이 아니라 불구속이 상례이고 사안에 따라 구속 및 불구속을 판단할 일이며, 원고는 사안의 성격상 정당하게 판단하여 영장을 기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 검사의 청탁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업무

* 仲裁業務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자와 해당 언론기관간의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회복시켜 주고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是正勸告業務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언론기관의 발행인에게 是正을 권고하여 건전한 언론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재신청서의 제출요령

- 중재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문제가 된 보도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보도문 및 중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을 할 때는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대리인(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이 중재를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창구에는 중재신청서 용지를 비치하고 무료로 배부해 드립니다.

중재신청 및 처리절차

* 중재신청의 종류

- 반론보도청구 — 언론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자신의 반론을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정보도청구 — 허위보도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정정 기사를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후보도청구 -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형사절차가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자신의 결백을 추후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기간

-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보도가 있는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추후보도청구의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재사건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중재부의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할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중재심리

- 중재심리는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중재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중재기일에 해당 중재부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 중재대리인에 대한 중재부의 허가

- 변호사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의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중재기일에 중재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및 합의간주된 경우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합의간주 -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직권에 의한 중재결정 및 중재불성립결정

-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중재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중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또한 중재부는 중재에 적합치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합니다.

*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중재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중재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취하 및 취하간주

- 중재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재기일에는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신청

-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않아도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의 신청은 중재불성립결정 또는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 전국 15개 중재부,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

- 언론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7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에 사무처가 있습니다.
- 75명의 중재위원들은 각 시도별로 설치된 중재부에 소속되어 중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5인 이내로 구성된 중재부는 서울에 5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제주에 각 1개씩 모두 15개의 중재부가 있습니다.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이 맡고 있습니다.

* 중재부의 관할구역

-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합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방송관련법, 선거법 중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조항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第16條(反論報道請求權) ① 定期刊行物에 公表된 事實의 主張에 의하여 被害를 받은 者 (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事實報道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月 이내에 定期刊行物을 발행하는 者(이하 “言論社”라 한다)에게 書面으로 反論報道文의 게재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 事實報道가 있는 후 6月이 經過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反論報道請求書에는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의 署名·捺印과 住所를 기재하고, 異議對象인 記事의 本文과 게재를 요청하는 反論報道文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言論社가 反論報道掲載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과 反論報道的 內容, 크기 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日刊新聞과 週 1回 이상 발행하는 定期刊行物 및 通信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日 이내에 같은 定期刊行物에, 그밖의 定期刊行物은 編輯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發行號에 이를 無料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被害者가 反論報道請求權의 행사에 正當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請求된 反論報道的 內容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廣告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反論報道는 事實의 陳述과 이를 명백히 傳達하는데 필요한 說明에 局限되고 違法한 內容을 포함할 수 없다.

⑤ 反論報道的 內容은 讀者投稿의 形式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反論報道文의 字數는 異議의 대상이 된 公表內容의 字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⑥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의 公開會議와 法院의 公開裁判節次에 관한 事實記事의 경우에는 第1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⑦ 國家·地方自治團體,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당해업무에 대하여 그 機關 또는 團體를 代表하여 反論報道를 請求할 수 있다.

第17條(言論仲裁委員會) ① 言論報道로 인한 紛爭을 仲裁하고 定期刊行物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言論仲裁委員會(이하 “仲裁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仲裁委員會는 40人 이상 80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며, 委員은 學識과 經驗 및 德望이 있는 者 중에서 文化觀光部 長官이 위촉하되, 委員의 5分の 2 이상은 法官의 資格이 있는 者중에서 法院行政處長이 추천한 者로 하고 委員중 5分の 1 이상은 言論界 人士 중에서 위촉한다.

③ 仲裁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副委員長 2人을 두되, 각각 委員 중에서 互選한다.

- ④ 仲裁委員會의委員長·副委員長 및 委員의任期는 각각 3年으로 한다.
- ⑤ 政黨의黨籍을 가진者(公職選舉 및 選舉不正防止法에 의하여 실시하는 選舉에 候補者로 登錄한者를 포함한다)와 公務員(法官의資格을 가진者 및 教育公務員은 제외한다) 및 言論社에 소속된 現職 言論人은 仲裁委員會의 委員이 될 수 없다.
- ⑥ 仲裁委員會의 委員은 法律과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職務를 행하며, 職務上 어떠한 指示도 받지 아니한다.
- ⑦ 仲裁委員會의 委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當과 實費補償을 받을 수 있다.

第18條(仲裁節次등) ① 被害者 또는 言論社는 言論報道로 인한 反論報道請求權 또는 民法 第764條에 의해 訂正報道등을 구하는 權利에 관한 紛爭에 대하여 第16條 第1項이 정하는 期間(第16條 第1項의 節次를 거친 경우에는 被害者와 言論社間 協議 不成立된 날로부터 14日)안에 書面으로 仲裁委員會에 仲裁를 申請할 수 있다. 仲裁申請에 관하여는 第16條 第2項 및 第7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 ② 仲裁는 5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된 仲裁部에서 하되, 仲裁部의 長은 法官의 資格이 있는 委員이어야 한다.
- ③ 仲裁部의 長은 필요한 경우 당해 仲裁事件의 대상 定期刊行物을 발행하는 言論社에 仲裁對象 表現物이나 그 寫本의 제출을 命하거나 仲裁에 필요한 證據調査를 할 수 있다.
- ④ 仲裁는 申請接受日로부터 14日 이내에 하여야 하며 仲裁部의 長은 지체없이 仲裁期日을 지정하여 當事者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출석을 요구받는 者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출석하여야 한다.
- ⑤ 第4項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仲裁申請人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仲裁申請을 取下한 것으로 보며, 言論社인 被申請人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仲裁申請 趣旨에 따라 反論報道 또는 訂正報道를 이행하기로 合議된 것으로 본다. 다만, 天災·地變 기타 正當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疏明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仲裁結果 當事者間에 合議가 성립된 경우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合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외에는, 仲裁部는 職權으로 當事者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申請趣旨에 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사건의 公平한 해결을 위한 仲裁決定을 할 수 있고, 仲裁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仲裁不成立 決定을 한다. 다만, 職權으로 仲裁決定을 하는 경우에는 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仲裁申請 接受日로부터 21日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⑦ 仲裁結果 當事者間에 合議가 成立된 경우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合議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第6項의 規定에 의한 仲裁決定은 裁判上 和解와 동일한 效力이 있다. 다만 當事者가 第6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을 送達받은 날로부터 7日 이내에 仲裁部에 異議申請을 한 경우에는 그 決定은 效力을 상실한다.
- ⑧ 仲裁委員會는 定期刊行物에 의한 침해사항을 審議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發行人에게 是正을 勸告할 수 있다.
- ⑨ 仲裁의 節次와 仲裁部의 구성방법, 그 管轄, 事務處의 組織, 是正勸告의 방법과 節次, 仲裁委員會 委員의 手當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9條(反論報道請求事件의 審判) ① 仲裁委員會의 仲裁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法院

에 反論報道請求의 訴를 제기할 수 없다. 反論報道請求의 訴는 第18條 第6項의 仲裁不成立 決定 또는 第7項의 異議申請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日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被害者는 反論報道請求의 訴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民事訴訟法 第693條에 의한 申請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② 第18條 第1項의 規定은 民法 第764條의 規定에 의한 權利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에 대한 第1審 裁判은 被告의 普通裁判籍 所在地의 地方法院 合議部의 管轄로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에 대하여는 民事訴訟法의 假處分節次에 관한 規定에 의하여 裁判하며, 請求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法院은 제16條 第3項 내지 第5項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反論報道의 게재를 命할 수 있다. 다만, 民事訴訟法 第697條 및 第705條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⑤ 反論報道請求事件의 裁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第19條의 2(不服節次) ① 反論報道請求를 인용하는 裁判에 대하여는 抗訴하는 이외에 不服을 申請할 수 없다.

② 第1項의 不服節次에서 審理한 결과 反論報道請求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反論報道請求를 인용한 裁判을 取消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경우 言論社가 이미 反論報道請求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申請에 따라 取消裁判의 내용을 報道할 수 있음을 宣告하고, 申請에 따라 被害者로 하여금 言論社가 이미 이행한 反論報道와 取消裁判의 報道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 게재 사용료로서 적정한 損害의 賠償을 하도록 命하여야 한다.

第20條(追後報道請求權) ① 定期刊行物에 의하여 犯罪嫌疑가 있거나 刑事上의 措置를 받았다고 報道된 者는 그에 대한 刑事節次가 無罪判決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終結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月 이내에 書面으로 言論社에 이 사실에 관한 追後報道의 게재를 請求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追後報道의 내용은 請求人의 名譽나 權利回復에 필요한 범위에 局限된다.

③ 追後報道請求權에 관하여는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反論報道請求權에 관한 이 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21條(補助金)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仲裁委員會에 補助金을 支給할 수 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2 조(언론중재위원의 위촉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文化觀光部 長官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 23 조(위원의 대우) 중재위원회는 그 위원에 대하여 중재위원회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의 지급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24조(중재신청)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중재신청서를 중재위원회 사무처 또는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26조(중재관할권등) ①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다만, 동일한 관할구역안에 수개의 중재부가 설치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재사건을 담당할 관할중재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외지사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중재관할권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③ 위원장은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중재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중재절차) ① 중재부의 결정은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5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② 중재부의 장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중재위원회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상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피신청인이 1차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중재부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개재를 요하는 반론보도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게재방법 등을 정하여 2차 중재기일을 출석요구서와 함께 피신청인에게 송부한다.

⑤ 당사자가 법 제18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새로운 중재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당해 중재부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신청이 이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시 중재기일을 지정한다.

⑦ 중재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⑧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재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중재화해조서 및 중재결정문 등) ①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합의성립통지서 및 그 중재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정 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하는 때에는 중재결정문 또는 중재불성립결정문을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서 등본을 그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시정권고) ① 법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④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는 중재위원회 명의로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통보받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⑥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받은 시정권고소위원회는 당해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권고를 철회한다.

⑦ 시정권고소위원회의 운영, 시정권고의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사무처) ① 중재위원회의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각 중재부에 사무처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사무처 직원의 정원·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관계서류의 보존) ①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중재절차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을 위하여 법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등) ① 중재위원회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文化觀光部 長官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는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文化觀光部 長官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 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신청·관할·중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방송법

第41條(反論報道請求權) ① 放送에 公表된 事實의 主張에 의하여 被害를 받은 者(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事實報道가 있음을 안 날부터 1月 이내에 放送局에 書面으로 反論報道的 放送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事實報道가 있는 후 6月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反論報道請求書에는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의 署名·捺印과 住所를 기재하고, 異議對象인 報道內容과 放送을 요청하는 反論報道文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放送局이 反論報道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被害者 또는 代理人과 反論報道的 內容 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이를 無料로 放送하여야 한다. 다만, 被害者가 反論報道請求權의 행사에 正當한 이익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나 請求된 反論報道的 內容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廣告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放送을 거부할 수 있다.

④ 反論報道는 事實의 陳述과 이를 명백히 傳達하는데 필요한 說明에 局限되고 違法한 內容을 포함할 수 없다.

⑤ 反論報道文의 字數는 異議의 대상이 된 公表內容의 字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⑥ 放送局의 長 또는 編成責任者가 행하는 反論報道는 그 公表가 행하여진 동일한 放送周波數에 의하여 동일한 效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⑦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의 公開會議과 法院의 公開裁判節次에 관한 事實放送의 경우에는 第1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⑧ 國家·地方自治團體,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당해 業務에 대하여 그 機關 또는 團體를 대표하여 反論報道를 請求할 수 있다.

第42條(다른 法律의 準用) 放送에 의한 紛爭의 仲裁과 그 節次에 관한 사항과 反論報道請求事件의 審判에 관한 사항 및 追後報道請求權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定期刊行物의 登錄등에 관한 法律 第17條 내지 第2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39조(다른 법령의 준용)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에 의한 분쟁의 중재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8조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합유선방송법

第45條(反論報道請求權) ① 綜合有線放送에 公表된 事實적 主張에 의하여 被害를 받은 者(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事實報道가 있음을 안 날부터 1月 이내에 綜合有線放送局에 書面으로 反論報道的 放送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事實報道가 있는 후 6月이 경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反論報道請求書에는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의 署名·捺印과 住所를 기재하고, 異議對象인 報道內容과 放送을 요청하는 反論報道文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綜合有線放送局이 反論報道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被害者 또는 代理人과 反論報道的 內容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이를 無料로 放送하여야 한다. 다만, 被害者가 反論報道請求權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請求된 反論報道的 청구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廣告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放送을 거부할 수 있다.

④ 反論報道는 사실적 陳述과 이를 명백히 傳達하는 데 필요한 說明에 局限되고, 違法的 內容을 포함할 수 없다.

⑤ 反論報道文의 字數는 異議의 대상이 된 公表內容의 字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⑥ 綜合有線放送局이 행하는 反論報道는 그 公表가 행하여진 것과 동일한 채널 및 時間帶에 동일한 效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⑦ 第1項의 反論報道請求에 프로그램供給者가 함께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 프로그램供給者도 第6項의 規定에 의한 방법으로 反論報道義務를 이행하여야 한다.

⑧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의 公開會議과 法院의 公開裁判節次에 관한 事實放送의 경우에는 第1項 내지 第7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國家·地方自治團體,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당해 業務에 대하여 그 機關 또는 團體를 대표하여 反論報道를 請求할 수 있다.

⑩ 綜合有線放送에 의한 紛爭의 仲裁과 그 節次에 관한 사항과 反論報道請求事件의 審判에 관한 사항 및 追後報道請求權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定期刊行物의 登錄등에 관한 法律 第17條 내지 第2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

제37조(다른 법령의 준용) 법 제4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에 의한 분쟁의 중재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8조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第8條의 3(放送의 選舉報道에 대한 反論報道請求權) ① 選舉日전 90日부터 選舉日까지 放送에 의하여 公表된 人身攻擊, 정책의 歪曲宣傳 등으로 피해를 받은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그 放送이 있음을 안 때부터 48時間 이내에 放送社[第70條(放送廣告)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施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代表에게 書面으로 反論報道的 放送을 請求할 수 있다.

② 放送社의 代表는 第1項의 反論報道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候補者나 그 代理人과

反論報道의 내용 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이를 요구받은 때부터 24時間 이내에 無料로 放送하여야 한다. 다만, 候補者가 反論報道請求權의 행사에 正當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請求된 反論報道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廣告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放送을 거부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의한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放送社의 代表는 選舉放送審議委員會에 지체없이 이를 回附하고, 選舉放送審議委員會는 回附받은 때부터 48時間 이내에 이를 審議·決定하여야 한다.

④ 放送法 第41條(反論報道請求權)第2項·第4項 내지 第7項의 規定은 第1項의 反論報道請求에 이를 準用한다.

第8條의 4(定期刊行物の 選舉報道에 대한 反論報道請求權) ① 選舉日 전 90日부터 選舉日 까지 定期刊行物の登錄등에 관한法律 第2條(用語의 定義)의 規定에 의한 定期刊行物에 公表된 人身攻擊, 정책의 歪曲宣傳 등으로 피해를 받은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그 報道가 있음을 안 때부터 48時間 이내에 定期刊行物을 發行하는 者(이하 “言論社”라 한다)에게 書面으로 反論報道文의 게재를 請求할 수 있다.

② 言論社의 代表는 第1項의 反論報道請求를 받은 때에는 48時間 이내에 候補者나 그 代理人과 反論報道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編輯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定期刊行物の 다음 發行號에 이를 無料로 掲載하여야 하되, 다음 發行號가 選舉期間 종료후에 發行되는 경우에는 당해 言論社의 부담으로 日刊新聞에 이를 掲載하여야 한다. 다만, 候補者가 反論報道請求權의 행사에 正當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請求된 反論報道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廣告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報道를 거부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言論社의 代表는 定期刊行物の登錄등에 관한法律 第17條(言論仲裁委員會)의 規定에 의한 言論仲裁委員會에 지체없이 이를 回附하고, 言論仲裁委員會는 回附를 받은 때부터 48時間 이내에 이를 審議·決定하여야 한다.

④ 定期刊行物の登錄등에 관한法律 第16條(反論報道請求權)第2項·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第1項의 反論報道請求에 이를 準用한다.

Press Arbitration Quarterly

Vol. 19, No. 3, Autumn 1999

— CONTENTS —

- 7 • Journalist's View of Current Libel Suits
- 19 • Judge's View of the Issues of News
Gathering and Reporting
- 31 • Alternative Review of News Reporting and
Libel Suits
- 40 • A Study of Reporting in Criminal Cases and
It's Defense
- 88 • Cases of Press Arbitration in Korea
- 131 • Cases of Court Ruling in Foreign Countries
- 139 • Cases of Press Council in Foreign Countries
- 148 • Current Court Ruling Cases in Korea

Published by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15F., Korea Press Center Bldg., 25, 1-ga, Taepyung-ro, Joong-gu, Seoul, Korea

동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출판물
등록번호
1692
발행
1999년
9월
30일
제12호